

청년종합연구 II: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백혜정 · 김지연 · 김승경 · 김이배 · 노혜진 · 김성아 · 박광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만들어갑니다.

보고서 표지 디자인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AI 보고서 디자인 콘테스트』의 당선 작품을 카카오톡 이모티콘 작가(작가명 모지)로 활동하고 있는 직원이 실사한 것입니다.

***당선작 프롬프트**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청소년, 청소년들을 지지하는 어른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다문화, 기후변화, 인공지능, 미디어, 권리”

AI 디자인_ 곽진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행정원)

실사 디자인_ 변지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인턴)

협동연구총서 23-88-01

연구보고23-일반05

청년종합연구II: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저 자 백혜정, 김지연, 김승경, 김이배, 노혜진, 김성아, 박광옥

연구진 연구책임자_백혜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_김지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_김승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_김이배(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_노혜진(강서대학교 교수)
_김성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_박광옥(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수)
연구보조원_조양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청년종합연구Ⅱ: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1. 협동연구 총서 시리즈

협동연구 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23-88-01	청년종합연구Ⅱ: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3-88-02	2023년 시설퇴소청년 생활 실태 및 정책개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3-88-03	청년의 금융취약 및 정책소외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3-88-04	발달장애청년의 정책소외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복지인재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 기관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백혜정 선임연구위원 (총괄책임자)
협력 연구 기관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김지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승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이배(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노혜진(강서대학교 교수) 조양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원)
협력 연구 기관	한국보건복지 인재원	김문길(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나원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한영섭(갈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강예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협력 연구 기관	한국보건복지 인재원	박광옥 교수
		김용득(성공회대학교 교수) 이복실(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센터장) 이은영(강동대학교 교수) 이동림(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 성명진(발달장애여성연구원 원장) 우리진(한국보건복지인재원 대리)

보고서를 펴내며

우리사회에는 아직도 일반 청년정책, 심지어 취약청년을 위한 정책 대상에도 미처 포함되지 못하는 청년들이 존재한다. 이 연구는 이들을 ‘정책소외계층 청년’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유형과 정책소외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자 3개년 협동연구로 기획되었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 2차 년도 연구를 수행하였다.

지난 1차 년도의 아동·청소년·보호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북한배경청년(통일연구원), 청소년부모(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경제선지능청년(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 대한 연구에 이어 올해 2차 년도에서는 아동·청소년·보호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대한 2차 연구, 그리고 금융취약청년(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달장애청년(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이들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적 소외로 인해 일반 청년과 격차가 발생하는 지점들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격차 완화 및 소외 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의 기본 방향과 핵심과제들을 제안하였다.

정책소외계층 청년의 유형과 실태 분석에서 확인된 취약성을 근거로 이들에 대한 지원제도를 강화하는 접근으로는 세대 내 불평등의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울 뿐 아니라 환경이 변화하면서 등장하는 새로운 유형의 소외청년들을 모두 포괄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럼에도 이 연구가 정책소외계층 청년들 역시 제도를 통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우리 사회의 ‘청년’이라는 인식을 제고하고 이들을 위한 제도적 개입 지점을 제시하고 정책개발을 견인하여 우리 사회 모든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연구요약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사회정책의 사각지대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배제된 취약청년 중에서도 정책적으로 소외된 청년들의 실태와 이들과 일반 청년 간 격차가 발생하는 지점을 확인하여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 추진과제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3개년('22~'24) 연구임.
- 올해 연구는 작년에 이어 2차 년도 연구로서 새로운 유형의 정책소외계층 청년들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생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합적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 정책소외계층 청년들의 유형별 실태조사와 더불어 1차 년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소외계층 청년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 및 정보시스템 기반 맞춤형 지원방안 등도 함께 개발하고자 함.

■ 연구내용

- 연구목적에 따라 2차 년도에는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금융취약청년(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달장애청년(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정책소외 실태를 점검하고 일반 청년과의 격차를 실증적으로 확인함.
- 소외청년 유형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을 새로운 취약계층 청년으로 편입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맞춤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함.

■ 연구방법

- 본 연구의 주요 연구방법은 협동연구로 협동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문헌연구, 2차 자료 분석, 실태조사, 면접조사, 전문가 의견조사,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콜로키움, 정책포럼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분석과 정책 추진과제를 개발함.

■ 연구결과

주요 연구결과

- 청년정책 및 서비스 전달체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취약청년 지원정책은 ‘유형별’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체계 간 분절성 완화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고 청년정책 전달기관으로서 청년지원센터의 고유 기능에 대한 명확히 규정이 없으며 「청년기본법」상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에 대한 보다 상세한 규정이 미흡함.
- 시설퇴소청년: 1차 년도에 구축한 시설퇴소청년(N=2,457) 표본에 대한 실태조사 등에서 진로·고용, 경제·주거, 건강, 참여 영역 등 전반에서 시설퇴소청년들의 공통적인 취약성이 확인됨.
 - 소년보호시설 퇴소 자립준비청년들은 각종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심한 상태였으며 청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들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취약 정도가 가장 심하였음.
 - 실태조사 및 공공데이터 결합을 통해 자립지원 2~3년차에 이르러 심리·정서상 어려움이 증가함을 확인함.
- 금융취약청년: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의 청년 대상 금융정책이 대출에 집중된 경향이 있고 청년층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자산형성의 사각지대 유발 가능성이 있음.
 - 금융취약청년에 대한 사회적 지지체계, 공적 지원체계가 미흡하여 고립·저소득·취업 중단·정신건강 저해 등 다중적인 취약성에 노출될 가능성 높고 금융취약성 해결 과정에서 불법적 수단을 이용하여 금융 취약성이 악화될 수 있음.
- 발달장애청년: 발달장애인들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소외화가 심화됨.
 - 특히 장애 수준이나 개인 특성에 따라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청년정책개발자 및 관련자들의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도 부족, 일반청년과 발달장애청년에 대한 서비스 분리 등의 문제로 불평등과 위험상황이 증가함.
- 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소외계층 청년 지원방향 및 추진과제를 제안함.
- 연구보고서 : 총괄보고서(1종), 세부보고서(3종)

■ 핵심 정책제언

핵심 정책제언

- 지난 1차 년도 연구에서 도출한 정책소외계층 청년 지원정책 개발을 위한 비전, 목표, 전략을 유지하면서 2차 년도 연구결과를 토대로 12개의 추진과제를 추가 개발함(그림 1).
- 추진과제는 크게 사회통합을 위한 추진과제, 대상 특화 추진과제, 제도 조정을 위한 추진과제로 나눌 수 있음.
 - 사회통합을 위한 추진과제: 취약청년 참여권 보장 강화, 사회안전망 강화, 금융취약성 대응 기반 구축, 고립 예방을 위한 지원 강화
 - 대상 특화 추진과제: 청년전담인력 교육·양성을 통한 인식 제고, 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형 지원 강화, 평생교육 관점의 교육·훈련 지원 확대, 광역단위 취약청년 전담기관 간 협력망 구축
 - 제도 조정을 위한 추진과제: 정보시스템 구축 및 공공데이터 활용 강화, 청년정책과 대상별 복지사업 연계 강화, 지역 기반 취약청년 지원체계 구축, 지역청년지원센터의 취약청년 지원 기능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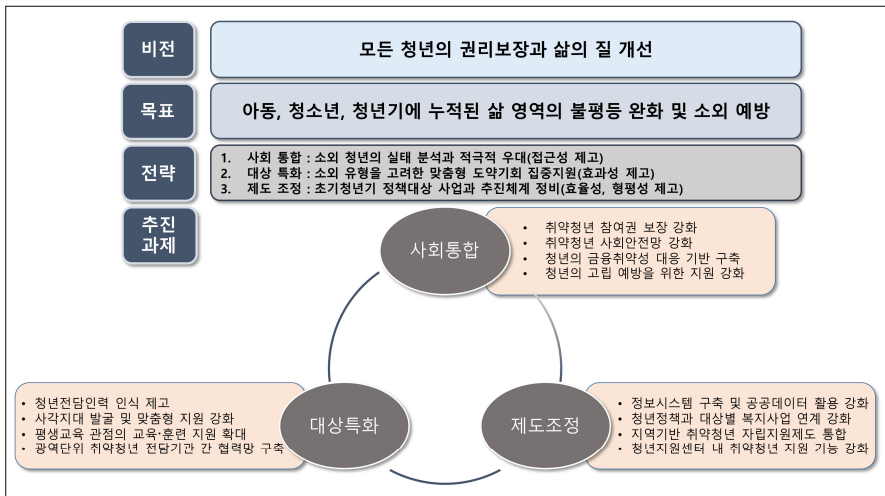


그림 1. 취약계층 청년 지원방향과 추진과제

청년종합연구 II :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협동연구총서 23-88-01

연구보고23-일반05

I. 서 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 2. 연구추진체계 7
- 3. 연구내용 9
- 4. 연구방법 13

II. 정책소외계층 청년 지원정책 현안 진단

- 1. 취약계층 청년 지원체계의 현안 24
- 2. 유형별 취약계층 청년 지원체계의 현안 30
- 3. 유형별 취약계층 청년 정보시스템 활용 현안 37
- 4. 소결 및 시사점 44

III.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정책소외 실태와 과제: 2차 년도

- 1.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정책소외 주요 현안 49
- 2. 자립준비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분석 59
- 3.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정책지원 과제 96

Ⅳ. 금융취약청년 정책소외 실태와 과제

- 1. 청년의 금융취약 및 정책소외 현안과 쟁점 105
- 2. 청년의 금융취약 및 정책소외 실태 분석 110
- 3. 청년의 금융취약 정책지원 과제 132

Ⅴ. 발달장애청년 정책소외 실태와 과제

- 1. 발달장애청년의 정책소외 현안과 쟁점 145
- 2. 발달장애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분석 149
- 3. 발달장애청년의 정책지원 과제 169

Ⅵ. 정책 제언

- 1. 제언 배경 187
- 2. 정책개발 및 세부추진과제: 취약청년 지원체계 정비
 및 안전망 강화 194
- 3. 3차 년도 연구 계획 221

참고문헌 223

Abstract 241

표 목차

표 I-1. 2023년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 개요	15
표 I-2. 금융취약청년 실태조사 개요	15
표 I-3.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면접조사 개요	16
표 I-4. 금융취약청년 면접조사 개요	17
표 I-5. 발달장애청년 면접조사 개요	17
표 I-6.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18
표 I-7.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요	19
표 I-8. 콜로키움 및 정책 포럼 등 개요	19
표 II-1. 중앙정부의 복지분야 취약계층 청년 지원 내역	26
표 II-2. 광역단위 복지분야 취약계층 청년 지원 내역	27
표 II-3. 기초단위 복지분야 취약계층 청년 지원 내역	29
표 II-4. 행복e음을 통한 자립준비청년 지원 내용	38
표 II-5. 발달장애인 지역사회지원체계와 정보시스템	42
표 III-1.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입퇴소자 수(순인원)	52
표 III-2. 최근 3년간 (단기, 중장기)쉼터 18세 이상 청소년 주 퇴소사유(순인원)	53
표 III-3. 청소년자립지원관 주 퇴소 사유	53
표 III-4. 자립생활관 및 창업비전센터 연도별 입주 및 입교 현황	55
표 III-5. 각 시설퇴소청년 유형별 타 시설 이용률	56
표 III-6. 조사 대상 선정 기준	60
표 III-7. 조사 참여자 특성	61
표 III-8. 시설퇴소 후 자립지원 받은 기간	62
표 III-9. 맞춤형 급여 수급 여부	62
표 III-10. 주거지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63
표 III-11. 거주지역별 돌봄 노동 참여 정도	64
표 III-12. 학력	64
표 III-13. 일 경험 여부	66
표 III-14. 야근·주말·초과 근무 경험 및 관련 수당 수령 여부	67
표 III-15. 직장 규모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주휴수당 수령 여부	67

표 III-16.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낸 기간이 일주일을 넘긴 적이 있는지 여부	68
표 III-17. 월 평균 소득(세전)	69
표 III-18. 월 평균 지출	69
표 III-19. 채무(빚, 대출) 액수	70
표 III-20. 최근 1년간 집이 아닌 장소에서 한 달 이상 생활한 청년들의 거주지(중복응답)	72
표 III-21.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점유형태	72
표 III-22. 경제적 이유로 임대 관련 어려움 경험률	73
표 III-23. 주거지원 제도 이용 경험	74
표 III-24. 최근 2년간 건강검진 및 최근 1년간 구강검진 경험 여부	76
표 III-25. 경제적 수준에 따른 식생활 실태	77
표 III-26. 평소 운동 횟수(일주일 기준)	77
표 III-27. 고립감 정도	78
표 III-28. 우울증상 유무	79
표 III-29. 삶의 만족도	80
표 III-30. 최근 1년간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경험	80
표 III-31.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미납 또는 연체 경험	81
표 III-32. 각 영역에서 자신의 인권을 존중받는 정도	84
표 III-33. 생계급여 수급여부의 정합성	86
표 III-34. 자립수당 수급여부	87
표 III-35. 자립수당 수급여부에 따른 심리·정서 상태 차이	87
표 III-36. 자립수당연차에 따른 심리·정서 상태 차이(미수급 제외)	88
표 III-37. 보호종료 유형에 따른 심리·정서 상태 차이	89
표 III-38. 면접 참여 청년	90
표 IV-1. 기능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년금융사업	109
표 IV-2. 청년의 금융생활 실태조사 응답자 특성	111
표 IV-3. 금융취약청년 지원기관 실무자 초점집단인터뷰 진행 개요	112
표 IV-4. 연령집단별 개인 자산, 부채 보유율	113
표 IV-5. 연령집단별 대출 용도	114
표 IV-6. 연령집단별 대출 기관	115
표 IV-7. 현재 기준(2023.4.), 부채 유무에 따른 부채 경험 현황	120
표 IV-8. 부채 부담 정도	124
표 IV-9. 금융채무불이행자 여부	126
표 IV-10. 청년의 금융취약 경험 구조	131
표 IV-11.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상담사 시험 과목 및 내용	140

표 IV-12. 사단법인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의 금융복지상담사 시험 과목 및 내용	141
표 V-1. 발달장애 인구 현황	145
표 V-2. 발달장애청년의 일반적 생활 실태	150
표 V-3. 발달장애청년 삶의 영역별 지원 욕구	153
표 V-4. 타인의 도움 필요 수준	155
표 V-5. 건강관련 어려움 수준	156
표 V-6. 만성질환 및 세부 질환 유무(다중응답)	156
표 V-7. 평생교육 경험	157
표 V-8. 취업 여부	158
표 V-9. 복지서비스: 주로 이용하는 기관 유형	158
표 V-10. 복지서비스: 발달장애청년 및 가족 대상 필요 서비스(1순위)	159
표 V-11. 분석틀 도출: 발달장애청년의 일반적인 생활 실태 및 지원 욕구	159
표 V-12. 심층 및 초점집단면접 분석 결과	162
표 V-13. 정책소외 유형 진단 기준	171
표 V-14. 정책소외 원인 진단 기준	172
표 V-15. 정책소외 유형과 원인 진단	172
표 V-16. 청년정책 중 발달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제도 및 서비스	175
표 V-17. 청년정책에서의 발달장애인 민감성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 과제	183
표 VI-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개정(안)	198
표 VI-2. 「청년기본법 시행령」개정(안)	199
표 VI-3. 「청년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	202
표 VI-4. 취약청년 지원전담인력 교육과정(안)	203
표 VI-5. 취약청년 지원 제도화 검토 사업(안)	205
표 VI-6. 국정과제에 따른 취약청년 지원 추진과제(안)	219
표 VI-7. 3개년 협동연구 연차별 연구주제 및 대상(안)	222

그림 목차

그림 Ⅰ-1. 2차 년도 협동연구 추진체계	7
그림 Ⅰ-2. 2차 년도 연구추진체계	7
그림 Ⅰ-3. 3개년 협동연구 추진 계획(안)	8
그림 Ⅰ-4.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연차별 조사 표본 규모(안)	14
그림 Ⅰ-5. 정책대상별 주요 연구 방법(안)	20
그림 Ⅱ-1. 각 부처별 시설퇴소청년 서비스 전달체계도	32
그림 Ⅱ-2.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주요 기능(서울시 사례)	33
그림 Ⅱ-3.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체계도	36
그림 Ⅱ-4. 정보시스템 기반 아동보호 및 자립지원 업무 내용	39
그림 Ⅱ-5. 청소년안전망시스템 구성도	41
그림 Ⅱ-6. 발달장애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개선(안)	43
그림 Ⅲ-1. 2017~2021년 자립준비청년 현황 추이(명)	50
그림 Ⅲ-2. 최근 5년간 보호소년, 위탁소년 현황	55
그림 Ⅲ-3. 자립생활관 및 창업비전센터 평균 거주 기간(일, 월)	56
그림 Ⅲ-4. 시설퇴소청년의 시설 이동 경로	57
그림 Ⅲ-5. 정부(지자체) 제공 취업 관련 교육 및 훈련 수강 의향	65
그림 Ⅲ-6. 금융채무불이행 여부 및 신용회복 지원제도 이용 여부	71
그림 Ⅲ-7. LH 등의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지 마련	73
그림 Ⅲ-8. 정부지원 주택 입주 경험 및 도움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	75
그림 Ⅲ-9. 1일 식사 횟수 및 식생활 행태	76
그림 Ⅲ-10. 고립·은둔 경험	78
그림 Ⅲ-11. 청년 활동 참여율	82
그림 Ⅲ-12. 참여 효능감	82
그림 Ⅲ-13. 다양한 이유에 따른 차별 경험률	83
그림 Ⅲ-14. 시설퇴소청년들의 경제수준별 다양한 이유에 따른 차별 경험률	83
그림 Ⅲ-15. 향후 결혼 및 자녀 계획	85

그림 III-16.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정	91
그림 IV-1. 연령집단별 개인 소득, 자산, 부채(2022년)	105
그림 IV-2. 성별 및 연령집단별 개인 자산 및 부채 수준	116
그림 IV-3. 종사상 지위별 연령집단별 개인 자산 및 부채 수준	118
그림 IV-4. 거주지역별 연령집단별 개인 자산 및 부채 수준	119
그림 IV-5. 생애 최초 주된 부채	120
그림 IV-6. 부채보유 건수	121
그림 IV-7. 삶의 만족도 및 주변도움 유무	121
그림 IV-8. 취약계층 여부(중복응답)	122
그림 IV-9. 연체 경험(3달/회 이상 원금 상환 및 이자지급 날짜를 지나친 경험)	123
그림 IV-10. 채무조정 및 채무자 구제제도 중 이용한 제도	125
그림 IV-11. 금융관련 정보 습득 경로	126
그림 IV-12. 재무/금융교육 및 상담 경험	127
그림 IV-13. 청년 전세사기 관련 기사 추이	136
그림 IV-14. 지역 기반 청년 금융안전망 사례(광주청년드림은행)	139
그림 V-1.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배제 비율	170
그림 V-2. 발달장애청년의 정책소외 양상 및 특성	175
그림 V-3. 발달장애청년의 정책지원 방향	178
그림 VI-1. 취약계층 청년 지원방향과 추진과제	187
그림 VI-2. 취약청년 유형별 연구결과 및 시사점(2차 년도)	194
그림 VI-3. 지역청년지원센터의 지역사회 협력망(안)	209
그림 VI-4. 청년지원센터 기능 확대에 따른 추진과제	216
그림 VI-5. 취약청년 친화적 지역청년센터 구축 원칙(안)	218
그림 VI-6. 3차 년도 연구대상 및 핵심 주제	222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2. 연구추진체계
- 3. 연구내용
- 4. 연구방법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020년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21~’25)’ 수립을 시작으로 청년에 대한 지원정책이 본격화되었다. 현 정부에서는 ‘희망, 공정, 참여’를 기조로 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에 있다. 최근 발표된 청년정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 핵심 어젠다로 ‘청년’이 설정되었으며, 청년의 삶 여건 개선과 함께 자립준비청년, 취업애로청년, 취약청년 등 소외청년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통한 희망복원,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이 목표로 제시된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22.10.26²⁾). 그동안의 청년정책은 일반 청년들을 주요 대상으로 선정하며 ‘보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소수집단으로서의 취약청년들’에 대한 고려가 다소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이들 ‘취약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은 진일보한 자세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칫하면 선별주의를 강조할 뿐 세대 내 격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보일 수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접근이 매우 뜻깊은 것은 정책대상인 청년을 단일 집단이 아닌 다양한 범주와 계층으로 구성된 다차원적인 집단임을 인정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취약청년’의 발굴을 가속화하여 유사 범주 내 청년들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정책소외를 최소화할 수 있고 한걸음 더 나아가 청년의 이행기 지원 뿐 아니라 세대 내 격차 완화라는 청년정책의 핵심 기능에 비중을 둘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취약계층에 속한 청년은 위험생애사건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으며(이원진, 2011) 청년

1) 이 장은 백해정 선임연구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다.

2) 국무조정실 보도자료(2022.10.26).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https://www.opm.go.kr/opm/news/press-release.do?mode=view&articleNo=151716&article.offset=10&articleLimit=10&srPeriodEnd=2022-10-28&srPeriodStart=2022-10-24>에서 2023년 2월 13일 검색.

기의 과업 실패는 이후 삶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다(UN, 2018; Van Regenmortel, De Donder, Dury, Smetcoren, De Witte, & Verté, 2016). 즉 사회 안전망에서 비자발적인 이유로 소외되거나 배제된 취약계층 청년들은 생애과정에서 다양한 불리(disadvantages)와 탈 표준적인 이행을 경험하면서 위기에 더욱 취약해질 뿐 아니라 이때 공식적·비공식적 지지체계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는다면 중·장년기를 거쳐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취약계층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조기에 식별하여 발굴해내고 취약성을 집중 보완하기 위해 적극적 우대(affirmative action)의 일환으로 청년정책의 공적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일 뿐 아니라 장래의 사회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실익이 크다.³⁾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 연구는 ‘능력주의’ 사회 속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청년, 사회정책의 사각지대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배제된 소수 집단(alienated class) 청년 등 취약청년 중에서도 특히 정책적으로 소외된 청년을 ‘정책소외청년’으로 규정하고,⁴⁾ 이들의 유형별 실태와 이들과 일반 청년 간 격차가 발생하는 지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다행히 최근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에 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취약청년이 포함되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2.9.1). 다만 취약청년으로 식별되지 않는 청년의 실태를 확인하여 발굴 범위를 확대하거나, 제도의 미비로 인해 유사 취약청년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배제와 형평의 문제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미진하다. 또한 각 대상에 대한 지원은 개별 법률에 근거하다보니 취약청년 전달체계가 파편화되어 있고 청년 서비스 제공기관의 여건이 조악하여 발굴과정에서 유사 취약청년의 누수가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취약청년 발굴 이후에도 이들에 대한 지원과 후속관리를 위한 추진체계 및 전달체계의 진단 역시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는 정책의 분절적 추진으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정책소외가 발생하는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정을 다년간 조사하고, 각 연차별로 소외청년의 유형을 병렬적으로 배치하는 3개년 협동연구(‘22~’24)를 기획하였다(김

3) 정책소외청년을 조기에 식별하고 사회정책을 통해 결핍을 보완해야 할 당위성은 사회적 배제와 다차원 빈곤 접근관련 연구(김문길 외, 2017; Sen, 1999, 2009)를, 취약청년의 불리경험과 대처기제의 작동 속에서 현재 삶에 이르는 경로는 정세정 등(2021)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4) 정책소외계층은 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에서 배제되는 집단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정책소외계층 청년은 ‘① 아동청소년기를 지나 성인이행기에 요구되는 다양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에 있어 ② 공공정책(지원제도)을 통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③ 당사자를 포함하여 미시환경 영역에서 자원·정보·기회가 제한(결핍)되어 있거나 거시환경 영역에서 법제도의 미비 등으로 ④ 비자발적인 이유로 배제되거나 제도의 지원 대상에 효과적으로 편입되지 어려운 청년 또는 집단’으로 정의하였다(김지연 외, 2022b).

자연 외, 2022b). 이를 위해 2차 년도 주요 연구 대상으로는 1차 년도 연구 대상과 마찬가지로 전체 청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고 자신의 목소리를 스스로 높이기에는 여러 제약이 많아 공식적인 지원서비스 체계 내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은 이들을 발굴하여 선정하였다.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금융취약청년(청년의 금융취약성 포함), 발달장애청년이 그들이다.⁵⁾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청소년기 중 일정 기간 이상 가정이 아닌 시설에서 생활하다 퇴소 후 자립을 요구받고 있지만 그 기반이 부족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양육시설의 보호종료 청년,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자립지원 대상 청년, 「소년법」상 소년보호시설 출원 후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들을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으로 명명하고, 편의상 ‘시설퇴소청년’이란 용어를 혼용하였다. 이들에 대한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 이들은 어느 시설을 퇴소했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다. 각 법률마다 서로 다른 지원체계와 내용을 명시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 범위나 내용에서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금융취약청년은 소득 수준이나 신용점수가 낮으면서 여러 건의 다중채무를 가지는 청년을 의미한다. 팬데믹 이후 청년층의 가계부채 비중이 대폭 증가하여 2021년 2분기에는 전체 가계부채의 26.9%를 차지하고, 학자금 대출 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비은행권 대출도 적지 않다.⁶⁾ 또한 '22년 3월 기준 채무자 중 저소득·저신용 이면서 다중채무자인 사람의 비율이 다른 연령층(5.8%)에 비해 청년층(21년말 6.6%)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⁷⁾ 청년의 과중한 채무는 양질의 노동시장 진입의 어려움(이용호, 2021; 이용호, 이원익, 2020), 결혼의 지연(배호중, 한창근, 2018; 백아름, 노혜진, 박정민, 2022), 중장년기, 노년기에 이르는 상흔효과(노혜진, 백아름, 권하늬, 박정민, 2022) 등 다양한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에 청년금융 현황에 대한 실증적 근거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지만 현재 금융취약청년에 대한 정의를 비롯하여 이들의 부채 수준이

5) 1차 년도 연구 대상은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북한배경청년, 청소년부모, 경계선지능청년이며 2차 년도 연구 대상의 선정 배경과 절차는 1차 년도 보고서를 참고할 수 있다(김지연 외, 2022b). 소외계층청년의 유형과 지원 내용은 사회환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3차 년도의 정책소외계층 청년 유형은 2차 년도 연구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조사, 정책 포럼 등을 통해 발굴할 계획이다.

6) 한국은행 보도자료(2021.9.24). 금융안정 상황. <http://www.bok.or.kr/portal/bbs/P0000559/view.do?nttlid=10066610&menuNo=200690&pageIndex=51>에서 2023년 2월 13일 검색.

7) 한국은행 보도자료(2022.3.24). 금융안정 상황. <https://www.bok.or.kr/viewer/skin/doc.html?fn=202203240829060580.hwp&rs=/webview/result/P0000559/202203에서> 2023년 5월 16일 검색.

나 종류와 질, 당사자의 인식 등에 대한 실증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원제도의 정합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청년은 인지, 언어, 사회성 등의 장애로 일상·사회 활동에 제약이 발생하면서 장기간 또는 평생에 걸쳐 종합적인 개별서비스가 필요하다(이은미, 백은령, 2010). 특히 발달장애청년은 지역 서비스 및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학교 졸업 후 재활치료와 공교육 등이 종결되면서 자립으로의 이행이 쉽지 않은 것이 현 상황이다. 발달장애청년 역시 일반 청년과 마찬가지로 자립으로 이행이 어려울 경우 중장년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삶의 전반에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정상미, 김민아, 허일권, 2017; 최성일, 심석순, 이선화, 간기현, 2013) 이는 이들을 돌봐야 하는 가족들의 어려움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문민정, 장연집, 2011; 박애선, 2018). 이러한 상황에서 발달장애청년에 대한 포괄적 자립생활 지원 제도는 미미한 형편이다.

이와 같이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금융취약청년, 발달장애청년은 모두 정책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청년정책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은 소수 집단(alienated class)으로 존재해 온 경향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지원제도는 기본적으로 본인 스스로 신청하지 않는 한 그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신청주의'에 머물러 있어 지원 제도가 있더라도 접근성의 문제로 이들에 대한 차별이나 배제 등의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도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의 생활 실태조차 충분히 파악되지도 않아 이들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생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합적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유형별 청년의 생활 실태를 다각적으로 파악하여 집단 내 다층성, 일반 청년 대비 취약성 등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취약청년 내 복지 사각지대 지원 과제 및 청년정책 추진과제 개발이다. 이는 우산을 펼쳐 비를 막는 것처럼 촘촘한 청년정책수립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우산 개념(umbrella conceptualization)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올해 2차 년도에는 1차 년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 및 정보시스템 기반 맞춤형 지원방안 등 정책성과 제고를 위한 현안별 정책개발과 3차 년도 협동연구 주제로서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한 다중취약청년에 대한 지역사회 지원 모델 개발도 포함하였다.

2. 연구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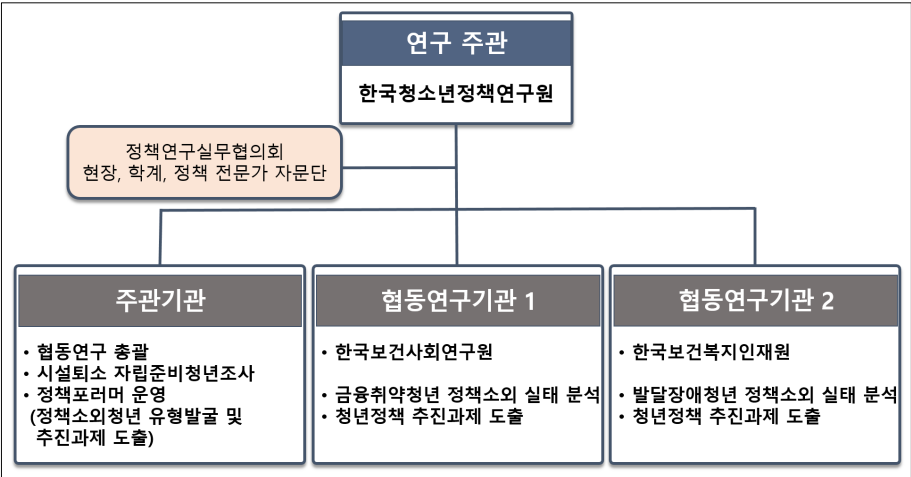


그림 1-1. 2차년도 협동연구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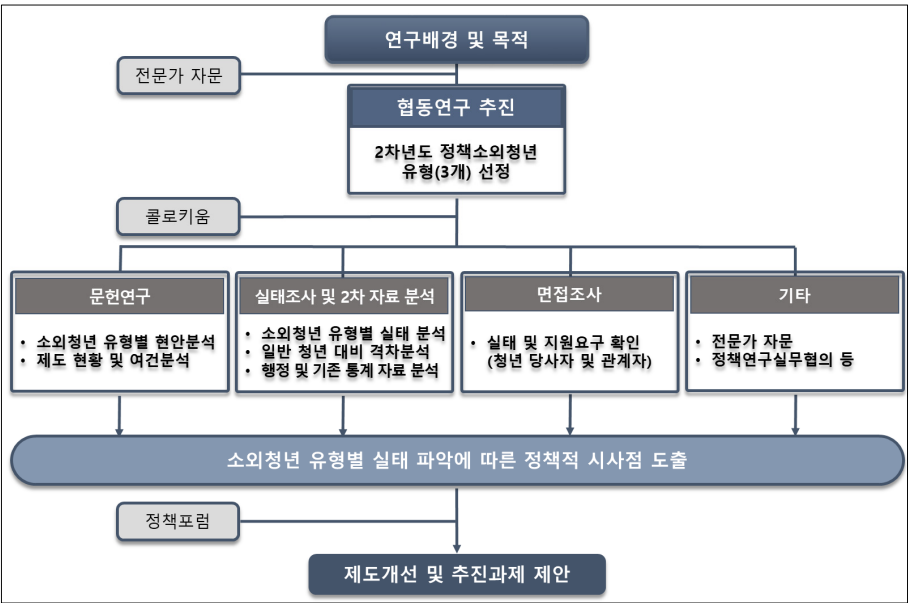


그림 1-2. 2차년도 연구추진체계

1차년도 (2022년)	목적	▪ 정책소외계층 청년 4개 유형별 생활실태 분석Ⅰ ▪ 유형별 소외청년의 일반 청년 대비 격차 분석(4개 유형) ▪ 소외청년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개발
	내용	▪ 2022년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1차년) - 일반 청년 대비 격차 및 집단 내 취약성 분석 등 ▪ 북한배경청년 소외실태 분석 및 추진과제 도출(협동) ▪ 청소년부모 소외실태 및 추진과제 도출(협동) ▪ 경계선지능청년 소외실태 및 추진과제 도출(협동) ▪ 소외청년 유형 도출 및 23년 연구주제 선정
	방법	▪ 협동연구, 문헌연구, 2차자료분석, 실태조사, 면접조사, 전문가 의견조사,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콜로키움, 정책 포럼 등
↓		
2차년도 (2023년)	목적	▪ 정책소외계층 청년 3개 유형별 생활실태 분석Ⅱ ▪ 소외청년 유형 및 주요 현안별 정책개발 : 전달체계 등
	내용	▪ 2023년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2차년) - 행정데이터 결합 분석(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 청년의 금융취약과 소외실태 분석 및 추진과제 도출(협동) ▪ 발달장애청년 소외실태 및 추진과제 도출(협동) ▪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및 정보시스템 활용 방안 도출 등
	방법	▪ 협동연구, 문헌연구, 2차자료분석, 실태조사, 면접조사, 전문가 의견조사,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콜로키움, 정책 포럼 등
↓		
3차년도 (2024년)	목적	▪ 정책소외청년 유형별 생활실태 분석Ⅲ ▪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 수립을 위한 과제 제안
	내용	▪ 2024년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3차년) - 자립성과 영향요인 및 지원제도 효과 분석 등 ▪ 공공-민간기관 연계 기반 다중취약청년 맞춤형 지원모델 및 정보시스템 기반 다중취약청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협동)
	방법	▪ 협동연구, 문헌연구, 2차자료분석, 실태조사, 면접조사,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정책 포럼 등

* 주: 주관연구기관이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22~24) 및 정책개발을 총괄하고, 각 연도별로 협동연구 주제를 병렬적으로 구성(각 연도별 협동연구 주제는 전년도에 확정)

그림 1-3. 3개년 협동연구 추진 계획(안)

올해 수행되는 2차 년도 연구는 1차 년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3개 청년집단, 즉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금융취약청년, 발달장애청년에 대한 정책연구가 병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각 청년집단에 대한 정책연구는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연구기관 두 곳, 총 세 곳에서 각각 한 집단씩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연구는 주관연구기관에서, 금융취약청년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그리고 발달장애청년 연구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각각 담당하였다(그림 I-1). 또한 본 연구의 2차 년도 연구추진체계, 연차별 연구 목적과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은 그림 I-2, 그림 I-3에 도식화하여 제시하였다.

3. 연구내용

1) 주관연구기관

(1) 정책소외계층 청년 지원정책 현안 진단

현재 정책소외계층 청년에 대한 서비스 전달체계는 각 소외 집단별로, 또는 각 지자체별로 제각각 상이한 양상과 수준으로 구축·운영되고 있다. 2차 년도 연구주제인 시설퇴소청년, 금융취약청년, 발달장애청년을 위한 지원체계 역시 이러한 상황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이에 청년정책 지원체계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고도화 과정에서 분절적인 유형별 취약계층 청년 지원체계와의 연계,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2차 년도 연구 대상을 중심으로 ‘정책 대상으로서 취약계층 청년을 지원하는 서비스 전달체계와 민간 지원기관 및 사업을 포괄하는 구조·절차·제반 요소’로서 취약계층 청년 지원체계의 현안을 진단하였다. 또한 2022년 「청년기본법」에서 새롭게 규정한 취약계층 청년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협업 플랫폼으로서 정보시스템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 및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청년기본법」을 근거로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청년지원센터를 지정·구축하는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쟁점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상과 같은 내용은 총괄보고서인 본 보고서의 제2장에 제시하였다.

(2)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생활 실태 분석 및 정책개발

① 2023년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생활 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개발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정과 지원 효과, 지원 대상 내 취약성과 제도 수혜율 정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2차년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실태조사는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그 대상은 1차년도와 마찬가지로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인 자립준비청소년, 「소년법」상 소년보호시설을 퇴소 한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지원하는 기관의 자립지원을 받거나 받은 경험이 있는 19세 이상 청년”(김지연 외, 2022b:8)이다. 이들 세 집단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대상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앞의 두 집단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퇴소자로 자립을 목적으로 3년 이상 자립(지원)수당 수급 대상이다.

설문조사의 최종 참여자는 자립준비청년 2,498명(「아동복지법」상 자립준비청년 1,827명,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자립준비청년 554명, 「소년법」상 자립준비청년 117명)이다. 주요 조사 내용으로는 일반사항, 교육·훈련, 고용, 경제, 주거, 건강 및 심리정서, 참여 및 사회인식·미래설계 등 각 영역에서 청년들의 경험과 인식 정도, 생태학적 환경 등을 살펴보고 일반 청년과의 비교 뿐 아니라 자립준비 청년 하위 집단 간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면접조사는 자립에 보다 적극적인 청년들을 중심으로 10명을 선정하여 이들의 과거와 현재 생활 실태, 주요 생애사건과 위기 경험 대비 자립지원서비스 이용 경험, 사회참여와 권리·차별에 대한 인식과 경험, 자립과 미래에 대한 전망, 청년정책에 대한 요구사항 등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설문 및 면접조사를 통해 얻어진 실증적 자료를 근거로 자립준비청년 내 다층성, 영역별 취약성 등을 규명하고 2차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일반 청년 대비 취약성을 파악하며 이를 토대로 취약청년 내 복지 사각지대 지원 과제와 청년정책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② 가명정보처리 공공데이터 결합 분석 및 정보시스템 기반 지원방안 모색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의 행정데이터를 활용하여 자립준비청년의 공적지원 수급의 정합성 및 공적지원 수혜에 대한 인지 정도를 확인하고 공적지원 수혜여부가 자립수준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차년도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표본을 가명처리한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범정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데이터 등 공적지원 수급 관련 자료와 결합하여 개인별 위기 및 취약성 정도와 급여

및 서비스 수급 여부, 수요와 지원의 정합성 등에 대한 다면적 분석을 실시하였다.⁸⁾ 공공데이터와의 결합 시도는 설문조사 특성 상 참여자들의 사회보장제도 이용 현황에 대한 응답의 정확성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판단하여 그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고 유사 취약청년간 제도이용의 편중 정도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결합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근거기반 정책 재설계를 위한 정책 추진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연구결과는 그 밖에도 자립준비청년 지원제도 개선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근거자료로도 활용 가능하다.

이상과 같이 주관연구기관에서 수행한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생활 실태 및 정책개발 연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권의 세부 보고서에 수록하였다. 그중 주요 결과에 대한 요약은 총괄보고서인 본 보고서의 제3장에 제시하였다.

2) 협동연구기관

올해 협동연구기관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금융소외청년)과 한국보건복지인재원(발달장애청년)으로 각 기관은 유형별 정책대상의 규모를 파악(추정)하고 연구목적에 따라 2차 자료 분석, 실태조사, 면접조사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해당 청년집단의 소외실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기관별 주요 연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금융취약청년

생애주기 관점에서 소득활동을 시작하여 자산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청년기 금융 생활의 이론적, 실천적 의의 및 요인, 영향에 대한 기존 논의를 탐색하고 청년금융정책 및 지원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2차 자료 분석과 실태조사, 면접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현세대 청년의 금융생활 실태에 대한 입체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청년 개인 및 가구 단위 재산 및 부채 종류 및 수준, 제도권 금융기관 및 사금융 이용 현황, 개인 생애 재무 계획, 재무관리 교육 경험 및 지식 수준, 청년 개인 및 가구 단위 부채 용도 및 운용·상환 계획, 청년 개인 및 가구 특성별 금융 취약성, 부채 실태 및 인식 등을 파악하였다. 마지막

8) 사회보장정보원 및 개별 정보의 생산 담당 부처와 협의 후 추출 변수를 확정하고 일련의 절차를 거쳐 분석하였다.

으로 청년의 금융생활 및 금융취약 실태와 정책 간 정합성을 검토함으로써 정책으로부터 소외된 청년을 발견, 지원하고 정책소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2)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발달장애청년

발달장애청년의 자립생활 수준 및 특성과 지원방안의 문제점 관련 국내·외 문헌 및 정책·제도 동향 분석,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매년 발간하는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통계자료에 대한 2차 자료 분석을 통한 발달장애청년의 일상, 교육, 직업, 인권, 가족, 주거, 서비스 이용 및 욕구 등 전반적인 삶의 영역의 실태 및 지원 욕구를 파악하였다. 또한 발달장애청년 중 조금 더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이들을 총 6개의 하위 집단(최중증, 학대 피해 및 범죄 연루, 1인 가구, 기혼, 경도, 농산어촌)으로 나누고 각 집단의 발달장애청년, 부모,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층 및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여 이들에 대한 실태 및 지원 욕구 등에 대한 심층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발달장애청년의 정책소의 실태를 진단하고 그 양상과 특성을 제시하며 발달장애청년의 자립생활 지원정책 개발 및 일반 청년정책과의 연계를 위한 추진과제 등을 도출하였다.

이상과 같이 협동연구기관에서 수행한 금융취약청년 및 발달장애청년의 정책소의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각 별권의 세부 보고서에 수록하였다. 그중 주요 결과에 대한 요약은 총괄보고서인 본 보고서의 제4장(금융취약청년)과 5장(발달장애청년)에 제시하였다.

3) 정책소외청년 유형 및 현안별 정책개발

현재 「청년기본법」과 조례를 근거로 취약청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맞춤형 복지지원을 위한 근거가 부실하고 분절적, 다원화된 서비스 전달체계와 컨트롤타워 부재, 지역 간 인프라 격차 등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근거로 추진전략(사회통합, 대상특화, 제도조정)에 따른 취약청년 지원 강화를 위한 공통 추진과제(안)를 제안하였다. 또한 1차, 2차 년도 연구결과를 토대로 3차 년도 협동연구 주제로서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한 다중취약청년에 대한 지역사회 지원 모델 개발도 포함하였다. 이상과 같은 내용은 총괄보고서인 본 보고서의 제5장에 제시하였다.

4. 연구방법

1) 협동연구

2차 년도 정책연구 대상은 모두 세 개 집단,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금융소외청년, 발달장애청년으로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정책연구는 주관기관에서 실시하는 한편 금융소외청년과 발달장애청년을 위한 연구는 협동연구기관, 즉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각각 실시하였다. 각 연구기관은 연구목적에 따라 문헌 연구 외에도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를 주요 연구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2) 문헌 연구 및 2차 자료 분석

2차 년도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국내·외 제도 및 정책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행정자료, 연구보고서 등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이와 함께 각 기관별 2차 자료 분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관기관에서는 일반 청년 대비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의 영역별 취약성 여부와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2차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2차 자료 분석에 활용되는 자료는 ‘청년 삶 실태조사(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3년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조사(김기현, 장근영, 신인철, 임성근, 2023)’ 등이다. 이 두 조사의 일부 문항을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설문조사에서 활용함으로써 동일 문항에 대한 일반 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의 응답 간 비교를 통해 후자의 취약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금융취약청년연구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각 년도)를 활용하여 자산과 부채를 중심으로 하는 청년의 금융 실태를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수행한 발달장애청년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22a)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발달장애청년의 인적사항 및 장애특성, 교육, 취업 상태 확인, 취업자 특성, 미취업자 특성, 직업적 능력과 고용서비스 이용, 일상생활, 가구 및 보호자 정보,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한 변화 등의 실태를 확인하였다.

표 I -1. 2023년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 개요

주요 요소	내 용
조사대상	- 전국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2,498명 ※ 각 유형별 모집단 규모와 조사 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사규모 할당 - 「아동복지법」상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약 1,827명 -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자립준비청소년 약 554명 - 「소년법」상 소년원을 출원한 자립준비청년 약 117명
대상자 선정방법	- 1차년도 조사표본 가운데 2차년도 조사참여 동의자 선정 (1,565명) - 자립지원전담기관,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자립생활관, 소년보호교육기관 등 관련기관 담당자 추천을 통해 1차년도 표본 유실분 충원(933명)
2차년도 조사영역	- ① 일반사항 ② 교육·훈련 ③고용 ④경제 ⑤ 주거 ⑥ 건강 및 심리정서 ⑦ 참여 및 사회·미래 인식
조사방법	- 웹조사
조사시기	- 5~7월 (약 10주간)
비 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대상(승인)

(2) 협동연구기관 : 금융취약청년

금융취약청년 실태조사를 위해서는 전국 만 19~34세 성인 남녀 약 2,000명(부채가 있는 청년 1,500명, 부채가 없는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자기응답식 온라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표 I-2와 같다.

표 I -2. 금융취약청년 실태조사 개요

주요 요소	내 용
조사대상	- 전국 남녀 만 19~34세 청년 약 2,000명 (부채가 있는 청년 1,500명, 부채가 없는 청년 500명)
대상자 선정방법	-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를 모집단으로 지역·성·연령 집단별 비율을 고려한 비례배분 표본 추출
주요 조사내용	- 부채유무, 부채 유형, 상환, 부담 정도 및 미래 부채 계획, 재무 인식 및 관리, 연체 경험, 재무·금융 관련 교육 및 상담 경험, 인구사회학적 특성 등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자기응답식 온라인 조사 (본조사) 이메일 조사: 온라인 패널 대상 (부가조사) 온라인 링크(URL, QR코드 등) 조사: 청년 대상
조사시기	- 2023년 4~5월
비 고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대상(승인)

5) 면접조사

(1) 주관 기관 :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면접조사는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당사자를 대상으로 개별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하였다(표 I-3). 조사과정에서 파악된 주요 내용으로는 과거와 현재의 생활 실태, 주요 생애사건과 위기 경험 대비 자립지원서비스 이용 경험, 사회참여와 권리·차별에 대한 인식과 경험, 자립과 미래에 대한 전망, 청년정책에 대한 요구사항 등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을 포함하였다.

표 I-3.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면접조사 개요

주요 요소	내 용
조사대상	- 「아동복지법」상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5명 -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3명 - 「소년법」상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2명
선정방법	- 현장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립 성공사례 또는 자립에 적극적인 청년으로 추천받은 청년당사자를 중심으로 선정
조사내용	- 아동·청소년·청년기 생활 실태와 주요 생애사건 - 자립지원서비스 이용 경험, 사회참여와 권리·차별에 대한 인식과 경험, 자립과 미래에 대한 전망, 청년정책에 대한 요구사항 등
조사방법	- 1:1 개별면접(일인당 1~2회 면접)
조사시기	- 6~7월
비 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대상(승인)

(2) 협동연구기관 : 금융취약청년

2차 자료 분석 및 실태조사 등 양적 분석을 통해 파악하기 어려운 청년의 금융취약 및 정책소외 경험 청취와 합의 도출을 위해 금융취약청년 당사자 및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을 실시하였다(표 I-4).

표 I -4. 금융취약청년 면접조사 개요

주요 요소	내 용
조사대상	- 금융취약 경험이 있는 청년 당사자 3~4명 - 현장 실무자 3~4명씩 2~3팀
선정방법	- 금융취약청년은 관련 지원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중 - 현장 실무자는 금융취약청년 지원 경험이 있는 자로 임의선정
조사내용	- 인구사회학적 특성, 학령기 경험, 청년기 경험, 금융취약 경험, 대응 전략, 도움받은 경험, 미래 계획 등
조사방법	- 각 집단별 초점집단면접(FGI)
조사시기	- 7~8월
비 고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대상(승인)

(3) 협동연구기관 : 발달장애청년

특별한 욕구가 있을 수 있는 발달장애청년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진행하여 발달장애청년의 자립생활 실태 및 지원 욕구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내용을 확보하였다(표 I-5). 또한 수집된 자료는 Yin(2011)의 사례연구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I -5. 발달장애청년 면접조사 개요

주요 요소	내 용	비 고
조사대상	- 6개 집단(집단별 참여 인원 5~6명씩 총 33명) 발달장애청년 또는 주 돌봄자 - ① 도전행동, 중복장애 등의 최중증 발달장애청년, ② 학대 피해 및 범죄 연루 발달장애청년, ③ 1인 가구 발달장애청년, ④ 경도 발달장애청년, ⑤ 기혼 발달장애청년, ⑥ 농산어촌지역 거주 발달장애청년	
선정방법	- 면접조사 참여 동의자 중 임의선정	
조사내용	- 각 자립생활 영역별 발달장애청년이 겪는 어려움과 경험, 서비스 이용 실태,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책 및 서비스 등	
조사방법	- 각 집단별 초점집단면접(FGI) 1회 실시(필요 시 2회) 단 개별 인터뷰가 필요하거나 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심층면접 실시	
조사시기	- 6~7월	

6) 전문가 자문 및 의견조사

연구의 설계 및 진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안에 대하여 상시적인 자문회의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2차 년도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소외청년 유형별, 즉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금융취약청년, 발달장애청년의 유형별 지원체계 및 전달체계의 현안을 진단하고, 향후 「청년기본법」을 근거로 취약계층 청년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정책소외청년 유형별 지원체계와의 연계 방안 등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표 I-6).

표 I-6.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주요 요소	내 용
조사대상	-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금융취약청년, 발달장애청년 분야 현장 전문가(각 3명) - 지자체 담당자(아동보호팀, 청소년안전망팀) 4명 등 총 13명
선정방법	-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외부 추천을 반영하여 임의선정
조사내용	- 지원대상의 규모, 주요 서비스 내용과 특성, 타 기관과의 연계 내용과 방법, 유형별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정보시스템 활용 여부와 특성, 취약청년 발굴·지원·사후관리 등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한 의견 등
조사방법	- 서면조사(1차), 화상면접(2차)
조사시기	- 1차(6월), 2차(7월)
비 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면제 대상(승인)

7) 기타 연구방법

(1)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연구과정 상 업무협조가 필요한 경우 정부부처 담당자, 유관기관 실무자 등이 참석하는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4회 개최하였다(표 I-7).

표 I-7.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요

번호	주요내용	참석자	일시
1	전년도 조사결과 공유 및 2차 설문조사 협조를 위한 업무 협의	법무부 소년보호과 3명	23.3.14
2	공공 데이터 결함을 위한 업무 협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3명	23.3.20
3	전년도 조사결과 공유 및 2차 설문조사 협조를 위한 업무 협의	여가부 청소년자립지원과 3명	23.4.6
4	가명정보활용을 위한 업무 협의	복지부 해당부서 6명	23.5.3
5	결합데이터 검토 및 추가 가명처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5명	23.9.20

(2) 콜로키움·정책 포럼 등

정책소의청년 관련 효과적인 연구방법에 대한 모색을 위해 가명정보결합 및 활용에 대한 콜로키움을 2회에 걸쳐 개최하고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아이디어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우수사례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협동연구기관 간 연구 방향과 연구 성과에 대한 공유 및 정책과제 발굴 등을 위해 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표 I-8).

표 I-8. 콜로키움 및 정책 포럼 등 개요

번호	주요내용	발표자 및 참석자	개최시기
1	콜로키움 “행정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처리의 이해”	발제자: 김윤중(유피에스데이터) 참석자: 연구진 및 원내 전 직원	23.4.19
2	2023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아이디어 경진대회」 참가	발표자: 김승경(선임연구위원)	23.8.24~ 9.1
3	정책포럼 “협동연구기관 연구성과 보고”	발제자: 각 협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석자: 연구진 및 원내 전 직원	23.11.14
4	콜로키움 “가명정보 활용과정의 효율적 운영 방안 모색”	발제자: 김윤중(유피에스데이터) 참석자: 연구진 및 원내 전 직원	23.11.16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각 연구주제별 연구방법을 도식화하면 그림 I -5와 같다.

	시설퇴소자립청년 (주관기관)	금융취약청년 (협동연구기관1)	발달장애청년 (협동연구기관2)
문헌 분석	현황 및 제도 동향 분석		
양적 분석	실태조사		
	2차자료 분석		
질적 분석	당사자 1:1 면접	당사자 및 관련자 FGI	당사자 및 관련자 FGI
	전문가 자문 및 의견조사		
기타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콜로키움, 경진대회 참가	정책 포럼(연구성과 보고)	

그림 I -5. 정책대상별 주요 연구 방법(안)



제2장 정책소외계층 청년 지원정책 현안 진단

- 1. 취약계층 청년 지원체계의 현안
- 2. 유형별 취약계층 청년 지원체계의 현안
- 3. 유형별 취약계층 청년 정보시스템 활용 현안
- 4. 소결 및 시사점

청년정책의 수립과 추진이라는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 개입은 아직 초기단계로, 청년정책 전달체계조차 조례 등을 근거로 각 지자체마다 상이한 양상과 수준으로 구축·운용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22년에 「청년기본법」상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법률이 개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향후 정책 추진체계 및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시 이들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설계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이 장에서는 2차년도 연구주제인 시설퇴소청년, 금융취약청년, 발달장애청년을 중심으로 ‘정책 대상으로서 취약계층 청년을 지원하는 서비스 전달체계와 민간 지원기관 및 사업을 포괄하는 구조·절차·제반 요소’로서 취약계층 청년 지원체계의 현안을 진단하였다. 이를 통해 청년정책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시 기존의 유형별 취약계층 청년 지원체계와의 연계,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동 법률에서 규정한 취약계층 청년의 선정과 맞춤형 복지지원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협업 플랫폼으로서 정보시스템의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므로 취약청년 유형별 정보시스템 활용 특성과 현안을 병행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 및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청년기본법」을 근거로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청년지원센터를 지정·구축하는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쟁점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9) 이 장은 김이배 전문위원(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김지선 부연구위원(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원 구소 연구센터)이 집필한 내용을 바탕으로 김지연 선임연구위원이 수정·보완하였다.

1. 취약계층 청년 지원체계의 현안

1) 청년정책 전달체계의 특성

최근에 중앙 및 지자체 청년정책 전달체계 진단 연구를 수행한 김형주, 김기현, 배정희, 신선미, 기현주(2022)는 중앙부처 청년정책 전달체계의 가장 큰 특징으로 “각 부처가 기능 중심으로 발전시킨 센터 또는 조직의 수혜 대상에 청년층을 포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서비스 신청과 관리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포함된 상당수의 정책이 기본계획에 따른 신규 사업이 아니라 기존 사업의 지원 대상을 청년으로 특정하여 청년정책으로 명명한 것이라 기존 조직과 인프라가 청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못한데다, 청년들의 정보습득능력에 따라 서비스 수혜에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어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부재한 상황”이라 진단하였다.

같은 연구(김형주 외, 2022)에서 지자체 청년정책 전달체계의 특징은 “전담 행정부서의 위상(과, 팀)이 제각각이고, 청년기본조례에 명시되어 있어도 광역단위의 총괄지원조직(중간지원조직)을 갖추지 못한 지역이 여럿 있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광역시·도에서 운영하는 청년정책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부처 간 칸막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임에도 일자리, 주거, 교육 등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고 서비스 신청 창구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도 드물다”고 진단하였다(김형주 외, 2022).

청년정책의 일선 집행체계라 할 수 있는 지자체 청년센터는 현재 전국 200여 개에 달하지만 “민간위탁 방식에 따른 문제, 지자체 직영의 경우 소규모 또는 청년 친화성이 부족한 문제, 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을 거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등 다양한 문제와 한계가 확인되었다. 2022년 2월 기준 지자체 청년센터는 평균 4.4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데 정규직 비율은 54.7%, 직무교육 및 훈련 제공 비율은 46.7% 수준으로, 고용안정성이 낮고 전문 인력 양성체계도 부실한 상황이다(김형주 외, 2022).

위의 연구와 기존의 자료를 토대로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해 중앙 및 지자체 청년정책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애주기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 지원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서비스 전달체계에 청년세대를 포함하거나 특화시킨 새로운 전달체계가 등장하여 파편화 양상이 관찰된다. 「청년기본법」상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정책 지원이 본격화된다면 이러한 양상이 더욱 심화되어 서비스

의 유사중복, 편중과 누락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둘째,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영역별로 구축, 확장되어 중앙-광역-지자체로 이어지는 서비스 전달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다. 즉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 역시 별도의 전달체계가 아닌 기존의 전달체계에서 부가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공급자 중심의 전달체계로 인한 한계 뿐 아니라 취약계층 청년들의 특성상 대상자 발굴, 지원, 사후관리 전반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김성아 외, 2023; 김지연 외, 2022b).

셋째, 최근 청년세대를 포함하여 전 세대에 걸쳐 외로움과 고독이 주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중앙 및 지자체 단위에서 산발적인 대응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청년센터의 역할과 활용 방안이 부각되지 않는데 이는 청년센터의 조직과 예산, 인력 구성 등 여러 여건상 제약으로 인해 고립·은둔청년을 포함한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전문적인 개입이 어렵기 때문일 수 있다. 청년센터의 높은 접근성은 취약계층 청년에게도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바 이들 청년의 특수성을 고려한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 원칙과 방향을 명확히 하고 청년센터를 병행 활용하기 위한 조직 구성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행 청년정책 전달체계의 핵심적인 한계는 「청년기본법」상 새로운 정책 대상으로 특정된 '취약계층 청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구조, 인력, 운영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부분은 2023년 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취약계층 청년 지원체계의 특성¹⁰⁾

(1) 중앙단위 취약계층 청년 지원체계 현황

먼저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에 따른 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에 따르면(관계부처합동, 2023a), 33개 중앙행정기관에서 보편적 청년정책으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총 5개 분야에 걸쳐 총 390개 과제, 약 25.4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복지 분야에서 취약계층 청년 관련 대표 사업은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

10) 중앙정부 및 지자체 청년정책 지원체계의 현황화가 완료된 공식 자료는 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에 근거한 2023년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에서 광역시·도 및 시·군·구 단위 청년지원센터를 포함한 취약계층 청년 지원체계와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연구진이 자체 분석한 것이다.

표 II-1. 중앙정부의 복지분야 취약계층 청년 지원 내역

과제	사업 내용
①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지원 확대	-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자립수당 인상('22, 35만 원 → '23, 40만 원) 및 자립실태조사 실시(3년 주기)(복지부) -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및 전담인력 확충('22, 120명 → '23, 180명),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 확대('22, 1,470명 → '23, 2,000명)(복지부)
②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체계 구축	- 가족돌봄청년*(영 케어러) 맞춤형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실시(복지부) * 장애, 정신·신체상 질병, 약물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 -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 실시, 자립지원전담기관 내 탈 고립·은둔 전담인력 배치하여 자립준비청년 중 고립·은둔 고위험군 발굴·지원(복지부)
③ 청년정책 사각지대 해소	- 경제·사회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 한부모 대상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및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소득기준 상향(기준중위소득 58% → 60%)(여가부) * 만 25~34세 이하, 월 5~10만 원 지급 - 청년 1인 가구의 고독·고립 방지를 위해 가족센터 중심으로 사회관계망, 관계 개선, 상담 등 지원 지속 및 가족센터 확대('22, 12개 → '23, 36개)(여가부)
④ 청년 장애인 지원 내실화	장애대학(원)생 대상의 인적 지원(일반·전문교육지원인력), 보조기기 물적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고등교육활동 지원 활성화(교육부)
⑤ 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 우울, 불안, 강박, 스트레스 등 심리 문제 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대상으로 3개월(10회)간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복지부) * 온라인(복지로)을 통한 신청 서비스 오픈('23.4월) - 지역사회 청년 중독예방,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확대 설치('22, 58개소 → '23, 60개소) 및 청년중독관리사업 실시(8개소)(복지부)
⑥ 청년 신체건강 인프라 확대	- 지역 청년이 주체가 되는 지역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을 구성하여 청년 신체·정신건강 분야 등 지역 사회서비스 제공(복지부) - 청년층이 자주 이용하는 수영장·체육관 등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공급 확대('23년 신규 46개소 지원)(문체부) - 청년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대학생들에게 1천 원에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 확대(농식품부)

*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3a), 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립·은둔청년, 장애청년, 청(소)년한부모 등 취약청년 유형별 발굴·지원체계 구축과 지원 내실화, 그리고 신체·정신건강 서비스와 지역 내 인프라 확대 등이다(표 II-1).

한편 같은 자료(관계부처 합동, 2023a)에서 서비스 전달체계 측면의 계획을 살펴보면 청년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온라인 청년센터 기능을 연속 개선하여 청년들의 정책 접근성을 제고하고, 동시에 청년정책 중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23.4) 청년정책 오프라인 전달체계 구축 내용을 포함한다. 그러나 온·오프라인 전달체계 구축 과정에서 취약청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할 서비스 제공 절차나 전담 인력 등에 대한 구상, 기존 취약계층 청년 유형별 지원체계와의 연계, 중앙- 광역-지역 단위로 연결

되는 지원체계 구축 및 정보소외계층 청년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방안 등 구체적인 기반 조성 관련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2) 광역단위 취약계층 청년 지원체계 현황

다음으로 광역단위 취약계층 청년 지원체계 현황을 보면 17개 광역시에서 총 165개 사업에 687,540백 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청년수당 또는 저축계좌 등 현금성 지원을 기본으로 기존에 지원하던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또는 자립수당 사업과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표 II-2). 주목할 부분은 광역시·도 마다 최소 5개에서 최대 14개의 복지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사업은 기존의 사업을 확대하는 수준에서

표 II-2. 광역단위 복지분야 취약계층 청년 지원 내역 (단위: 백만 원)

구분	주요사업 내역	예산
서울	복지·생활 부문에 청년수당 등 총 12개 사업	173,291
부산	복지·생활 부문에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총 14개 사업	43,498
대구	복지·생활 부문에 청년희망적금 등 총 9개 사업	21,450
인천	복지·생활 부문에 드림For청년통장 등 총 11개 사업	27,840
광주	복지·생활 부문에 청년13통장 등 총 15개 사업	15,654
대전	복지·생활 부문에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총 9개 사업	14,075
울산	복지·생활 부문에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총 10개 사업	4,736
세종	복지·생활 부문에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총 10개 사업	1,876
경기	복지·생활 부문에 청년기본소득 등 총 14 사업	276,516
강원	복지·생활 부문에 청년희망계좌 등 총 9개 사업	10,985
충북	복지·생활 부문에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총 5개 사업	8,433
충남	복지·생활 부문에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총 7개 사업	8,298
전북	복지·생활 부문에 지역정착지원사업 등 총 8개 사업	30,925
전남	복지·생활 부문에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총 6개 사업	11,732
경북	복지·생활 부문에 근로청년자산형성지원 등 총 9개 사업	15,992
경남	복지·생활 부문에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총 8개 사업	16,395
제주	복지·생활 부문에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총 9개 사업	5,844
합계	165개 사업	687,540

*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3a). 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사업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들에게 서비스가 닿을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거나 전담인력을 확보하는 등의 계획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일부 지역은 출산지원금을 청년 복지 분야 사업에 포함하는 등 청년정책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사업 범위와 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17개 광역시·도 단위의 서비스 전달체계 측면의 계획을 살펴보면, 개별사업 단위에서 사업수행에 따른 전달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특징으로 확인된다. 예를 들면 서울시의 경우 재테크 상담과 관련하여 서울 영테크 사업을 실시하면서 서울시 산하기관에 이를 위탁하는 방식이다. 또한 지역별(자치구별)로 서울청년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주로 일반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부분적으로 특화사업을 제공하였다. 즉, 광역시·도 단위에서도 개별 법률을 근거로 각 부처별로 운영하는 시·도 전담기관 간의 연계, 협력, 조율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상 계획은 찾아보기 어렵다.

(3) 기초단위 취약계층 청년 지원체계 현황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도 각 지역별로 취약계층 청년을 포함하여 청년 대상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 중에 있다. 다만 여기에서는 서울시 일부 자치구 사례를 중심으로 취약계층 청년 지원 내역을 제시하였는데(표 II-3), 전반적으로 관내에 거주하는 취약청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찾아보기 어렵다. 기존 지원체계에서 장기 미취업청년, 자활근로사업 참여 청년, 발달장애청년 등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원 대상에 만 39세 이하 청년간병인의 가족을 포함하거나 ‘사각지대 청년(서울 성북구)’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등 대상 범위(coverage) 자체를 확대하려는 노력도 일부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서울시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치구 단위에서도 상담을 비롯한 심리·사회적 지원을 중심으로 하여 파편화된 소액 사업에 편중된 경향이 있고 취약계층 청년의 발굴과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전담 인력 확보, 민·관 협업체계 구축 등 기반 조성과 관련된 사업은 찾아보기 어렵다.

표 II-3. 기초단위 복지분야 취약계층 청년 지원 내역 (단위: 백만 원)

구분	주요사업 내역		예산
성동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신규)	- 지원대상: 성동구 거주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1년 이상 미취업 상태 청년 - 지원내용: 사회적 고립청년 상태 판단 및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48
광진구	광진형PLUS 돌봄SOS 사업 (청년간병인 가족돌봄)	- 사업목적: 청년의 가족돌봄 부담 경감으로 정상발달과업 수행기회 제공 - 지원대상: 관내 만 39세 이하 청년이 간호하는 중증질환 가족 - 지원내용: 청년이 간호하는 중증질환 가족에 정기적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기준중위소득 130% 이내 서비스 이용료 전액 지원)	151
성북구	사각지대 청년 사회활동 지원사업	- 지원대상: 사각지대 청년(만 19~39세) - 지원내용 - 사회적 사각지대 청년 자아회복 및 사회진입 지원 프로그램 - 예술창작, 신체회복, 관계회복, 심리상담, 의사소통 기술 등	50
노원구	취약청년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단 운영 (청년정책과)	- 지원대상: 노원구 자활근로사업 참여 만 19~39세 청년 - 지원기준: 근로 및 탈빈곤의 의지가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활센터와 협의해 사회경험과 직업경험 제공 - 지원내용: 노원구 지역자활센터에 민간위탁을 하여 청년 자활사업단 운영 - 편의점 사업단을 구성해 인턴형, 창업준비형이 결합된 청년 자활사업단 운영 - 또래 간 공동작업, 소통/소양 교육을 기반으로 심리, 정서지원	200
노원구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청년정책과)	- 사업목적: 청년의 심리건강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역할 촉진 -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지원내용: 사회서비스 이용권 3개월 제공	76
금천구	청년 마음건강 관리 사업	- 사업대상: 관내 거주 청년 - 사업내용: 청년층의 정신과적 어려움과 우울감 해소를 위한 심리검진 및 맞춤형 전문가 상담 등 운영	12
동작구	발달장애인 직장적응 체험훈련	- 사업목적: 근로연계를 통한 장애인 자립 - 지원기간: 2023. 2.~12. -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발달장애인 - 지원내용: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카페 등 직장적응 일자리	26
관악구	마음건강 치유상담소 토닥토닥교실	- 지원대상: 관악구 거주 만 19~39세 청년 - 지원내용: 긍정심리학 프로그램 기반 청년들의 마음 건강 회복 및 자기 이해프로그램 제공	17
강남구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 지원대상: 강남구 거주 만 19~34세 이하 청년 - 지원내용: 제공기관 선택 후 심리 및 정서적 문제에 대한 상담 기회 제공 - 지원기간: 3개월(최대 12개월까지 연장가능)	81

*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3a). 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2. 유형별 취약계층 청년 지원체계의 현안

이 부분에서는 2차년도 연구 주제인 시설퇴소청년, 금융취약청년, 발달장애청년의 유형별 지원체계의 특성을 중심으로 현안을 점검하였다.

1)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지원체계의 특성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지원체계의 가장 큰 특성은 분절성과 파편화로 요약된다. 현재 아동·청소년기에 원가정을 벗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과 소년보호시설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 후 퇴소한 이들을 대상으로 자립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은 대표적인 다부처 사업이다. 즉 개별법을 근거로 서비스 전달체계가 중앙부처 단위에서 조율 없이 확충되면서 지원체계 전반에 걸쳐 공급자 중심의 전달체제로 인한 문제점들이 확인된다(김지연 외, 2022b).

먼저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청년(자립준비청년) 지원체계는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하며 보건복지부, 광역시·도, 시·군·구(아동보호팀)로 이어지는 추진체계를 기반으로 한다. 이와 함께 중앙의 아동권리보장원과 17개 광역시·도 단위의 자립지원 전담기관,¹¹⁾ 그리고 일선 시설과 위탁가정으로 연결되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2020년 10월부터 시·군·구에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배치되면서 이들은 보호대상아동의 시설 입·퇴소와 양육 상황을 점검하고(연 4회) 보호종료 전 상담과 보호종료 확인서 발급, 디딤씨앗통장(CDA) 해지 과정 지원, 보호종료 후 자립수당 지급과 같은 법정 사후관리 기간 동안의 모니터링을 담당한다. 또한 법정 사후관리 대상자인 자립준비청년에게 연락두절과 같은 특이사항이 발생하는 등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요청할 경우 공적 영역에서 이를 지원하는 업무도 담당한다(보건복지부, 2023a). 다만 아동사무가 2005년에 지방으로 이양되어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수와 업무 내용을 포함한 운영 여건은 기초자치구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된다.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가정밖청소년) 지원체계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근거로 하며 일선 청소년복지시설들은 중앙(여성가족부)과 지자체의 예산을 매칭하여 설치·운영된다. 자립준비청년과 달리 가정밖청소년 지원체계에서 지자체는 예산 교부 외 가정밖청소년

11) 2023년 기준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별로 최소 2명, 최대 24명 등 전국에 총 180명의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으며, 사후관리의 내실화를 위해 전담인력의 계속 충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년의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여부 결정 등 보호 절차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 다만 2021년에 자립지원수당제도가 신설되면서 수당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청년에 대한 수당 지급 업무는 지자체가 수행하고 있다. 이에 일부 기초지자체는 심의위원회 기능을 활용하여 자립준비청년과 같은 자립정착금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전국적인 상황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또한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중앙지원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광역단위의 전담기관이 부재하다. 현재 청소년자립지원관은 6개 광역시·도에 총 1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가정밖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광역단위 전담기관의 위상이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설치 주체(광역시·도)와 관리주체(시·군·구) 간의 불일치로 인한 혼란과 업무 내용에 대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가정밖청소년의 삶 특성 상 광역을 넘어 전국 단위에서 대상자 관리 및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함에도 이와 같이 기초자치구 관내 대상자만 자립지원 대상으로 한다면 법정 시설의 기능을 원만하게 수행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보호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년보호협회)을 근거로 법무부가 한국소년보호협회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협회가 전국 8개의 청소년자립생활관을 운영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동법 시행령 제98조(협회의 사업)에서 협회 사업의 일환으로 자립지원시설 운영 등 소년원 출원생의 사회정책 지원을 명시하고 있을 뿐 청소년자립생활관의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에 대한 자립지원 전반에서 지자체는 예산 지원 및 지도감독 등 일체 관여하지 않는 구조이다. 이는 협회와 생활관이 고위기 무의탁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사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닌데다 지자체의 지원과 관리감독 근거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소년원 출원생에 대한 낙인으로 인해 이들이 원만한 성인기 이행을 위해 자립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년이라는 인식조차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지원체계는 여러 시설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위기아동·청소년의 삶과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공급자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어 사각지대와 대상자별 서비스 편중, 누락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각 부처별 시설퇴소청년에 대한 자립지원 전달체계를 간략하게 비교하여 도식화하면 그림 II-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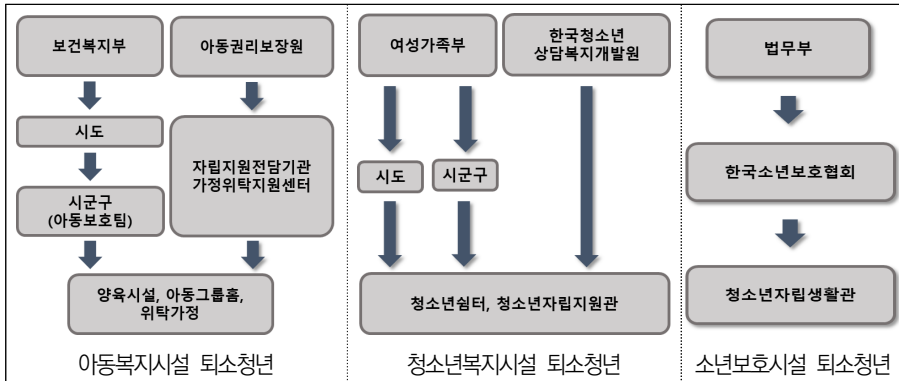


그림 II-1. 각 부처별 시설퇴소청년 서비스 전달체계도

2) 금융취약청년 지원체계의 특성

금융취약청년은 금융이나 부채와 관련된 문제가 있어 취약한 상태에 있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말하며 이들에 대한 법정 개념이나 사회적인 합의는 부재한 상황이다. 이들은 소득이나 상환 능력을 초과한 채무(과중채무), 체납 연체, 동시에 여러 종류의 채무를 가진 다중채무, 제도권 이외의 불법 사금융 이용 경험, 채무조정이나 파산, 회생제도의 이용 경험 등 경제력 수준과 부채의 부담 정도에 대한 주관적 인식 등을 기준으로 조작적인 정의가 가능하다. 이들을 광의적으로 정의하면 ‘금융이나 부채 관련 문제가 있거나 이에 대한 서비스 욕구가 있는 청년’으로 정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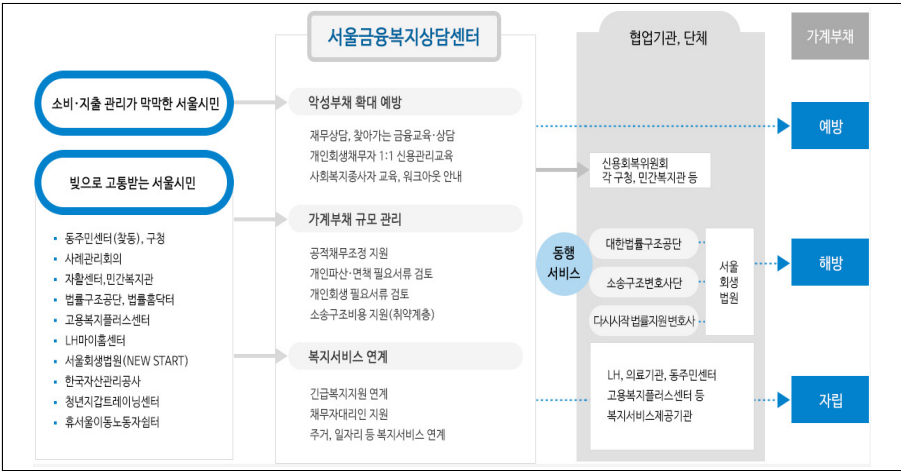
현재 ‘금융취약청년’을 정책 대상으로 특화하여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나 기관(agency)은 없는 상황이며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그리고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금융복지상담센터 등에서 지원하는 대상에 이들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최근 서울시(서울시복지재단 청년동행센터), 광주광역시(청년드림은행, 청년금융복지지원센터,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부산광역시(부산청년희망신용상담센터) 등 일부 지자체에서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이나 불법 사금융 피해청년 등의 구제와 회복을 지원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다.

먼저 신용회복위원회는 2002년에 비영리단체로 출발하였으나 2016년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이 제정되면서 특수법인으로 재출범하였다. 이곳에서는 개인채무조정(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연체 전 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 지원, 소액금융, 신용교육, 신용복지컨설팅 등을 담당한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법」을 근거로 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소금융, 햇살론, 국민행복기금 등 서민금융업무를 관리하며, 제도권 금융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의 금융지원(보증, 대출지원, 자산형성 등), 금융교육,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등을 운영하고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동법 제29조의2)와 1397 서민 금융콜센터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이들 기관은 금융취약계층의 채무조정이나 자금지원을 주로 담당하기 때문에 파산, 회생제도의 전 단계에서 다면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금융취약청년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지자체별로 설치·운영하는 금융복지상담센터도 신용회복위원회, 회생법원과 연계한 채무조정 업무를 담당하며 지역별에 따라 교육, 복지서비스 연계와 악성부채로 인한 문제악화 예방 등의 기능도 병행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복지재단 산하 금융복지상담센터와 별개로 청년동행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그림 II-2).

청년동행센터는 금융취약계층 가운데 서울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 금융취약청년에 특화하여 심층 채무상담, 채무상담, 금융교육, 주거·자산형성 등 복지서비스 정보 연계를 포함한 개인 맞춤형 윈스톱 지원을 목적으로 22년 12월에 개소하였다. 이 외 금융취약청년을 특화 지원하는 지자체 사례로 먼저 광주광역시 경우 청년기본조례를 근거로 청년



* 출처: 서울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https://sfwc.welfare.seoul.kr/sfwc/main.do>에서 2023년 10월 6일 검색.

그림 II-2.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주요 기능(서울시 사례)

금융복지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청년13(일+삶)통장사업’과 같은 소액단기자산형성, 채무 예방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채가 있는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재무관리상담과 신용회복 및 연체예방 등을 지원하는 청년드림은행과 금융취약청년에게 무담보, 무신용, 무이자 소액 대출과 재무상담, 불법 사금융 피해 구제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인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도 별도로 설치·운영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부산신용보증재단 산하에 부산청년희망 신용상담센터(희망드림센터)를 설치하여 1:1 재무상담(재무진단, 신용카드 사용 등 소비지출 관리법, 부채 관리, 신용 관리, 합리적 소비저축 습관 형성, 신용회복지원 및 개인회생 안내), 비용지원(채무조정비용, 긴급생계비), 맞춤형 교육(금융기초지식, 신용관리 등을 주제로 집합·사이버교육) 등을 제공한다. 이러한 사례들은 금융취약계층 가운데 금융취약청년에 특화하여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1:1 맞춤형 통합지원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지자체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사업과 기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조직운영의 독자성이나 장기적인 안정성 정도가 낮고 인력의 고용문제, 개인정보 보호 이슈와 관련된 대상자 연계 문제(공적 자료나 정보에 접근할 수 없고 본인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경우 포함), 금융취약청년의 범위(coverage) 설정에 대한 문제 등이 존재한다. 무엇보다 금융취약청년에 대한 지원이 일부 지자체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보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요약하면 금융취약청년 지원체계는 일부 광역단위에서 금융취약계층 지원체계를 분화, 전문화하여 청년을 대상으로 한 금융 교육과 재무관리, 금융 관련 문제 해결과 특화 사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외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을 중심으로 하는 일반 지원체계 내에서 청년을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다. 즉 금융취약청년 지원체계는 일반 지원체계에 비해 공식화 수준이 낮고 각 기관별로 금융취약성에 대한 정의와 민감성 정도에 따라 개입방식도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지자체와 분리된 방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연계체계도 미흡하다. 이러한 문제는 자기책임성에 기반을 둔 금융문제와 금융취약청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여전히 부재하기 때문에 파생된 결과로 이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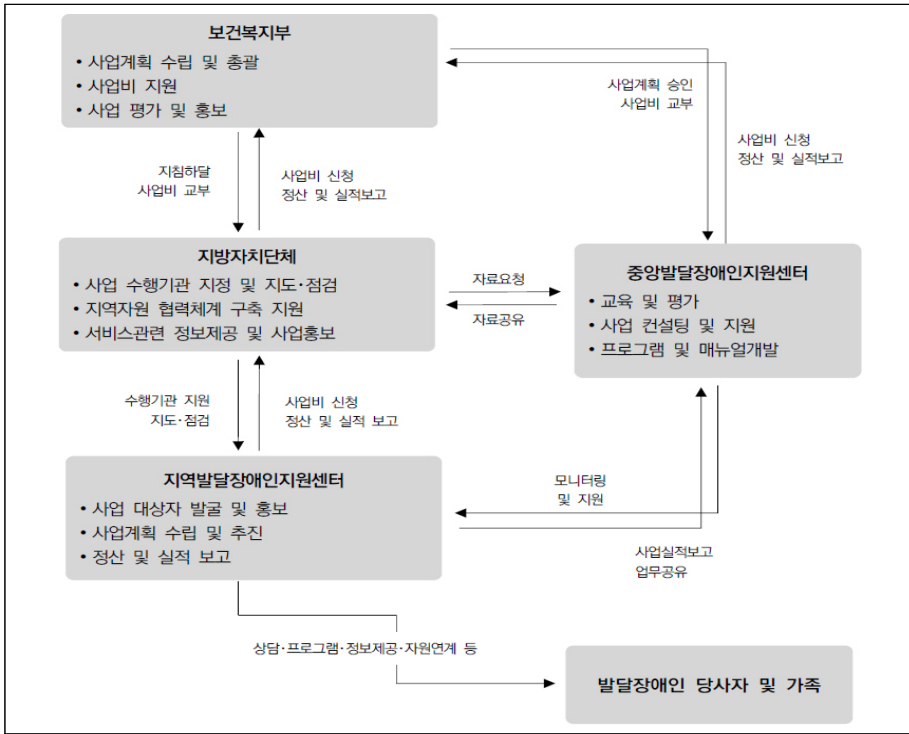
3) 발달장애청년 지원체계의 특성

발달장애청년은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장애 가운데 지능지수가 70이하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중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다.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발달장애인은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심한 장애인'로 분류되며, 발달장애청년은 '21년 기준 15~29세 등록장애인 12.8만 명 중 발달장애비율은 과반(65.9%)에 해당하는 8.4만 명에 달한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22b). 이들에 대한 지역사회 내 서비스 지원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중앙, 지역)¹²⁾가 담당하며 전 연령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종사자 수는 지역 내 발달장애인의 규모에 따라나, 각 센터별로 개인별 지원팀의 인력 규모는 최소 5명(세종, 제주)에서 최대 14명(경기) 수준인데 각 팀의 종사자 1명이 담당하는 관내 발달장애인의 수는 최소 1천 명을 초과한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과 사례관리를 토대로 장애인 개인별 고용·경제·건강·일상생활·보호 등 다면적인 복지서비스 연계를 담당하며, 중앙센터는 지역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평가, 컨설팅과 매뉴얼 제공 등의 지원업무를 담당한다(그림 II-3).

이와 함께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확인된 지역센터의 청년 발달장애인 지원 관련 현안은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지역발달장애인센터의 경우 지자체가 공간을 제공하는지 여부, 즉 전체 사업비에서 임대료의 지출 여부에 따라 직접 사업비 규모에 편차가 크고 이는 사업 내용 간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서비스 최소기준 준수에 어려움이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센터가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더라도 타 기관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권한은 없기 때문에 계획 수립 후 모니터링 과정에서 실제 서비스가 작동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하거나 조정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셋째, 지역센터는 관내 등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생애주기에서 청년기에 해당하는 이들을 위해 특화된 서비스가 부재하다. 더욱이 지역 내 지역센터가 연계할 수 있는 청년 기관이나 서비스 자체도 부족한 상황이다. 설령 지역 내 희망복지지원단 등 복지서비스에 연계되더라도 이러한 서비스들은 주로 의료비, 부채 등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청년 발달장애인이 고립·은둔과 같은 위기

12) 2023년 기준 중앙센터는 1개소로 예산은 1,031백만 원(100% 국비), (광역)지역센터는 전국 17개소로 예산은 총 13,122백만 원(국비 50%(7,592백만 원), 지방비 50% 이상) 수준이다(보건복지부, 2023c).



* 출처: 보건복지부(2023c), 2023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안내, p.9.

그림 II-3.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체계도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예방하는 등 청년기 이행을 지원하는 기관이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넷째, 지역센터가 연계하는 기관 간 네트워크가 비공식적이며 정보시스템(발달장애인정보시스템, 비로소) 내에 대상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관리하는 것 이외 지자체와의 정보 공유 등 업무 협력에 있어 정보시스템의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었다.

발달장애인 관련 전달체계는 2016년에 17개 광역시·도에 지역센터 설치가 완료되어 사업 내용이 확장되고 있음에도 조직과 인력, 예산, 사업 내용, 공공과 민간의 연계 협력 등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앞에서 언급했듯이 지역센터는 전 연령에 걸쳐 관내 발달장애인을 지원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의 예산과 인력구조에서 발달장애청년에 대한 특화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특히 발달장애인은 장애 정도에 따라 개인별 편차가 매우 커서 장애인 전달체계에서 지원해야 할 청년과

비장애청년 전달체계를 통해 만남과 소통을 기반으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 혼재되어 있다. 이에 지역센터가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사례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기존 서비스 전달체계를 확충함과 동시에, 중앙정부 및 지자체 단위의 청년사업과 공간, 커뮤니티에 이들을 포함한 취약계층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 세심하고 구체적인 통합지원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3. 유형별 취약계층 청년 정보시스템 활용 현안

이 부분에서는 2차 년도 연구 주제인 시설퇴소청년, 금융취약청년, 발달장애청년을 중심으로 대상자 및 서비스 이력 관리 등 전반에서 이용되는 정보시스템 관련 현안을 점검하였다.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관련 현안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행복e음)은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지자체의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이다(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 2023¹³⁾). 정부는 복지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2010년에 기존 행정업무시스템을 개편한 행복e음이 개통하였는데 시스템 사용자는 일선 복지행정 담당자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과 시·군·구의 아동보호전담요원이다(최종혁, 김수완, 2017).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학대나 방임, 부모 사망 또는 이혼 등으로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이 되는 시점부터 행복e음에 아동보호서비스 대상자로 등록된다. 한편 2020년 10월부터 전국 시·군·구 단위에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배치되었으며 이들이 보호대상아동의 발생부터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행복e음을 통해 해당 업무를 관리한다(보건복지부, 2022a). 즉 자립준비청년의 정보와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디딤씨앗통장(CDA)과 같은 공적 지원 이력이 행복e음을 통해 관리되며 자립준비청년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포털인 복지로, 정부24에서 보호종료 확인서를 발급받을

13)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 <http://www.ssis.or.kr/index.do>에서 2023년 5월 30일 검색.

표 II-4. 행복e음을 통한 자립준비청년 지원 내용

구분	지원 내용
행복e음 아동보호 서비스 시스템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사례회의, 아동·친부모 상황점검 등을 통해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보호체계 배치 ※ 보호조치 유형: 원가정 보호, 원가정의 보호(입양,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 아동치료시설) • 보호대상아동을 타 법에 의해 설치된 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시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등)에 보호할 경우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후 해당 부서(장애인담당 부서, 청소년담당 부서)로 사례 이관(공문) •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여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연장된 보호기간 중 보호조치가 종료되는 경우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확인 ※ 사후관리 계획서 및 사후관리 동의서 확보 확인, 자립지원·지역사회서비스 등 서비스 연계, 자립수당·자립정착금 등 지급 여부 확인, 보호종료 확인서 발급 자격결정 처리
행복e음 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급관리	•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 신청 가능, 보호종료 이후 아동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 연도에 시설 등 관할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 자립정착금은 행복e음을 통해 아동에게 지급 ※ 단 예외적으로 지자체에서 행복e음을 통한 지급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행복e음을 통하지 않고 아동 명의 계좌로 입금 가능 • 지급대상 모두에게 자립정착금 1인당 최소 1천만 원 이상 되도록 지급 권고
자립수당 지급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자립준비청년) 중 자립수당 자격요건에 해당할 경우 매월 40만 원 현금 지급(본인 명의 계좌 이체) • 아동복지시설 관할 읍·면·동 및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에서는 자립수당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와 관련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서류를 행복e음에 등록하여 신청서 저장 ※ 신청서류 등록 후 저장 시 자동으로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 (사업담당자)로 이송 처리되며 사업담당자는 이송받은 신청서류를 바탕으로 지원대상 자격 및 행복e음 시스템에 등록된 관련서류 검증 후 보장 결정 진행

* 출처: 보건복지부(2022a, 2023a).

수 있다. 행복e음을 통한 자립준비청년 지원 내용은 표 II-4에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보호대상아동의 양육 상황 점검 및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례관리 업무에 있어 공무원직, 시간선택제임기제 아동보호전담요원은 행복e음 접근이 제한된다. 다시 말해 법정 자립지원 업무를 담당하더라도 신분에 따라 본인의 업무에 관한 내용만 입력·조회할 수 있고 대상자의 보호이력과 서비스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특히 보호대상아동으로 등록이 되더라도 중도에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가정밖청소년, 「소년법」상 보호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지자체가 행복e음을 통해 대상자 정보와 서비스 이력을 관리하지 않아 보호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그 외에 민간에서 지원하거나 공적 지원 대상으로 발굴되지 않은 사각지대

의 금융취약청년, 소년보호기관 퇴소청년 등의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되지 않는다. 결국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국가수준의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도 사실상 업무지원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 뿐 정보망을 기반으로 대상자의 정보 공유와 업무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2)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활용 관련 현안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으로 사회복지 시설 업무의 표준화, 투명화, 사회복지업무의 전산화를 목적으로 하며 2022년 9월에 사회 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e음)으로 개편되었다. 사회복지시설은 희망e음을 통해 회계, 인사, 급여, 후원관리 등 시설 운영을 위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시설 이용자(입소자)의 등록과 입·퇴소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 2023¹⁴⁾).

특히 희망e음에는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전국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종사자 및 자립 업무 담당자는 보호대상아동과 보호 종료, 연장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후관리 전반의 내용을 본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자립준비청년의 현황은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의 보호종료관리 메뉴에 입력된 보호종료 정보를 통해 조회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시설퇴소 및 위탁보호가 종료된 이들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7개 광역시·도에 설치된 자립지원전담기관은 보호종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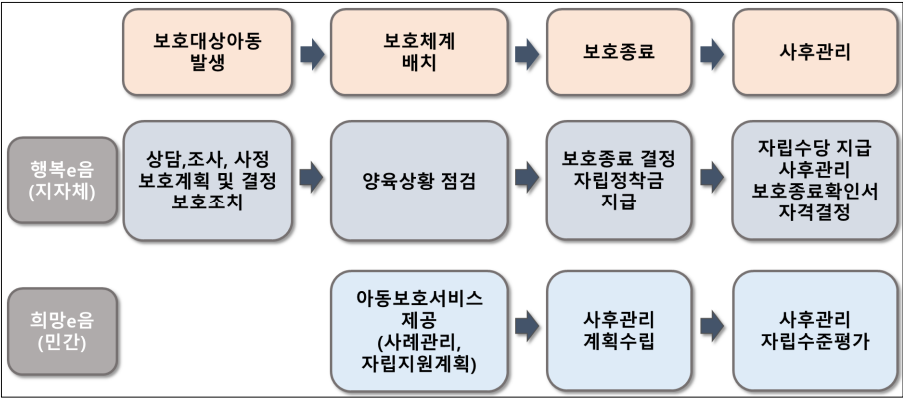


그림 II-4. 정보시스템 기반 아동보호 및 자립지원 업무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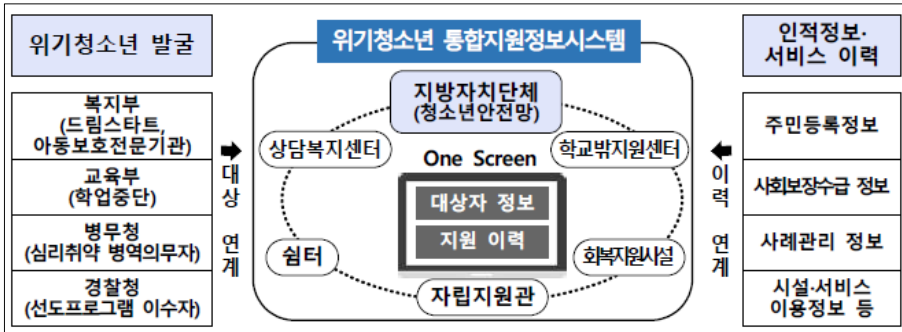
14)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 <http://www.ssis.or.kr/index.do>에서 2023년 5월 30일 검색.

후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수준평가를 통해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해당 내용을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 요약하면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후관리에 있어 지자체 담당자가 사용하는 행복e음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사용하는 희망e음이 동시에 활용되고 있다(그림 II-4).

이러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립지원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실제 업무수행 과정에서는 정보시스템의 접근 권한 문제를 포함하여 정보시스템 내에 축적된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지선, 주영선, 김솔(2023)의 연구에서 자립지원 업무담당자에 대한 인터뷰 결과, 상당수의 지역에서 사례관리 대상자 명단을 희망e음이 아니라 여전히 엑셀 등 수기로 작성, 취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일환으로 전문가 의견조사에 참여한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들에 따르면 2022년에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가 완료된 자립지원전담기관 중 일부가 희망e음 계정을 받지 못해 분기마다 기초자치단체에 명단을 요청하여 회신 받은 자료를 토대로 사후관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거나 이 과정에서 대상자 누락이나 오류가 다수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는 데에도 많은 시간을 소요한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복지시설은 아동복지시설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이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상 시설과 달리 희망e음의 활용이 강제적이지 않아 지역별로 사용 여부에 편차가 크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2조의2를 근거로 그간 사업별로 제각각 관리하던 위기청소년 발굴 및 지원 과정에 대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3년 7월에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이하 청소년안전망시스템)을 개통하였고, 동법에 근거한 사회복지시설인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은 향후 희망e음이 아닌 청소년안전망시스템을 통해 대상자를 관리하게 된다.

청소년안전망시스템이 개통되기 전에는 동종기관 간에도 공문이나 유선 연락을 통해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고 지자체가 청소년의 정보에 접근할 수 없었다. 즉 기존에는 청소년쉼터 이용자가 학교밖청소년일 경우 학교밖청소년 지원기관인 꿈드림에 별도의 공문을 발송하여 이를 알리거나 대상자의 수급자격이 변동되어도 쉼터에서 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본 시스템은 행정망을 기반으로 설계되어 지자체(청소년안전망팀)가 대상자



* 출처: 관계부처합동(2023b),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그림 II-5. 청소년안전망시스템 구성도

정보와 서비스 이력을 관리하는 주체가 되는 한편 민간기관 간에도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타 부처의 사업을 통해 발굴된 위기청소년을 청소년안전망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이다(그림 II-5). 그러나 '23년 현재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본청 내에 청소년안전망팀을 설치한 곳이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20여 개 지역에 불과하여 타 부처에서 대상자를 발굴, 연계하더라도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위기청소년의 정보를 관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행복e음과 별개의 행정망이며 희망e음과 정보가 자동 연계되는 구조는 아니므로 지자체가 정보 연계를 하지 않을 경우 기존 방식으로 동일한 대상자가 여러 정보망을 통해 제각각 관리될 수밖에 없다.

3) 발달장애인지원 통합정보시스템 활용 관련 현안

등록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지원은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이하 비로소)을 통해 대상자 및 서비스 이력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비로소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 제36조를 근거로 구축·운영되는 정보시스템으로, 17개 광역시·도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내 업무담당자가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대상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 가족관계, 서비스 이력, 건강정보, 장애정보 등의 내용을 입력하고 관리한다.

비로소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신청한 발달장애인의 정보만 입력, 관리하고 있어 다른 정보망과 연동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즉 상담을 통해 파악한 정보 이외의 공적 정보를 확인할 수 없고 무엇보다 지자체와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구조의 전산망이 아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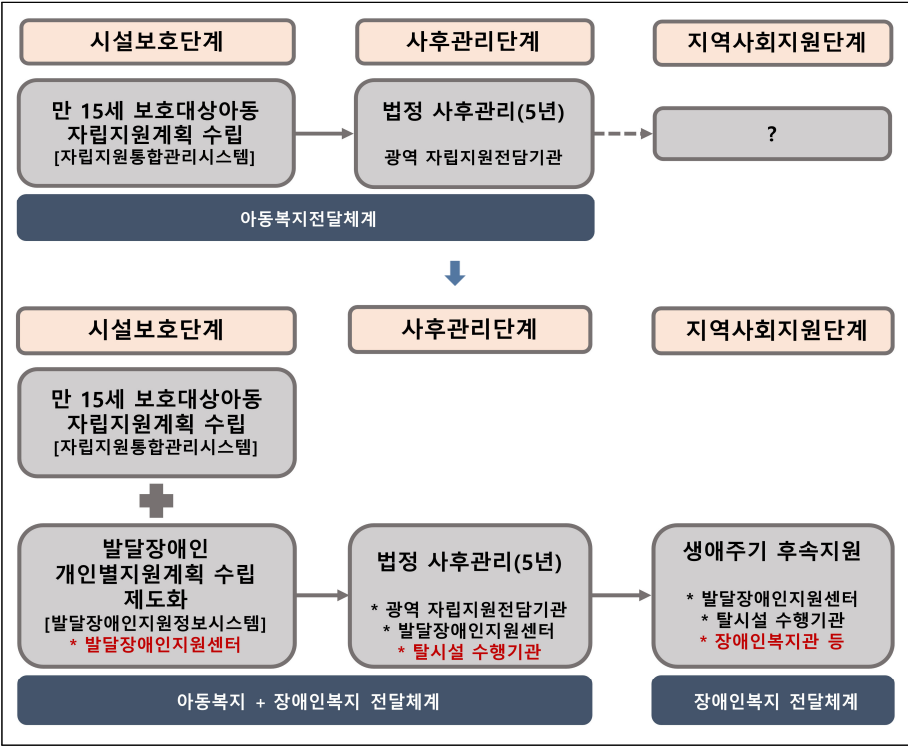
표 II-5. 발달장애인 지역사회지원체계와 정보시스템

구분	아동복지 전달체계	중증장애인 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주관	아동권리과 아동권리보장원	장애인정책과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증장애인 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장애인서비스과 한국장애인개발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근거	아동복지법 제10조제2항	-	발달장애인법 제33조, 제34조, 제41조
자립지원 근거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제39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제41조(아동자비지원 추진협의회)	-	발달장애인법 제18조(복지서비스의 신청), 제19조(개인별 지원계획)
운영체계	중앙 1개소 전국 자립지원전담기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중앙 1개소 탈시설 수행기관 (22년 10개 지역)	중앙1개소 광역시·도 17개소 설치·운영
정보시스템	자립지원통합 관리시스템(희망e음)	-	발달장애인 지원정보시스템
자립지원 대상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가정에서 보호 중인 아동(보호종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아동)	현재 거주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입소 대기 중인 장애인 중 지역사회로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 '22년 총200명(지역별 20명)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법 제2조
발달장애인 개별맞춤형 지원계획	자립지원계획 수립 (만 15세~보호종료 3개월까지 매년), 사후관리(5년)	개인별전환계획 수립 및 자립지원계획 수립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 출처: 관계부처합동(2023b).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센터가 입력한 자료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라는 한계가 따른다. 또한 비로소가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의 일환으로 별도 구축된 정보망이지만 「아동복지법」상 시설 및 위탁보호를 받고 있는 보호대상아동 중 발달장애아동은 비로소가 아닌 희망e음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 정부의 탈시설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시설보호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통합지원 시범 사업 대상 역시 비로소를 통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지원을 위한 정보 관리체계가 일원화되지 않은 상황이다(표 II-5).

그 외에도 현재 발달장애인법에 따르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른 공적 지원은 신청주의를 토대로 하며 비로소와 청소년안정망시스템 등 타 정보망과의 연계도 불가하기 때문에



* 출처: 김지연 외(2022a). p.183.

그림 II-6. 발달장애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개선(안)

사각지대의 발달장애청년이 발굴되어도 비로소 내에서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구조이다. 한편 현재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위탁보호가 종료된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청년은 법정 사후관리 기간(5년) 동안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희망e음)을 통해 지원 내용이 관리된다. 하지만 사후관리가 종결된 이후에는 정보망을 통해 서비스 이력과 자립성과 등이 관리되지 않고 있다(그림 II-6). 이에 비로소의 근본적인 한계와 별개로 아동·청소년복지 시설 내 등록 발달장애인의 경우 보호단계에서 비로소를 통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 기간을 포함하여 이후 생애 전반에 걸쳐 지역사회지원 이력이 연속적으로 제공,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김지연 외, 2022a).

4. 소결 및 시사점

1) 취약계층 청년 지원체계의 분절성 개선

「청년기본법」의 개정으로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와 이들의 권익 강화를 위한 정부의 책임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지난 9월에는 당정협의 회를 통해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의 자산형성, 청년마음건강 등 지원 대책을 담은 청년 복지 5대 과제가 발표되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9.19).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기존의 복지체계로 대응하기 어려운 정책소외계층 청년을 새로운 정책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도약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환경과 인프라 개선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법률의 기본 취지와 달리 최근 대책이 취약계층 청년의 ‘유형별’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기존 지원체계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지원체계 간의 분절성을 극복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제외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지난 9월 대책 내에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의 사례관리를 위해 전국 4개 시·도에 ‘청년미래센터(가칭)’를 설치하고, 센터 내에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코디네이터 6명, 고립·은둔청년 사례관리 전담인력 8명을 배치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9.19). 지역사회 내에서 이들 청년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기본 방향은 매우 적절하지만 기존 지원체계나 동종유사 서비스 전담인력과 연계·협력·조율을 위한 구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가정위탁(조손) 보호가 종료된 만 19세 이상 자립준비청년 역시 가족돌봄청년임에도 이들에 대해서는 17개 광역시·도에 설치·운영 중인 자립지원전담기관이 법정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도 자립준비청년 중 고립·은둔청년을 담당하는 인력(기관별 1인)이 배치되었으나 이들 전담인력 간에 대상자 및 자원 연계 등 협업을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특히 발달장애청년, 자립준비청년과 같이 별도의 지원체계가 있는 취약청년 중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은 어떤 기관에서 주 사례관리를 담당할 것인지 혹은 기존 대상자 중 금융 문제, 경제선지능을 포함하여 다면적인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지만 별도의 지원체계가 부재하거나 부실한 경우는 어떤 기관이 맞춤형 지원할 것인지 등 사각지대를 완화하는 후속 방안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다만 개정된 「청년기본법」을 토대로 중앙·지방 청년지원센터로 이어지는 전달체계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고민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청년 유형별 지원체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동종 유사 지원체계와의 연결성을 강화하여 시너지를 제고하는 전략을 반드시 병행하여 모색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취약계층 청년 서비스의 분절성, 파편화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2)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으로서 청년지원센터 기능 정립

「청년기본법」상 청년지원센터의 지정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청년정책 전달체계로서 청년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간 청년센터는 청년 공간 운영을 통한 참여·교류의 장(場) 제공, 청년 친화적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인적, 물적 기반을 토대로 지역별로 특화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청년센터의 고유 기능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률상 기관 운영 근거 및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이를 계기로 청년지원센터의 ‘서비스 최소기준’을 마련하고 지역별, 기관별 격차를 완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법률의 취지와 같이 청년의 욕구와 수요에 대응하여 주거, 교육, 일자리, 금융, 복지 등을 연계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상자 및 서비스 이력 관리 등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 수행이 요구된다. 이에 청년미래센터(가칭), 청년지원센터를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으로서 정체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역할과 기능에 부합하는 전문 인력의 양성과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청년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발달장애청년, 자립준비청년과 같이 중앙-지역으로 이어지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 필요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즉 중앙센터는 종사자 교육과 지역 센터 운영 매뉴얼 및 지역 센터 평가 등을 통해 지역 센터의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기초센터는 지역 청년을 직접 만나 문제와 욕구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와 자원을 연계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최일선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 센터 운영 예산이 지방비일 경우 중앙센터의 요구를 지역(시·도) 특성에 부합하는 형태로 기초센터에 전달하고, 시·도 단위의 자원과 대상자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광역센터 지정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률상 청년지원센터의 지정 단위가 광역, 기초와 같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게다가 일부 자치구의 경우 광역과 기초센터가 모두 설치될 수밖에 없는데 광역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모호하다면 비효율과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취약계층 청년의 특성상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물리적 접근성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기초센

터 내에 사례관리자(돌봄 코디네이터 등)를 배치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이다. 다만 기초자치구별로 대상자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청년미래센터(가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과 같이 광역단위에 전담인력을 배치한 후 지역 수요에 대응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따라서 청년지원센터의 정체성과 역할, 기능 정립을 명확히 한 후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3) 사례관리 및 민관협업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과 활성화

취약계층 청년의 발굴과 지원, 사후관리를 연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활용이 필수적이다. 「청년기본법」에는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가 포함되어 있는데,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주체는 국무총리이며 공공기관 또는 중앙센터, 그 밖의 전문기관·단체를 정보시스템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동법 제24조의5). 그러나 일선 청년지원센터가 취약계층 청년의 개인정보와 서비스 이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보다 상세한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더라도 기관 간, 담당자 간 대상자 정보 공유와 업무 연계가 불가할 경우 행정지원 용도로만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처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현재 희망e음의 경우 당사자, 보호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보를 입력, 관리하고 있어 약물 사용,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 여부, 시설 입·퇴소 등 이용 거부 이력, 가족관계나 서비스 중복 수혜 등과 같은 민감 정보의 정합성이 낮은 부분이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따라서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에 대한 기본정보 외에도 거주 유형, 교육, 고용, 공적 지원 수혜 여부를 포함한 경제적 상태 등에 대한 정확한 부가정보를 지자체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수준 위의 정보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단순 상담 내용이나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공공과 민간이 서비스 이력 등을 공유하고 정보가 양방향으로 전달되는 협업의 플랫폼으로서 정보시스템의 기능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 — 제3장 시설퇴소 자립준비 청년 정책소외 실태와 과제: 2차 년도

- 1.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정책소외 주요 현안
- 2. 자립준비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분석
- 3.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정책지원 과제

1.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정책소외 주요 현안

1) 정책대상의 개념 및 특성

이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기에 일정 기간을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다 퇴소한 청년들을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으로 정의하였다. 그 중에서도 크게 세 집단, 즉 「아동복지법」상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청년,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지원관 등을 통한 자립지원의 대상인 청년, 「소년법」상 소년보호시설 출원 후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중심으로 그들의 특성과 현황을 살펴보았다.¹⁶⁾ 이와 같이 세 집단의 시설퇴소청년들을 주요 대상으로 삼은 것은 첫째, 시설 유형에 따라 이들 중 대부분, 또는 상당수가 시설퇴소 후 청년들은 자립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받고 있으나 자립을 위한 기반은 매우 빈약하다는 점에서 유사한 취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동시에 현재 각 시설들은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소년법」과 같이 제각각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각 법률은 저마다의 지원체계와 내용을 명시하고 있어 시설퇴소청년들에 대한 지원 범위나 내용에서도 퇴소시설 유형에 따라 편차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자립이라는 동일한 과제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시설퇴소청년들이지만 이들에 대한 자립지원은 개인적 취약성의 정도가 아니라 퇴소시설유형에 따르기 때문에 정책소외 대상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특성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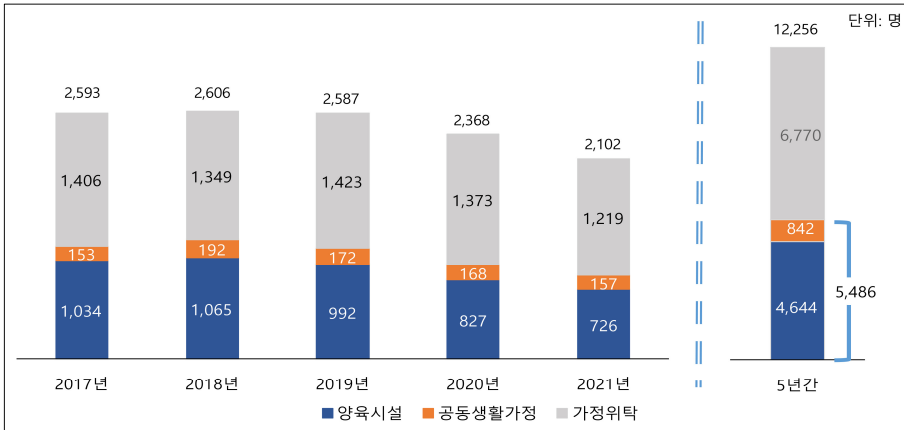
15) 이 장은 세부보고서인 협동연구총서(23-88-02)의 주요 내용을 요약·발제한 것으로 백혜정 선임연구위원, 김승경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해당 세부보고서를 참고하여야 한다.

16) 이들을 통틀어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으로 명명하고, 편의 상 '시설퇴소청년', '자립준비청년'이란 용어를 혼용하였으며 유형에 따라 '○○시설 퇴소청년'으로 지칭하기도 하였다.

(1) 아동양육시설 퇴소청년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 후 자립을 시작하는 청년들은 2019년 이후 그 수가 점차 감소하여 2021년 2,102명으로 집계되었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 (그림 III-1). 2021년을 기준으로 18세 이후 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을 퇴소하였거나 보호기간 만료¹⁷⁾로 시설을 퇴소한 후 5년간 자립지원을 제공받는 청년은 가정위탁을 제외¹⁸⁾하고 약 5,500명 수준이다.

2021년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에 따르면 2,102명 중 대학 입학 이상의 학력을 지닌 경우는 총 1,175명(55.9%)이며 대학생들의 학비조달 방법은 대부분 국가장학금(84.7%)이었다. 또한 2021년 자립준비청년의 취업형태를 살펴보면 취업자 825명(전체의 39.2%) 중 정규직(52.7%)이 비정규직(37.2%)보다 많았으며 취업분야는 전문직(25.1%), 서비스직(22.7%), 기계조작·조립(13.1%)과 단순노무직(13.1%), 사무직(9.6%) 순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 자립준비청년의 39.5%(양육시설 65.8%, 공동생활가정 64.3%, 가정위탁 20.6%)는 LH 등 정부지원의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있었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



*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 p.117.

그림 III-1. 2017~2021년 자립준비청년 현황 추이(명)

17) 시설은 연령이 18세가 되면 퇴소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동복지법」 제16조의3에 근거하여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라도 25세까지 보호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최근 조사에는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

18)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후 5년간 자립지원을 받은 청년(6,770명)까지 합하면 총 12,256명이다.

2020년에 보호종료아동¹⁹⁾ 3,1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이상정 외, 2020)에서 나타난 이들의 실태를 살펴보면 가정외보호기간은 평균 11.8년이며 보호종료아동의 48.6%는 부모가 있으나 그 중 22.9%는 부모를 만나지 않았다. 이들의 세후 월 평균 소득은 127만 원²⁰⁾으로 낮은 소득수준을 보였다(이상정 외, 2020). 보호종료아동의 57%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이상정 외, 2020) 이는 이들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임을 시사한다. 응답자의 35.8%는 최근 1년간 질병을 앓은 경험이 있었으나 그 중 일부만 치료받았거나 전혀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46.7%로 이들이 치료를 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는 ‘치료비가 없어서’(37.7%)를 들었다(이상정 외, 2020). 보호종료아동의 50%는 경제나 가정 문제,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5.3점에 불과하였다(이상정 외, 2020).

한편 2021년 기준 18세 이전에 조기 보호종료된 이들은 총 243명(양육시설 137명, 공동생활가정 70명, 가정위탁 36명)으로 그 중 40.1%의 종료 사유는 다른 시설로의 전원이었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 ‘통고제도’²¹⁾를 통해 소년보호시설이나 타 시설로 전원되어 중도에 보호종료가 되면 이후 자립지원에서 배제되기 쉽다(김지연 외, 2022b). 이와 별개로 최근 5년(2017~2021년) 동안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후 퇴소한 청년 중에서도 24.7%(12,081명 중 2,983명)는 지원기관과 연락이 끊긴 것으로 나타났다.²²⁾ 이는 다시 말해 자립지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한 이들 중에도 자립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지원기관과 연락이 끊겨 자립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은 사후관리의 부실로 지적될 수 있으며 사후관리의 부실 이유로는 지자체의 자립지원전담인력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양육시설 퇴소청년들은 주거, 경제, 심리·정서 영역 등 전반에서 충분한 자립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특히 중간에

19)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가 종료된 이들로 현재는 자립준비청년으로 부른다.

20)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응답자의 월 평균 소득이며 이들 중 취업자의 월 평균 보수액은 182.2만 원이다.

21) 통고제이란 특별히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아동·청소년이라도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이 우범소년, 즉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이다. 1차년도 연구(김지연 외, 2022b)에서는 아동복지시설 아동 중 통고제도를 통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입소하고 퇴소 후 청소년복지시설 등을 전전하는 사례가 보고되기도 하였다. 최근 통고제도에서 장기 보호관찰(5호) 및 소년원 송치처분(10호)의 폐지(법무부 보도자료, 2022. 10. 26)에 대한 보도가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진행된 바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22) 경향신문(2022.10.19). 보육원·그룹홈 나온 청년 4명 중 1명 ‘소재 불명’...1명이 135명 관리.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21019113100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에서 2023년 5월 11일 검색.

보호종료된 청년의 경우나 보호종료 후 연락이 어려운 이들은 자립기반이 더욱 열악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자립준비청년 개개인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자립지원 서비스 및 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2)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²³⁾

청소년쉼터는 2023년 현재 전국에 137개소(일시 32개소, 단기 67개소, 중장기 39개소)가 운영 중이다.²⁴⁾ 최근 3년간 순인원을 기준으로 18세 이상 단기 및 중장기 쉼터 입소자는 대략 1,500~2,00명 선이다(표 III-1). 한편 19~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현재 전국 11개소가 운영²⁵⁾ 중인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이용자는 2022년 순인원 기준 515명으로 2020년 320명보다 1.6배 정도 증가하였다(표 III-1).

표 III-1.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입퇴소자 수(순인원)

(단위: 명)

구분		청소년쉼터				청소년 자립 지원관 ²⁾	합계	
		단기		중장기				
		전체	18세 이상	전체	18세 이상		전체	18세 이상
입소 순인원 ¹⁾	2020년	3,997	1,727	585	339	320	12,482	2,386
	2021년	3,779	1,293	581	294	464	14,335	2,051
	2022년	3,655	1,354	554	278	515	20,132	2,147
퇴소 순인원 ¹⁾	2020년	3,442	1,307	341	192	320	4,103	1,819
	2021년	3,322	962	345	165	464	4,131	1,591
	2022년	3,239	994	323	163	515	4,077	1,672

* 출처: 여성가족부(2023). 내부자료.

* 주: 1) 순인원 : 연간 이용 및 입소 인원에서 중복 대상자를 제외한 인원(면담사례는 포함)
2)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원칙적으로 19세부터 입소 가능함.

23) 편의상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이라 명명하였으나 청소년쉼터 퇴소청년 외에도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사례관리를 받는 청년도 포함한다.

24)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sp/yth/sp_yth_f014.do에서 2023년 4월 26일 검색.

25)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sp/yth/sp_yth_f014.do에서 2023년 4월 26일 검색.

표 III-2. 최근 3년간 (단기, 중장기)쉼터 18세 이상 청소년 주 퇴소사유(순인원)

(단위: 명, %)

연도	총계	기간만료 및 연계, 합의에 의한 퇴소								강제 및 무단퇴소			
		소계	가정 복귀	경제적 자립	기숙 (대안) 학교	타 시설 연계	입대, 입원 등	보호 기간 만료	기타 퇴소	소계	법률형 집행	강제 퇴소	무단 퇴소
2020년	1,499	92.8	44.4	6.1	0.5	11.1	8.4	1.9	20.3	7.2	0.7	2.5	4.1
2021년	1,127	93.9	45.9	5.5	1.1	12.1	7.0	1.6	20.8	6.1	0.2	1.8	4.2
2022년	1,157	93.3	45.7	6.5	1.5	11.7	4.1	2.2	21.7	6.7	0.2	2.0	4.5

* 출처: 여성가족부(2023). 내부자료.

* 주: 7일 이내 긴급·일시보호시설인 일시쉼터는 제외(실인원 기준)

단기·중장기 쉼터를 이용한 18세 이상 청소년들 중 경제적 자립을 주요 이유로 퇴소한 경우는 6% 내외로 매우 적었다(표 III-2). 자립지원관의 경우는 주요 퇴소 사유로 자립여건 마련 및 자립욕구에 의한 합의 종결을 언급한 이들이 2022년 기준 약 57.8%로 그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이는 2021년에 비해서 약 23%p 증가한 수치이다(표 III-3). 그러나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한 경우 외에도 쉼터의 경우는 보호기간 만료, 강제 및 무단 퇴소 등을 이유로 퇴소한 경우가 8% 내외, 자립생활관의 경우는 자립의지 부족, 무단 퇴소 등을 이유로 퇴소한 경우가 10% 내외로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립기반이 미처 마련되지 않은 청년들이 지원의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청소년쉼터 및 자립지원관 이용자들의 특성을 간략히 살펴보면 부모의 방임이나 가정폭력 및 학대를 경험한 경우가 일반 청소년에 비해 많았으며 이러한 가정 내 갈등은 가출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황여정, 임희진, 정은주, 유설희, 정윤미, 2022). 또한 자살생각

표 III-3. 청소년자립지원관 주 퇴소 사유

(단위: 명, %)

연도	총계	자립 여건 마련	취업/창업	학원, 대안 학교, 기숙사 입학	자립 생활 욕구에 의한 합의 종결	자진 퇴소 요청	자립 의지 부족	연락 두절 (무단 퇴소)	타 시설 연계	타 지역 이주	가정 복귀	기타
2021년 ¹⁾	190	28.9	0.5	0.5	5.8	6.8	8.4	11.1	5.8	7.4	9.5	23.7
2022년	218	42.2	2.3	0.5	15.6	2.8	2.8	6.9	4.1	4.1	3.7	15.1

* 출처: 여성가족부(2023). 내부자료.

* 주: 2021년은 중복응답으로 합이 100% 이상임.

58.4%, 자살 시도 32.3%로 그 비율이 다른 유형의 위기청소년들보다도 높았으며 주요 이유로는 심리적 불안이나 우울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황여정 외, 2022).

경기도 내 청소년쉼터 및 자립지원관 거주 경험이 있는 18세 청소년 조사(전민경, 2020)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90.7%가 아르바이트의 경험이 있었으나 조사 시점에서 취업자는 37.9%(비정규직 비율은 55.1%), 취업자의 월 평균 소득은 157만 원이었다(전민경, 2020). 또한 전체 응답자의 36.2%는 부채(평균 액수는 718만 원)가 있었는데 부채 발생의 주요 원인은 생활비 마련(71%), 주거 마련(26.6%), 직업대출 사기(20.2%), 학자금 마련(16.1%) 등이었다(전민경, 2020).

이상과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청소년시설 퇴소청년들은 양육시설 퇴소청년들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충분한 지원이 없이 자립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거, 경제, 심리·정서 영역 등 전반에서 자립 기반이 매우 부족함을 보인다. 이에 더하여 자립지원 수당이나 기초생활 수급, 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기준과 내용²⁶⁾은 양육시설 퇴소청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청소년시설 퇴소청년들의 자립기반은 더욱 취약할 것으로 짐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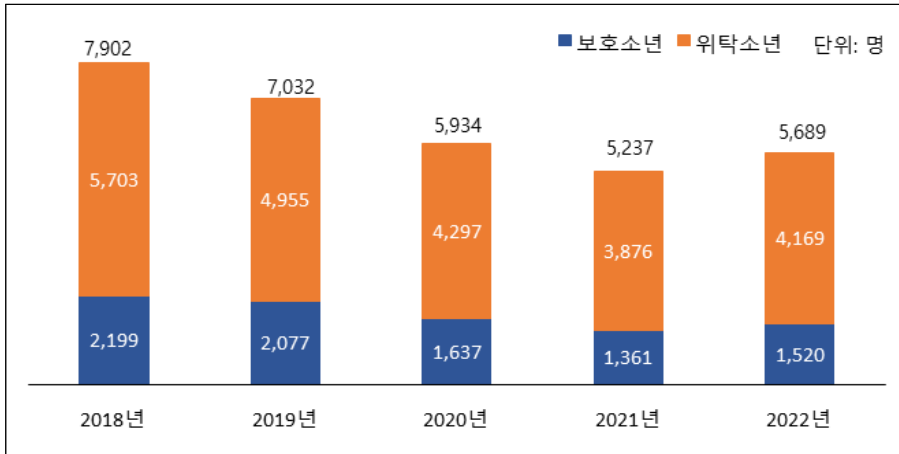
(3) 소년원 퇴소청년

최근 5년간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²⁷⁾에 송치 및 위탁된 (23세 이하) 소년의 규모를 살펴보면 2020년 이후 5천 명대로 보고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전년도보다 다소 증가한 5,689명이다(그림 III-2). 2019년에는 소년원 출원 후 6.2%가 1년 이내에 재범을 하였으며(법무연수원, 2023), 2021년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은 12%로 보호관찰 시작 1년 이내의 재범률은 87.2.%로 나타났다(법무연수원, 2023). 이러한 결과는 미성년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재범 원인을 파악하여 보호관찰 1년 이내에 집중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을 일부 시사한다.

한편 소년원 퇴소 후 재범 예방 및 자립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중앙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자립지원이 필요하지만 실상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다만 법무부 산하 한국소년보호협회에서 가정의 지원이 거의 없는 상태에 있는 소년원 출원생의 자립을 돕기 위한 시설들을 운영 중이다. 대표적인 시설로는 청소년자립생활관(전국 8개소, 총 정원 130명)과 청소년의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시설인 청소년창업비전센터(전국 8개소) 등이 있

26) 시설유형별 자립지원 제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절에 기술하였다.

27) 보호소년은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 위탁소년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을 의미한다.



* 출처: e-나라지표 홈페이지.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38에서 2023년 5월 16일 검색.

- * 주: 1) 신수용인원: 당해연도 법원 소년부 결정에 따라 소년보호교육기관에 송치/위탁된 인원과 새로 입소한 인원
2) 보호소년: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7호부터 제10호의 규정에 의해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
3) 위탁소년: 「소년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비행 원인과 자질 규명을 위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

그림 III-2. 최근 5년간 보호소년, 위탁소년 현황

다.28) 최근 5년간 자립생활관 및 창업비전센터에 입주(입교)한 청소년은 총 638명으로 연평균 약 128명, 월 평균 입주(입교) 인원은 10.7명이다(표 III-4). 자립생활관 및 창업비전센터에서의 연도별 평균 거주기간은 약 8.2개월이었으나 2022년에는 거의 1년 정도로 그 기간이 증가하였다(그림 III-3). 이 같은 시설의 운영을 통한 지원이 소년원 퇴소청년들을 위한 자립지원의 거의 전부라 할 수 있어 이들의 자립기반이 매우 취약함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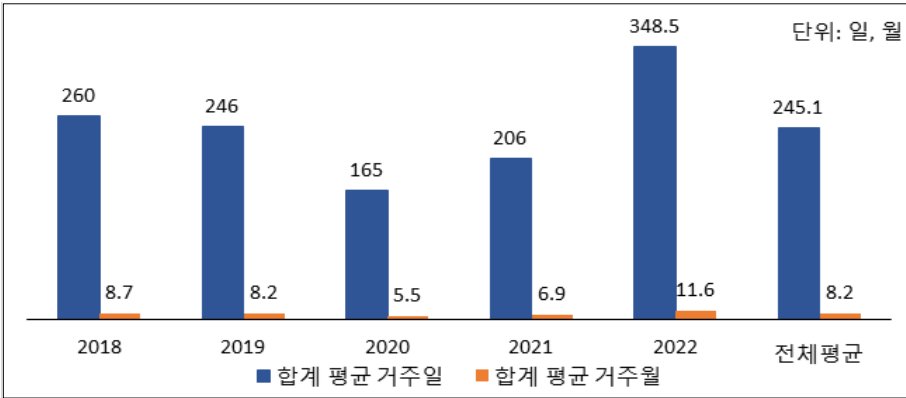
표 III-4. 자립생활관 및 창업비전센터 연도별 입주 및 입교 현황

(단위: 명)

연도	입주(입교) 현황		퇴거(퇴교) 현황	
	입주 및 입교	입주 및 입교 월 평균	퇴거 및 퇴교	퇴거 및 퇴교 월 평균
2018	156	13.0	152	12.7
2019	127	10.6	131	10.9
2020	147	12.3	134	11.2
2021	127	10.6	129	10.8
2022	81	6.8	85	7.1
합계	638	10.7	631	10.5

* 출처: 법무부(2023). 내부자료.

28) 한국소년보호협회 홈페이지. <https://www.kjpa.or.kr/51>에서 2023년 5월 8일 검색.



* 출처: 법무부(2023). 내부자료.

그림 Ⅲ-3. 자립생활관 및 창업비전센터 평균 거주 기간(일, 월)

(4) 복수시설 퇴소청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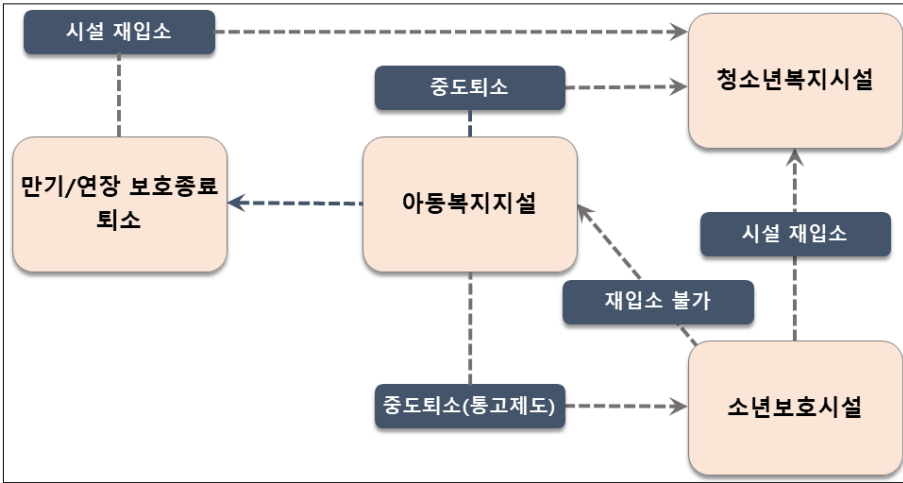
시설퇴소청년들 중에는 2가지 이상의 보호체계를 넘나드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단적인 예로 복지부 산하 아동보호시설에서 중도 퇴소 후 여가부 산하 청소년복지시설이나 법무부 산하 자립생활관에 입소하는 경우이다. 실제로 1차년도 실태조사(김지연 외, 2022b)에서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중 18.8%,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 중 28.2%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퇴소청년 중 청소년복지시설(쉼터, 회복지원시설) 거주경험은 7.4%, 자립지원관이나 자립생활관 거주경험은 18.2%

표 Ⅲ-5. 각 시설퇴소청년 유형별 타 시설 이용률

(단위: %)

유형	아동시설 퇴소청년	청소년시설 퇴소청년	보호시설 퇴소청년
아동양육시설	87.7	18.8	28.2
청소년시설(쉼터, 회복지원시설)	7.4	80.3	36.3
자립지원관·생활관	18.2	33.6	50.0
미혼모·성폭력피해자·노숙인 시설	0.8	4.1	1.6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교도소·구치소	1.2	7.5	78.2
숙박시설(고시원, 모텔 등)	10.8	42.0	41.9
기타	4.4	30.0	26.6

* 출처: 김지연 외(2022b).



* 출처: 김지연 외(2022b), p.116

그림 Ⅲ-4. 시설퇴소청년의 시설 이동 경로

였다(김지연 외, 2022b)(표 Ⅲ-4). 한편 시설퇴소청년들의 시설 이동 경로를 도식화하면 그림 Ⅲ-5과 같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한 개인이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유형의 시설을 옮겨 다니며 생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아동·청소년기에 원가정 외 시설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청년들을 최종 퇴소시설 유형별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지원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정책대상의 정책소외 현안

앞서도 잠깐 언급하였으나 시설퇴소청년들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제도는 아동 복지시설 퇴소청년에 비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다.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들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여 이들에게 지원되는 중앙 정부 및 지자체의 제도는 전무하다시피하다.

아동시설과 청소년시설 퇴소청년들에 대한 지원제도에서의 편차에 대한 예를 살펴보면 첫째, 아동시설 퇴소청년은 입소 때부터 부모와 상관없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선정 가능하고 퇴소 후에도 수급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²⁹⁾ 청소년시설이나

29) 2019년부터 만 30세 미만 자립준비청년 수급자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9.12.18) 보호종료아동의 물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답하다!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들은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기준이 충족됨을 증명해야 한다. 둘째, 2021년 하반기부터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들에게도 자립지원수당이 지급하기 시작하였으나 아동시설 퇴소청년과 달리 자립정착금은 지원되지 않고 있다. 셋째, 주거지원에서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 퇴소청년의 경우는 퇴소 예정 또는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무주택자에게는 별도 소득이나 자산 기준 없이 LH 임대주택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만³⁰⁾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은 2년 이상 시설 이용이라는 조건³¹⁾이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들은 시설퇴소 후 자립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이들 상당수는 중에는 여러 시설을 전전하거나 익명으로 시설을 이용하여 그 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렵다. 또한 시설에서도 이들에 대한 익명성 보장, 정보시스템 미구축 등을 이유로 시설을 이용하는 이들에 대한 정보이력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³²⁾ 지원대상의 기준을 충족함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 더하여 청소년시설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시설퇴소청년에게는 더 이상의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시설퇴소 후에는 지원이 끊기는 청년들이 허다하다(박현동, 2022).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들의 경우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청년은 물론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들에 비해서도 지원 내용이 더욱 열악하다. 이들은 자립지원수당이나 주거지원 등의 대상에서 아예 벗어나 있으며 이들 지원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립생활관으로부터의 지원 역시 국비가 아닌 민간 후원금에 의존하다보니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결국 양육시설 퇴소청년과 달리 청소년 및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들은 자립지원 수당이나 기초생활 수급, LH 임대주택 신청 등에서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자립기반은 더욱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 중에는 시설유형을 넘나드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같은 유형의 시설퇴소청년이라 하더라도 개인에 따라 자립기반에서의 영역별 취약성에 차이가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99&CONT_SEQ=351938에서 2023년 5월 16일 검색.
 30) 마이홈포털. <https://www.myhome.go.kr/hws/portal/sch/selectRsdtdRcritNtcDetailView.do?pbplanclnd=12816>에서 2023년 4월 26일 검색.
 31)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3&bbtSn=709594에서 2023년 4월 26일 검색.
 32) 여성가족부는 2023년 시설 이용 청소년들을 비롯, 위기청소년들의 정보연계 및 서비스 이력 조화가 가능하도록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개통 중에 있다(여성가족부, 2023).

상황에서 개인 상황에 대한 면밀한 파악 없이 각 시설유형별 지원제도에 편차가 있는 상황에서 시설 유형별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한다면 지원정책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형평성 논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시설별 지원의 차이는 각각의 시설들이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소년법」 등 저마다의 지원체계와 내용을 명시한 서로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것에 더하여 각 대상들의 공통점을 살피고 지원 정책의 편차를 조율할 부서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설퇴소청년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통합하고 각 부처를 아우르는 정책조정 및 총괄 기능을 담당할 부서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시설별 지원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동일하게 열악한 자립 수준을 가지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도 지원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원대상의 자격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2. 자립준비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분석

1) 2차 년도 설문조사 및 2차 자료 활용

(1) 실태조사 개요

설문조사는 총 3개년 조사 중 2차 년도 조사로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생활 실태 및 현황을 토대로 자립과정 상의 특성 및 지원제도의 효과성 등을 검토하고 자립준비청년들의 건강한 자립을 위한 정책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립준비 청년 2,457명을 대상으로 '자립준비 1년차 자립준비청년 코호트'를 구성한 제1차 조사(2022년)에 이어 올해 제2차 조사(2023년)에서는 1년차 코호트를 대상으로 자립준비 2년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단 제1차 표본에서 유실된 인원에는 신규 표본으로 대체하여 각 년도의 표본은 동일한 규모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추후에는 총 3개년의 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립 연차에 따른 자립 과정 및 자립지원의 효과를 비교 분석할 예정이다.

2차 년도 조사 영역은 교육·훈련, 고용, 경제, 주거, 건강 및 심리정서, 참여 및 사회·미래 인식 등 총 7개 영역으로 총 70문항이 구성되었다. 지난 제1차 조사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가족돌봄 정도, 주거지원 제도 참여 정도, 식생활 건강, 다양한 청년 활동 참여 및 사회·미래에 대한 인식 등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표 III-6. 조사 대상 선정 기준

관련 법령	담당 기관	조사 대상
아동복지법	자립지원전담기관 아동양육시설 등	해당 기관에서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보호종료 5년차 이내 자립준비청년 - 우선 순위: 보호종료 연차가 적은 청년, 자립수당 수급 청년
청소년 복지지원법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쉼터 등	해당 기관을 이용한 적이 있거나 현재 이용 중인 자립준비청년 - 사례/사후 관리 청년, 자립지원수당 수급 청년 포함
소년법	청소년자립생활관 창업비전센터 등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출원한 경험이 있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생활관을 이용한 적이 있거나 현재 이용 중인 자립준비청년

* 출처: 김지연, 백혜정, 김미향(2022). 2022년 시설퇴소청년 생활실태조사 보고서(p. 4).

(2) 실태조사 참여자

조사 참여자는 시설퇴소 후 자립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로 표 III-6에서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모두 「청년기본법」에 의한 청년(19~34세)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생활·이용 후 현재 자립준비 중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 집단은 각각의 근거 법령에 따라 자립지원 내용과 지원체계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실질적인 수혜 정도와 그에 따른 효과, 자립과정 등에서의 차이를 가져 올 것으로 판단되어 세 집단의 청년들로 구분하고 집단 간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목표 표본 수는 작년 제1차 조사 표본 선정과정에서 조사대상의 특성 상 모집단 규모와 표집률이 명확하지 않다는 제한점을 반영하여 학계 및 현장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2,500명(「아동복지법」상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은 1,950명,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자립준비청년은 400명, 「소년법」상 자립준비청년은 150명)으로 설정하였다(김지연, 백혜정, 김미향, 2022). 이를 바탕으로 2차 년도 조사에 참여한 이들은 총 2,514명이며, 비동일인, 중복참여, 불성실 응답 등 총 16명을 제외하고, 최종 2,498명을 2차 조사 참여자로 확정하였다. 1차 년도 조사에 이어 2차 년도 조사에도 참여한 이들은 총 1,565명으로 표본 유지율은 62.7%이다. 시설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아동복지법」상 보호종료아동은 1,827명,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자립준비청년은 554명, 「소년법」상 자립준비청년은 117명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모두 중앙지원기관 및 전담기관, 자립준비청년 단체, 지원기관 및 시설 등을 통해 모집되었으며 조사 시작 전 조사 참여에 동의하였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22.43세이며 보다 자세한 특성은 표 III-7과 같다.

표 III-7. 조사 참여자 특성

구분		명	%	구분		명	%
전체		2,498	100.0	전체		2,498	100.0
성별	남자	1,217	48.7	거주 지역	수도권	1,061	42.5
	여자	1,281	51.3		비수도권	1,437	57.5
연령 (만 나이)	19세 이하	334	13.4	지역 규모	대도시	1,152	46.1
	20~24세	1,684	67.4		중소도시	1,266	50.7
	25~29세	466	18.6		읍면지역	80	3.2
	30세 이상	14	0.6	퇴소 시설	아동시설	1,827	73.1
학력	고졸이하	864	34.6		청소년시설	554	22.2
	대재이상	1,633	65.4		보호시설	117	4.7
경제 수준	상	139	5.6	자립 지원 기간	3년 미만	2,048	82.0
	중	834	33.4		3년 이상	436	17.5
	하	1,525	61.0		결측	14	0.6

(3) 2차 자료 활용

실태조사의 결과가 일반청년들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반청년을 대상으로 한 2차 자료 2종을 활용하였다. 하나는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정세정 외, 2022)에 참여한 청년들 중 29세 이하 청년들(총 11,744명)의 응답값으로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활용하였고 자료 분석시에는 개인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다른 하나는 2023년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조사(김기현 외, 2023)에 참여한 청년들(총 1,433명)의 응답값이다. 이 자료에서는 문항 개발 단계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시설퇴소청년 실태조사와 공동으로 사용한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자료 분석시에는 표본크기 기준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조사결과에서 제시된 '22년 청년(29세 이하)의 응답값이나 '23년 청년(29세 이하)의 응답값은 2차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4) 조사결과

① 일반 사항

가. 자립지원 기간

시설퇴소청년들의 자립지원 기간 평균은 19개월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시설 퇴소청년의 자립지원 기간이 평균 21.38개월로 가장 길었고 청소년시설과 보호시설 퇴소 청년은 모두 1년 정도이다(표 III-8).

표 III-8. 시설퇴소 후 자립지원 받은 기간

(단위: 개월)

구분	사례 수 (명)	t/F 검증 ¹⁾		
		평균(개월)	표준편차	유의도
전체	2,484	19.01	23.485	-
퇴소 시설	아동시설 ^a	1,815	21.38	35.428*** c,b<a
	청소년시설 ^b	552	12.90	
	보호시설 ^c	117	11.15	

* 주: *p <.05, **p <.01, ***p <.001

나. 맞춤형 급여 지급 현황

시설퇴소청년 중 현재 맞춤형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한 종류라도 지급 중인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46.5%로 '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 참여한 29세 이하 청년의

표 III-9. 맞춤형 급여 지급 여부

(단위: %)

구분	사례 수(명)	①	②	③	χ^2 검증 ¹⁾
'22년 청년(29세 이하) ³⁾	6,996,219	1.0	2.1	96.9	-
'23년 시설퇴소청년	2,498	46.5	34.1	19.4	-
퇴소 시설	아동시설 ^a	1,827	51.5	36.2	232.698***
	청소년시설 ^b	554	34.7	28.9	
	보호시설 ^c	117	24.8	25.6	
경제 수준	상 ^a	139	37.4	39.6	58.186***
	중 ^b	834	36.9	39.4	
	하 ^c	1,525	52.5	30.7	

* 주: 1) *p <.05, **p <.01, ***p <.001

2) ① 현재 지급 중이다, ② 과거에 지급하였으나 현재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

③ 지급한 적이 한 번도 없다

3) '22년 청년 자료의 결괏값은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정세정 외, 2022) 원자료에 제시된 가중치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값임.

응답률(1%)에 비해 매우 높았다. 시설별로는 아동시설 퇴소청년의 51.5%가 현재 수급 중인데 반해 청소년시설 퇴소청년은 34.7%, 보호시설 퇴소청년은 24.8%만이 수급 중이었다. 한편 경제수준이 ‘하’라고 응답한 이들 중에서 현재 맞춤형 급여를 수급 중인 경우는 52.5%, 한 번도 수급한 적이 없다는 응답은 16.8%였다. 이는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청년 중 맞춤형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가 있음을 알 수 있다(표 III-9).

다. 가구 구성원 현황

시설퇴소청년 73.7%는 혼자 살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22년 일반청년의 응답률 21.4%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퇴소시설별로는 아동시설에서 퇴소한 경우에서 혼자 사는 비율이 높았다(표 III-10). 다른 사람과 함께 살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전체 응답자의 26.3%로 그 중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는 24.4%(전체 응답자의 6.4%), 배우자(사실혼 포함)가 있는 경우는 12.3%(전체 응답자의 3.2%)였다.

가구 내 신체·정신적 문제나 노령 등으로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구성원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6.3%, 그 중 해당 구성원을 자신이 주로 돌보고 있다는 응답은 41.1%(전체 응답자의 2.6%)였다. 시설별 차이를 보면 아동시설퇴소의 경우에 돌봄 노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았다(표 III-11). 비록 가정 내 돌봄 노동을 하는 청년이 많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러한 상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III-10. 주거지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단위: %)

구분		사례 수(명)	①	②	χ^2 검증 ¹⁾
'22년 청년(29세 이하) ²⁾		6,996,219	21.4	78.6	-
'23년 시설퇴소청년		2,498	73.7	26.3	-
퇴소 시설	아동시설 ^{a)}	1,827	78.1	21.9	84.481***
	청소년시설 ^{b)}	554	65.2	34.8	
	보호시설 ^{c)}	117	46.2	53.8	

*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① 혼자 살고 있다, ② 함께 살고 있다

3) '22년 청년 자료의 결측값은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정세정 외, 2022) 원자료에 제시된 가중치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값임.

표 III-11. 거주지역별 돌봄 노동 참여 정도

(단위: %)

구분		사례 수(명)	①	②	③	χ^2 검증 ¹⁾
'22년 청년(29세 이하) ³⁾		6,996,219	(0.6)	(0.0)	(99.4)	-
'23년 시설퇴소청년		158 (2,498)	41.1 (2.6)	26.6 (1.7)	32.3 (95.7)	-
퇴소 시설	아동시설 ^{a)}	99	44.4	31.3	24.2	9.587*
	청소년시설 ^{b)}	43	39.5	18.6	41.9	
	보호시설 ^{c)}	16	25.0	18.8	56.3	

*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① 내가 주로 돌본다, ② 나는 필요할 때 도와주고 주로 다른 사람이 돌본다, ③ 나는 거의 돌보지 않는다

3) '22년 청년 자료의 결괏값은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정세정 외, 2022) 원자료에 제시된 가중치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값이며 응답자의 책임 유무를 기준으로 "① (책임 있음)"과 "③ (책임 없음)"에 대한 응답만 있음.

4) () 안의 값은 전체 사례 수에 대한 응답값임.

② 교육·훈련

가. 학력

시설퇴소청년들 중 대학 진학을 한 이들은 전체 응답자의 65.3%로 '22년 일반청년의 대학 진학률(88%)보다 낮았다. 퇴소시설별로 보면 양육시설 퇴소청년의 진학률은 73.2%로 청소년시설(46.5%) 및 보호시설(32.5%) 퇴소청년에 비해 그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표

표 III-12. 학력

(단위: %)

구분	사례 수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χ^2 검증 ¹⁾
'22년 청년 (29세 이하) ³⁾	6,996,219	0.1	0.0	0.2	11.8	2.6	1.6	11.5	25.9	6.2	37.0	1.8	0.0	1.4	-
'23년 시설퇴소청년	2,497	0.5	0.8	3.5	29.8	8.2	7.6	16.3	13.9	5.0	13.7	0.4	0.0	0.2	-
퇴소 시설	아동시설 ^{a)}	1,826	0.3	0.4	0.9	25.2	8.6	6.7	20.0	15.4	4.1	17.5	0.5	0.1	0.3
	청소년시설 ^{b)}	554	0.9	1.4	7.8	43.3	7.9	9.2	6.9	10.8	8.1	3.4	0.2	0.0	460.595 ***
	보호시설 ^{c)}	117	1.7	4.3	23.9	37.6	4.3	14.5	1.7	4.3	4.3	3.4	0.0	0.0	

*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① 중학교 이하, ② 고등학교 재학 중(미인가 대안학교 포함), ③ 고등학교 중퇴/휴학 중, ④ 고등학교 졸업(고등 검정고시 취득 포함), ⑤ 전문대학(2~3년제) 재학 중, ⑥ 전문대학(2~3년제) 중퇴/휴학 중, ⑦ 전문대학(2~3년제) 졸업, ⑧ 대학교(4~6년제) 재학 중, ⑨ 대학교(4~6년제) 중퇴/휴학 중, ⑩ 대학교(4~6년제) 졸업, ⑪ 대학원 재학 중, ⑫ 대학원 중퇴/휴학, ⑬ 대학원 졸업 이상

3) '22년 청년 자료의 결괏값은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정세정 외, 2022) 원자료에 제시된 가중치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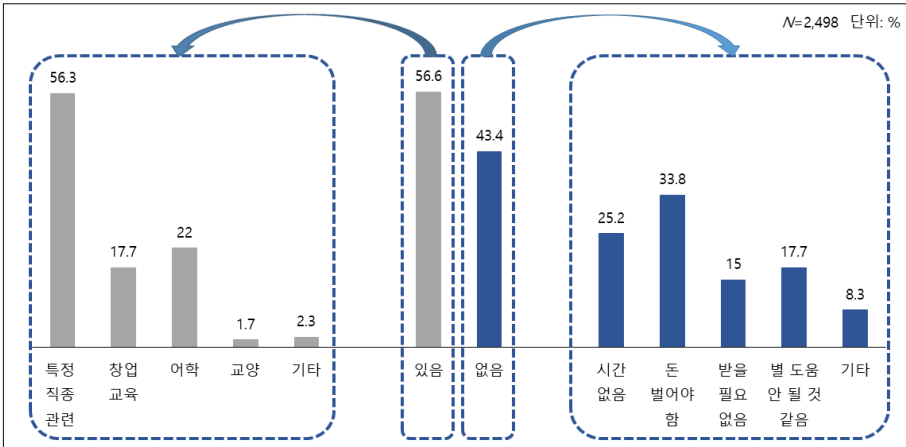


그림 III-5. 정부(지자체) 제공 취업 관련 교육 및 훈련 수강 의향

III-12).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는 보호시설 퇴소자의 경우 29.9%로 양육시설(1.6%)이나 청소년시설(0.1%) 퇴소자에 비해 훨씬 높았다. 학력은 향후 양질의 일자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고졸 중퇴 이하의 학력을 가진 이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학업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 정부(지자체) 제공 취업관련 교육 및 훈련 수강 의향

시설퇴소청년들 중 56.6%는 정부(지자체)가 제공하는 취업관련 교육 및 훈련을 수강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그림 III-5) 이들이 가장 받고 싶은 교육은 특정 직종과 관련된 직업 훈련(56.3%)이었다. 반면 수강 의향이 없는 이들은 약 43.4%였는데 그 이유로는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가 33.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시간이 없어서”가 25.2%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아무리 양질의 취업 교육·훈련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경제적·시간적 제약이 따른다면 높은 참여도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라는 응답도 17.7%로 나타나 정부(지자체) 제공 교육·훈련에 대한 효용성에 의심을 갖는 경우도 적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정부(지자체)가 제공하는 취업 관련 교육·훈련은 면밀한 사전조사를 거쳐 설계되고 제공될 필요가 있다.

③ 고용

가. 근로 여부

지금까지 일을 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94%가 일을 해 본 경험이 있었으며 일 경험이 한 번도 없었던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6%에 불과하였다(표 III-13).

표 III-13. 일 경험 여부

(단위: %, 점)

구분	사례 수 (명)	평생 일 경험		지난 주 일 경험			χ^2 검증 ¹⁾
		있음	없음	일 함	휴가/휴직	일하지 않음	
'22년 청년(29세 이하) ³⁾	6,977,086	77.6	22.3	61.5	0.7	37.7	-
'23년 시설퇴소청년	2,498	94.0	6.0	66.6	3.4	29.9	-
퇴소 시설	아동시설 ^{a)}	1,827	93.6	6.4	66.3	3.3	3.085
	청소년시설 ^{b)}	554	95.1	4.6	66.2	3.8	
	보호시설 ^{c)}	117	94.0	6.0	73.5	3.4	

* 주: 1) * $p < .05$, ** $p < .01$, *** $p < .001$ (지난 주 일경험에 대한 분석 결과임.)

2) ① 전혀 도움이 안 된다. ② 별로 도움이 안 된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도움 된다. ⑤ 매우 도움 된다

3) '22년 청년 자료의 결측값은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정세정 외, 2022) 원자료에 제시된 가중치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값이며 대학생 및 대졸자만 응답하였음.

또한 전체 응답자 중 지난 일주일간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66.6%, 일을 하지는 않았으나 일자리가 있는 경우는 3.4%로 응답자의 70.1%는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22년 일반청년 중 미취업자의 경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일자리를 가져 본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약 22.3%로 시설퇴소청년들과 16.3%p의 차이를 보인다. 이는 일반청년들과 달리 시설퇴소청년의 대부분은 가정의 뒷받침이 부족한 만큼 본인의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일찍부터 일자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지난 주 일자리가 있었던 1,750명 중 8.6%(일반청년의 경우는 4.5%)는 2가지 이상의 일자리에 종사하였으며 최대 5가지의 일자리에 종사했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청소년시설이나 보호시설 퇴소청년들에게서, 그리고 경제적으로 하층인 경우에 그 응답률이 특히 높아 이들의 일자리 상황이 상대적으로 열악함을 알 수 있다.

나. 근무시간

지난 주 근로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을 대상으로 야간·주말·초과 근무 경험 정도를 살펴보면 밤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84.7%로 매우 높았고 그 외 저녁 근무나 8시간 이상 초과근무, 주말·휴일 근무는 각각 67.1%, 61%, 50.6%로 보고되었다(표 III-14). 이 같이 근무한 경우 평균적으로 10명 중 3~5명 정도는 관련 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근로 환경 감독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III-14. 야근·주말·초과 근무 경험 및 관련 수당 수령 여부

(단위: %, 일)

구분	경험률(%)	평균 근무일 ¹⁾	수당 받음(%)
1. 밤 근무(22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	84.7	1.23	68.7
2. 저녁 근무(18시부터 22시까지)	67.1	3.00	52.5
3. 하루에 8시간 초과 근무	61.0	3.94	63.4
4. 주말(토·일요일) 및 휴일(공휴일) 근무	50.6	2.13	58.6

* 주: 전체 응답자 1,750명(비근무자 포함)중 경험률 및 평균 근무일임.

다. 직장 규모 및 근로계약서 작성·주휴수당 수령 여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미수령, 4대 보험 미가입은 직장의 규모가 작을수록

표 III-15. 직장 규모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주휴수당 수령 여부

(단위: %)

구분		사례 수 (명)	①	②	③	④	⑤	χ^2 검증
근로 계약서	작성	1,378	20.2	34.3	19.4	12.1	13.9	68.748***
	미작성	281	35.6	26.7	8.9	5.0	23.8	
주휴 수당	받음	808	16.2	32.8	23.4	15.5	12.1	146.506***
	받지 못함	89	37.1	40.4	9.0	7.9	5.6	
	대상자 아님	306	36.9	31.4	8.8	2.6	20.3	
	잘 모름	456	22.1	33.1	15.1	9.0	20.6	
고용 보험	가입	995	12.7	35.4	24.8	15.6	11.6	341.799***
	미가입	305	51.1	24.9	6.2	2.0	15.7	
	잘 모름/해당 없음	450	32.2	30.4	7.3	4.9	25.1	
건강 보험	가입	970	12.6	35.1	25.2	16.0	11.2	336.316***
	미가입	321	48.6	25.5	6.9	2.8	16.2	
	잘 모름/해당 없음	459	32.5	31.2	7.2	4.1	25.1	
국민 연금	가입	949	12.5	35.2	25.1	15.8	11.4	315.657***
	미가입	332	47.6	26.5	6.3	3.9	15.7	
	잘 모름/해당 없음	469	32.0	30.5	8.5	4.3	24.7	
산재 보험	가입	918	11.4	35.3	25.6	15.1	11.5	305.816***
	미가입	324	49.4	25.6	6.2	3.1	15.7	
	잘 모름/해당 없음	508	30.1	31.1	8.7	6.7	23.4	

*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① 5명 미만(1~4명), ② 5~29명, ③ 30~299명, ④ 300명 이상, ⑤ 잘 모르겠다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표 III-15).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30인 이하의 사업장이라도 소규모 직장의 경우는 근로환경이 더 열악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지난 주 일자리가 있었다고 응답한 이들의 규모를 살펴보면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5~29명인 경우가 32.3%로 가장 많았으며 5명 미만인 경우가 24.4%, 30~299명인 경우가 17.5%, 300명 이상인 경우는 10.5% 등이었다. 즉 시설폐소 청년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30명 미만의 소규모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라. NEET 경험

현재 근로를 하지 않고 있는 청년 중 15세 이후부터 지금까지, 학교도 다니지 않고 일도 하지 않으면서 진학 준비나 취업 준비 등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낸 기간이 일주일 이상인 경우를 분석한 결과³³⁾ 전체 응답자의 21.5%(전체 응답자의 약 3.6%)는 1년 이상 NEET를 경험하였다(표 III-16). NEET 경험을 자체는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높았으나 NEET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는 경제생활이 '상'인 경우에서 더 많았다.

표 III-16.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낸 기간이 일주일을 넘긴 적이 있는지 여부

(단위: %)

구분	사례 수 (명)	없음	있음	기간				χ^2 검증 ¹⁾
				①	②	③	④	
전체	2,498	83.3	16.7	27.0	51.4	12.4	9.1	-
경제 수준	상 ^{a)}	139	92.1	7.9	27.3	45.5	0.0	27.3
	중 ^{b)}	834	88.4	11.6	25.8	57.7	14.4	2.1
	하 ^{c)}	1,525	79.7	20.3	27.4	49.7	12.3	10.6

*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① 1개월 미만, ② 1개월 이상, ③ 1~2년 미만, ④ 2년 이상

3) χ^2 검증은 NEET 여부(있음-없음)에 대한 검증이며 기간별 차이에 대한 검증이 아님.

④ 경제

가. 소득

응답자(또는 응답자 부부)의 월 평균 총 소득은 약 170만 원으로 '22년 청년들의 월 평균소득(365만 원)과 약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표 III-17). 항목별 월 평균 소득은

33) 응답자가 이 문항에서 NEET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라도 앞선 문항에서 구직활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등에 한해서는 NEET 경험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표 III-17. 월 평균 소득(세전)

(단위: 만 원)

구분 ¹⁾		사례 수(명)	평균	표준편차
'23년 시설 퇴소 청년	1. 근로/사업소득 ²⁾	2,471	122.61	119.907
	2. 재산소득 ³⁾	2,477	7.81	32.339
	3. 이전소득 ^{①4)}	2,493	2.98	14.304
	4. 이전소득 ^{②5)}	2,493	38.49	39.600
	5. 월 평균 총 소득	2,413	170.39	132.733
'22년 청년(29세 이하) ⁶⁾ 월 평균 총 소득		385,070	365.10	237.024

* 주: 1) 배우자가 있는 경우 본인, 배우자 합산 소득기준

2)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 중 순소득기준(총 매출에서 사업비용 제외)

3) 이자소득 등(대출이자 제외)

4) 비동거가족이 지원하는 현금(현물 환산가 포함)

5) 국가, 지자체, 기관/시설 등이 지원하는 현금(현물 환산가 포함, 코로나 19 지원금 제외)

6) '22년 청년 자료의 결괏값은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정세정 외, 2022) 원자료에 제시된 가중치율을 적용한 값이며 청년(개인) 소득임.

근로/사업소득 약 122만 원, 가족으로부터의 지원 약 3만 원, 국가와 지자체, 시설/기관 등 가족을 제외한 외부의 지원 약 38만 원이었다.

나. 지출

저축성 지출을 제외한 응답자의 월 평균 총 생활비는 약 116만 원으로, 지출액이 상대적

표 III-18. 월 평균 지출

(단위: 만 원)

구분	사례 수(명)	평균	표준편차
1. 식비 ¹⁾	2,496	38.25	28.480
2. 주거비(월세)	2,496	13.41	17.336
3. 주거관리비 ²⁾	2,494	8.38	8.328
4. 통신비	2,498	9.58	10.083
5. 교통비	2,496	8.17	11.533
6. 오락문화비	2,497	12.40	15.650
7. 비동거가족 지원비 ³⁾	2,496	2.72	9.351
9. 기타 생활비 ⁴⁾	2,496	18.92	23.602
10. 저축	2,476	28.57	42.875
11. 총 생활비	2,486	115.99	70.187

* 주: 1) 주·부식비, 외식·간식비 포함

2) 일반관리비, 전기비, 가스비, 상하수도 요금 포함

3) 용돈, 생활비(현물 환산가 포함)

4) 생활용품, 피복비 등(재산 증식을 위한 지출, 보험료, 대출원금 및 이자 제외)

5) 저축(보험, 연금 등)을 제외한 1~9 항목 합계

으로 가장 큰 항목은 식비로 약 38만 원이었다. 그 다음은 기타 생활비(약 19만 원), 주거비(약 13만 원) 오락문화비(약 12만 원), 통신비(약 10만 원), 주거관리비(약 8만 원), 교통비(약 8만 원), 비동거가족에 대한 지원비(약 3만 원) 순이었다. 이와 함께 시설퇴소청년들의 월 평균 저축액은 약 29만 원이었다(표 III-18).

다. 채무

현재 채무(빚, 대출)가 있다는 응답률은 36.4%로 '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 참여한 29세 이하 청년들 중 채무액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16.3%)³⁴⁾보다도 20.1%p 높았고 채무액 평균도 약 1,366만 원으로 일반청년의 개인 채무액 평균(약 514만 원)보다 약 852만 원가량 많았다(표 III-19). 채무 발생 사유별로 액수가 가장 많은 항목은 주거비(약 631만 원)였으며 그 다음으로 생활비(약 246만 원), 기타(약 178만 원), 학자금(약 162만 원), 범죄 피해로 인한 채무(약 94만 원), 가족의 빚을 넘겨받거나 내 명의의 빚(약 85만 원), 창업 자금 마련(약 32만 원) 등의 순이었다.

한편 시설퇴소청년들 가운데 '금융채무불이행자'에 해당한다는 응답률은 16.2%로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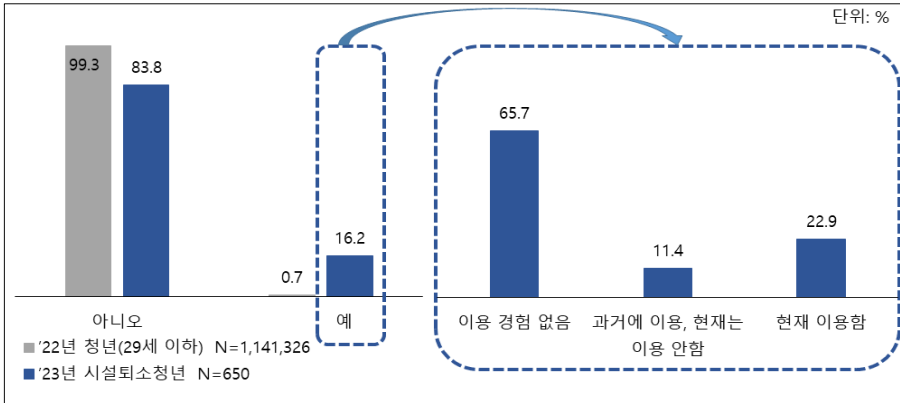
표 III-19. 채무(빚, 대출) 액수

(단위: %, 만 원)

구분	채무여부		항목	사례 수(명)	평균	표준편차
	없음	있음				
시설 퇴소 청년	63.6	36.4	1. 학자금	907	162.94	403.858
			2. 주거비	909	631.03	2,701.984
			3. 생활비 ¹⁾	906	246.27	508.464
			4. 창업 자금 마련	909	31.70	586.589
			5. 내 명의의 가족 빚	909	85.39	492.196
			6. 범죄 피해 ²⁾	908	93.97	543.318
			7. 기타 채무 ³⁾	906	178.08	599.632
			8. 합계	898	1,366.31	2,504.220
'22년 청년 ⁴⁾	83.7	16.3	채무 합계	6,996,219	513.96	2,307.494

* 주: 1) 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햇살론, 유스대출 포함)
2) 보이스피싱, 명의 도용, 소액 결제 등
3) 주식, 가상자산 투자 목적의 채무 포함
4) '22년 청년 자료의 결괏값은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정세정 외, 2022) 원자료에 제시된 가중치율을 적용한 값이며 청년(개인) 부채임.

34)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정세정 외, 2022) 원자료 중 29세 이하 청년만을 대상으로 가중치율을 적용한 후 재분석한 수치이다.



* 주: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여부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임.

그림 III-6. 금융채무불이행 여부 및 신용회복 지원제도 이용 여부

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 참여한 29세 이하 청년들의 금융채무불이행자 비율(0.7%)³⁵⁾보다 매우 높은 수치이다. 시설퇴소청년 응답자 중 신용불량자임에도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이용한 적이 없다는 응답률이 과반을 넘었고(65.7%), 현재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률은 22.9%에 불과하였으며, 과거에는 이용한 적이 있지만 현재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률은 11.4%였다(그림 III-6).

⑤ 주거

가. 주거 유형 경험

시설퇴소청년 응답자 중 27.3%는 최근 1년간 집이 아닌 곳에서 한 달 이상 살았던 경험이 있었다. 그 중 1개 장소를 이용한 경우는 18.7%, 2개 장소를 이용한 경우는 6.0%, 3개 이상의 장소에서 각각 한 달 이상 지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2.6%에 이르렀다. 전체 시설퇴소청년들 중 최근 1년 간 비적정 주거 공간 및 시설 등에서 한 달 이상 거주한 적이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표 III-20), 일터의 일부 공간을 이용한 적이 있는 경우는 7.6%, 고시원은 5.0%, 노숙 및 비숙박용 다중이용업소는 3.2%에 달하여 '22년 일반청년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불안정한 거주 상황을 경험하였음을 시사한다. 특히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들의 거주상황은 타 시설 퇴소청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하였다.

35)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정세정 외, 2022) 원자료 중 29세 이하 청년만을 대상으로 가중치율을 적용한 후 재분석한 수치이다.

표 III-20. 최근 1년간 집이 아닌 장소에서 한 달 이상 생활한 청년들의 거주지(중복응답)

(단위: %)

구분	'22년 청년 (29세 이하) ³⁾ (N=6,996,219)	'23년 시설퇴소청년(N=2,498)			
		전체	아동시설	청소년시설	보호시설
노숙 및 비숙박용 다중이용업소 ¹⁾	0.2	3.2	1.9	7.0	6.0
쪽방	0.1	1.0	0.8	2.2	0.0
고시원	0.7	5.0	2.0	15.9	1.7
여관·여인숙	0.1	1.4	1.1	2.5	1.7
일터의 일부 공간	0.5	7.6	5.6	13.7	10.3
시설(양육시설, 그룹홈, 쉼터 등)	0.0	13.6	8.5	31.6	8.5
자립지원기관 ²⁾	-	9.7	7.4	15.0	20.5

* 주: 1) 비숙박용 다중이용업소는 PC방, 만화방, 찜질방 등을 말함

2) 자립지원기관은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자립생활관, 희망디딤돌 센터 등을 말하며 '22년 청년 대상 조사에서는 해당 항목이 없음.

3) '22년 청년 자료의 결측값은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정세정 외, 2022) 원자료에 제시된 가중치율을 적용한 값임.

나. 현재 주거 여건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점유형태에서 일반청년들은 자가(59.3%), 보증금이 있는 월세(19.3%), 전세(17.6%) 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시설퇴소청년들은 전세(42.0%), 보증금이 있는 월세(31.1%), 무상거주(12.5%) 등의 순으로 나타나(표 III-21), 자가 비율이

표 III-21.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점유형태

(단위: %)

구분	'22년 청년 (29세 이하) ³⁾	'23년 시설 퇴소청년	퇴소시설			χ^2 검증 ¹⁾
			아동시설	청소년시설	보호시설	
사례 수(명)	6,996,219	2,498	1,827	554	117	217.262 ***
자가(본인이나 가족 소유)	59.3	10.0	9.1	10.6	21.4	
전세	17.6	42.0	50.0	22.2	10.3	
보증금 있는 월세	19.3	31.1	28.1	39.0	41.9	
보증금 없는 월세	1.1	3.2	2.3	5.4	7.7	
연세	0.8	0.9	0.7	1.8	0.9	
일세	0.0	0.2	0.2	0.2	0.9	
무상거주	0.9	12.5	9.7	20.8	17.1	

* 주: 1) * $p < .05$, ** $p < .01$, *** $p < .001$ (퇴소시설 유형별 차이에 대한 검증임.)

2) '22년 청년 자료의 결측값은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정세정 외, 2022) 원자료에 제시된 가중치율을 적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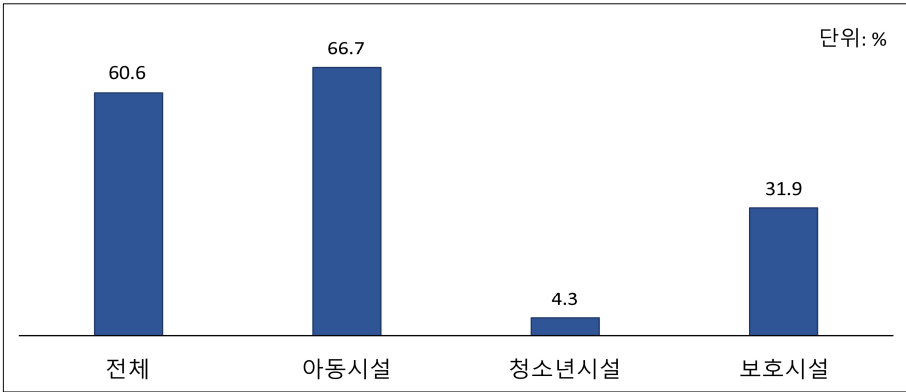


그림 III-7. LH 등의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지 마련

현저히 낮고, 전세 및 월세, 무상거주 등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아동복지시설 퇴소청년들은 전세가 50.0%로 가장 많은 것에 비해 청소년시설 및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의 경우는 월세 및 무상거주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청소년시설 및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들의 주거 상태가 일반청년은 물론 아동복지시설 퇴소청년들에 비해서도 불안정한 상황임을 시사한다.

LH 등의 지원(주거지원통합서비스 등)으로 현재 주거지를 마련한 경우는 60.6%로 아동시설 퇴소청년(66.7%)에 비해 청소년시설(4.3%) 및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들(31.9%)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그림 III-7). 이러한 결과는 앞서 주택 점유 형태에 대한 응답과 종합해 볼 때 청소년시설 및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들이 주거마련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고충을 겪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표 III-22. 경제적 이유로 임대 관련 어려움 경험률

(단위: %)

구분	'22년 청년(29세 이하)1) N=6,996,219	'23년 시설퇴소청년 N=2,498
2개월 이상 월세 연체	1.6	12.2
3개월 이상 공과금이나 관리비 연체	1.1	13.5
3개월 이상 주택담보대출 이자 또는 원리금 연체	0.5	4.5
이사 또는 계약 갱신에 필요한 임대보증금 부족	3.9	9.1
보증금이나 월세를 5% 이상 인상해 달라는 요구를 받거나, 재계약 요구를 거절당함	0.9	3.4

* 주: '22년 청년 자료의 결괏값은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정세정 외, 2022) 원자료에 제시된 가중치율을 적용함.

시설퇴소청년들은 일반청년들에 비해 경제적 이유로 인해 임대 관련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특히 3개월 이상 공과금이나 관리비가 연체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은 13.5%로 일반청년에 비해 12배 이상 많았고 2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한 적이 있거나 3개월 이상 주택담보대출 이자 또는 원리금을 연체한 비율도 일반청년에 비해 7~9배 이상 높았다(표 III-22). 이는 시설퇴소청년이 주거 자립을 하는데 있어 경제적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한다.

다. 주거지원 제도

정부의 주거지원 제도와 관련하여 시설퇴소청년 중 14.3%는 주거급여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의 주거지원제도를, 16.6%는 청년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 제도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주택마련지원 제도 이용경험은 11.1%, 주택금융 이용경험은 7.4% 수준이었다(표 III-23). 이러한 주거지원 제도는 특히 수도권 지역의 청년들에게서 주거지원제도 이용률이 높아 비수도권 지역에서 지원제도의 활용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

표 III-23. 주거지원 제도 이용 경험

(단위: %)

구분	사례 수(명)	이용경험 있음	이용경험 없음	χ^2 검증 ¹⁾
주거지원제도 ²⁾	전체	2,498	14.3	85.7
	아동시설	1,827	12.9	87.1
	청소년시설	554	19.7	80.3
	보호시설	117	10.3	89.7
청년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	전체	2,498	16.6	83.4
	수도권	1,061	19.6	80.4
	비수도권	1,437	14.4	85.6
주택금융 ³⁾	전체	2,498	7.4	92.6
	수도권	1,061	9.3	90.7
	비수도권	1,437	6.1	93.9
주택마련지원 ⁴⁾	전체	2,498	11.1	88.9
	수도권	1,061	13.7	86.3
	비수도권	1,437	9.2	90.8

*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주거지원제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취약 주거지 개선 등

3) 주택금융: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등

4) 주택마련지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혼희망타운, 공공자가주택, 민영주택 특별공급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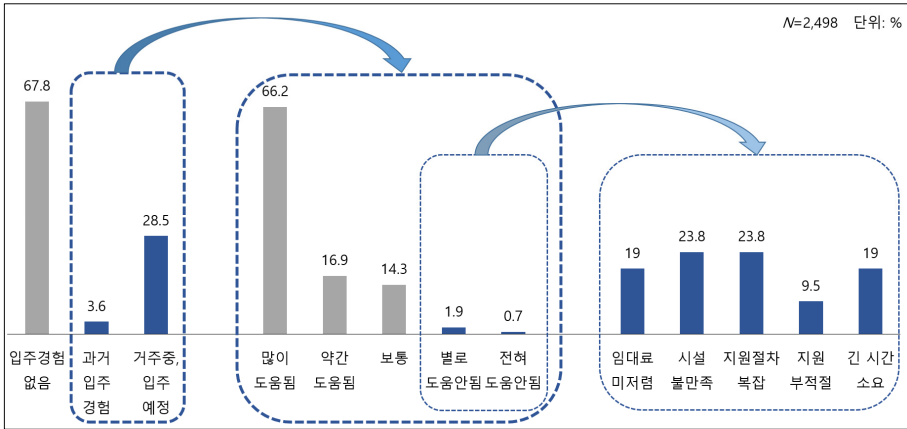


그림 III-8. 정부지원 주택 입주 경험 및 도움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

한 것은 아닌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정부지원 주택에 입주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32.2%는 현재 거주 중(혹은 입주 예정)이거나 과거에 입주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그림 III-8). 이러한 정부지원 주택지원사업이 시설퇴소청년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살펴본 결과, 약간 또는 많이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전체의 83.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주택지원사업이 시설퇴소청년의 주거안정에 효과적인 제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 일부이긴 하나 정부지원 주택지원사업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시설퇴소청년들의 이유를 살펴보면 주택의 시설이나 질이 만족스럽지 않고(23.8%), 지원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23.8%)이라는 응답률이 높아 임대주택의 시설 개선 및 지원 절차의 간소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⑥ 건강 및 심리정서

가. 건강검진

설문조사에 참여한 시설퇴소청년 중 최근 2년간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56.4%, 최근 1년간 구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53%였다(표 III-24). 국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매 2년마다 받을 수 있음에도 검진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건강관리에 소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시설퇴소청년들은 가족의 지원 없이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경우가 많은 만큼 건강검진에 보다 적극적인 필요가 있다.

표 III-24. 최근 2년간 건강검진 및 최근 1년간 구강검진 경험 여부

(단위: %)

구분	사례 수(명)	건강검진			구강검진		
		있다	없다	χ^2 검증 ¹⁾	있다	없다	χ^2 검증 ¹⁾
전체	2,498	56.4	43.6	-	53.0	47.0	47.0
퇴소 시설	아동시설 ^a	1,827	56.3	6.552 *	55.6	44.4	22.484 ***
	청소년시설 ^b	554	59.0		47.7	52.3	
	보호시설 ^c	117	46.2		37.6	62.4	
경제 수준	상 ^a	139	69.8	27.892 ***	66.2	33.8	15.090 **
	중 ^b	834	61.4		55.3	44.7	
	하 ^c	1,525	52.5		50.6	49.4	

* 주: * $p < .05$, ** $p < .01$, *** $p < .001$

나. 식생활

하루 식사 횟수를 살펴보면 3끼를 모두 챙겨먹는 이들은 15.2%에 지나지 않았으며 더 나아가 10명 중 1명 이상이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명 중 한 명꼴로 식사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식사를 통해 제공받는 영양에 균형이 잡혀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최근 1년간 식비 부족으로 식사량이 줄거나 식사를 거른 적이 있다는 응답도 43.4%로 나타나 식사를 통한 영양 공급에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한다(그림 III-9).

이들의 식생활을 경제적 수준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경제적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이들이 일일 식사 횟수가 적거나 균형 잡힌 식사 부족, 식비 부족 등을 경험한 비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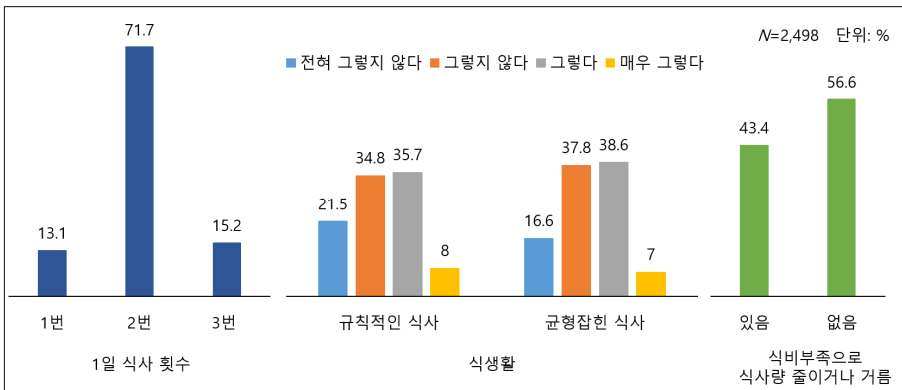


그림 III-9. 1일 식사 횟수 및 식생활 행태

표 III-25. 경제적 수준에 따른 식생활 실태

(단위: %, 점)

구분	전체	경제적 수준			χ^2 검증 ¹⁾
		상	중	하	
사례 수(명)	2,498	139	834	1,525	-
일일 식사 횟수	1회	13.1	8.6	10.9	19.588**
	2회	71.7	68.3	71.9	
	3회 이상	15.2	23.0	17.1	
식비 부족	예	43.4	20.9	29.3	156.044***
	아니오	56.6	79.1	70.7	
구분	평균(표준편차)				t/F 검증 ¹⁾
	전체	상 ^a	중 ^b	하 ^c	
규칙적인 식사시간	2.30(0.895)	2.52(0.904)	2.45(0.900)	2.20(0.877)	25.298*** c(b,a)
식사의 영양	2.36(0.839)	2.63(0.819)	2.50(0.819)	2.26(0.835)	31.479*** c(b,a)

* 주: * $p < .05$, ** $p < .01$, *** $p < .001$

높았다(표 III-25). 이에 시설퇴소청년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식습관 형성 및 영양 섭취를 위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 신체활동

평소 건강관리를 위해 일주일에 3번 이상 운동을 하는 경우는 29.4%였으며 일주일에 1번 미만으로 운동을 한다는 응답은 37.8%로 나타났다. 일반청년과 비교해 볼 때 시설퇴소청년들이 일주일에 3번 이상 운동을 하는 경우가 다소 적었으며 시설퇴소청년들 내

표 III-26. 평소 운동 횟수(일주일 기준)

(단위: %)

구분	사례 수(명)	①	②	③	④	χ^2 검증 ¹⁾
'22년 청년(29세 이하)	6,996,219	38.2	28.4	21.6	11.7	-
'23년 시설퇴소청년	2,498	37.8	32.8	19.5	9.9	-
성별	남자	1,217	30.6	32.5	23.4	83.177***
	여자	1,281	44.6	33.2	15.8	

*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① 일주일에 1번 미만, ② 일주일에 1~2번, ③ 일주일에 3~4번, ④ 일주일에 5번 이상

3) '22년 청년 자료의 결괏값은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정세정 외, 2022) 원자료에 제시된 가중치율을 적용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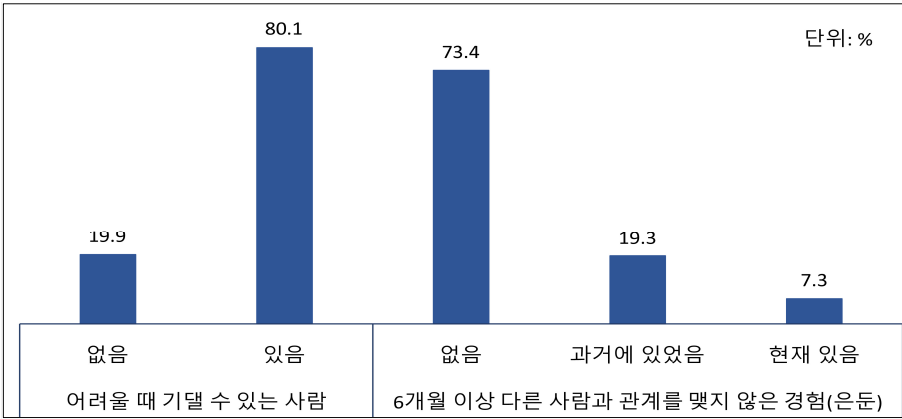


그림 Ⅲ-10. 고립·은둔 경험

집단별 차이를 보면 남자보다는 여자에게서 운동 횟수가 주 1번 미만이라는 응답률이 높았다(표 Ⅲ-26). 주 1회 미만 운동을 한 이들을 대상으로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귀찮아서”라는 응답이 37.1%로 가장 많았으며 “시간이 없어서”가 22.3%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비용에 대한 부담을 언급한 경우도 19.9%로 나타났다.

라. 고립·은둔

시설퇴소청년들에게 아는 사람들 중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기댈 수 있고 자신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응답은 19.9%였다(그림 Ⅲ-10). 또한 현재까지 6개월 이상 특별한 이유(학업, 업무, 장애 및 건강문제, 출산, 육아 등) 없이 방이나 집에서 주로 머물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거의 맺지 않은 채 생활한 경험에 대해서는

표 Ⅲ-27. 고립감 정도

(단위: 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F검증 ¹⁾
'23년 청년(29세 이하) ²⁾		1,433	1.30	0.515	-26.019***
'23년 시설퇴소청년		2,498	1.89	0.906	
퇴소 시설	아동시설 ^a	1,827	1.79	0.852	52.374*** b)a,c
	청소년시설 ^b	554	2.23	0.993	
	보호시설 ^c	117	1.86	0.913	

*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23년 청년 자료의 결락값은 2023년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조사(김기현 외, 2023)에 참여한 29세 이하 청년들이 응답한 수치임.

7.3%가 현재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그 중 45.1%였다(그림 III-10).

고립감과 관련하여 4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4점: 항상 그렇다) 4문항에 대한 평균점수를 바탕으로 시설퇴소청년들의 고립감 정도를 살펴보았다. 전체 시설퇴소청년 응답자의 고립감 평균은 1.89점이며 일반청년들(평균 1.30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평균값이 높았고 특히 청소년시설 퇴소청년에게서 그 값이 높았다(표 III-27).

마. 우울

우울 증상 유무³⁶⁾를 살펴본 결과 시설퇴소청년 중 24.5%로 일반청년(5.9%)보다 약 4배 이상 많았다. 시설퇴소청년들 내 집단별 차이를 보면 남자보다는 여자에게서,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청소년시설-보호시설-아동시설 순으로 우울 증상이 나타나는 비율이 높았다. 특히 청소년시설 퇴소자의 경우 우울증상을 지닌 경우가 41.2%로 나타나 조속한 대처가 마련될 필요가 있는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표 III-28).

표 III-28. 우울증상 유무

(단위: %)

구분		사례 수(명)	없음	있음	χ^2 검증 ¹⁾
'22년 청년(29세 이하) ²⁾		6,996,219	94.1	5.9	-
'23년 시설퇴소청년		2,498	75.5	24.5	-
성별	남자	1,217	78.8	21.2	14.296***
	여자	1,281	72.3	27.7	
퇴소 시설	아동시설 ^a	1,827	81.0	19.0	115.525***
	청소년시설 ^b	554	58.8	41.2	
	보호시설 ^c	117	68.4	31.6	
경제 수준	상 ^a	139	89.9	10.1	81.982***
	중 ^b	834	84.3	15.7	
	하 ^c	1,525	69.3	30.7	

*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22년 청년 자료의 결맞음은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정세정 외, 2022) 원자료에 제시된 가중치율을 적용한 수치임.

36) 우울에 대한 9개 문항(문 49)의 총점(27점)이 10점 이상인 경우는 우울증상 있음에 해당한다.

표 III-29. 삶의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사례 수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t/F 검증 ¹⁾			
													평균	표준 편차	유의도	
'22년 청년 (29세 이하) ³⁾		6,996,219	0.7	0.7	1.8	3.9	4.5	13.0	14.6	23.6	21.4	9.3	6.4	6.71	1.956	-
'23년 시설퇴소 청년		2,498	6.6	2.8	8.1	10.1	7.9	28.1	9.4	12.0	8.2	2.5	4.4	4.93	2.473	-
퇴소 시설	아동 ^a	1,827	5.1	2.4	7.3	9.7	7.6	29.1	9.4	13.2	8.9	2.7	4.6	5.13	2.405	24.931 *** b<c,a
	청소년 ^b	554	11.0	4.3	11.2	11.2	9.0	23.8	9.7	9.2	6.5	1.4	2.5	4.29	2.531	
	보호 ^c	117	8.5	2.6	6.0	12.0	6.8	32.5	7.7	6.0	4.3	3.4	10.3	4.96	2.740	

*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⑤ 보통 → ⑩ 매우 만족한다

3) '22년 청년 자료의 결측값은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정세정 외, 2022) 원자료에 제시된 가중치율 을 적용한 수치임.

바. 삶의 만족도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 결과를 보면 평균 점수가 10점 만점에 4.93으로 지난 1차 년도 결과(4.99점)에 이어 올해도 중간값인 5점에 미치지 못하였다. 일반청년들의 경우 삶의 만족도 평균값이 6.71점인 것과 비교해 볼 때 시설퇴소청년, 특히 청소년시설 퇴소자 에게서 삶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표 III-29).

사. 정신건강 치료·상담

응답자의 13.1%는 최근 1년간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가의 상담(진료)이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일반청년들의 응답률(2.7%)에 비해 매우 높은

표 III-30. 최근 1년간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경험

(단위: %)

구분		사례 수(명)	①	②	③	χ^2 검증 ¹⁾
'22년 청년(29세 이하) ³⁾		6,996,219	2.7	47.5	49.8	-
'23년 시설퇴소청년		2,498	13.1	70.8	16.1	-
퇴소 시설	아동시설 ^a	1,827	10.5	71.6	17.8	54.643***
	청소년시설 ^b	554	21.7	66.8	11.6	
	보호시설 ^c	117	12.8	76.1	11.1	

*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① 있다, ② 없다, ③ 전문가의 상담(진료)이 필요한 적이 없었다

3) '22년 청년 자료의 결측값은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정세정 외, 2022) 원자료에 제시된 가중치율 을 적용한 수치임.

표 III-31.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미납 또는 연체 경험

(단위: %)

구분		사례 수(명)	있다	없다	χ^2 검증 ¹⁾
'23년 시설퇴소청년		2,498	9.9	90.1	-
퇴소 시설	아동시설 ^a	1,827	7.7	92.3	35.984***
	청소년시설 ^b	554	15.9	84.1	
	보호시설 ^c	117	15.4	84.6	

*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22년 청년 자료의 결측값은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정세정 외, 2022) 원자료에 제시된 가중치율을 적용한 수치임.

수치이다(표 III-30). 다만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할 때 받았다는 응답이 70.8%로 나타난 것은 이들의 필요에 따른 개입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주된 이유로는 비용에 대한 부담감(44.3%)이 가장 높았으며 이는 일반청년의 28.6%에 비해서도 15.7%p나 높은 수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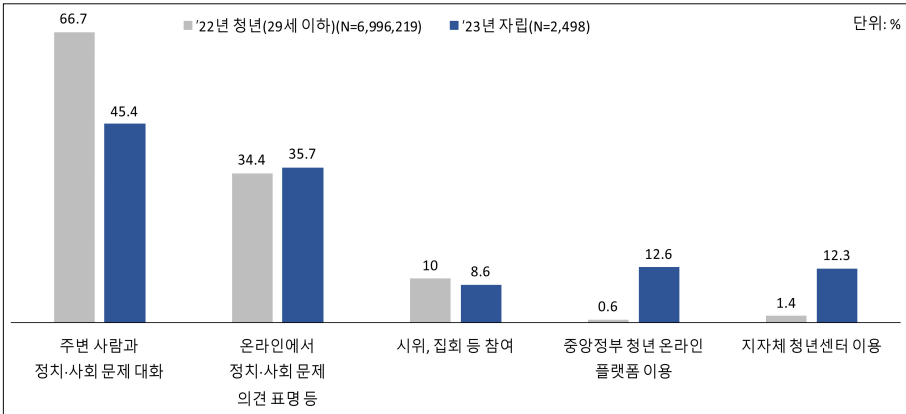
아. 건강보험료 납부 현황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미납 또는 연체(밀리)를 한 적이 있는지 알아 본 결과, 약 10명 중 1명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은 아동시설 퇴소청년보다는 청소년시설이나 보호시설 퇴소청년에게서 높았다(표 III-31).

⑦ 참여 및 사회·미래인식

가. 정치·사회활동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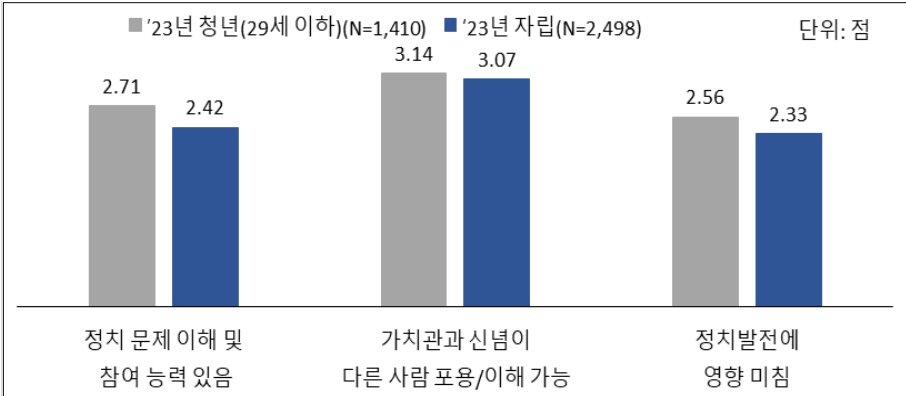
온라인 등에 의견제시나 공유, 시위·집회 참석 등의 정도에서는 시설퇴소청년들과 일반 청년들 간에 경험률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으나 정치·사회문제에 대해 주변사람들과 얘기하는 비율에서는 시설퇴소청년들(45.4%)의 경험률이 '22년 일반청년들(66.7%)에 비해 낮았다(그림 III-11). 청년 활동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청년 온라인 플랫폼(온라인청년센터, 청년포털 등) 접속 및 상담, 참여에 대한 경험과 지자체 청년센터(청년공간) 활동 및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경험 모두에서는 시설퇴소청년들의 경험률이 '23년 일반청년들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일부 시설퇴소청년들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나 활동 등에서 일반청년들보다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참여율이나 참여 횟수가 저조하여 청년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주: 1) '22년 청년 자료의 결괏값은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정세정 외, 2022) 원자료에 제시된 가중치율을 적용한 수치임.
2) '23년 청년 자료의 결괏값은 2023년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조사(김기현 외, 2023)에 참여한 29세 이하 청년들의 응답에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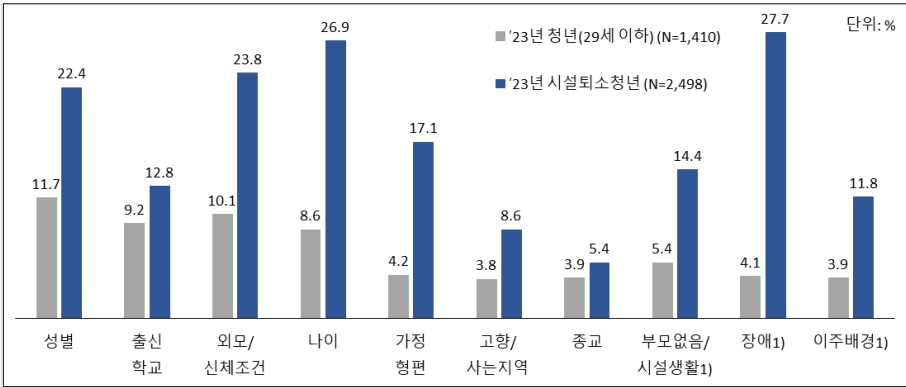
그림 III-11. 청년 활동 참여율

한편 사회참여에 대한 효능감 정도를 살펴본 결과, 시설퇴소청년들은 '22년 일반청년들에 비해 모든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 점수를 보였다(그림 III-12). 정책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시설퇴소청년들은 사회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사회 안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냄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가질 수 있고 개인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의 권리 확보와도 긴밀하게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에 시설퇴소



* 주: '23년 청년 자료의 결괏값은 2023년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조사(김기현 외, 2023)에 참여한 29세 이하 청년들의 응답에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그림 III-12. 참여 효능감



* 주: 1) 해당자만 응답

2) '23년 청년 자료의 결괏값은 2023년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조사(김기현 외, 2023)에 참여한 29세 이하 청년들의 응답에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그림 III-13. 다양한 이유에 따른 차별 경험률

청년들의 참여행동 고취 및 효능감 제고를 통해 건전한 시민으로서 사회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나. 차별 경험 및 존중 정도

최근 1년간 주위사람들로부터 여러 이유로 차별 경험을 당한 적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 시설퇴소청년들은 일반 청년들에 비해 장애, 나이, 외모·신체조건, 성별 등에 따른 차별 경험률이 높았다(그림 III-13). 표나 그림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시설퇴소청년들이 성별이나 외모, 나이에 따른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률은 남자(각각 16.5%, 20.2%, 24.1%) 보다는 여자(각각 28%, 27%, 29.7%)에게서 높았다. 또한 경제수준이 '하'인 집단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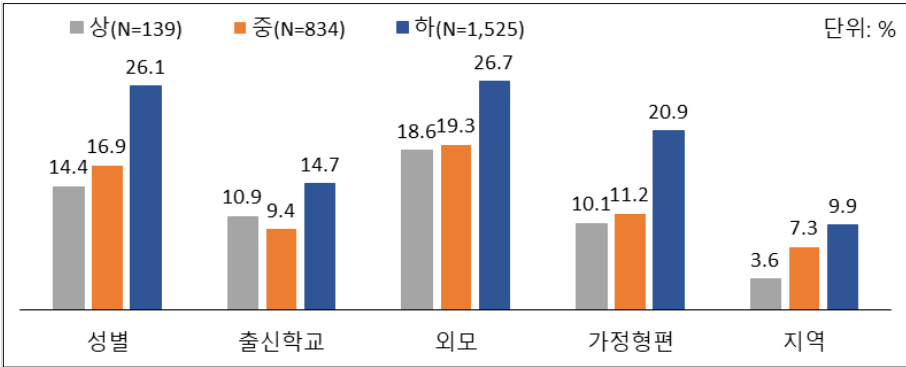


그림 III-14. 시설퇴소청년들의 경제수준별 다양한 이유에 따른 차별 경험률

성별, 출신학교, 외모, 가정형편, 지역에 따른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률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높았다(그림 III-14). 결국 시설퇴소청년들은 다양한 이유로 차별을 경험하지만 여성이거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그 경험률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취약성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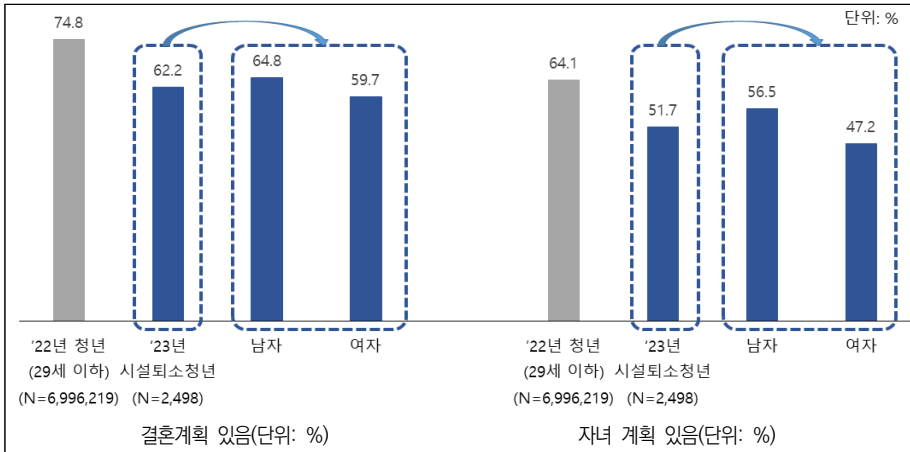
시설퇴소청년들이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자신의 인권을 어느 정도가 존중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알아 본 결과, 모든 항목에서 중앙값인 2.5점을 넘겨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표 III-32). 다만 우리나라 전체로부터 (전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응답률 29.2%)이 가정·학교·직장에서 존중받지 못한다는 응답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서 이들의 위치를 짐작케 한다. 또한 이러한 응답을 '23년 29세 이하 일반청년들의 응답과 비교해 볼 때 시설퇴소청년들은 사이버 공간을 제외하고 가정, 학교, 직장, 나라에서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점을 보임으로써 인권을 존중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차별 경험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단순히 개인적 인식의 차이를 넘어 실제로 인권 존중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시설퇴소청년

표 III-32. 각 영역에서 자신의 인권을 존중받는 정도

(단위: %, 점)

문항	구분	사례 수(명) ³⁾	①	②	③	④	t/F 검증 ¹⁾		유의도
							평균	표준편차	
가정	'23년 청년 ⁴⁾	1,410	0.3	2.2	57.7	39.8	3.37	0.542	237.528 ***
	'23년 시설퇴소청년	1,359	5.4	6.4	27.7	14.9	2.96	0.888	
학교	'23년 청년 ⁴⁾	851	0.2	5.4	69.82	24.5	3.19	0.524	10.739 **
	'23년 시설퇴소청년	1,231	1.7	4.3	30	13.2	3.11	0.695	
직장	'23년 청년 ⁴⁾	981	0.6	8.5	69.2	21.7	3.12	0.557	7.886 **
	'23년 시설퇴소청년	1,568	2.1	7.2	38.2	15.3	3.06	0.698	
나라 전체	'23년 청년 ⁴⁾	1,410	0.8	16.7	69.1	13.5	2.95	0.575	114.103 ***
	'23년 시설퇴소청년	2,498	11.1	18.1	59.5	11.2	2.71	0.809	
사이버 공간	'23년 청년 ⁴⁾	1,410	5.6	32.1	53.6	8.7	2.65	0.716	0.038
	'23년 시설퇴소청년	2,498	14.2	18.1	56.5	11.2	2.65	0.858	

* 주: 1) * $p < .05$, ** $p < .01$, *** $p < .001$ (통계 검증 시 가중치 적용하지 않음.)
 2) ①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② 존중받지 못한다, ③ 존중 받는다, ④ 매우 존중 받는다
 3) 가정, 학교, 직장의 사례 수는 "④ 해당 없음" 응답자를 제외한 수임.
 4) '23년 청년 자료의 결괏값은 2023년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조사(김기현 외, 2023)에 참여한 29세 이하 청년들의 응답에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 주: '22년 청년 자료의 결함값은 2022년 청년살 실태조사(정세정 외, 2022) 원자료에 제시된 가중치율 을 적용한 수치임.

그림 III-15. 향후 결혼 및 자녀 계획

들이 실제 사회에서 다양하게 부딪힐 수 있는 인권 문제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미래계획

향후 결혼 및 자녀를 가질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시설외소청년 중 있다는 응답은 각각 62.2%와 51.7%로 나타났다(그림 III-15). 이러한 결과는 '22년 일반청년들의 응답률과 비교해 볼 때 다소 낮은 응답률로 그만큼 시설외소청년들이 결혼이나 자녀 출산 및 양육을 생각할 만큼 녹록한 삶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여자 청년들의 응답률이 낮았는데 이는 시설외소 여부를 떠나서 현재 우리나라 여자 청년들의 결혼 및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의지가 그다지 크지 않은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2) 1차 년도 실태조사-행정데이터 가명정보 결합 분석

(1) 조사개요

시설외소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분절적 지원과 신청주의에 기반한 지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배제와 불평등을 포함, 정책소의 실태를 확인하고자 행정데이터 가명정보 결합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명정보 결합 분석에 활용된 데이터는 2022년 수행한 시설외소 자립준비청년 생활 실태조사의 1차 년도 데이터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행복e음, 사회복지시설정보

시스템) 이다. 일련의 가명처리 과정³⁷⁾을 거쳐 결합된 데이터 중 시설폐소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사회보장정보, 사회복지시설 정보) 내 데이터 중 중복 데이터를 삭제하고, 식별가능성이 있는 변수를 삭제, 대체, 상단코딩 등의 방식으로 처리하여 총 1,733명의 자료를 최종 결합하였다.

(2) 분석 결과

① 사회보장제도 이용 여부에 대한 정합성 분석

가. 생계급여³⁸⁾

시설폐소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에서 공적이전소득 여부와 생계급여 수급여부를 단순 비교한 결과, 수급경험 여부가 일치한 경우는 약 62.8%(둘 다 수급경험 있음 24.4%+둘 다 수급경험 없음 38.4%)였다. 생계급여 수급경험이 없어도 공적이전소득을 수급한 경험 이 있다고 응답(29.5%)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생계급여를 수급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이전소득을 수급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생계급여 수급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7.8%였다(표 III-33).

나. 자립수당 수급여부

자립수당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에 자립수당 수급대상으로 입력된 청년 1,159명 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립수당 수혜대상 청년들 중 92% 이상은 자신이 자립수당을

표 III-33. 생계급여 수급여부의 정합성

(단위: 명, %)

구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수급경험 없음	수급경험 있음	전체
실태조사 (공적 이전소득)	수급경험 없음	사례 수	940	191	1,131
		비율	38.4	7.8	46.1
	수급경험 있음	사례 수	722	598	1,320
		비율	29.5	24.4	53.9
	전체	사례 수	1,662	789	2,451
		비율	67.8	32.2	100.0

37) 가명정보처리에 대한 보다 상세한 과정은 세부보고서(협동연구총서 23-88-02)에 서술되어 있다.
 38) 시설폐소 자립준비청년 생활 실태조사(1차년도)에서는 생계급여 수급여부를 별도로 질문하지 않고 정부/지방자치단체/기관/종교단체 등에서 자원받는 생활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생계급여 수급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공적이전소득 여부에 대한 인지 정도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단순 비교하였음을 밝혀둔다.

표 III-34. 자립수당 수급여부

(단위: 명, %)

구분			정보시스템	구분			정보시스템
			수급				수급
실태조사	비수급	사례 수	90	자립지원 담당자	비수급, 모름	사례 수	187
		비율	7.8			비율	16.1
	수급	사례 수	1,069		수급	사례 수	972
		비율	92.2			비율	83.9
	전체	사례 수	1,159		전체	사례 수	1,159
		비율	100.0			비율	100.0

수급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7.8%의 청년들은 자립수당을 받고 있음에도 받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이들을 관리하고 있는 자립지원 담당자들이 청년들의 수급여부를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 약 84%는 수급여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지만 16% 가량의 담당자들은 수급여부를 모르거나 비수급으로 인지하고 있었다(표 III-34).

②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기준에 따른 퇴소시설별 수급여부 및 심리·정서 상태
자립수당의 수급여부에 따른 심리·정서 상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III-35와 같다,

표 III-35. 자립수당 수급여부에 따른 심리·정서 상태 차이

(단위: 명, 점)

구분		사례 수(명)	t/F 검증 ¹⁾		
			평균(점)	표준편차	유의도
건강 상태	미수급	1,292	3.04	0.904	-5.494***
	수급	1,159	3.24	0.939	
우울	미수급	1,292	7.06	6.802	8.017***
	수급	1,159	5.04	5.488	
불안	미수급	1,292	4.50	5.873	7.417***
	수급	1,159	2.90	4.647	
스트레스	미수급	1,292	6.37	2.260	6.150
	수급	1,159	5.80	2.324	
삶의 만족도 : 전반적인 인생	미수급	1,292	4.72	2.656	-5.450**
	수급	1,159	5.28	2.429	
고립감	미수급	1,292	8.89	4.596	6.232***
	수급	1,159	7.81	3.950	
자립성취도	미수급	1,292	14.90	3.245	-2.517
	수급	1,159	15.23	3.223	

주: * $p < .05$, ** $p < .01$, *** $p < .001$

자립수당을 받은 청년들은 그렇지 못한 청년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주관적 건강 상태 및 삶의 만족도가 높고 우울, 불안, 고립감은 낮았다.

자립수당 수급연차에 따라 심리·정서 상태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III-36). 자립수당연차가 높아짐에 따라 대체로 우울, 스트레스, 고립감의 정도가 높아지고 전반적인 인생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졌다. 특히 우울은 자립수당 수급 1년 미만의 청년들에 비해 3년 이상의 청년들에게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III-36. 자립수당연차에 따른 심리·정서 상태 차이(미수급 제외) (단위: 명, 점)

구분		사례 수(명)	F 검증 ¹⁾		
			평균(점)	표준편차	F
우울	1년 미만 ^a	255	4.15	4.898	3.133* d)a
	1년 이상~2년 이하 ^b	323	5.13	5.412	
	2년 이상~3년 이하 ^c	281	5.28	5.478	
	3년 이상 ^d	300	5.49	5.972	
	전체	1,159	5.04	5.488	
스트레스	1년 미만 ^a	255	5.43	2.366	3.015*
	1년 이상~2년 이하 ^b	323	5.81	2.269	
	2년 이상~3년 이하 ^c	281	5.96	2.413	
	3년 이상 ^d	300	5.94	2.235	
	전체	1,159	5.80	2.324	
삶의 만족도: 전반적인 인생	1년 미만 ^a	255	5.81	2.349	6.275*** a)c,d
	1년 이상~2년 이하 ^b	323	5.32	2.395	
	2년 이상~3년 이하 ^c	281	5.07	2.534	
	3년 이상 ^d	300	4.99	2.368	
	전체	1,159	5.28	2.429	
고립감	1년 미만 ^a	255	7.13	3.406	4.012** c,d)a
	1년 이상~2년 이하 ^b	323	7.75	3.723	
	2년 이상~3년 이하 ^c	281	8.21	4.415	
	3년 이상 ^d	300	8.07	4.094	
	전체	1,159	7.81	3.950	
자립성취도 (총점)	1년 미만 ^a	255	14.97	2.937	1.282
	1년 이상~2년 이하 ^b	323	15.19	3.452	
	2년 이상~3년 이하 ^c	281	15.22	3.186	
	3년 이상 ^d	300	15.50	3.230	
	전체	1,159	15.23	3.223	

주: **p* <.05, ***p* <.01, ****p* <.001

또한 자립수당을 2년 이상 수급한 청년들의 경우는 1년 미만인 청년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전반적인 인생에 대한 만족도는 낮고 고립감은 높았다. 따라서 자립 이후 2~3년차에는 심리·정서적인 개입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보호종료 유형에 따라 심리·정서 상태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표 III-37), 중간종료³⁹⁾ 청년들의 우울, 스트레스, 고립감 점수가 가장 높고, 종료시기가 연장⁴⁰⁾될수록 그 점수는 낮아졌다.⁴¹⁾ 마찬가지로 삶의 만족도와 자립성취도는 연장종료청년들이 가장 높

표 III-37. 보호종료 유형에 따른 심리·정서 상태 차이

(단위: 명, 점)

구분		사례 수(명)	F 검증 ¹⁾		
			평균(점)	표준편차	F
우울	중간종료 ^{a)}	34	6.59	6.602	4.850** a)c
	만기종료 ^{b)}	702	5.37	5.720	
	연장종료 ^{c)}	451	4.50	4.950	
	전체	1,187	5.08	5.485	
스트레스	중간종료 ^{a)}	34	6.21	2.293	0.917
	만기종료 ^{b)}	702	5.74	2.328	
	연장종료 ^{c)}	451	5.67	2.184	
	전체	1,187	5.72	2.273	
삶의 만족도: 전반적인 인생	중간종료 ^{a)}	34	4.41	3.125	2.340
	만기종료 ^{b)}	702	5.23	2.471	
	연장종료 ^{c)}	451	5.34	2.339	
	전체	1,187	5.25	2.445	
고립감	중간종료 ^{a)}	34	9.09	4.795	3.818* a)c
	만기종료 ^{b)}	702	7.99	4.031	
	연장종료 ^{c)}	451	7.52	3.549	
	전체	1,187	7.84	3.889	
자립성취도	중간종료 ^{a)}	34	14.26	3.964	2.305
	만기종료 ^{b)}	702	15.40	3.084	
	연장종료 ^{c)}	451	15.44	3.053	
	전체	1,187	15.38	3.104	

주: * $p < .05$, ** $p < .01$, *** $p < .001$

39) 아동양육시설에서 만 18세가 되기 이전에 퇴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40) 아동양육시설에서는 만 18세에 퇴소(만기종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 의사에 따라 만 24세에 달할 때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하고 이후 퇴소할 수 있는데 이를 연장종료라 한다.

41) 본 조사대상자의 중간종료 사유는 전원(38.2%), 원가정복귀(32.4%), 군입대, 무단퇴소, 취업 등(20.6%), 가정보호(8.8%) 등의 순이었다.

고 중간종료 청년들이 가장 낮은 평균을 보인 반면 우울과 고립감은 중간종료 청년들의 평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서 중간종료 청년들은 만기퇴소가 아닌 이상 자립준비청년이 받는 다양한 지원에서 제외되고 사후관리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장종료 청년들의 심리·정서 상태가 상대적으로 가장 양호하다는 결과는 20대라도 자립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질 때까지 시설에서 제공하는 안정적인 보호, 또는 연장종료의 주요 사유가 되는 고등교육의 효과 등 다양한 요인에 따른 긍정적 영향에서 비롯된 것임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안정된 보호를 제공하고 시설퇴소 이후라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3) 면접조사

(1) 조사개요

면접조사에서는 시설퇴소 이후 비교적 성공적으로 자립을 하고 있는 시설퇴소청년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자립과정의 어떻게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인 청년들은 어떤 경험을 하였는지에 주목하면서 자립과정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면접 참여자들은 총 10명으로 현장전문가들로부터 성공사례로 추천받은, 사회참여에 적극적인 자립준비청년들이다(표 III-38). 면접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은 후 사

표 III-38. 면접 참여 청년

연번	이름	성별	출생연도	직업	시설경험
1	A	남	1997	간호사	공동생활가정-양육시설 19년
2	B	여	1991	사회복지사	청소년쉼터, 소년원
3	C	여	1996	캠페이너	아동양육시설 19년
4	D	남	1993	캠페이너	아동양육시설 17년
5	E	여	1999	사회복지사	청소년자립지원관
6	F	여	1993	카페 대표	아동양육시설 3
7	G	남	1997	자립활동가	청소년쉼터 5년
8	H	여	1997	학생	아동양육시설 10년
9	I	남	1996	상담사	소년원 2년
10	J	남	1994	자립활동가	아동양육시설 10년

전회의를 통해 연구자(총 3명)간 연구주제와 면접 방향성 및 내용을 공유하는 과정을 거친 후 2023년 5월부터 6월까지 연구자와 청년들 간에 일대일로 진행하였다. 각 면접은 약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경우에 따라 2차 면접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2) 분석방법

분석방법으로는 근거이론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자료분석은 근거이론 분석의 일반적인 방식에 따라 면접 녹음자료를 축어록으로 작성한 후, 이를 행간(line-by line)으로 면밀하게 읽으면서 개방코딩하였다. 근거이론 연구의 자료분석 단계에 따라 개념과 범주에 대한 지속적 비교방법(constant comparison)을 통해 축코딩(axial coding), 패러다임(paradigm)의 순으로 수행하였다(Strauss & Corbin, 2008).

(3) 연구결과

① 개방코딩과 축코딩 결과

본 연구에서 개방코딩과 축코딩을 통해 도출한 패러다임은 그림 III-16과 같다. 시설을 퇴소한 청년들은 취약함의 교집합 상태에서 약한 뿌리로 지탱하기 힘든 맥락 속에 어렵고 모르는 것투성이의 사회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과 관심 증가로 개선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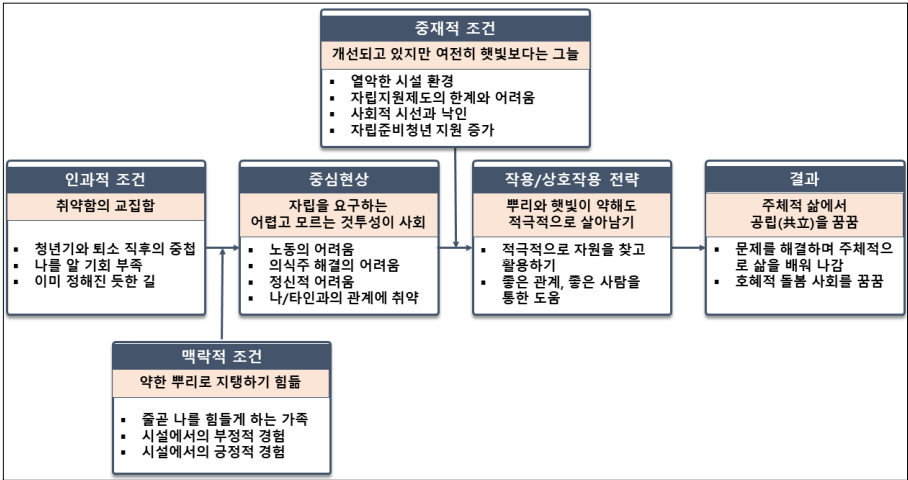


그림 III-16.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정

상황에서 청년들은 뿌리와 햇빛이 약해도 적극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다양한 대처를 하였고, 이를 통해 주체적인 삶을 배워나가면서 혼자 서는 독립적인 자립이 아니라 함께 서는 공립(共立)을 꿈꾸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었다.

가. 인과적 조건

본 연구에서는 중심현상을 이끈 인과적 조건을 ‘취약함의 교집합’으로 표현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3가지 범주로 구성하였다. 첫째는 청년기와 퇴소 직후의 중첩으로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노동시장으로의 진입과 결혼, 출산 등 일반 청년들이 경험하는 여러 과제 뿐 아니라 지금까지 보호받던 시설의 울타리를 벗어나 ‘내던져진’ 듯한 퇴소라는 주요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다중 취약함에 놓이게 됨을 의미한다. 둘째는 자신을 알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이는 선택 기회 부족과 경험 부족에 기인한다. 청년들은 아동·청소년기에 식사 메뉴나 학용품 선택 등 일상에서의 사소한 선택을 통해 학습할 기회가 적고 다양한 경험을 해 볼 기회 역시 충분하지 않아 가정에서 성장한 친구들과 다름을 경험하고 거리감을 느끼기도 하며 퇴소 후에 주거지 선택, 직업 선택 등 매우 크고 중요한 선택과 결정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세 번째 인과적 조건은 이미 길이 정해진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스스로 진로 결정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시설 안에서 다양한 경험이 부족했던 청년들은 진로를 결정하는 상황에서도 주로 시설 선생님이 전공이나 진로를 정해주는 대로 따라가는 등 타인에 의해 진로를 결정하면서 정해진 인생 경로를 간다거나 실패하면 돌아갈 곳 없다는 생각에 진로를 바꾸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면서 미래를 위한 기회가 차단된 듯한 느낌을 갖게 되기도 한다.

나. 맥락적 조건

맥락적 조건으로는 ‘뿌리가 약해서 지탱하기 힘든’ 가족과 시설로 정리될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가족과 자신이 성장했던 시설은 모두 충분히 뺏어나가기 힘든 약한 뿌리였기 때문에 결국 이들은 생존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게 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첫 번째 맥락적 조건인 가족은 성인이 되기 전이나 성인이 된 후 한결같이 청년들을 힘들게 하는 존재이다. 청년들은 성인이 되기 전부터 가정폭력이나 갈등, 수급비 갈취 등의 문제에 노출되거나 가구원 수에 따라 책정되는 생계급여 방식으로 인해 원하지 않게 원가정 복귀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성인이 된 후 에는 자신에게 보호막이 되지 못했던 부모에게 ‘발목이 잡혀’ 역부양을 요구받기도 한다.

두 번째 맥락적 조건인 시설은 긍정적 경험과 부정적 경험을 모두 제공하고 있다. 시설

은 청년들을 보호해준 곳인 동시에 학대와 차별의 경계를 경험하거나, 의견을 표현하기 힘든 단체생활로 인하여 무기력을 학습하고 강화한 곳이기도 하다. 잘못하면 언제든 다른 시설로 보내지는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하기도 한다. 시설에서의 경험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았기 때문에 청년들은 ‘보호 연장’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물론 시설에서의 경험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청년들이 좋은 관계와 좋은 사람을 통해 도움을 주고받는 전략을 사용하게 된 맥락에는 시설에서 청년들을 전방위적으로 보호하고 지지해 준 좋은 사람들을 만난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설 선생님 덕분에 자살위험에서 벗어나고 사람을 신뢰하는 경험을 쌓기도 하였다.

다. 중심현상

면접에 참여했던 자립준비청년에게서 나타난 중심현상은 ‘자립(自立)을 요구하는, 어렵고 모르는 것투성이 사회’로 정리할 수 있다. 현재 비교적 성공적인 자립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립의 과정에서 나타난 중심사건이 ‘어려움’이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청년들이 경험한 어려움은 다음과 같은 4개의 범주로 구성할 수 있었다.

첫째는 노동의 어려움이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열악한 일자리’를 구하게 된다. 열악한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이를 버티지 못하면 또 다른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또한 직장 내 인간관계는 청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요인이었다. 사실 첫 직장생활은 모두에게 어렵다. 그러나 다양한 대인관계 경험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 줄 어른이 없는 자립준비청년들은 조직 생활의 어려움을 개인적 어려움으로 인식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기도 한다. 그 외에도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명절에 일할 것을 요구받는 등 실제로 부당대우를 받거나, 혹은 피해의식으로 인해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부당함을 느끼기도 한다.

둘째는 의식주 해결의 어려움이다. 자립정착금이 적고 자립수당이 없던 시기에 퇴소했던 청년들은 공통으로 생활비 마련을 위해 고생했던 경험을 언급하였다. 또한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서 부동산 사기를 걱정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집주인들을 만나기도 하는 등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 간신히 집을 구했다고 하더라도 청년들에게 월세는 여전히 부담으로 다가오며 미래에 대한 불안을 조성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생존과 관련하여 청년들은 주택청약이나 실손보험에 대해 알지 못하는 등 미래나 위기상황에 대한 대비에도 취약하다.

셋째는 정신건강 측면에서의 취약성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청년들은 아동·청소년기에

자기의 생각과 의사를 표현할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하였고, 이러한 상황이 축적됨에 따라 무기력하거나 자존감이 낮다. 이미 높지 않은 자존감은 시설퇴소 후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을 느끼며 더 낮아지기도 한다. 이러한 정서적 취약함으로 인해 자립준비청년들은 주변의 가스라이팅에도 취약하거나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진단을 받는 등 정신질환을 겪기도 한다.

넷째는 관계에서의 어려움이다. 자립준비청년에게 특히 관계가 어려움으로 부상한 이유는 이들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하는데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자립준비청년임을 공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로 이를 숨기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빈약한 지지체계와 인간관계에 대한 불신 등으로 타인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방식이 서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립준비청년들은 '지속되지 않는' 대인관계에 대해 더 심리적 어려움을 느끼고 더 나아가서는 고립·은둔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보고되었다.

라. 중재적 조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햇빛보다는 그늘’로 표현할 수 있는 중재적 상황은 크게 4개의 범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중재적 조건인 열악한 시설환경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종사자들의 잦은 교체와 서비스의 질 저하, 대규모 시설에서 종사자-아동간의 유대관계 형성의 어려움, 시설 간 서비스의 편차 등의 하위범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자립에 필요한 정보 제공이나 지원이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골고루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로 연결된다.

두 번째 중재적 조건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나 제도, 지원사업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민관 모두에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책 및 지원사업이 다양해지고 있다. 물론 지원의 확대 결과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지만 일부 청년들에게는 찾으려고만 하면 ‘발에서 수확하듯이’ 매우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형성되었다. 이처럼 공적인 영역이나 사적인 영역에서 모두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청년들이 다양한 자원을 찾고 이용하는 상황적 맥락이 형성되었다.

세 번째 중재적 조건은 자립지원제도의 신청이나 이용 과정에서 한계와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정책의 당사자인 청년들이 해당 정책을 모르는 문제, 신청주의에 기반하는 제도에 대한 정보가 산발적으로 흩어져있어 제도에서 배제될 위험, 담당 공무원이 해당 제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 자립정착금이라는 목돈을 받고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문제, 수당에 의존하여 미래를 준비할 기회를 놓치는 문제, 지역 간 자립정착금 격차 문제, 주거지원에서는 주거지 선택의 폭이 좁거나 불충분한 정보 제공 등이 존재한다. 그 외에도 선지급 후지원으로 운영되는 국가장학금 지급방식의 문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에서 부모 동의의 문제, 자립지원 신청과정에서 시설 선생님 간의 관계 문제와 같은 어려움도 존재하였다.

네 번째 중재적 조건은 사회적 시선과 낙인이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더해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시설에서 보호를 받을 때도 심리상담을 받아야 하는 상황은 비난을 동반했고, 시설퇴소 후에도 심리상담이나 정신과 상담은 주변에 숨겨야 하는 사실이 된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청년 당사자들이 느끼기에 캠페인의 내용은 여전히 ‘빈곤 포르노’를 바탕으로 ‘불쌍한’ 이미지를 고착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확대는 다른 청년과의 관계에서 역차별을 조장하는 특혜처럼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면접에 참여했던 청년들은 염려하고 있었다.

마. 작용/상호작용 전략

자립준비청년이 시설퇴소 후 경험한 다양한 어려움을 다루고 조절한 상호작용 전략은 ‘뿌리와 햇빛이 약해도 적극적으로 살아남기’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 전략은 다음과 같은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적극적 자원 찾기이다. 생존이 위협받는 다양한 상황에서 청년들이 수행한 대표적인 전략으로써 적극적으로 공적 지원제도를 이용하고, 여기에서 발생한 부족분은 민간 지원사업으로 채우는 것이다. 두 번째는 좋은 관계와 좋은 사람들을 통해 계속 지지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자조모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였다. 또한 자립준비청년들은 자조모임 외에도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집단과의 만남을 통해 지지집단을 넓혀가기도 했다.

바. 결과

본 연구에서 발견된 결과는 ‘주체적 삶에서 공립(拱立)을 꿈꿈’으로 정리하고 2개의 범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는 주체적으로 삶을 배워나감이다. 이전에 나를 알 기회가 부족했던 청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 다양한 대처하면서 자기에 대해 배워나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온전히 자신의 인생이 되어

감의 과정으로 이행한다. 일례로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하고 자립준비청년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공개하며 자립준비청년이라는 정체성을 뛰어넘어 다른 정체성으로 확장해 나가는 핵심적인 변화를 경험하기도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안정적 일자리를 얻거나 가족관계의 적정선을 조율하는 등 당면했던 문제들을 해결되기도 한다.

두 번째는 호혜적 돌봄 사회를 꿈꾸는 것이다. 시설퇴소 후 직면한 어려움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관계망의 도움을 받았던 청년들은 후배 자립준비청년들을 돕고자 했다. 이와 더불어 청년들이 주변인에 머물러있지 않고 건강한 공동체 사회를 꿈꾸며 기여하는 모습, 누군가에게 의지가 될 만한 사람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결론적으로 면접에 참여했던 청년들에게 자립이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나가기 시작하는 독립의 의미뿐만 아니라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상태로서 상호의존성의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었다. 그런 맥락에서 시설을 퇴소한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과정은 일방적인 수혜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평생에 걸쳐 돕고 돕는 관계를 만들어주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정책지원 과제

1)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은 대부분 원가정의 보호와 지원이 매우 부족한 상태로 교육, 근로, 경제, 주거, 신체 및 정신건강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개인의 자립기반도 매우 취약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일반청년에 비해 이들의 학력은 낮았고 일찍부터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하지만 일자리 상황은 열악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소득이 낮아 경제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부채를 짊어지거나 열악한(때로는 불안정하기까지 한) 주거 상황에 내몰리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하지만 건강행동 수준은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특히 이들 중 상당수는 일반청년에 비해 우울이나 고립감, 자해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고 삶의 만족도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정신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이들은 성별, 출신학교, 외모, 가정형편, 지역 등 여러 영역에서 차별을 경험하거나 향후 결혼이나 자녀 출산·양육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시설퇴소청년들의 생활 실태는 일반 청년들에 비해 전반적인 영역에서 상당히 열악한 측면이 많았는데 특히 청소년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들은 아동복지시설

퇴소청년들에 비해 더 열악한 생활을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처럼 열악한 실태는 이들의 자립을 위해 공적 지원제도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이들에 대한 자립지원은 개인의 자립기반 수준이 아니라 퇴소시설 유형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청소년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들은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들에 비해 퇴소 후 자립지원이 상대적으로 적다. 시설퇴소청년 지원정책이 퇴소 시설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주된 이유는 시설유형별로 주무부처가 나뉘어 있고 제각각의 정책추진 체계가 수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각 부처를 아울러 정책조정 및 총괄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가 정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지원제도는 퇴소시설 유형 간 형평성 문제 외에도 대부분이 신청주의에 기반하여 제도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나 이해능력 등이 부족한 청년들은 지원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된다. 이에 시설퇴소청년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청년들은 그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처럼 시설퇴소 후 지원 내용과 수준에서의 격차는 정책소외대상을 발생시킴으로써 사각 지대 발생 및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게 만든다.

2) 정책지원의 기본 방향 및 과제

(1) 정책지원의 기본 방향

현재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주어진 자립이라는 과업은 성인기로 이행 중인 일반 청년들의 과업과 다르지 않다. 다만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의 경우는 가정이나 주변의 지지체계가 부족하여 그 과업을 달성하는데 상대적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지원정책은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누적되어 온 소외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원정책은 전체 청년정책 안에서 수립될 필요가 있으며 청년정책 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의 정책조정 및 총괄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접근성 및 실효성 높은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 전반에서 당사자들의 참여가 강화되어야 하며 개인 맞춤형 통합적인 지원과 지역 기반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2) 영역별 정책과제

① 교육·훈련 및 고용 영역

시설퇴소청년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학업 중단율과 낮은 대학 진학률, 그리고 주도적이지 못한 진로 결정 등의 특성을 보였다. 낮은 학력은 취업시장에서의 불이익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으며 상황에 밀려 주도적이지 못했던 진로 결정은 대학 진학이나 취업 이후 겪게 되는 어려움에 쉽게 좌절하게 되기도 한다. 또한 시설퇴소청년들의 일 경험률은 매우 높지만 양질의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는 많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시설퇴소청년들의 과반수가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였는데 이 경우 근로 권익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시설퇴소청년들의 대입기회 확대를 위해 현행 아동복지시설 퇴소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회균형선발 전형의 대상에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등 타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까지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둘째,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청소년들은 그 시기부터 체계적인 진로교육이 진행되어야 마땅하지만 시설퇴소 후에도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 진로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만 시설퇴소 이후이므로 청소년시설, 청년센터 등 진로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한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의 연계망을 구축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기반 진로지원의 문제점은 지역 간 인프라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온라인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시설퇴소청년들의 직업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 기반의 산학연계를 통한 양질의 직업 훈련·고용 프로그램과 직장 예절이나 대인관계, 근무태도 등에 대한 기초적인 근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시설퇴소청년들의 기본적인 근로 권익이 지켜질 수 있는 근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및 노동권익센터를 통한 무료상담 및 권리구제, 근로 청년 및 사업주 대상 근로권익교육,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및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행정절차 지원, 근로기준법 준수 사업장에 대한 한시적 자비 부담률 완화 등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경제 영역

시설퇴소청년들의 경제적 여건을 살펴보면 낮은 소득, 높은 공적 지원과 금융채무불이행(신용불자) 경험 등 동년배 일반 청년과 비교할 때 매우 취약하였다. 채무가 있는 시설퇴

소청년들의 부채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이들의 경제적 여건이 얼마나 열악한 지 가늠케 한다.

이에 다음의 과제를 제안하였다. 첫째 「청년기본법」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에서 명시한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취약계층 청년의 채무여건 개선 및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개발과 추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제각기 운영되고 있는 아동양육시설 퇴소청년을 위한 '자립수당'제도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을 위한 '자립지원수당'제도를 포함하여 기존의 수당제도 운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청소년기에 위탁보호 경험이 있는 경우 자립(지원)수당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취약성의 정도에 따라 수당의 액수를 조정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금융 교육 등을 병행하는 조건부 운영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셋째, 경제적 지원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방식을 탈피하고 소득, 지출, 부채 상태를 포함하여 금융생활 전반에 걸쳐 맞춤형 경제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③ 주거 영역

시설퇴소청년들은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았던 경험, 주거 점유형태, 주거유형 등에서 일반청년에 비해 취약한 경향을 보였다. 또한 주거취약 상황에 놓이거나 임대와 관련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등 경제적인 이유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이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 아동복지시설 및 일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을 중심으로 지원 중인 전세임대주택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지원대상을 특정 시설 이용자로 국한할 경우 사각지대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모든 시설퇴소청년들에게 일괄적으로 주거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자체와 자립지원기관 등으로 이루어진 심의기구에서 개인의 주거 취약성과 위기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지원의 진입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둘째 아동복지시설 퇴소 자립준비청년에게 한정되어있는 지역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주거환경 개선, 주택청약종합저축 지원, 월세지원 등을 보다 다양한 시설퇴소청년들로 그 대상을 확대하고 지자체별 심의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④ 건강 영역

시설퇴소청년들은 낮은 건강검진 수검률, 빈약한 식생활 및 신체활동 등 건강 행태가 바람직하지 못한 경향을 보였다. 또한 높은 우울과 고립감, 낮은 삶의 만족도 등 정신 건강 측면에서도 심각한 수준의 취약성이 보고되었다.

이에 다음의 과제를 제안하였다. 첫째,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검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건강검진 편의성 제고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검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천원의 아침밥 사업 등 올바른 건강행동 증진을 위한 제도를 확대하여 시설퇴소청년들을 그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제안한다. 셋째,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단계별 맞춤형 정신건강 지원체계 구축 등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확대를 통해 청년들의 정신건강 개선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⑤ 참여 영역

시설퇴소청년들은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이것이 중요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을 시사한다. 또한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중 자신과 관련 있는 제도나 지원의 자격 여부나 절차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나 제도 자체를 알고 있더라도 신청 및 이용 절차가 복잡하여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시설퇴소청년들 중에는 시설퇴소 직후 경험한 다양한 어려움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관계망의 도움을 받았고 본인과 비슷한 경험을 하는 후배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을 돕거나 자조모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경우도 보고되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고립·은둔 청년의 발굴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모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대상자의 발굴을 위해서는 퇴소시설-퇴소 후 지원기관-지자체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소그룹 청년 모임을 지원하거나 지역 사회 내에서 또래 간 사회적 관계 형성이 가능하도록 동네친구 만들기 등의 사업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둘째, 시설퇴소청년들의 정보 수집 및 활용과 관련하여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공공포털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청년들의 정보이해능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보이해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이해하기 쉬운 교육자료의 개발·보급, 당사자 활동가의 멘토링, 지원기관 내 제도 안내 전담 인력 배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이 서로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이 시설유형에 구분 없이 지자체 내 자조모임 조직을 지원·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당사자 활동가로 역할을 수행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과정을 이수하도록 한 후 자립지원 전문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당사자 활동가는 본인의 경험과 연결망 등을

활용하여 또래 시설퇴소청년, 그리고 앞서 언급한 시설퇴소 고립·은둔청년들의 발굴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정보 제공자 및 심리·정서적 지지자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 제4장 금융취약청년 정책소외 실태와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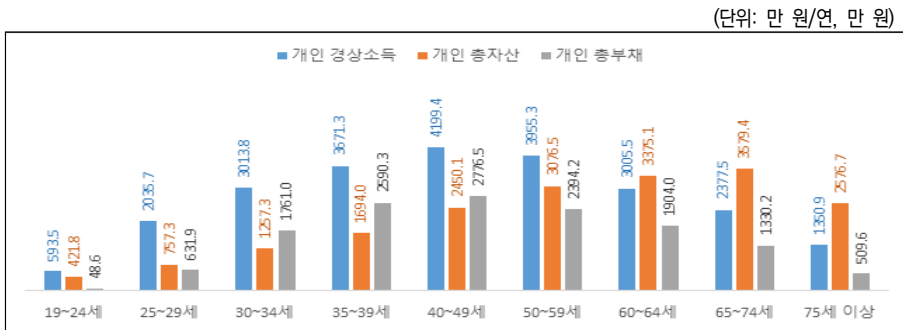
- 1. 청년의 금융취약 및 정책소외 현안과 쟁점
- 2. 청년의 금융취약 및 정책소외 실태 분석
- 3. 청년의 금융취약 정책지원 과제

1. 청년의 금융취약 및 정책소외 현안과 쟁점

1) 정책대상의 개념과 특성

청년은 생애주기에서 독립된 성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시기에 있다. 이들은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벌어들이기 시작하며, 소득의 일부를 활용해 자산을 형성한다. 모딜리아니의 생애주기 가설에 따라 자산은 중년 후기에 최고점을 보이고 노년기에 점차 감소하는 생애 궤적을 따르며(김성아 외, 2021), 청년기부터 형성하기 시작하는 자산은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제공한다(강시온, 한창근, 2018).

실제로 개인 단위 소득과 자산, 부채 수준을 생애주기별로 분석한 그림 IV-1을 보면



* 출처: 통계청(2022).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원격접근서비스)

* 주: 조사시점 기준임. 자산 및 부채는 조사시점, 소득은 조사시점 전년도 값임. 가구 가중치를 적용함. 자산, 부채가 없는 경우 0으로 처리함.

그림 IV-1. 연령집단별 개인 소득, 자산, 부채(2022년)

42) 이 장은 세부보고서인 협동연구총서(23-88-03)의 주요 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감성아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이 집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해당 세부보고서를 참고하여야 한다.

개인 경상소득은 50대에 최고점을 보이는 역U자를 보인다. 자산은 점차 증가해 60대에 최고점을 보이며 부채는 30대부터 형성하기 시작해 40대에 최고점을 보이고 점차 상환해 나간다. 청년기에 경제활동을 시작해 소득이 점차 증가하고 자산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모델리아니의 생애주기 가설이 우리나라에서도 실현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청년기에 자산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 미래 자산을 부채로 이용하기 시작하는 양상이 확인된다.

자산을 형성하는 주된 기제가 과거 저축에서 최근 부채로 변형되어 왔다(김도균, 2020). 부채가 미래 자산을, 혹은 미래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역량을 초과할 경우 금융생활에서의 취약성을 유발할 수 있다. 해외 문헌에서는 채무부담에 주목하여 과중채무(over-indebtedness)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국내 문헌과 종합하면 역량 대비 과중한 채무, 혹은 금융취약성을 몇 가지 기준에 따라 정의할 수 있다.

첫째, 소득 등 상환 능력 대비 채무액의 규모가 과중할 경우 과중채무라고 볼 수 있다. 과중채무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는 가구원 1인당 총 채무액, 순부채의 비율, 소득 대비 지출의 비율, 소득 대비 부채액의 비율, 자산 대비 부채액의 비율 등이 있다(Betti, Dourmashkin, Rossi, & Ping Yin, 2007). d'Alessio와 Iezzi(2013)은 이탈리아 은행에서 상환액이 월 총소득의 30% 혹은 50%를 초과하거나, 무담보 상환액이 월 총소득의 25%를 초과하거나, 상환액을 납부한 이후 월소득 잔액이 빈곤선 미만일 경우 과중채무로 정의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런 지표에 의해 과중채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선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의된 바가 없다.

둘째, 체납은 일정 기간 이상 연체를 지속한 경험의 여부를 말한다(김성숙, 이윤, 이재민, 홍연금, 2019; 유연주, 김소연, 여정성, 2021; 이종희, 2020). 연체 혹은 체납은 해외 문헌에서 금융취약성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로 쓰이고 있다(Betti et al., 2007; d'Alessio & Iezzi, 2013; Disney, Bridges, & Gathergood, 2008). 유럽연합(EU)의 연구기관인 유로파운드(Eurofound)에서는 유럽 내 국가 간 금융취약계층 규모와 실태 비교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가족이나 친지로부터의 부채, 전화 등 생활요금 등의 금융 행위 중 2건 이상 연체하는 경우 금융취약계층으로 정의하였다(Eurofound, 2020).

셋째, 다중채무는 일정 수 이상의 채무를 지니고 있는 경우이다. 한국은행에서 정의하는 금융 취약자는 소득 수준이나 신용점수가 낮으면서 3건 이상 다중채무를 가지는 경우를 말한다(한국은행, 2021.9). 이탈리아 은행 등 해외 문헌에서 나타나는 금융취약계층을 측정하는 방식 중 하나이기도 하다(Betti et al., 2007; d'Alessio & Iezzi, 2013; Disney

et al., 2008).

넷째, 불법 사금융 등 제도권 내 금융권 이외 채무 여부로 금융취약성을 진단할 수 있다(박수민, 2022). 불법 사금융은 휴대폰 개통 후 유심칩 제공시 현금을 지급하거나 고액의 휴대폰요금을 납부하거나 제공한 휴대폰이 범죄에 사용되는 등의 내구제 대출(나를 구제하는 대출), 휴대폰소액결제 등으로 상품권 구입을 유도하여 실제 구입액보다 적은 현금을 지급하여 실질적으로 초고금리 대출과 동일한 피해를 유발하는 상품권깡, 존재하지 않는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불법 사금융으로 유인하는 사례 등 다각화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0.6).

다섯째, 신용 수준은 신용등급이나 신용점수 등 재화나 서비스 등의 구입을 위한 지급을 연기할 수 있는 채무 이행능력을 반영한다. 한국은행에서 정의하는 금융 취약자의 요건 중 신용점수를 고려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한국은행, 2021.9).

여섯째, 채무조정, 개인파산, 개인회생 등의 정책 지원을 받는 경우를 금융취약 대상으로 보기도 한다(노혜진 외, 2022; 백아름외, 2022; 신규수, 2019; 탁장한, 박정민, 2017). Dobbie와 Song(2020)은 미국의 비영리 단체 MMI(Money Management International)의 훈련된 전문 상담사에 의한 채무상담프로그램 참여자를 금융취약문제를 가진 것으로 간주하였다.

마지막으로 부채부담에 대한 주관적 인식으로 부채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보고하는 경우를 고려할 수 있다. 주관적 인식을 활용하는 방법은 금융취약계층의 규모와 실태를 탐색하려는 해외 문헌에서 다수 확인된다. ‘수지타산을 맞추며 근근이 살아가거나(makes ends meet)’ 매우 어렵거나(with great difficulty) 어려운(with difficulty) 경우 역량 대비 과중한 채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Betti et al., 2007; d’Alessio & Iezzi, 2013; Disney et al., 2008; Eurofound, 2020). 김성아 외(2023)는 금융취약 청년을 식별하는 기준으로 소득 대비 채무액이 과중하거나 불법 사금융의 피해 경험이 있거나 파산 또는 회생을 신청한 청년 중에서도 부채 부담이 과중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고려하였다.

청년의 금융취약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는 다양한 방식으로 제안되고 있지만 여전히 합의된 방식은 없다. 오히려 금융취약성의 다차원적 구조를 고려하면 복수의 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d’Alessio & Iezzi, 2013; Eurofound, 2020).

특히 청년은 독립된 성인으로서의 이행기를 겪고 있어 금융취약성이 가지는 의미가 상이

할 수 있다. 소액 생계비를 구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대출을 검색하고 이 과정에서 사채⁴³⁾와 같은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기도 한다(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2021.7.21:3). 고립·은둔 청년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 카드 리볼빙... 그냥 다 빚”을 지면서 “그냥 버티고만 있기도” 하다(박주홍, 손지현, 서두산, 2022:153; 피엠아이, 2022:191). 가족의 보호체계로부터 벗어난 소위 가정 밖 초기 청년들이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 지식 없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면서 빚이 불어나기도 하고 대부업체로부터 채권 추심을 당하기도 한다(김은정, 2022).

최근 새로운 형태로 등장한 불법 사금융⁴⁴⁾에 노출되는 청년의 사례가 다수 등장하고 있다. 내구제대출은 “나를 구제하는 대출”의 줄임말로 대출을 원하는 사람이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을 할부 또는 렌탈해 물건을 브로커에게 넘기면 브로커가 물건을 팔아 수수료를 챙기고 판매 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의 불법 사금융을 일컫는 용어이다(박수민, 2022:24). 신용이나 담보와 무관하게 소액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온라인에서 광고하고 생계비가 필요하지만 가족 등 의논할 수 있는 지지체계가 불완전하고 금융지식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청년들이 소위 내구제대출을 통해 변종 금융 사기에 연루되거나 거액의 부채를 짊어지게 되는 원인으로 작동한다. 소득증명서류나 재직증명서 등 문서를 위조해 대출을 유인하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작업대출도 등장했다. 취업의 조건으로 대출을 내건 형태도 있는데 이러한 형태에 대해서는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특히 취약한 편이다. 그러므로 자산형성을 위한 종잣돈 혹은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빚의 양면성을 가지는 청년 부채의 문제는 청년 세대 간 격차의 문제이기도 하다.

2) 정책대상의 정책소외 현안

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현행 중앙행정기관 단위 청년금융사업은 청년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 70% 정도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그 중 약 절반 정도가 대출 혹은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확인되었다. 학자금이나 생활자금 대출, 보증금 등 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 사업이 다수로 확인되었으며 금융위원회 등 11개 중앙행정기관에서 1개 이상의 청년 대상 대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 대상으

43) 사채나 대부업체 등의 여신 전문기관에 의한 불법 사금융은 「이자제한법」으로 최고이자율을 제한하고 있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하고 있는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에 의한 금융을 말한다.

44) 내구제대출이나 작업대출은 공식적인 행정 용어나 합의된 정의를 바탕으로 하는 학술 용어는 아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도 등재되지 않은 신종 용어이므로 이용하는 데에 주의를 요한다.

표 IV-1. 기능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년금융사업

(단위: 개)

중앙행정기관												
부처	대출	자산 형성	보험	교육	신용 회복	세금 감면	저축	대출 이자 지원	상담	비과 세	기타	전체
금융위원회	4			3	2	1	3		2		2	17
교육부	5				1			1				7
국토교통부	6									1		7
고용노동부	5		1									6
보건복지부	1	3	1			1						6
농림축산식품부	1		3					1				5
중소벤처기업부	1	3										4
행정안전부	4											4
국방부	2	1										3
국가보훈처	2											2
기획재정부				1		1						2
법무부					1							1
정보통신부	1											1
통일부		1										1
해양수산부			1									1
전체	32	8	6	4	4	3	3	2	2	1	2	67

지방자치단체								
구분	이자지원	보험지원	자산형성	대출(보증)	교육 및 상담	신용회복	기타	전체
서울	2	8	3	3	4	1		21
부산	2	1	1	5	3	2	4	18
대구	5	5	2	1	1			14
인천	2	4	3	2	2			13
광주	1	1	1	2		2		7
대전	2	2	1	1	2	1		9
울산	4	2	2					8
세종	1	2	1					4
경기	24	9	10	3	4	8	1	59
강원	1	3	1	2	1			8
충북	10	5	1	1		1		18
충남	10	7	2	1	2		1	23
전북	15	9	6	1		1	1	33
전남	12	4	2	2	1		2	23
경북	3	1	3	1				8
경남	18	7	11	1	1	1		39
제주	2	3	0	1	1	1		8
전체	114	73	50	27	22	18	9	313

* 출처: 청년금융정책 DB를 활용해 저자 분석

로 청년을 특화한 사업은 상대적으로 자산형성이나 세금감면 등 경제적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의 이행기 특성을 반영한 사업이 고루 존재하였다. 그럼에도 대출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자 혜택을 제공하거나 저축액의 일부에 상당하는 자금을 지원하는 자산형성 사업의 효과가 역진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생계비를 확보하기 위한 보험사 약관대출이 증가하거나(서울파이낸스, 2023.7.8.),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하는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등(서울신문, 2023.6.21.)의 사례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매월 주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납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안정적인 소득원이 필요하고 납입액을 제외하고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수준의 소득이 필요하며 의료비 등 갑작스러운 지출 부담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등 자산형성 사업 가입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여건이 경제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는 청년에게 부담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청년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화된 사업은 이자가 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하는 재료로 쓰이기보다 당장의 지출 부담으로 변환시킴으로써 청년의 실질 처분가능소득을 감소시킬 수 있다.

청년의 금융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이나 상담 사업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중앙행정기관 단위의 청년 청년금융사업 중 교육이나 상담 사업은 67개 중 6개로 9% 정도에 불과하다. 지방자치단체의 313개 청년금융사업 중에서는 22개에 불과해 7% 수준이다. 금융 교육이나 상담 사업은 경제활동을 시작하고 경제적 독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기 위해 부채를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등 금융 역량이 취약할 경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기제라는 점에서 그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미 금융취약성이 파악된 청년을 위한 구제 또한 중요하지만 청년기 이후 삶을 고려하면 금융 역량 강화는 금융취약청년에게도 필수적인 요소이다.

2. 청년의 금융취약 및 정책소외 실태 분석

1) 분석 개요

이 장에서는 청년의 금융취약 및 정책소외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입체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첫째, 현대대 청년의 금융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2차 자료로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였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인 가계 단위

소득분배지표를 생산하는 원자료이다. 조사시점 기준 전국의 모든 가구와 가구원을 목표 모집단으로 하여 등록센서스에서 아파트 조사구, 보통조사구, 섬인 조사구 내 모든 가구와 가구원을 조사 모집단으로 한다. 확률비례계통추출법을 활용해 추출한 6,443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한다. 최종적으로 표집오차를 가중치로 보완하여 가구 단위 전국 대표성을 확보한다(통계청 조사관리국 표본과, 2021.8).

가계금융복지조사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서베이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2017년부터는 서베이 결과를 행정자료로 보완하고 있다. 다만 2017년은 전년과의 비교를 위해 조사자료와 행정자료로 보완한 자료를 사용한다. 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하는 공공용 서비스에서는 소득과 지출, 자산과 부채 모두 가구 단위 정보를 활용할 수 있지만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에서 원격접근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개인 단위 소득과 자산, 부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청년 개인의 금융생활에 주목하고 있으므로 원가족의 경제력을 통제하기 위해 원격접근서비스를 통해 확보한 개인 단위 정보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청년 금융생활 실태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 최근 시점인 2022년 자료와 2012년 자료를 비교하였다.

둘째, 19~34세 성인 남녀 중 부채가 있는 청년 1,500명과 부채가 없는 청년 500명을 목표표본으로 하여 청년의 금융생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표 IV-2). 조사를 위해 금융취약성이 있는 청년의 모집단에 대한 표본추출을 설계해야하지만 현재까지는 관련 자료의 부재로 청년의 금융상황, 부채현황을 반영한 모집단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2023년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전국 만 19~34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부채가 있는 청년” 1,500명을 목표표본으로 하고 비교집단으로 “부채가

표 IV-2. 청년의 금융생활 실태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분		온라인패널 대상			청년센터 대상		
		전체	부채 있음	부채 없음	전체	부채 있음	부채 없음
전체		2,146	1,529	617	135	61	74
연령별	만 19~24세	716	504	212	23	4	19
	만 25~29세	728	519	209	54	27	27
	만 30~34세	702	506	196	58	30	28
성별	남성	1,112	786	326	34	20	14
	여성	1,034	743	291	101	41	60

없는 청년” 500명을 포함하였다. 부채가 있는 청년 1,500명과 부채가 없는 청년 500명은 각각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비례배분 표본추출하였다. 조사방법은 온라인 패널 대상 이메일 조사와 청년센터 대상 온·오프라인 링크(URL, QR코드 등) 등을 통한 온라인 조사를 채택하였다. 그 결과 온라인 패널과 청년센터 대상 각각 2,146명, 135명으로 총 2,281명이 조사에 응답하였다. 그중 2023년 4월 기준으로 부채가 있는 청년은 1,590명(69.7%), 부채가 없는 청년은 691명(30.3%)이다. 연구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사를 받았으며 2023년 4월 12일자로 승인을 득하였다(제2023-017호).

마지막으로 청년의 금융취약 경험을 청취하기 위해 금융취약청년 지원기관 실무자와 초점집단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해 금융취약성의 다차원적인 취약성과 금융취약에 이르게 되는 경로, 금융취약청년의 개인적 대응 경험과 공적 지원방안에 대한 경험을 청취하였다. 광주와 서울, 부산의 유관기관 실무자를 면담하였으며, 연구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사를 받았으며, 2023년 6월 27일자로 승인을 득하였다(제2023-058호). 초점집단인터뷰의 구체적인 개요는 표 IV-3과 같다.

2) 분석 결과

(1) 청년 금융생활 실태

일상에서 내구재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등 지출을 통해 기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필요하지만, 금융생활을 드러내는 자산과 부채를 모두가 필수적으로 가지는 것은 아니다. 표 IV-4는 개인 단위 자산과 부채 보유율을 보여주고

표 IV-3. 금융취약청년 지원기관 실무자 초점집단인터뷰 진행 개요

지역	기관	일시, 장소	면담자
광주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6.30.(금) 14시~16시 광주청년드림은행	박○민, 주○연, 김○희, 범○휘
서울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7.5.(수) 14~16시 청년동행센터	김○영, 양○림, 전○훈, 한○휘
부산	부산청년희망신용상담센터	7.6.(목) 14~16시 부산신용보증재단	장○임, 이○림, 김○석, 정○중

표 IV-4. 연령집단별 개인 자산, 부채 보유율

(단위: %)

구분	2022년		2012년	
	개인 자산 보유율	개인 부채 보유율	개인 자산 보유율	개인 부채 보유율
19~24세	86.6	3.6	83.6	9.1
25~29세	92.8	17.8	92.4	23.0
30~34세	96.1	33.7	96.5	37.7
35~39세	96.8	44.7	97.3	47.5
40~49세	97.8	48.0	97.3	48.3
50~59세	98.2	44.3	96.5	42.2
60~64세	97.9	34.6	94.7	28.7
65~74세	97.1	22.3	91.7	18.8
75세 이상	93.8	9.8	86.0	7.7
Total	96.0	32.6	93.9	33.4

* 출처: 통계청(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원격접근서비스)

* 주: 조사시점 기준임. 자산 및 부채는 조사시점의 값임. 자산 및 부채가 0원 이상인 경우 개인 가중치를 적용함.

있다. 2022년 20대 초반 청년의 자산 보유율은 86.6%, 25대 후반에는 92.8%, 30대 초반에는 96.1%로 점차 증가한다. 30대 후반부터 중장년기와 노년기에는 90% 이상이 개인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부채 보유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20대 초반 청년의 부채 보유율은 3.6%에 그치는 수준이다. 20대 후반에는 17.8%, 30대 초반에는 33.7%로 점차 증가한다. 경제적으로 독립해 개인 자산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30대 후반에는 개인 부채 보유율이 44.7%로 증가하고 40대에는 거의 절반에 이른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차 부채를 상환하여 부채 보유율은 75세 이상 후기 노인 집단에서 9.8%에 그친다. 20대 초반 청년기에 부채를 가지기 시작해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채 보유율이 증가해 40대에 50%에 가까운 수준에 이르렀다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은 2012년에도 확인된다.

현세대 청년의 부채 양상은 과거로부터 변화해왔다. 청년층의 대출 용도를 보면(표 IV-5) 2022년 최근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부채 건의 비중이 19~24세 청년 명의 기준 40.7%, 25~29세 28.0%, 30~34세 35.1%로 높다. 명의자 청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19~24세 청년 명의의 부채 중 생활비 마련 목적의 부채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것은 교육비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부채이다(28.9%). 20대 후반부터는 교육비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부채의 비중이 점차 감소한다. 그리고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의 비중이 19~24세 청년 명의 18.9%, 25~29세 28.7%, 30~34세 23.5%로 높은 편이다. 거주주택 마련을 위한 부채도 19~24세

표 IV-5. 연령집단별 대출 용도

(단위: %)

구분		거주 주택 마련	기타 부동산 마련	전월세 보증금	금융 자산	부채 상환	사업 자금	교육비 마련	생활비 마련	기타	전체
2022년	19~24세	3.1	0.3	18.9	0.0	5.7	0.9	28.9	40.7	1.5	100.0
	25~29세	9.6	2.8	28.7	1.6	2.7	4.6	7.6	28.0	4.5	100.0
	30~34세	19.1	4.7	23.5	3.3	2.2	5.7	2.2	35.1	4.0	100.0
	19세 이상 전체 성인	22.1	7.0	9.7	2.2	3.4	13.4	1.7	36.9	3.7	100.0
2012년	19~24세	2.2	0.6	1.2	0.5	0.0	2.4	54.4	34.4	4.3	100.0
	25~29세	7.2	1.8	10.6	0.6	1.0	3.4	12.6	57.0	5.9	100.0
	30~34세	17.2	2.3	13.5	0.8	1.9	7.3	1.2	51.5	4.4	100.0
	19세 이상 전체 성인	17.0	4.8	6.1	0.8	2.6	15.9	4.1	44.3	4.4	100.0

* 출처: 통계청(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원격접근서비스)

* 주: 조사시점 기준이며 비율은 개인 가중치를 적용하였고 2012년의 유효표본은 21,909건, 2022년의 유효표본은 16,728건임.

청년 명의 부채의 비중이 3.1%이었던 것에 비해 25~29세 9.6%, 30~34세 19.1%로 명의자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차 높아진다.

2012년에는 청년, 특히 20대 후반 명의의 부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채가 생활비 마련으로 50%를 넘는 수준이다. 19~24세 청년 명의의 부채는 학자금 대출을 포함하는 교육비 마련에 의한 부채의 비중이 54.4%에 달한다. 2022년과 유사하게 전월세 보증금이나 거주주택 마련을 위한 부채의 비중은 20대 후반부터 점차 증가하지만 그 수준은 최근에 비해 낮은 편이다. 즉 최근 특히 20대 후반부터 매매나 임대 등 거주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의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

청년 명의의 부채를 형성한 대출 기관을 보면(표 IV-6) 2022년 최근 은행 대출의 비중이 가장 높다. 그리고 명의자 청년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은행 대출의 비중이 점차 높아져 30~34세는 83.0%에 이른다. 19~24세 청년 명의의 부채 중 기타 유형의 부채가 29.5%로 높은 것은 한국장학재단에 의한 학자금 대출의 영향일 수 있다. 2012년에는 은행 대출의 비중이 19~24세 청년 명의 62.8%, 25~29세 청년 명의 68.7%, 30~34세 청년 명의 72.0%로 균일하게 높다. 19~24세 청년 명의 부채 중 기타 유형의 비중이 20.6%로 상대적으로 높다. 대부업체나 여신전문기관에 의한 청년의 부채도 20대 초반 0.4%, 30대 초반 0.7%로 약 1% 정도 존재하는데 이는 19세 이상 전체 성인의 부채 비율인 0.7%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2012년에 비해서는 절대적인 비율 수준이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불법

표 IV-6. 연령집단별 대출 기관

(단위: %)

집단		은행	저축 은행	단위 농협	비은행 금융 기관	보험 회사	대부 업체	여신 전문 기관	각종 공제회	기타	전체
2022년	19~24세	50.2	7.8	2.0	4.9	4.2	0.4	0.0	1.1	29.5	100.0
	25~29세	75.8	4.9	2.8	0.8	2.5	0.0	2.2	1.3	9.7	100.0
	30~34세	83.0	2.3	1.8	2.6	1.9	0.7	3.0	0.4	4.2	100.0
	19세 이상 전체 성인	75.1	3.4	7.0	3.8	4.2	0.7	2.5	0.9	2.5	100.0
2012년	19~24세	62.8	0.7	6.5	0.5	2.6	0.0	3.3	2.8	20.6	100.0
	25~29세	68.7	0.9	5.8	4.2	4.3	3.1	2.4	1.9	8.7	100.0
	30~34세	72.0	1.8	3.3	3.7	5.4	1.3	4.0	1.6	6.8	100.0
	19세 이상 전체 성인	65.1	2.0	10.6	4.5	6.3	0.9	2.2	1.2	7.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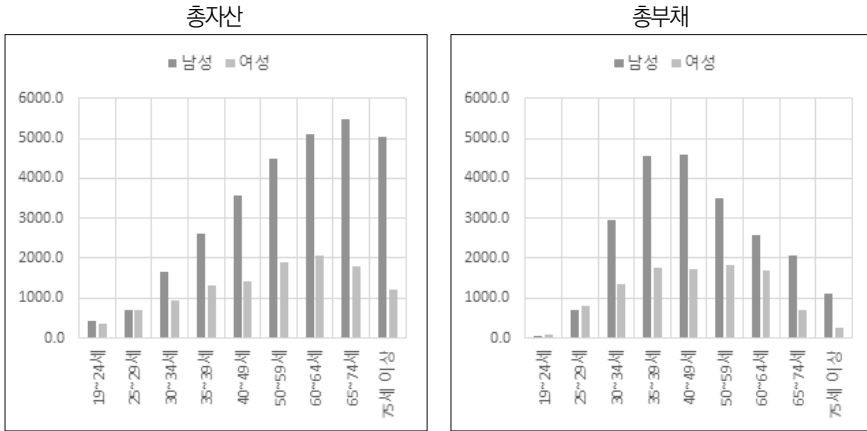
* 출처: 통계청(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원격접근서비스)

* 주: 조사시점 기준이며 비율은 개인 가중치를 적용하였고 2012년의 유효표본은 7,297건, 2022년의 유효표본은 11,997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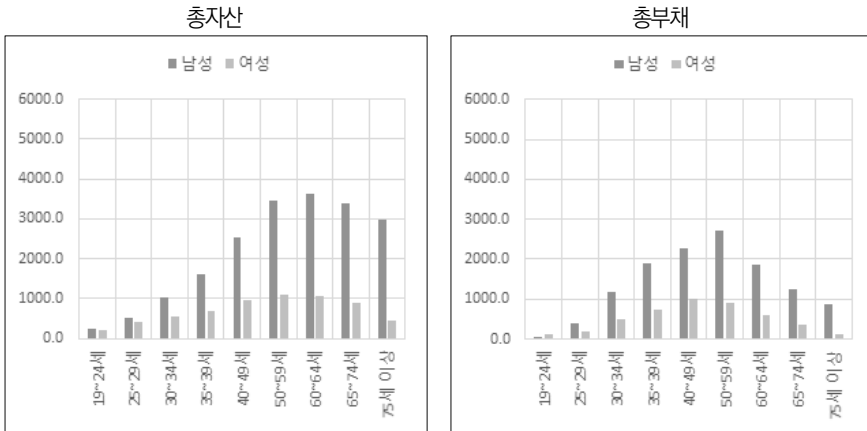
사금융에 노출된 청년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청년의 부채는 동 세대 내에서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생애주기에 따라 2022년 기준 20대부터 자산을 형성하기 시작해 30대부터 개인 자산을 축적하는데, 남성은 65~74세에서, 여성은 60~64세에서 최고점을 보인다. 총부채는 20대 후반부터 이용하기 시작해서 남성은 40대에, 여성은 50대에 최고점을 보인다. 총자산과 총부채 모두 여성에 비해 남성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는데, 특히 30대부터 성별 격차를 확인할 수 있다.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2022년 대비 2012년에는 전반적인 수준이 낮은 편이지만 중고령 집단에서 총자산과 총부채의 최고점을 확인할 수 있고 여성에 비해 남성의 자산 및 부채 수준이 높은 격차는 비슷하게 나타난다(그림 IV-2).

〈2022년〉



〈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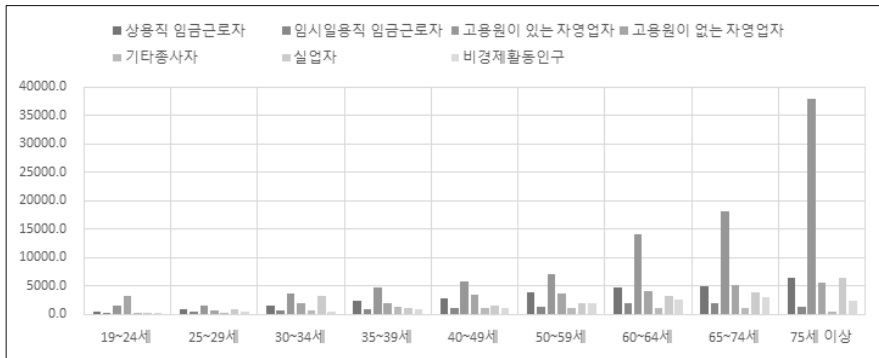
* 출처: 통계청(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원격접근서비스)

* 주: 조사시점 기준이며 자산 및 부채는 조사시점의 값이고 개인 가중치를 적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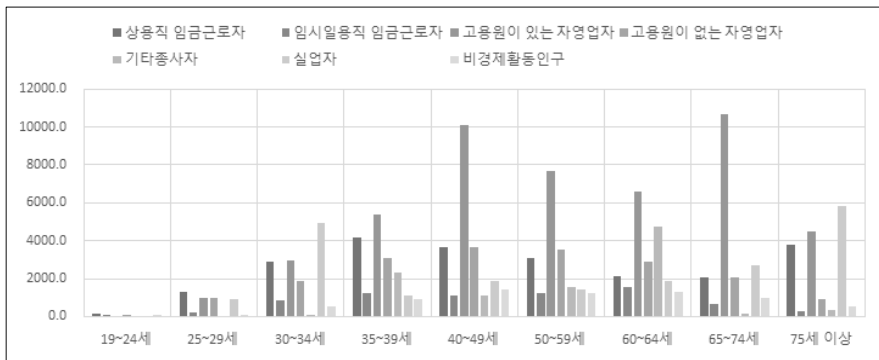
그림 IV-2. 성별 및 연령집단별 개인 자산 및 부채 수준

연령집단별 개인 총자산과 총부채 수준은 종사상 지위에 따라 상이한 경향을 보인다. 2022년 기준 모든 연령집단에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총자산이 가장 많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총자산은 그림 IV-3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중고령층의 총자산이 가장 많은 역U자 경향과 상이하게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차 높아진다. 이러한 경향은 2012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자영업자는 은퇴하지 않고 노년기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고 자산을 노후소득원으로 이용하기보다 지속적으로 축적할 개연성이 높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이외에는 비교적 고용이 안정적인 상용직 임금근로자와 함께 역시 자영업자인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총자산이 상대적으로 높다. 총부채 또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수준이 가장 높다. 자산이 많은 만큼 부채를 형성할 가능성 또한 높다고 볼 수 있다.

〈2022년〉
총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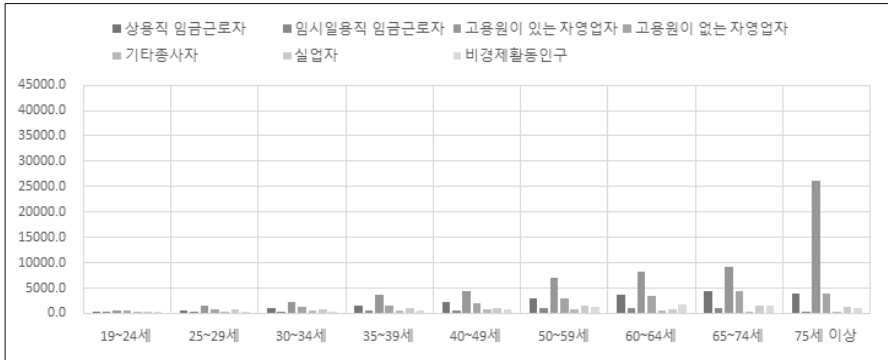


총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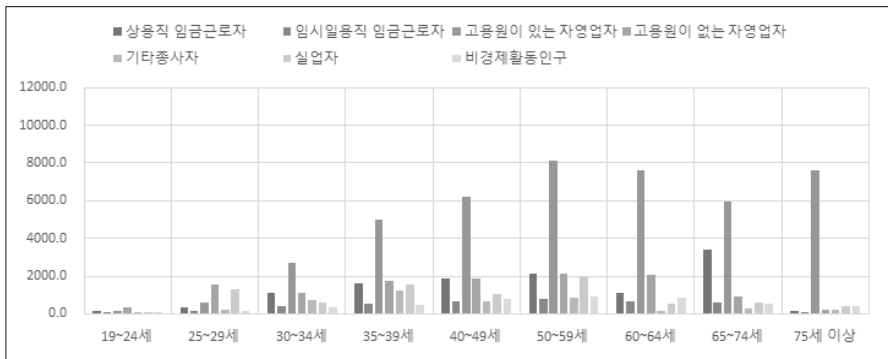


〈2012년〉

총자산



총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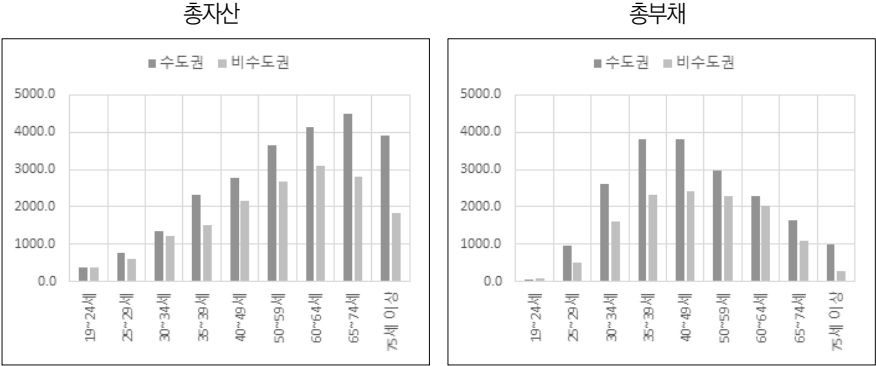
* 출처: 통계청(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원격접근서비스)

* 주: 조사시점 기준이며 자산 및 부채는 조사시점의 값이고 개인 가중치를 적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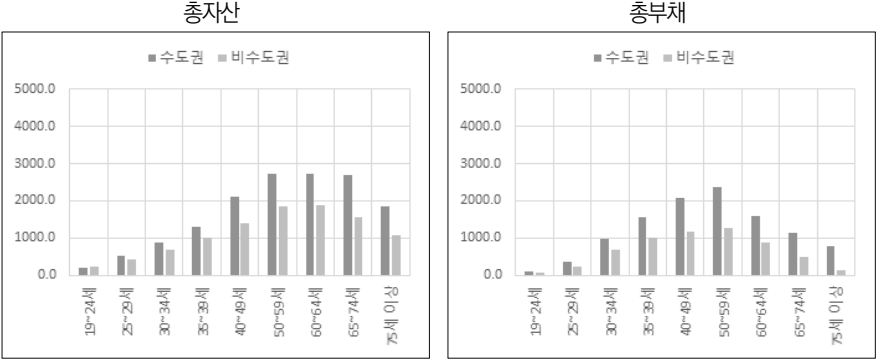
그림 IV-3. 종사상 지위별 연령집단별 개인 자산 및 부채 수준

연령집단별 개인 총자산과 총부채 수준은 거주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인다(그림 IV-4). 2022년에 전반적으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 모두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에 비해 높다. 30대 초반 청년기까지는 수도권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총자산 수준이 유사하다. 하지만 30대 후반부터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총부채와 연동하여 총자산 수준의 격차가 드러나기 시작해, 미래 자산형성을 계획하는 청년기에 자산의 수준만을 고려했을 때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을 더 유리하게 생각할 개연성이 존재한다. 수도권 거주 여부에 따른 총자산과 총부채 간 차이의 경향은 2012년에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2022년〉



〈2012년〉



* 출처: 통계청(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원격접근서비스)
 * 주: 조사시점 기준이며 자산 및 부채는 조사시점의 값이고 개인 가중치를 적용함.

그림 IV-4. 거주지역별 연령집단별 개인 자산 및 부채 수준

(2) 청년 금융취약 실태

이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한 「청년의 금융생활 실태조사」에 응답한 청년 중 78.8% (1,796명)는 과거에 한 번 이상 부채 경험이 있었다. 이와 반대로 부채 경험이 전혀 없는 청년은 21.3%(487명)이다. 부채 경험이 있는 청년 1,796명 중에서는 약 88.5%가 조사시점인 2023년 4월까지 부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나머지 11.5%는 부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4월 현재 기준으로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청년은 전체 조사 대상 중 69.7%(1,590명)로 과거 부채 경험을 가지고 있는 청년 비율(78.8%)에 비해 약 9.1%p 낮으나 여전히 조사대상 청년의 약 70%가 부채를 짊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IV-7).

부채 경험이 있는 응답자(1,796명)의 최초 주된 부채는 학자금 대출이며(42.8%), 다음으로 금융기관 신용대출이 17.1%, 금융기관 담보대출 11.5%, 신용카드 관련 대출 8.9%

표 IV-7. 현재 기준(2023.4.), 부채 유무에 따른 부채 경험 현황

(N=2,281)

구분		부채 유무(2023.4.기준)				
		전체	부채 있음		부채 없음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부채 경험	전체	2,281	1,590	69.7	691	30.3
	경험 있음	1,796	1,590	88.5	206	11.5
	경험 없음	485	-	0.0	485	100.0

(N=1,796,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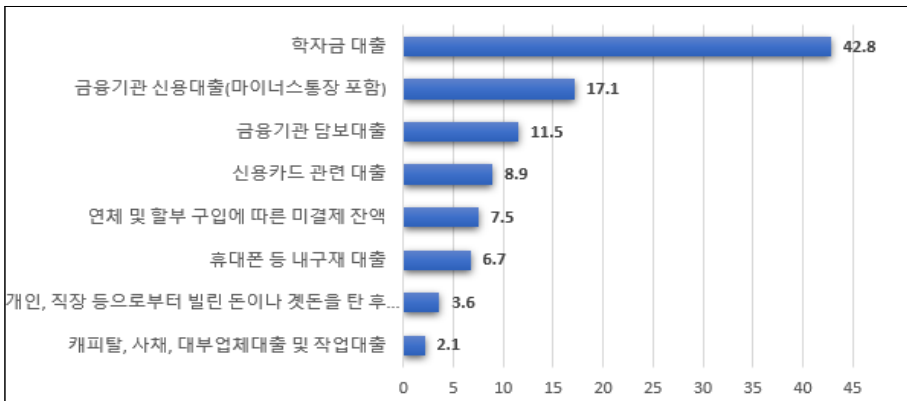


그림 IV-5. 생애 최초 주된 부채

(N=1,5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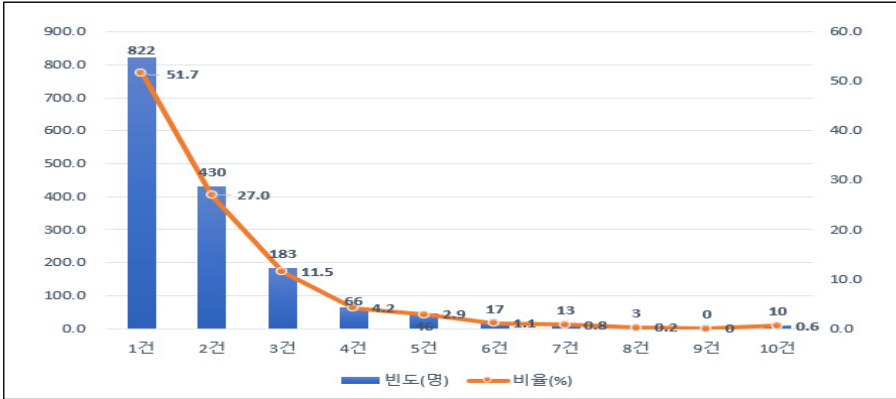


그림 IV-6. 부채보유 건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캐피탈, 사채, 대부업체대출 및 작업대출도 2.1%로 37명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V-5).

현재 부채를 가지고 있는 청년(1,590명)의 부채 보유 건수는 1건(51.7%)이 가장 많았으며, 2건 27.0%, 3건 11.5%, 4건 4.2%, 5건 2.9%순이다. 부채 보유 건수가 2건 이하인 그룹은 전체의 78.7%가 해당되며, 3~5건 부채를 가지고 있는 그룹은 295명으로 전체의 18.6%, 6건 이상 그룹은 43명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한다(그림 IV-6).

조사에 응답한 청년들이 부채 보유 여부에 따라 최근 삶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 ‘부채 있는’ 청년보다 ‘부채 없는’ 청년이 삶의 만족도가 약간 더

(N=2,2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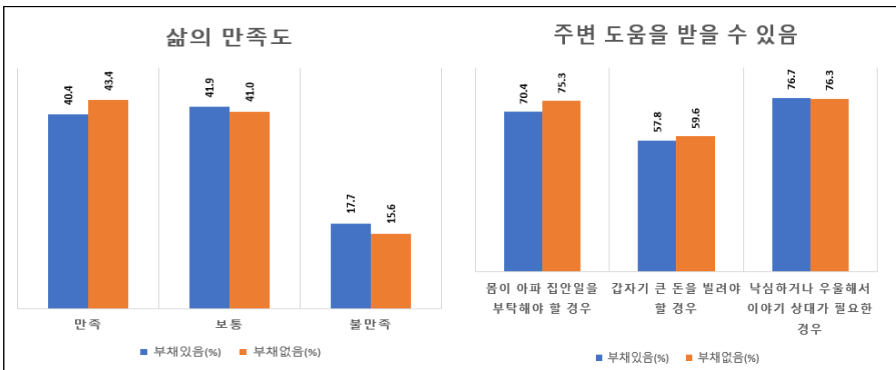


그림 IV-7. 삶의 만족도 및 주변도움 유무

높은(3%p)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V-7).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는가 등의 지지계층 여부에 대한 결과에서는 3가지 항목(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갑자기 큰 돈을 빌려야 할 경우,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중 앞에 2가지 항목에서 ‘부채 없음’ 청년이 더 많이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응답하였다(그림 IV-7). 청년에게 있어 부채는 경제적 자립을 위한 종잣돈일 수 있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지체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압박감을 느끼게 하는 요인일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실태조사 응답자의 80% 이상이 취약계층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부채를 가진 청년 중 15% 내외가 금융취약성 이외 다른 유형의 취약성에 노출된 것이다. 특히 취약계층 중에서 부채 있는 청년 중 한부모 가구의 경우가 2.6%로 상대적으로 조금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도 부채를 가진 청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인 비율이 2.5%, 은둔 청년의 비율은 1.8%, 장애를 가진 청년의 비율은 1.4%, 자립준비청년인 비율인 1.2% 정도 존재하고 있다(그림 IV-8). 이는 청년의 취약성이 금융취약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다. 즉 청년의 금융취약성이 배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유형의 취약성과 중첩되어 복합적인 욕구를 발생시킬 수 있다.

현재 부채가 있는 청년(1,590명) 중 지난 1년 동안(2022.5.~2023.4.) 세 달 혹은 3회 이상 원금 상환 또는 이자지급 기한을 놓친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 부채가 있는 청년 중에서 73.8%는 연체 경험이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다(그림 IV-9). 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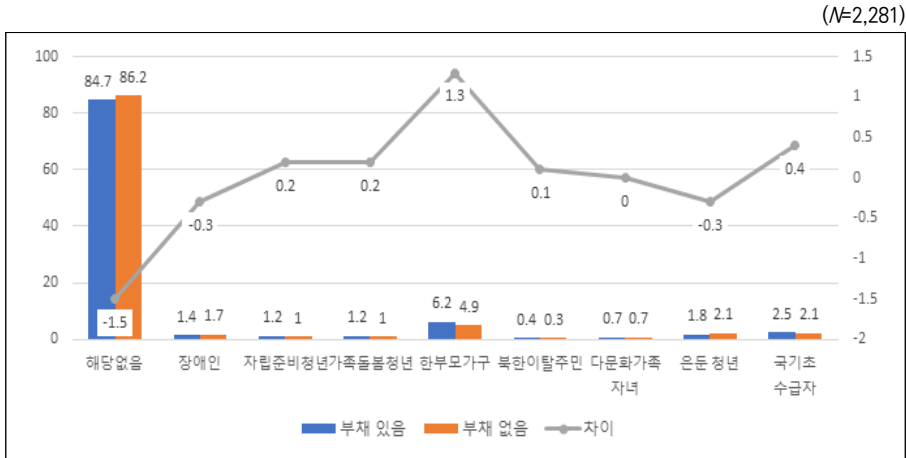


그림 IV-8. 취약계층 여부(중복응답)

(N=1,5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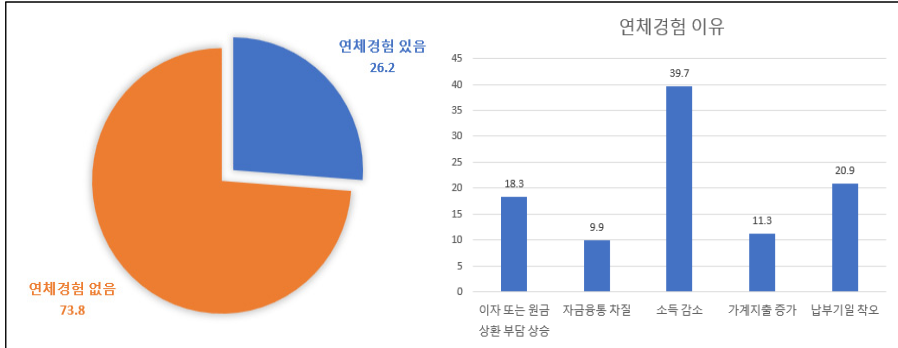


그림 IV-9. 연체 경험(3달/회 이상 원금 상환 및 이자지급 날짜를 지나친 경험)

부채가 있는 청년 중 26.2%가 해당 기간 동안 한번 이상 연체 경험이 있는 것이다. 연체한 이유에 대해서는 소득 감소(39.7%), 납부기일 착오(20.9%), 이자 또는 원금 상환 부담 상승(18.3%), 가계지출 증가(11.3%), 자금용통 차질(9.9%) 순으로 나타났다. 다중부채나 불법 사금융뿐만 아니라 연체 경험으로 드러나는 청년의 금융취약성 문제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채가 있는 청년의 약 80%(1,260명)는 원금과 이자 지급이 생계에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표 IV-8).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이 매우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24.2%로 응답자 4명 중 1명 꼴이다. 경제활동을 시작해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기에 경상비용으로 부담해야 하는 대출 원금과 이자 부담은 소비할 수 있는 실질 처분가능소득을 감소시킬 수 있다. 대출 혹은 부채 부담은 청년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을 이용해 지출하면서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데에 실제로 쓸 수 있는 충분한 소득이 줄어드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더욱이 부채가 있는 청년의 74.8%는 원금과 이자에 대한 부담으로 생활비나 저축, 투자를 줄이고 있다고 응답하였다(표 IV-8). 특히 이들이 절감하고 있는 주요 항목은 식품 및 외식비(30.6%), 저축이나 금융자산 투자(24.1%), 레저 및 여가 문화비(22.6%)이다. 또한 94.3%의 청년이 자신의 부채 상황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66.2%는 대출 기한 내에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고 28.1%는 대출기한이 지나더라도 상황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부채가 있는 청년의 5.8%는 현재의 부채 상황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부채를 가지고 있는 청년의 94.3%가 상환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점은 다행스럽지만 5.8%의 청년은 부채 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점은

표 IV-8. 부채 부담 정도

(N=1,590)

구 분		빈도(명)	비율(%)	
전체		1,590	100.0	
원금/이자 생계 부담 정도	부담 없음	330	20.8	
	약간 부담됨	876	55.1	
	매우 부담됨	384	24.2	
원금 및 이자 부담으로 인한 생활비나 저축, 투자 축소 여부	줄이고 있음	1,189	74.8	
	↳ 주된 줄인 항목	저축이나 금융자산 투자	286	24.1
		레저, 여가, 문화비	269	22.6
		식품, 외식비	364	30.6
		의류 구입비	222	18.7
		교육비	12	1.0
		교통, 통신비	22	1.9
		내구재 구입비 (휴대폰, 자동차 등)	14	1.2
	줄이지 않고 있음	401	25.2	
	주요 부채 상환 가능성	대출기한 내 상환 가능	1,052	66.2
대출기한 지나더라도 상환 가능		446	28.1	
상환 불가		92	5.8	

주목해야 한다. 이들은 연체나 돌려막기, 혹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추가 부채 부담을 지는 등의 금융취약성이 중첩될 우려가 있는 집단일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의 부채 상황과 관련하여 정부가 운영하는 채무조정 및 법원에 의한 채무자 구제제도 이용 상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그림 IV-10). 부채가 있는 청년의 16.5%가 해당 제도에 대한 문의나 상담경험이 있으며 부채가 없는 청년의 경우에는 부채가 있는 청년의 절반 수준인 7.8%만이 문의나 상담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부채가 있는 청년의 경우에는 상담 후 대다수(60.3%)가 실제로 제도를 이용하였고, 부채가 없는 청년은 이용률이 35.2%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용한 제도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는 부채가 있는 청년과 부채가 없는 청년 모두에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⁴⁵⁾ 제도의 활용이 가장 높았다. 이어서 '신용회복위원회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제

45)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 제도는 소득대비 금융비용 과다로 3개월 이상 연체중 인 사람들 중 채무조정 이후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한 분에게 유리한 신용회복지원 제도이다. '신용회복위원회 연체 전 채무조정' 제도는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워진 경우 신용을 잃지 않고 도움을 받기 위한 제도이며 정상이행중이라도 연체가 예상되고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N=2,2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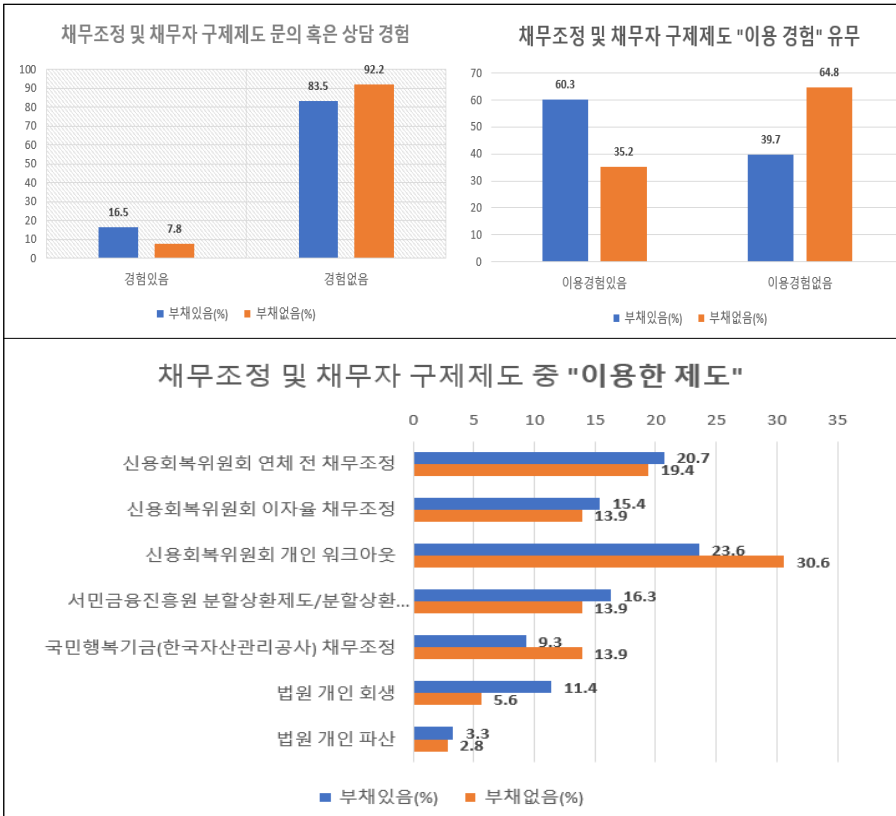


그림 IV-10. 채무조정 및 채무자 구제제도 중 이용한 제도

도가 두 번째로 많이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청년이 이용하고 있는 제도가 연체 전 혹은 연체 30일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속채무조정’ 제도보다 이미 연체가 3개월 이상 지속된 이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더욱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응답자 총 2,281명 중 현재(2023.4.) 기준,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는 부채가 있는 청년 133명, 부채가 없는 청년 18명을 포함하여 전체 151명(전체의 6.6%)이 해당한다(표 IV-9).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조사 수행 과정에서 응답자와 청년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하였고 자기응답식 온라인 조사의 결과임에도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규모가 결코 적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신용불량 상태는 경제적 독립을 준비하는 청년에

표 IV-9. 금융채무불이행자 여부

구 분		부채 있음		부채 없음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전체		1,590	100.0	691	100.0
현재(2023.4.)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여부	해당	133	8.4	18	2.6
	비해당	1,457	91.6	673	97.4
구 분		채무자 구제제도 이용경험 있음		채무자 구제제도 이용경험 없음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전체		177	100.0	139	100.0
현재(2023.4.)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여부	해당	97	54.8	22	15.8
	비해당	80	45.2	117	84.2

게 있어 소득을 운용하고 자산을 형성하는 데에 장애로 작동할 수 있다.

특히 채무조정 및 채무자 구제제도를 상담한 경험이 있는 청년 316명 중 금융채무불이행자에 해당하는 청년은 97명, 약 30.7%에 해당한다. 그런데 금융채무불이행자 청년 119명 중 채무조정 및 채무자 구제제도를 이용한 청년은 86.6%(97명)으로 신용불량자 청년의 18.4%는 공식 지원제도에 대해 상담은 했으나 실제로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 구제제도가 금융채무불이행자 청년의 문제 상황에 대응하기 적절하지 않았거나 청년 당사자가 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지 않았을 수 있다. 이는 정책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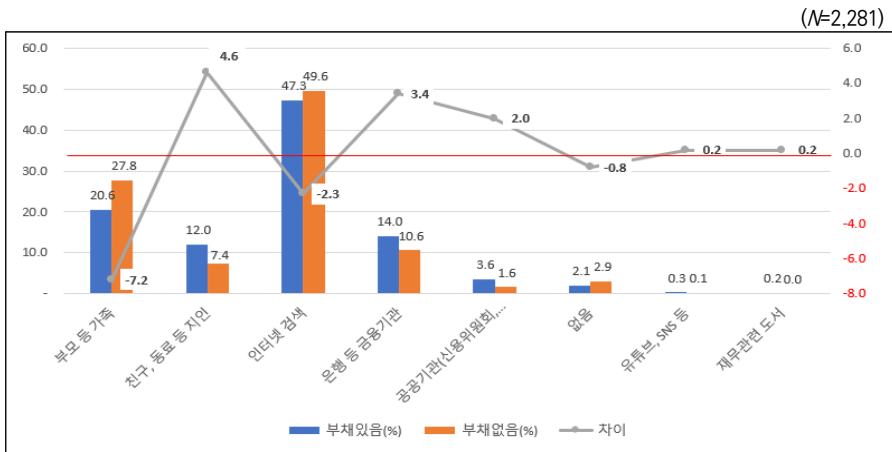


그림 IV-11. 금융관련 정보 습득 경로

청년의 필요 간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를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소득과 지출 관리, 저축과 부채 등 금융정보 습득경로에 대한 조사결과, 부채유무와 상관없이 청년의 약 절반 정도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금융정보를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V-11). 부채가 있는 청년은 인터넷 검색(47.3%), 부모 등 가족(20.6%), 은행 등 금융기관(14.0%), 친구·동료 등 지인(12.0%) 순으로 금융정보를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외에도 유튜브, SNS 등과 재무 관련 도서를 통해 정보를 습득한다는 기타 의견이 있었다. 부채가 없는 청년은 인터넷 검색(49.6%), 부모 및 가족(27.8%), 은행 등 금융기관(10.6%), 친구·동료 등 지인(7.4%) 순으로 부채가 있는 청년과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비율은 약간 달랐다. 특히 부채가 없는 청년과 비교하여 부채가 있는 청년은 부모 등 가족으로부터의 금융정보 습득보다 친구·동료 등 지인,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의존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정보의 질이 관리되지 않고 양질의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지식이나 조언이 충분하지 않다면, 청년들이 부정적인 금융정보에 노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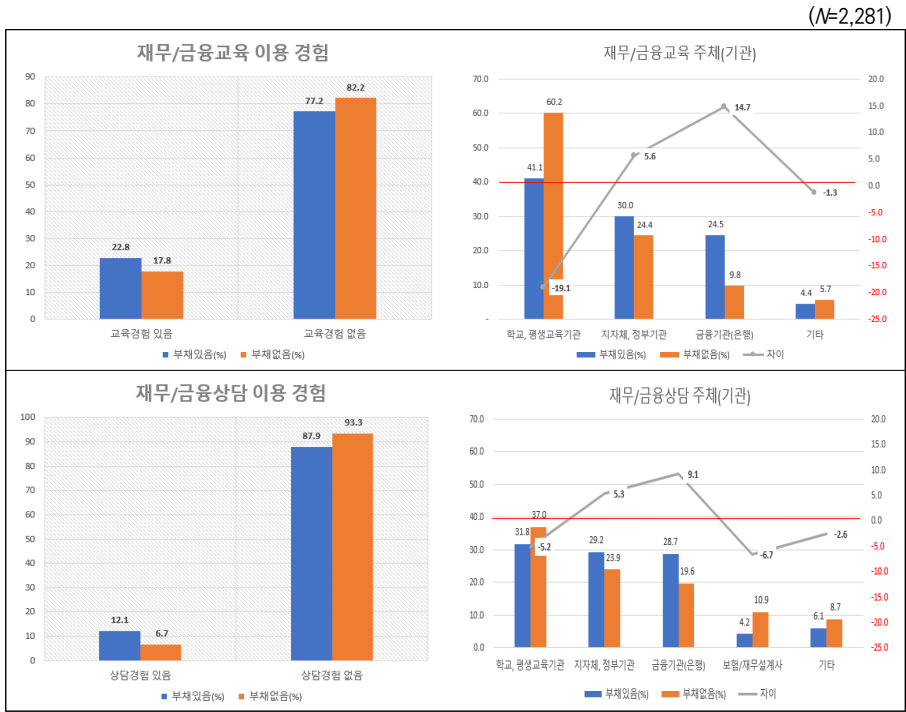


그림 IV-12. 재무/금융교육 및 상담 경험

재무/금융교육 이용 경험과 관련해서는 부채가 있는 청년의 22.8%와 부채가 없는 청년의 17.8%만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그림 IV-12). 나머지 전체 청년의 70% 이상은 재무/금융 교육경험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교육을 받은 응답자의 대부분은 학교, 평생교육기관에서 해당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하였고 그중 부채가 있는 청년은 학교, 평생교육기관에서 41.1%, 지자체나 정부기관에서 30.0%, 금융기관(은행)에서는 24.4%에서 교육을 받았다. 부채가 없는 청년은 60% 이상이 학교나 평생교육에서 주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재무/금융교육의 접근성과 청년의 교육 이용 패턴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3) 청년의 금융취약과 정책소의 경험

지원기관 실무자로부터 청취한 금융취약청년은 중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금융취약성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가족 문제, 부모의 질환, 부모 소득능력 상실, 기초보장 수급가구, 자녀인 청년이 부양해야 하는 상황, 때에 따라서는 준비되지 않은 독립을 하면서 추가적인 비용(주거비 등)을 감당하는 동시에 원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경우가 발견되었다. 그 외에도 부모의 채무를 대신 지거나 부모의 채무가 직접적으로 승계되지 않더라도 빈곤의 대물림의 구조에 의해 자녀세대도 부채를 지게 되는 경향 또한 존재했다.

두 번째, 청년 본인의 질병도 대출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건강상 이유로 근로를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안정적인 일자리에 있을 경우는 휴직이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퇴직을 하거나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형편이다. 근로활동이 불가능해지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소득이 중단되어 새로운 부채를 지거나 기존 부채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파산신청으로 연계되는 사례들이 발견되었다.

세 번째, 공식적이고 공공적인 지원정책에 대한 불신에 따라 사적 해결을 선호하는 성향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쉽게 접할 수 있고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인터넷 환경도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청년들이 비적정 대출에 접근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법한 청년들 중에서도 손 내미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자력으로 해결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정보들이나 이를 접한 주변 지인들을 통한 정보들은 손쉽게 접할 수 있다. 이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혹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네 번째, 학교에서 일자리로 이행하여 소득원이 마련되었더라도 자신의 소득을 합리적으로 지출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무계획적인 지출로 인해 채무가 쌓이는 경우가 있다. 이는 통상 부모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소비생활에 관한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간접적 경험으로 체득하지 못한 청년들 사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다섯 번째, 대출 공급 측면에서의 변화도 청년부채 증가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고 고용도 불안정하여 신용점수가 낮은 청년들이 접근 가능한 소액대출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이른바 ‘비상금대출’로 비교적 쉬운 보증절차를 통해 단시간에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300만 원 이하의 소액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았다.

여섯 번째, 사정이 급해 차분하고 꼼꼼하게 대출기관이나 대출조건을 따져보기 어려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성 대출이 증가하는 것도 청년채무 문제 악화의 주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대학생을 표적으로 하는 신용대출이나 대부업체 및 대부중개업체의 불법적 행위,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발급 행태 등이 청년의 금융생활에 영향을 미쳤다. 소득이 안정되지 않은 청년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소액의 연체라 하더라도 저소득이라는 조건에 금리가 가산되는 채무의 원리가 더해지면서 나중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기도 하였다.

청년의 금융취약을 심화시키는 경로는 앞서 짚은 청년부채 문제의 요인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첫째, 성인으로의 이행 과정에 있는 청년세대들에게는 이행을 위한 필수적인 지출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같은 지출 비용을 지원해줄 수 있는 가족이 부재하거나 가족이 그럴 능력이 안 되는 경우 자력으로 조달해야 한다. 교육 이수를 위한 대학 학자금, 경제활동을 위한 취업사교육비, 주거이행을 위한 전월세 보증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부채를 이용하면서 금융취약성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두 번째, 기존 대출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대출로 해결하는 방식인 이른바 ‘돌려막기’는 부채를 크게 키우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애초에 신용점수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대출을 받으려면 더 많은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이 같은 원리에 따라 돌려막는 횟수가 증가하면서 원금은 원금대로 증가하고 이자는 누적적으로 증가하면서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된다. 돌려막기 이전에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을 구하거나 공공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지만 가족과 지인에 대한 수치심이나 두려움, 그리고 공공에 대한 정보 부족이나 낮은 신뢰 문제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지원기관에서 사례들을 접하면서 내담자들의 전반적인 금융지식 수준이 예상보다 낮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오늘날 청년세대들은 대학 재학 이상의 높은 교육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융, 재무 지식이 상당히 부족한 경향을 보였다.

네 번째, 부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자력으로 해결이 어렵게 됐을 때 누구의 도움을 받고 어떤 과정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문제 발생 초기 단계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거나 조언이나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지지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경우 상황이 더욱 악화할 위험이 커진다. 사적인 지지체계 이외에 공적 제도가 지지체계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데 청년부채와 관련되는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공적 지지체계도 부족하거나 원활하게 연계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다섯 번째, 지원기관에서 제시한 사례들 중 코로나19 기간 동안 이루어졌던 정책금융(대출)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해 문제가 심각해진 사례들이 더러 있었다. 정책자금에 의한 자영업자 대출을 받았음에도 사업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 상환 기한이 도래하면 다른 대출로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구조에 놓일 수 있다. 정책대출은 시장에 비해 이자율이 높지는 않지만 근본적인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아 결국 큰 부담으로 남게 된다. 위기상황에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 대한 저리 대출은 위기를 헤쳐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은 분명하지만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이 새로운 위기를 야기하는 역설적인 상황들도 존재하였다.

여섯 번째,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건강악화는 근로능력 저하로 이어지고 소득감소 또는 단절로 인해 채무가 악화되는 또 다른 악순환 고리로 연결되며 이는 다시 건강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에 빠지게 된다. 건강이 악화될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건강관리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질환을 키우게 되고 이로 인한 근로능력 저하 또는 상실에 따라 소득활동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있다. 금융취약이 건강취약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빈곤으로 빠지게 되는 고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심리·정신건강도 신체건강과 같은 구조로 악순환 고리를 만들어낸다. 채무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도 악순환 고리의 중요한 축으로 작동한다.

금융취약청년의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기관의 대응 노력 또한 몇 가지 요소로 집약된다. 우선 금융취약청년을 발굴하는 노력이다. 일부 지원기관에서는 청년의 생활 근거지를 바탕으로 접근성이 높은 경로에서 금융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들을 발굴하고

있다. 청년의 경우 본인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의 실체를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원기관 홍보물을 통해 자신의 금융취약성을 알아차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포스터를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수당, 중앙정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청년들의 관심과 신청 및 상담 건수가 많은 정책 창구를 통한 홍보가 유용할 수 있다.

두 번째, 지원기관에서는 재무·부채 상담과 더불어 다양한 복지욕구를 파악해 공적 지원을 연계하는 방식의 접근을 실천하고 있었다. 이는 복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복지혜택을 통해 실질적인 삶의 질 향성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공공의 복지지원 경험을 통해 정책소외에서 벗어나 공공의 자기장 안에서 삶의 질을 제고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접근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접근은 복지재단을 모태로 하는 기관의 특성상 잘 작동할 수 있었던 측면이 있다. 이는 금융상담 제공기관에서 여타의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복지제도에 대한 이해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금융과 관련된 전문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청년 친화적인 접근을 취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의 경우 채무조정을 필요로 하는 청년이 내방할 때 곧바로 채무조정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채무조정 과정과 그 이후까지의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표 IV-10. 청년의 금융취약 경험 구조

질문	핵심 주제
청년의 금융취약성을 유발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 가족 부양과 빚의 대물림 - 질병 - 청년 세대의 선호 - 소비 성향과 금융지식 부족 - 문턱 낮은 대출상품 증가 - 작업대출, 대출사기, 그리고 변종들
청년의 금융취약성을 심화시키는 경로는 어떠한가	-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조달 - 돌려막기의 심리적 요인 - 낮은 수준의 금융·재무지식 - 전달체계와 지지체계 부족 - 준비되지 않은 공공금융정책 - 부채-건강-경제활동의 순환고리
어떻게 해야 하는가	- 금융취약청년 발굴 노력 - 다차원적 욕구에 대응하는 공적 지원제도 연계 - 청년친화적 전문 상담 및 서비스 접근 방식 개발

있도록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대중적 요법보다 생애과정 동안 건전한 재무설계를 통한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이를 통해 청년으로 하여금 자신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정리하여 표로 제시하면 표 IV-10과 같다.

3. 청년의 금융취약 정책지원 과제

1) 청년의 금융취약 현황과 정책지원 방향

교육 이수 이후 경제적 독립을 준비하는 청년기는 생애주기에서 소득활동을 시작하며 자산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과거에는 소득 중 일부를 저축한 금융자산을 종잣돈으로 생애 자산을 형성하기 시작했지만 1997년 금융위기 이후에 신용카드나 주택담보대출 등 부채를 기반으로 자산을 형성하는 금융화가 확대되었다(김도균, 2020). 그리고 2020년대 현대 청년의 부채 문제는 과거에 청년기를 보낸 다른 세대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새로운 양상에 접어들었다. 청년의 가계부채 비중이 늘고 증가율도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취약차주의 비중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실태가 이러한 상황을 방증한다.

금융, 특히 청년의 부채는 양면성을 가진다. 고등교육을 이수하기 위한 학자금이나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보증금 등 인적 자본을 확보하고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담보하는 밑천이 된다. 하지만 능력을 벗어나는 과도한 부채나 무계획적인 부채, 악성 부채는 이행기 청년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 더욱이 부정적인 부채는 옅히고설켜 덧쳐럼 금융취약 상태를 벗어나기 어렵게 만든다. 혹은 본인의 책임이 아닐지라도 가족의 부채 상환부담을 대신 지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타인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기도 한다(김성아 외, 2023).

이때 금융 상태를 관리하고 재무 계획을 수립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금융의 악순환에 발을 들이지 않거나 들였더라도 빠지기 위한 탈출로를 찾을 수도 있다. 공·사적 지지체계의 결핍은 사회적 고립의 새로운 양상으로서 금융취약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장은 현세대 청년의 금융 취약 실태를 파악하고 정합적 정책개발을 위한 근거를 생산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청년의 금융취약성을 이해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청년의 금융 취약 실태를 입체적으로 파악하였다. 청년이 이용

할 수 있는 소위 금융 관련 정책 현황을 분석하여 실태와 정책 간 간극을 탐색하였다.

청년은 성인으로서 독립된 삶을 위해 경제활동을 시작하면서 자산을 형성하기 시작한다. 이 자산은 중년 후기에 최고점을 보이며 노년기에는 점차 감소하는 모딜리아니의 생애주기 가설과 유사한 실태를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2020년대를 살아가는 청년이 모두 본인 명의의 부채를 가지는 것은 아니었다. 20대 초반은 3.6% 정도, 20대 후반은 17.8% 정도, 30대 후반은 33.7% 정도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고, 청년의 부채 보유율은 오히려 지난 10년 전보다 감소한 것이다. 그런데 청년 부채의 양상은 다소 변화했다. 10년 전 청년의 부채는 교육비와 생활비 마련을 주된 이유로 했다. 최근 청년의 부채도 여전히 교육비와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부채의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거주주택이나 부동산,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목적으로 한 부채의 비율도 높아졌다. 특히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 전월세자금대출이 확대되어 온 추세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강민석, 정종훈, 2022).

더욱이 부채를 중심으로 하는 청년의 금융생활 실태는 청년 세대 내에서 이질적으로 드러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30대 청년의 부채가 급증하고 계층별로는 상용직 임금근로자나 자영업자가 부채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성 부채의 비중이 여전히 높으며 대부업체에 의한 악질의 부채를 가진 청년이 여전히 존재한다. 자산형성을 위한 종잣돈 혹은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빚의 양면성을 가지는 청년 부채의 문제는 청년 세대 간 격차의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부채를 기반으로 자산을 형성하는 실태가 자리 잡으면서, 금융취약성은 상환능력 대비 채무액의 규모로 판단하는 과중채무, 연체를 지속한 체납 경험, 일정 개수 이상의 채무를 보유하는 다중채무, 제도권 외 악성 부채를 가지는 채무의 질, 채무 이행능력에 의한 신용 수준, 채무조정이나 개인파산 등 정책에 의한 채무조정 경험, 그리고 부채 상환에 대한 주관적 부채부담 등 다차원적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자료의 이용가능성으로 인해 다수의 국내외 연구에서 과중채무나 체납 경험, 채무의 질 등 금융취약성을 제한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금융취약청년의 실태는 이 연구의 일환으로 2023년 4~5월 동안 부채가 있거나 없는 청년 2,2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 금융생활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참고할 만하다.⁴⁶⁾ 부채가 있는 청년보다 부채가 없는 청년의 삶의 만족 수준이 다소 높다거나

46) 다만 이 조사는 부채가 있는 청년의 모집단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표집계획을 수립한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대표성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지지체계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간이라도 더 높은 실태는 청년에게 있어 부채가 긍정적인 수단으로서만 활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방증일 수 있다. 부채를 갖고 있는 청년 중 26.2%는 지난 1년 동안 연체 경험이 있었다. 부채가 매우 부담된다거나 약간 부담된다는 응답이 전체의 약 80%에 달하며 부채 부담으로 생활비를 줄이는 경우 가장 쉽게 줄이는 항목은 식료품비였다. 부채를 가진 청년 중 재무교육이나 상담 경험을 갖고 있는 청년은 22.8%에 불과한데 이 중 절반 정도에 달하는 금융 정보 습득 경로는 인터넷 검색으로 나타나 정보의 질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장애,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다른 유형의 취약성을 갖고 있는 청년은 부채를 갖고 있는 청년의 약 15% 정도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청년의 금융취약성이 배타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다른 유형의 취약성과 중첩되어 청년의 삶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이다.

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현행 중앙행정기관의 금융정책은 약 67개에 달한다. 그런데 이 중에서 대출 사업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교육이나 상담 사업은 약 9% 정도에 불과하다. 지방자치단체의 금융정책은 300개를 넘지만 지역 간 편차가 존재한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금융정책과 마찬가지로 대출보증 혹은 이자를 지원하는 대출성의 사업이 약 45% 정도로 절반 정도이고 재무관리를 위한 교육이나 상담 사업은 7% 정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공공에 의한 금융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비영리 분야의 금융 지원은 미진한 상황이다.

결국 부채를 중심으로 한 청년의 금융생활 실태는 최근에 이르러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시의성 있는 근거와 이해가 필요하다. 청년 세대 내 격차가 존재하며, 과중채무 혹은 연체나 악성 채무 등 금융취약성에 노출된 청년들 또한 존재한다. 특히 의논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가 결핍된 경우 금융취약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금융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취약성이 복합적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남은 생애를 준비하는 청년기로의 이행을 지원하고 기본적인 삶의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격차 완화와 금융의 관점에서 취약한 청년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금융정책과 청년이 경험할 수 있는 금융취약성 간 정합성을 제고해야 한다. 현세대 청년은 인터넷 등에서 통제되지 않은 금융 정보를 습득할 가능성이 높는데 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현행 금융정책은 대출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재무관리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를 위한 교육이나 상담 기능은 충분하지 않아 금융취약청년이 정책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 청년정책 추진과제(안)

(1) 전 생애 금융 건강성 확보를 위한 청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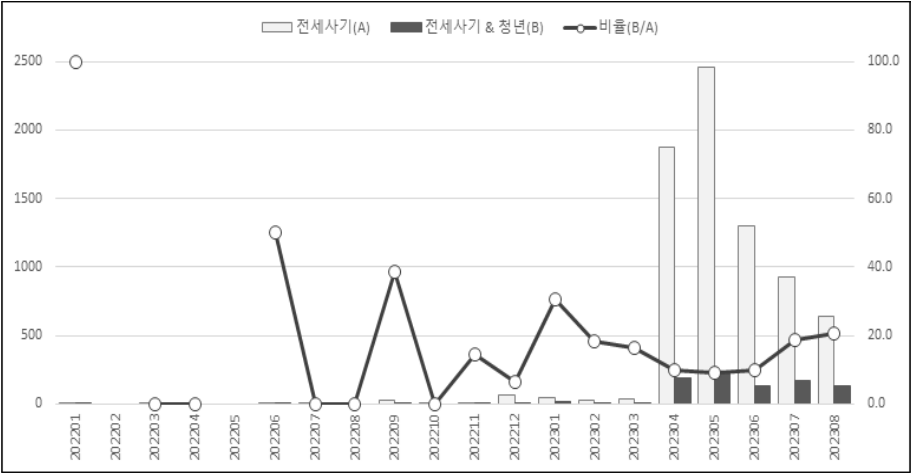
원가족 등의 보호를 받는 미성년기 이후 독립된 성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청년은 경제활동을 시작하고 자산을 형성하기 시작하게 된다. 이 시기는 자산을 구축하는 중장년기와 자산을 유동화하는 노후 소득원으로 활용하는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경제적 웰빙(economic well-being)의 근간으로 작동한다.⁴⁷⁾ 중장년기와 노년기를 앞두고 독립된 성인의 삶으로 이행하는 청년기의 자산형성은 전 생애주기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도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외에도 취약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계좌가 그러하다. 북한이탈주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도 있다. 이러한 자산형성 제도는 근로를 조건으로 하거나 대상자 범위를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한하여 저축액의 일정 비율을 매칭해 지원하거나 유리한 금리를 적용한다.

연 최고 10%의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희망적금 중도 해지자가 가입자 4명 중 1명 정도의 수준인 68만 명에 이른다는 보도가 있었다(서울신문, 2023.6.21). 안정적인 일자리에 정착하기 전에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해 이직의 가능성이 있는 청년기에 소득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부담될 수 있다.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기간 중 예상하지 못한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때 적금액을 중도 해지할 가능성이 높다. 혹은 가상자산 등 위험도가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자산을 증식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적금을 해지하는 판단을 할 수도 있다.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계층은 오히려 이 정책에 진입하기 어렵거나 중도 탈락할 가능성이 높은 등 정책의 대상자 범위가 역진적일 수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청년기 자산형성의 사각지대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다.

47) 가계에서 자산을 형성하고 활용하는 일련의 생애 궤적을 자산 기반 복지라고 부른다. 한국에서 자산 기반 복지가 발달한 것은 공적 사회보장체계의 불충분성으로 인한 반작용이라는 주장이 있지만(김도균, 2020) 이 논의는 이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본다.

(단위: 건, %)



* 출처: 빅카인즈, <https://www.bigkinds.or.kr/>에서 2023년 9월 23일 검색. 각 키워드를 주제로 검색한 결과를 연구진이 정리함.
* 주: 2022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월별 키워드에 해당하는 기사 건 수임.

그림 IV-13. 청년 전세사기 관련 기사 추이

거주 공간의 전월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이 확대되면서 청년의 가입 사례가 늘었다(강민석, 정종훈, 2022). 예상하지 못했지만 2022년 하반기에 소위 전세사기라는 신종 사기 수법이 등장하면서 피해자가 늘었고 청년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림 IV-13을 보면 전세사기 중 청년을 키워드로 하는 기사의 비율이 적지 않은 수준을 유지한다. 2023년 6월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대출을 통해 행태가 변화했고 보호체계가 미비한 상태에서 청년은 피해자가 되었다. 따라서 생애 경제적 웰빙의 근간이 되는 자산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청년의 건강한 금융생활을 지지하는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 특히 새로운 부채를 형성해 이자와 원금 상환부담을 지우는 청년정책의 금융화를 지양하고 청년의 실제 삶에 가닿기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2) 금융취약청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

금융과 생애 재무관리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청년은 금융취약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상환 능력보다 높은 채무액을 지거나 불법 사금융 등 악성 채무를 지게 될 수 있다. 휴대폰 등을 자신의 명의로 구매한 후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결국 빚과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내구제 대출(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의 피해를 입거나 접근성이 높아진 민간의 소액 생활비 대출을 이용하다가 결국 상환하지 못할 수 있다. 돌려막기의 쳇바퀴를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고 납부기일을 지키지 않아 연체 실적이 쌓여 신용 점수가 낮아지기도 한다.

청년의 금융취약 유형은 다양하다. 한 가지 공통되는 것은 적절한 조언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지체계가 없다는 사실이다. 사적 지지체계가 비어 있다면 공적 지지체계로서 사회안전망이 작동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금융취약 유형에 대응하여 활용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는 연체 단계별로 설계되어 있다.⁴⁸⁾ 연체 전에는 신속채무조정을 통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체 기간이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경우, 이자를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금융기관 연체가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개인워크아웃, 즉 채무조정을 통해 이자를 감면하고 상환 의무를 분할하거나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를 일부 감면하는 것도 가능하다. 상환능력과 비교해 채무가 과도한 경우 법원에 의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상담할 수도 있다.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파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전문가와의 재무상담을 통해 상환 계획을 조정하거나 재무상태를 점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취약한 청년이 도움을 요청하기에는 정보를 검색하기 어렵거나 검색하더라도 문턱을 넘기 어려울 수 있다. 인지적 접근성이나 심리적 접근성이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 방문하더라도 위축된 청년이 상담과정에서 지원을 포기하거나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때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주변에서 관련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홍보를 다각화하고 방문 시 심리적 거부감을 완화할 수 있는 공간과 실무자의 역량이 필요하다.

(3) 다중 취약청년을 위한 종합적 지원

청년의 금융취약성은 사회적 고립이나 저소득, 경제활동 중단과 같은 또 다른 유형의 취약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심리·정서적 압박감으로 인해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기도 한다. 혹은 은둔 청년이 양질의 정보를 습득하지 못하고 인터넷 등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경로를 통해 불법 사금융에 의한 채무를 이용하는 등 취약한 청년이 금융취약성에 노출되기도 한다. 금융취약청년은 다중적인 취약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48)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https://ccrs.or.kr/main.do>에서 2023년 10월 6일 검색.

따라서 다중 취약성에 노출된 금융취약청년에게는 복합적 욕구에 대응하는 종합적 지원이 필요하다. 광주청년드림은행은 채무조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과 심리 분야, 도박 및 중독 분야, 자활 분야, 여성 및 장애인 지원 분야, 복지 분야, 그리고 정책 분야 등 지역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를 형성하고 있다(그림 IV-14). 사례가 발생할 시 유관기관에 의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거나 유관기관에 의해 새로운 사례를 발굴할 수도 있다. 하나의 기관에서 종합적 지원을 제공할 수도 있지만 지역 내 가용 자원을 이용함으로써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금융취약성으로 인해 위축된 청년은 지역 내에서 도움을 경험하면서 활력을 회복하는 기회로 작동할 수도 있다. 또한 주기적으로 협력기관을 업데이트하여 시의성을 확보하면서 금융안전망의 실질적 지원 범위를 확장해가고 있다.

광주의 사례는 다중 취약성에 노출된 금융취약청년에게 지역에서 종합 지원을 제공하는 수범사례이지만 지리적 범위는 제한적이다. 청년 친화적 종합 금융안전망 협력체계를 타 지역에도 확산하여 전국 어디에서도 누락된 사례 없이 청년의 취약성에 대응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4) 청년의 금융취약성 완화를 위한 기반 구축

첫째,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에 기반한 청년 친화적 전달체계 운영이 필요하다. 공적 지원기관에 의한 지원은 신뢰성을 담보한다. 하지만 심리적으로 위축된 금융취약 청년은 공적 지원이 필요할 경우 자신이 그 지원기관에서 해당 지원을 받는 대상으로서의 적절성에 대해 스스로 의문을 품다가 포기할 수 있다. 혹은 청년이 지원기관에 방문한다는 것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작동하거나 위압감을 느낄 수도 있다.

2023년 3월 개정 시행된 「청년기본법」 제24조의4(청년지원센터의 지정 등)에서 청년 정책의 홍보, 지역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과의 협력체계 구축, 청년지원을 위한 조사와 청년 지원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지역에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청년지원센터는 현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의해 청년 공간으로 조성된 청년센터를 전신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임대환 외, 2023; 정세정 외, 2020). 전국에 약 200개소 정도 존재⁴⁹⁾하는 청년센터는 개정 청년기본법 등에 의해 청년정책 전달체계로서의 요구에 따라 기능하고 있다.

49)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 <https://www.youthcenter.go.kr/youngSpC/youngSpCList.do>에서 2023년 9월 23일 기준 검색되는 청년센터는 193개이다.



* 출처: 광주청년드림은행 홈페이지. <https://gjdreambank.modoo.at/?link=aiugcui>에서 2023년 9월 23일 검색.

그림 IV-14. 지역 기반 청년 금융안전망 사례(광주청년드림은행)

표 IV-11.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상담사 시험 과목 및 내용

시험과목	시험내용
신용상담의 이해	- 신용상담의 의의와 필요성 - 신용상담방법 및 윤리 - 관련 상담사례
신용상담을 위한 재무관리	- 가계재무관리에 대한 이해 - 신용 및 부채에 대한 이해 - 관련 상담사례
신용상담 관련 법규	- 채권채무에 관한 법률관계 - 신용상담에 관한 생활법률 - 관련 상담사례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 채무자구제제도 - 다중채무자 금융·복지지원제도 - 관련 상담사례

*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 홈페이지. <https://www.educredit.or.kr/ccedu/cc/ccEduIntro.do>에서 2023년 9월 23일 검색.

금융상담 및 채무조정 등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전문 지원기관과 함께 청년이 방문 할만한 청년 친화적 전달체계로서의 우월성을 가지는 청년지원센터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지점이다. 청년지원센터가 청년정책과 청년을 잇는 게이트웨이로서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있는 현재(임대환 외, 2023), 금융취약청년의 공적 지원제도로의 진입과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정책 전달체계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청년 인 지적 전문인력 확보 양성 및 보수교육이 필요하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과중채무와 신용문제를 상담하는 전문가로서 신용상담사 자격기준을 운영하고 있다(표 IV-11).⁵⁰⁾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신용관리, 재무관리, 신용문제 진단, 매추조정 및 복지 지원 등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용문제를 예방하고 과중채무자의 회생을 지원한다. 신용상담 및 재무관리, 관련 법규와 채무자 구제제도 등에 대한 지식을 함양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보수교육을 통해 상담사의 전문성을 관리한다.

그 외에도 사단법인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에서는 금융복지상담사 자격을 관리한다. 민간자격으로서 국가 공인자격은 아니다. 2급 금융복지상담사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 2급 자격증을 부여하고, 2급 금융복지상담사 중 1급 금융복지상담사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 1급 자격증을 부여한다(표 IV-12). 협회에

50)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 홈페이지. <https://www.educredit.or.kr/ccedu/cc/ccEduIntro.do>에서 2023년 9월 23일 검색.

표 IV-12. 사단법인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의 금융복지상담사 시험 과목 및 내용

1급	2급
- 금융 복지 상담 실습과정 - 보험 심화과정 - 채무조정 심화과정 - 법무 심화과정	- 금융복지상담 개론 및 실무 - 금융의 이해 - 채무조정의 이해 - 복지의 이해

*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 홈페이지. <https://www.educredit.or.kr/ccedu/cc/ccEduIntro.do>에서 2023년 9월 23일 검색.

서 양성교육과 보수교육, 실무자 및 전문가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상기의 자격기준이 있지만, 위촉된 금융취약청년과의 심리적 유대(rapport)를 형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독립된 성인으로서 도움을 받는 경험이 부족한 청년의 특성을 이해하고 심리적 유대를 바탕으로 종합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융 분야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청년 인 지적 전문성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광주청년드림은행은 청년 연령대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현장에서 보수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금융취약청년과의 심리적 유대를 확보하고 있다.⁵¹⁾

셋째, 법적 근거의 정합성 제고가 필요하다. 2023년 3월 개정 시행된 「청년기본법」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의무를 가진다. 동 조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채무여건 개선 및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의무도 가진다.

그러나 청년의 금융생활과 금융취약성에 대응하는 정책의 법적 근거가 소위 기본법에 있다. 향후 정책 내용 및 수행 방법 등의 구체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년기본법」을 개정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하위법을 별도로 제정하면서 소관부처 등 책무의 주체를 명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 관련 정보의 질 관리와 규제가 필요하다. 2023년 9월 현재 인터넷에 ‘대출’을 검색하면 서민금융진흥원이나 금융기관의 정보가 검색되기도 하지만 가장 상위에서 눈에 띄는 것은 광고성 정보다. 대출을 갖고 있는 청년의 절반 정도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검색한다는 점에서 금융 관련 정보의 질 관리의 필수적이다. 필요하다면 규제 또한 고려해야 한다. 현재 인터넷 불법 및 유해 콘텐츠 규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51) 실무자 인터뷰 내용이다.

확산되고 있다. 불법 사금융이나 내구제 대출 또한 유해 콘텐츠로서 규제 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청년뿐 아니라 시민의 금융 건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 — 제5장 발달장애청년 정책소외 실태와 과제

- 1. 발달장애청년의 정책소외 현안과 쟁점
- 2. 발달장애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분석
- 3. 발달장애청년의 정책지원 과제

1. 발달장애청년의 정책소외 현안과 쟁점

1) 정책대상의 개념과 특성

발달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의 정신적 장애 중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의미한다. 동법 시행령에서는 지적장애인을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이라 정의하고 있다. 자폐성장애인은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 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의미한다⁵³⁾.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발달장애인 수는 263,311명으로 전체 등록장애 인구 2,652,860명의 약 9.93%를 차지하고 있다(표 V-1). 전체 장애인 대비 발달장애인 수는 상대적으로 소수이지만 장애 수준이 심한 장애인의 약 26.6%가 발달장애인이며(보건복지

표 V-1. 발달장애 인구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0년	2015년	2020년	2022년
등록장애인	2,517,312	2,490,406	2,633,026	2,652,860
발달장애인	176,137	210,855	247,910	263,311
등록장애인 대비 발달장애인 비율	7.0	8.5	9.4	9.9

* 출처: 보건복지부(2022b). 장애인통계.

52) 이 장은 세부보고서인 협동연구총서(23-88-04)의 주요 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박광옥 교수(한국보건복지인재원) 등이 집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해당 세부보고서를 참고하여야 한다.

53) 법제처 홈페이지. <https://www.law.go.kr/LSW/lsSc.do?dt=20201211&subMenuId=15&menuId=1&query=%EC%9E%A5%EC%95%A0%EC%9D%B8%EB%B3%B5%EC%A7%80%EB%B2%95#undefined>에서 2023년 5월 29일 검색.

부, 2022b), 매년 발달장애인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특별한 관심을 필요로 하는 정책대상자라 할 수 있다(김성희 외, 2013).

발달장애인은 대체로 인지상의 어려움과 의사 표현의 제한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에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하여 인권침해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다수의 발달장애인은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어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발달장애인은 사회에서 대표적인 주변화된 대상(Gittins & Rose, 2007)으로 여겨지고, 학령기 이후에도 개별적 지원 욕구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최복천 외, 2016). 특히 청년기의 발달장애인은 학교 졸업 후 재할치료 및 제도교육 등이 종결되고, 지역 서비스 및 인프라가 미비한 성인기에 접어들면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된다. 장애 수준 및 개인 상황에 따라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일상생활 지원 부족, 대인관계 협소, 취업 진입 제한, 심리·정서·행동 문제 악화, 사회 고립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되며(서선진, 2020; 이은미, 백은령, 2010), 학교 졸업 후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학령기 때보다 가족의 돌봄이 증가된다(박애선, 2018; 이원남, 김경신, 2017).

청년기는 성인기로 진입하는 시기로 청년들은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생활로 이행하는 중요한 발달과제에 직면한다. 발달장애인이 청년기의 주요 과업인 자립을 적절히 준비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못할 경우 불안정한 성인기를 보내면서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증가하고(Mill, Mayes & McConnell, 2010), 이러한 의존성은 중년기와 노년기에도 지속되면서 삶의 전반에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최성일 외, 2013). 또한 발달장애 청년의 지역사회 자립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돌봄 부담 경감 등 가족 구성원의 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국가와 사회적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게 다루어야 하며, 필요한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손성화, 강영심, 2021).

2) 정책대상의 정책소외 현안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은 단편적이거나 선별적인 서비스 지원을 지양하고 보건·의료, 보육·교육, 고용, 복지서비스, 권익옹호 등 다양한 영역에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외에서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보통의 삶(ordinary life)”을 영위할 동등한 권리가 있다는 인식 아래 삶의 주요 영역에서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들을 강조해 왔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단순한 보호나 시혜적 조치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과 욕구를 바탕으로 삶의 중요한 과업을 수행하거나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분명한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정책은 그동안 고용촉진제도(1990년), 편의증진제도(1997년), 특수교육 확대(2007년), 차별금지제도(2008년), 장애인연금제도(2010년), 장애인활동지원제도(2011년),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2011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왔으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은 취약한 편이었다. 특히 조기진단·치료체계, 장애인 돌봄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성과 일상생활능력 향상에 어려움이 있고, 부모 부담의 가중과 근로 가능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나 자립지원체계도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4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지원법)을 제정하면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포괄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제시하였다. 「발달장애인지원법」은 기존의 장애인 관련 법률들과 달리 발달장애인이라는 특정 장애 유형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 요소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 있다(최복천 외, 2016). 특히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지역사회 서비스와 자원을 연계하도록 하고 있어 국가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공식화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동법 제정 후 발달장애인을 위한 제도 및 서비스 확대라는 표면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두 번에 걸쳐 발달장애인 지원에 대한 대책을 발표⁵⁴⁾하였는데, 이에 근거하여 생애주기별 필요한 서비스 확충이라는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다. 또한 2022년 출범한 20대 정부가 제시한 국정과제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이행되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관계부처 합동, 2023c)에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수의 지원방안⁵⁵⁾을 제시하고 있어 장애 수준을 고려하여 발달장애인을 지원 서비스가 조금 더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4)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 이후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 확충을 위해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2018년 9월 12일)과 코로나19 시기에 어려움이 심화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발달장애인과 가족 지원 강화를 위해 '발달장애인 평생 돌봄 강화 대책'(2022년 11월 29일)을 발표하였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2.11.29.)

55)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체계 구축,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도입, 1인 집중지원서비스 확대, 최중증 전담 주간보호시설 확대, 장애인복지관 1:1 낮 활동 지원 확대 등 최중증을 포함한 발달장애인의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돌봄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 지원사업의 도입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생애주기별 지원들로 인해 마치 발달장애인을 위한 충분한 지원과 서비스가 갖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2022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발달장애청년의 62.7%가 학교, 일자리 외 이용하는 서비스 기관이 없다고 응답(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22b)하여 여전히 지원 공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촘촘한 지원 강화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부분은 청년정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지금까지 청년정책은 총리실,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각각의 청년지원 목적에 따라 서비스를 운영하였고, 청년정책의 대표적 전달체계인 청년센터 역시 전국적으로 연계된 운영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광역 단위 또는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운영되어왔다. 최근 2023년 3월 청년기본법이 개정(시행일 2023년 9월 22일)되면서 전국의 지역센터를 지원하고 각 기능을 조정하는 역할로 중앙청년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중앙-광역-기초로 이어지는 청년정책의 일관된 전달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2023년 청년기본법(제3조)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 청년’의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한편 취약계층 청년을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으로 정의하였다. 최근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 청년도 청년정책의 주요한 주체임을 명확히 하였기 때문에 발달장애청년도 청년정책과 청년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청년정책에 대한 제도 분석 결과, 의료·건강, 평생교육, 경제생활, 사회참여, 주거 등의 다양한 청년정책 이용에서 발달장애청년은 완전히 소외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청년정책이 취약청년을 민감하게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인지적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청년이 청년정책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정책 정보에 대한 인지, 서비스 신청, 이용 등 전 과정에서 별도의 지원 서비스가 마련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이에 대한 서비스는 부재한 상태이다.

2. 발달장애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분석

1) 조사개요

이 연구는 발달장애청년의 정책소외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문헌 및 2차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발달장애청년의 일반적인 생활 실태 및 지원 욕구를 파악하고 지원 영역별 발달장애인정책 및 청년정책의 세부 내용을 검토하였다. 그에 더하여 조금 더 특별한 욕구를 가진 발달장애청년(최중증, 학대 피해 및 범죄 연루, 1인 가구, 경도, 기혼, 농산어촌)의 생활 실태 및 지원 욕구에 대한 심층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발달장애인 당사자 집단을 포함한 자문위원단을 운영하여 필요한 정책과제를 공동으로 도출하였다.

(1) 국내외 문헌 및 2차 자료 분석

발달장애청년의 삶의 영역별 일반적인 생활 실태 및 특성과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발달장애청년 관련 문헌 분석과 2차 자료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의 2022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통계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 발달장애인정책과 청년정책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고 발달장애청년 입장에서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수준을 검토하였다.

(2) 심층 및 초점집단면접

심층 및 초점집단면접을 통해서는 발달장애청년의 일반적인 상황 외에 조금 더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발달장애청년의 삶의 영역별 생활 실태 및 지원 욕구를 파악하였다. 구체적으로 6개 그룹-최중증, 학대 피해 및 범죄 연루, 1인 가구, 경도, 기혼, 농산어촌지역의 발달장애청년의 참여자⁵⁶⁾를 대상으로 심층 및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총 33명이 참여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발달장애청년 7명(1인 가구 2명, 경도 2명, 기혼 3명), 부모 17명(최중증 5명, 학대 피해 및 범죄 연루 3명, 1인 가구 3명, 경도 3명, 농산어촌 3명), 종사자 9명(학대 피해 및 범죄 연루 3명, 1인 가구 2명, 기혼 2명, 농산어촌 2명) 등이

56) 그룹 선정은 연구진에서 1차로 선행연구 분석 결과 취약성이 높은 그룹을 선정하였으며, 2차로 자문위원단 회의에서 그룹 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참여하였다. 발달장애청년에 대해서는 1:1 심층면접이 대면으로 진행되었으며, 필요 시 원활한 인터뷰 참여를 위해 해당 청년을 잘 아는 조력자가 참여하였다. 부모와 종사자의 경우에는 초점집단면접(FGI)이 실시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 주요 결과

본 연구는 발달장애청년의 생활 실태 및 지원 욕구 분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관련 문헌 및 2차 분석 결과를 토대로 발달장애청년이 일반적으로 겪는 삶의 영역별(일상생활, 의료·건강, 평생교육, 경제생활, 사회참여, 미래 준비(주거), 결혼 및 양육, 가족, 인권, 복지서비스) 생활 실태 및 지원 욕구를 파악하여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분석틀을 기반으로 6개 그룹의 발달장애청년의 심층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로써 발달장애청년의 일반적인 생활 실태 및 지원 욕구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파악하거나 추가되는 사항을 탐색하였다. 이 장에서는 발달장애청년의 삶의 영역별 생활 실태와 지원 욕구(일반적 사항, 6개 그룹의 심층내용)를 중심으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1) 국내의 문헌 분석 결과

국내의 문헌 분석을 통해 발달장애청년이 일반적으로 겪을 수 있는 삶의 영역별 생활 실태는 표 V-2와 같이 도출되었다.

표 V-2. 발달장애청년의 일반적 생활 실태

구 분	생활 실태	관련문헌
일상생활	• 일상의 무료함	- 박애선(2018), 이미정, 주경희, 남세현, 우승명(2019)
	• 상시 돌봄 필요(도전 행동, 최중증 등)	- 김미옥, 김고은, 김지혜(2020)
	• 안전 예방 및 대응 어려움	- 서경주, 박수경, 이정하(2022)
의료·건강	• 건강관리 관심과 어려움 (영양, 식습관, 운동, 건강검진 등)	- 김동홍, 정종화(2021), 김성희 외(2021)
	• 정신질환 동반	- 신현기(2019), 홍강익(2014), Cooper & Holland(2007)
	• 약물 복용 및 관리 필요	- 신현기(2019)

구 분	생활 실태	관련문헌
	• 중독문제(SNS 중독 등)	- 김민영, 홍성두(2016)
	• 의료비 부담	- 김성희 외(2021)
	• 공공 및 생활체육 접근 제한	- 김성희 외(2021), 오준택, 조가람(2022)
평생교육	• 생애주기별 필요 교육 부재	- 김민영, 홍성두(2016)
	• 고등교육 진입 어려움	- 박애선(2018)
	• 대학생활 부적응	- 손성화, 강염심(2021)
경제생활	• 취업 욕구와 진입 어려움	- 서선진(2020), 임예직, 김주옥(2022)
	• 근로 유지 어려움	- 안경숙, 이숙향(2022)
	• 열악한 근무환경 및 조건	- 이은진, 한기명(2022), 조재환, 이진혁(2021)
사회참여	• 소속감 부재	- 김민영, 홍성두(2016)
	• 사회(관계, 소통)기술 부족	- 김건희, 조정민, 김소현, 서석진(2013), 김민영, 홍성두(2016), 김태건, 임경원(2018), 이정기, 안성우, 백유순(2002)
	• 제한된 관계망	- 김민영, 홍성두(2016), Heller & Harris(2011)
	• 심리·정서적 고립감	- 서선진(2020)
	• 정치참여 인식 및 기회 부족	- 이우진, 김태강(2017), Schriener & Ochs(2000)
	• 친화적이지 않은 지역 환경 (지역 편의, 인식, 이동수단 등)	- 김성희 외(2021), 이미현, 박성재(2018)
미래 준비 (주거 포함)	• 자립준비 역량 부족	- 손성화, 강염심(2021)
	• 자기결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	- 이숙향, 홍주희, 염지혜, 이정아(2019), Shakespeare(2013)
	• 지역사회 자립 시 외로움	- 김민철, 김경미(2017)
	• 금전 관리 어려움	- 김성희 외(2021)
	• 자립 시 주택 확보 및 유지 어려움	- 김민철, 김경미(2017)
결혼 및 양육	• 이성 교제에 대한 편견	- 김민영, 홍성두(2016)
	• 결혼/양육 교육 및 정보 부족	- 김승희, 손병돈(2020), 김현아, 나경은(2022)
	• 가사 생활 및 관리 어려움	- 김승희, 손병돈(2020)
	• 자녀 양육 어려움	- 김미옥, 박미숙, 박현정(2015)

구 분	생활 실태	관련문헌
	(학습지원, 비장애 자녀 양육 등)	김성희 외(2021), 윤혜영(2013)
	• 경제적 어려움	- 김미옥 외(2015)
	• 가정폭력	- 서홍란, 정소연(2018)
	• 사회지지(원)체계 미비	- 강승원(2015), 강승원, 이해경(2018), 이광호, 최선희, 오승환(2019)
	• 다 장애 가구의 가중된 어려움	- 김예리, 박지연(2017), 심은정, 박지연(2017), 임보령, 박지연(2020)
가족	• 가족돌봄 증가	- 문민정, 장연집(2011), 박애선(2018), 어형남, 김영경(2018), Leonard et al.(2016), Lloyd, Wehmeyer, & Davis(2004)
	• 주 돌봄자의 어려움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등)	- 손성화, 강영심(2021)
	• 부모 고령화와 미래 우려	- 김진숙(2015), 김동홍, 정종화(2021), 윤선미, 정이윤, 양호정(2022), 최해경(2010)
	• 가족 관계 악화(특히 감염병 시기)	- 김성희 외(2021), Robinson, Hill, Fisher, & Graham(2020)
인권	• 지역사회 내 학대 증가	- 김성희 외(2021)
	• 빈번한 차별과 배제 (고기능 자폐성장애인 포함)	- 김교연(2017), 민기연, 주란(2021), 이동석(2018), Gill & Liamputtong(2011)
	• 위법행위 및 범죄 연루 증가	- 김성희 외(2021)
복지서비스	• 공적 지원 배제 및 거부(최중증 등)	- 이은미, 백은령(2010), Blacher, Kraener, & Howell(2010)
	• 적합 서비스 부재	- 김민영, 홍성두(2016), 김성희 외(2021), 서선진(2020)
	• 서비스(정보) 접근성 격차 심화	- 김성희 외(2021), 서선진(2020)
	• 성인 재활/치료 서비스 중단	- 김민영, 홍성두(2016), 김성희 외(2021)
	• 다 장애 가구 지원 부족	- 김성희 외(2021)
	• 종사자의 지원인식 변화	- 김승희, 손병돈(2020)

국내외 문헌 분석을 통해 발달장애청년이 일반적으로 겪을 수 있는 삶의 영역별 지원 욕구는 표 V-3과 같이 도출되었다.

표 V-3. 발달장애청년 삶의 영역별 지원 욕구

구 분	지원 욕구	관련문헌
일상생활	• 낮 활동 지원	- 김성희 외(2021)
	• 지속적인 일상 지원	- 문다영, 유영미(2021), 진재찬, 고관우(2021)
	• 도전행동 지원	- 김미옥 외(2020), 윤선미 외(2022)
	• 응급 및 위기상황 지원	- 임상옥, 전지혜(2021)
의료·건강	• 예방적 건강관리 지원 (영양, 식습관, 운동처방, 정기검진 등)	- 김성희 외(2021)
	• 다양한 생활체육시설 및 프로그램	- 김성희 외(2021), 오준택, 조가람(2022)
	• 전문 상담 및 정서 지원	- 임예직, 김주옥(2022)
평생교육	• 성인기 생활에 필요한 지속적 학습	- 김민영(2010), 이미현, 박성지(2018), 최연진, 임경원(2019),
	• 고등교육(대학 등) 기회	- 이은진, 한기명(2022)
	• 대학 학습 및 생활 지원	- 김민영, 홍성두(2016)
경제생활	• 진로에 대한 포괄적인 전환계획과 교육	- 김민영(2010)
	•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	- 임재현(2020)
	• 취업 진입과 유지 프로그램 확대	- 강혜인(2019), 진재찬, 고관우(2021), 안경숙, 이숙향(2022), 이은진, 한기명(2022)
	• 재직자 직무교육 및 훈련	- 이은진, 한기명(2022)
	• 직장 내 장애이해 교육	- 진재찬, 고관우(2021)
사회참여	• 관계망 확대 및 유지 지원	- 문다영, 유영미(2021), 서선진(2020)
	• 발달장애인 친화적 지역사회환경 구성	- 김성희 외(2021), 문다영, 유영미(2021)
결혼 및 양육	• 특화 지원체계 구축	- 강승원, 이해경(2018)
	• 기혼 발달장애 가구 사례관리 (일상생활, 경제적, 심리적 지원, 가족 관계 등 개인별 지원)	- 김성희 외(2021), 김효정, 김용득(2019), 유창민, 오혜인(2016),
	• 교육 및 정보 제공	- 강승원, 이해경(2018), 유창민, 오혜인(2016),
	• 자녀 (양육) 지원	- 김성희 외(2021), 이송희(2018)
	• 자연적 지원망 형성	- 양여경, 박승희(2021)

구 분	지원 욕구	관련문헌
미래 준비 (주거 포함)	• 미래 계획	- 문다영, 유영미(2021)
	• 자립에 대한 사회적 지지	- Miyahara(2008)
	• 자립생활기술 교육	- 손성화, 강영심(2021), 진재찬, 고관우(2021)
	• 자립생활 동료상담 및 자조모임	- 문영민, 김주옥, 김수영(2022), 손성화, 강영심(2021),
	• 주택 확보 및 주거지원	- 감정기, 최복천, 송정문(2012), 김민철, 김경미(2017), 서종균(2009), 임상옥, 전지혜(2021), 진재찬, 고관우(2021)
	• 초기 자립 시 집중 지원	- 진재찬, 고관우(2021)
	• 신탁제도(재산관리지원서비스)	- 김성희 외(2021)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제도	- 김명진(2015)
	• 지역사회 자립환경 조성	- 임상옥, 전지혜(2021), 진재찬, 고관우(2021)
가족	• 긴급(단시간) 돌봄	- 김성희 외(2021)
	• 가족 대상 사례관리 (감염병 시기 집중 지원)	- 김성희 외(2021), 여형남, 김영경(2018)
	• 다 장애가구 지원	- 김성희 외(2021)
	• 주 돌봄자 지원 (상담, 교육, 건강, 휴식, 경제 지원 등)	- 김미옥 외(2020), 김성희 외(2021), 여형남, 김영경(2018),
	• 가족 관계 지원 (가족대상 여가문화 지원 등)	- 김성희 외(2021)
인권	• 학대 예방 및 피해 후 지원	- 김성희 외(2021)
	• 범죄 연루 예방 및 지원	- 김성희 외(2021)
	• 자기옹호 지원	- 김동훈, 정종화(2021)
	• 지역사회 옹호 체계 구축	- 김성희 외(2021)
복지서비스	• 최중증 발달장애인 서비스 개발	- 김성희 외(2021)
	• 찾고 이해하기 쉬운 복지 정보 플랫폼	- 김성희 외(2021)
	• 사각지대 인프라 및 서비스 확대 (농산어촌, 1인 가구 등)	- 강혜인(2019), 김남훈, 하인혜(2020), 김성희 외(2021), 문영민 외(2022)
	• 발달장애인 친화적 서비스 환경 구성 (제도 개발, 인력 교육 등)	- 김성희 외(2021)

(2) 2차 자료 분석 결과⁵⁷⁾

이 장에서는 발달장애청년의 일반적인 생활 실태 및 지원 욕구를 포함한 분석틀 제시에 반영된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① 타인의 도움 필요 수준

발달장애청년 중 일상생활을 하는데 가족 등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78.0%이며, 이 중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6시간 미만으로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28.1%)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적장애 청년은 하루 평균 2시간 미만(33.8%), 자폐성장애 청년은 일과시간의 대부분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31.9%)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V-4).

표 V-4. 타인의 도움 필요 수준

(단위: 명, %)

구 분		전체	청년		
			계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사례 수		3,000	1,615	813	802
타인의 도움 필요 유무	필요하지 않음	21.6	22.0	29.9	14.0
	필요함	78.4	78.0	70.1	86.0
필요함 응답 비율	일과시간의 대부분 필요함	25.4	25.2	17.0	31.9
	6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21.4	21.5	18.8	23.8
	2시간 이상 6시간 미만	28.4	28.1	30.4	26.2
	2시간 미만	24.8	25.2	33.8	18.1

* 주: BASE: 전체응답자

57) 2차 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2022년에 발간한 '발달장애인의 일과 삶' 실태조사를 활용하였으며, 전체 3,000명 대상 중 19~34세에 해당하는 발달장애청년의 표본 수는 총 1,615명임. 이 중 지적장애는 813명(50.3%), 자폐성장애는 802명(49.7%)이다.

표 V-5. 건강관련 어려움 수준

(단위: 명, %)

구 분		전체	청년		
			계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사례 수		3,000	1,615	813	802
과체중(비만) 문제	다소 있음	19.2	21.6	21.5	21.6
	매우 많음	9.0	10.1	7.4	12.9
우울증, 스트레스 등 정신적 문제	다소 있음	22.4	22.5	22.9	22.1
	매우 많음	4.6	4.5	3.1	6.0
스마트폰, 게임 중독 문제	다소 있음	9.4	12.4	13.4	11.5
	매우 많음	2.3	3.0	2.8	3.1

* 주: 1) BASE: 전체응답자

2) '전혀 없음'을 제외한 '다소 있음', '매우 많음'만 제시

② 건강 관련 어려움 수준

발달장애청년은 건강과 관련한 어려움으로 과체중(비만) 문제가 31.7%로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는 우울증·스트레스 등 정신적 문제(27.0%), 스마트폰·게임 중독 문제(15.4%)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표 V-5).

또한, 만성질환과 관련하여 발달장애청년은 현재 장애 이외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는 23.9%로 그 중 신경정신과 질환(31.3%)의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뇌전증(장애 미등록)(27.2%), 당뇨병(10.6%) 등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현재 장애 이외 만성질환 중 지적장애 청년의 경우 뇌전증(장애미등록)의 비율이 23.4%로 가장 높고, 자폐성장애 청년은 신경정신과 질환이 41.2%로 가장 높았다(표 V-6).

표 V-6. 만성질환 및 세부 질환 유무(다중응답)

(단위: 명, %)

구 분		전체	청년		
			계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사례 수		3,000	1,615	813	802
만성질환 유무	없음	69.1	76.1	76.4	75.8
	있음	30.9	23.9	23.6	24.2
	신경정신과 질환	24.2	31.3	21.4	41.2
	뇌전증(장애미등록)	17.8	27.2	23.4	30.9

구 분		전체	청년		
			계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현재 장애 외 만성 질병 (다중 응답)	당뇨병	17.2	10.6	11.5	9.8
	고혈압, 저혈압	20.4	7.8	9.9	5.7
	관절염, 요통, 좌골통, 디스크	12.3	6.5	8.3	4.6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등	5.8	4.7	6.8	2.6
	골절, 탈골 및 사고로 인한 후유증	2.2	2.8	5.2	0.5
	갑상선질환	3.0	2.6	3.6	1.5
	만성신부전증(만성신장질환)	2.4	2.1	2.6	1.5
	심근경색증, 협심증	2.4	1.6	2.1	1.0
	암	2.2	1.3	1.0	1.5
	만성기관지염, 천식	2.5	1.3	1.6	1.0
	백내장, 녹내장	2.3	1.0	1.6	0.5
	만성간염, 간경변	1.7	0.8	1.0	0.5
	중풍, 뇌혈관질환	2.8	0.8	1.6	-
	골다공증	1.5	0.3	0.5	-
	기타	16.2	21.5	22.4	20.6

③ 평생교육 경험

발달장애청년이 최근 3년간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비율은 69.2%이었다. 세부 장애 유형별로는 자폐성장애 청년(62.5%)보다 지적장애 청년(75.6%)의 미참여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표 V-7).

표 V-7. 평생교육 경험

(단위: 명, %)

구 분		전체	청년		
			계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사례 수		2,604	1,447	741	706
최근 3년 평생교육 참여 경험	예	21.1	30.8	24.4	37.5
	아니오	78.9	69.2	75.6	62.5

* 주: BASE: 만 19세 이상 응답자

표 V-8. 취업 여부

(단위: 명, %)

구 분		전체	청년		
			계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사례 수		3,000	1,615	813	802
근로 여부	취업하여 일하고 있음	28.7	35.9	40.6	31.2
	일하고 있지 않음	71.3	64.1	59.4	68.8

* 주: BASE: 전체응답자

④ 취업 여부

현재 수입을 목적으로 일하거나 가족의 일을 무급으로 돕는 등 취업하여 일하고 있는 발달장애청년은 35.9%였다. 유형별로는 지적장애 청년의 40.6%, 자폐성장애 청년의 31.2%가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V-8).

⑤ 복지서비스: 주로 이용하는 기관 유형

발달장애청년이 학교, 일자리 이외 현재 이용하고 있는 기관이 특별히 없는 경우 62.7%이며, 이용하는 경우 장애인복지관(17.2%)과 관련 시설·센터·협회(17.0%)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자폐성장애 청년(46.8%)이 지적장애 청년(27.9%)보다 학교나 일자리 외에 다른 기관을 주로 이용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표 V-9).

표 V-9. 복지서비스: 주로 이용하는 기관 유형

(단위: 명, %)

구 분		전체	청년		
			계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사례 수		3,000	1,615	813	802
주로 이용하는 기관	특별히 없음	70.6	62.7	72.1	53.2
	(장애인)복지관	13.5	17.2	13.4	20.9
	관련 시설·센터·협회	13.4	17.0	11.9	22.2
	공공기관	1.0	1.7	1.7	1.7
	지방자치단체	0.5	0.7	0.4	1.0
	기타	0.9	0.7	0.5	1.0

* 주: BASE: 전체응답자

표 V-10. 복지서비스: 발달장애청년 및 가족 대상 필요 서비스(1순위)

(단위: 명, %)

구 분		전체	청년		
			계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사례 수		3,000	1,615	813	802
발달장애청년 및 가족 대상 필요 서비스 (1순위)	경제적, 소득 지원	51.0	44.3	49.2	39.2
	고용 및 고용 유지 지원	14.0	19.4	21.6	17.1
	돌봄, 보호, 휴식 지원	15.2	15.7	10.7	20.8
	의료, 재활, 건강 지원	10.2	9.3	8.5	10.1
	교육, 문화, 여가활동 지원	4.5	5.0	3.9	6.0
	심리, 사회, 정서적 지원	3.1	4.1	3.2	5.1
	서비스 이용 관련 정보 제공	2.0	2.2	2.7	1.7

* 주: BASE: 전체응답자

⑥ 복지서비스: 발달장애청년 및 가족 대상 필요 서비스

발달장애청년과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장애 서비스(1순위)는 경제적·소득 지원이 44.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고용 및 근로 유지 지원(19.4%), 돌봄·보호·휴식 지원(15.7%), 의료·재활·건강 지원(9.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V-10).

국내외 문헌 및 2차 자료 분석을 통해 도출된 발달장애청년의 삶의 영역별 일반적인 생활 실태 및 지원 욕구를 반영한 분석들은 표 V-11과 같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분석들을 기초로 조금 더 취약한 상황에 놓인 6개 그룹의 발달장애청년의 심층 자료를 분석하였다.

표 V-11. 분석틀 도출: 발달장애청년의 일반적인 생활 실태 및 지원 욕구

대범주	중범주
일상생활	• 일상의 무료함
	• 상시 돌봄 필요(최중증, 도전행동 등으로 인한 돌봄)
	• 일상의 위험 예방 및 대응 어려움
	• 감염병 시기 더 어려운 일상
의료·건강	• 건강관리 어려움(영양, 식습관, 운동, 건강검진 등 어려움)
	• 정신건강 문제(우/조울, 스트레스, 조현병 등의 심리적 어려움)
	• 약물 복용 및 관리 필요
	• 중독문제(약물, 알코올, 도박, SNS 등 중독/의심/문제)

대범주	중범주
	• 의료서비스 접근성 문제(의료비 부담, 의료정보, 의료시설 이용 등 어려움) • 생활체육시설 접근성 문제(지역 체육시설 이용, 운동 정보, 생활체육 프로그램 부재 등 어려움)
평생교육	• 성인기 교육 필요 • 대학 진입 및 생활 어려움
경제생활	• 취업역량 및 준비 필요 • 취업 욕구와 진입 어려움 • 근로 유지 어려움 • 열악한 근무환경 및 조건 • 경제적 지원 필요
사회참여	• 지역 참여 기회 부족(지역 행사, 모임, 활동 등 소속감 부재 및 이용 참여 어려움 등) • 관계망 부재 및 제한 • 참정권 기회 제한 • 친화적이지 않은 지역 환경(지역 편의, 인식, 교통수단 등 부족 및 이용 어려움 등)
미래 준비 (주거)	• 자립역량 및 준비 필요(자기결정 및 선택, 자립기술 등 지역사회 생활 준비를 위한 지원 필요) • 미래계획 부재 및 준비 어려움 • 금전(재산) 지출 및 관리 어려움 • 주택 확보 및 유지 어려움(지역사회 독립 주거를 위한 주택 확보 및 주거지원 등 필요)
결혼 및 양육	• 이성 교제 어려움 • 결혼 준비 어려움 • 가사 생활 및 관리 어려움 • 자녀 양육 어려움 • 결혼가정 내 갈등
가족	• 주 돌봄자의 어려움(주 돌봄자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등의 어려움) • 가족 내 갈등(장애 당사자의 장애로 발생하는 다양한 가족 갈등) • 가구 특성에 의한 이중적 어려움(다 장애 가구, 다문화 가구 등 가구 특성으로 인한 이중된 어려움) • 가족 구성원의 경제적 어려움
인권	• 학대 예방 및 피해 • 차별과 배제

대범주	중범주
	위법행위 및 범죄 연루
복지 서비스	필요한(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부재(서비스 기관, 서비스 인력, 프로그램 등 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필요한 서비스 부재)
	서비스(정보) 접근성 문제(서비스 정보, 서비스 신청, 이용 절차 및 방법 등의 어려움)
	서비스 참여 배제 및 거부(서비스 이용 시 배제 및 거부 경험)
	낮은 질의 서비스 환경(종사자 역량, 서비스 질, 기관 내 편의 열악 등 서비스 환경에 대한 부정적 의견)

(3) 심층 및 초점집단면접

6개 그룹별 발달장애청년, 부모,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 및 초점집단면접의 분석 결과, 6개 그룹에서 공통으로 호소하는 주요한 어려움은 일상생활, 건강과 의료, 평생교육, 경제활동, 사회참여, 미래 준비(주거), 복지서비스 등 총 7개 영역의 세부 내용으로 분석되었다. 삶의 영역별로 도출된 주요 어려움은 표 V-12에 제시하였다.

① 일상생활

일상의 무료함은 모든 그룹의 발달장애청년이 일상에서 직면하는 대표적인 어려움으로 도출되었다. 대부분의 발달장애청년들이 생활하는 주요 공간은 집이나 현재 이용하는 제공기관 등으로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따라서 매우 한정된 공간에서 일상이 유지되고 있었으며 외부 환경의 자극이 부족하고 활동하는 공간이 협소하며 제한적이라 의욕이 없고 무기력하게 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외부 활동이 왕성하고 활발한 대인관계 및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청년기의 특성상 발달장애청년들이 직면하는 일상 활동 공간의 제약과 무기력 등은 다른 문제로 야기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② 의료·건강

건강에 관한 문제는 발달장애청년이 직면하는 공통된 어려움으로 지적되었다. 일상적인 건강관리의 어려움으로는 섭식 통제, 운동 부족, 일상적 건강관리 등이 언급되었다. 특히 학대 피해 및 범죄에 연루된 발달장애청년들의 경우에는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었다. 그로 인해 약물 복용량이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약물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2. 심층 및 초점집단면접 분석 결과

대면주	중면주	세부범주				
		최종중 발달장애청년	학대 피해 및 범죄 연루 발달장애청년	1인 가구 발달장애청년	경도 발달장애청년	기혼 발달장애청년
인상 생활	• 일상의 무료함	• 친구도 없고, 길도 없고	• 아픔 없고 무료한 나날 • 단단한 하루	• 집에서 지내는 혼자인 나	• 같은 공간에만 있는 것에 지쳐	• 배우자와 자녀에 맞춰진 일상 • 그림자에 혼자 보내는 하루하루
	• 상시 돌봄 필요 (학중중, 도전활동 등으로 인한 돌봄)	• 처음부터 끝까지 지원				• 복지받은 유일한 어부활동 영역 •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중복장애
	• 일상의 위험 예방 및 대응 어려움		• 위험도 높은 일상생활		• 해본 적도 시작지도 없는 집안일	
의료· 건강	• 건강관리 어려움 (영양, 식습관, 운동, 건강검진 등 어려움)		• 통제가 어려운 식사	• 마음 따로 몸 따로 할 때로 인한 건강관리	• 식습관 및 위생건강 및 영양 관리) 관리의 복잡한 영역	• 혼자서는 어려운 민생생활 관리 • 제대로 된 산후조리도 받지 못하고 • 출산, 양육, 시댁과의 갈등으로 인한 우울과 불면 • 이혼으로 인한 스트레스 그리고 자해
	• 정신건강 문제 (약/조용, 스트레스, 조현병 등 심리적 어려움)		• 지속되는 우울과 불안 • 부러지고 상처 입은 마음			
	• 약물 복용 및 관리 필요		• 계속 들어오는 정신과 약		• 약물 성인과 복용에 대한 금중중	
	• 의료서비스 접근성 문제 (의료비 부담, 의료정보, 의료시설 이용 등 어려움)	• 너무 높은 장벽, 병원 진료 • 그림자 띄운 장애인 주치의 제도	• 장애 이해가 낮은 의료진	• 자녀 성숙도 의료기관 이용도 일몰 • 질환의 증상과 그에 대한 표현이 어려움		• 멀고도 먼 병원 가는 길 • 턱없이 부족한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대범주	세부범주					
	중범주	최중중 발달장애청년	학대 피해 및 범죄 여부 발달장애청년	1인 가구 발달장애청년	경도 발달장애청년	기름 발달장애청년
평생 교육	• 성인기 교육 필요	• 한 가지 적응에도 해설 필요	• 정신하고 중요한 온라인 이해 교육	• 장애인 동료상담 과정 참여 준비	• 경증장애인을 고려한 통합교육에 대한 강조	• 학습 욕구를 못 따르는 의지력 • 눈높이 새롭고 교육 필요
	• 대학 진입 및 생활 어려움			• 필요성을 못 느끼는 대학 진학	• 따라가지 못하는 대학 수업	
	• 취업역량 및 준비 필요				• 직업교육의 부재로 바친 직무	• 취업보다는 무용한 일상 타개와 수업을 위한 직업교육
	• 취업 욕구와 진입 어려움	• 꿈과도 어려운 취업	• 취업을 방해하는 학대 트라우마	• 장애 상태를 고려한 직무 찾기의 어려움	• 중증장애인 양주의 소외 그리고 자존감의 하락	• 바느질 통과 같은 취업 기회 • 일자리 사업 수당에 만족하는 현실
경제 생활	• 근로 유지 어려움		• 역량 부족으로 쉽게 해고당함	• 다들 저 쳇바퀴 돌듯 직장 구하기 • 비장애인 동료들의 무시로 인한 소외	•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동료들	• 근로 욕구는 있으나 따라주지 않는 몸과 마음
	• 열악한 근무환경 및 조건			• 발전성이 없는 직무의 한계 • 장애인 있을 수 없어 겨우 가는 직장	• 이터버킷 같은 불안정한 근무조건 • 비장애인과 분리된 따로따로 같은 직장	
	• 경제적 지원 필요		• 피해감으로 기증되는 경제적 어려움	• 추가 유지비 등의 비용부담 증가	• 장애로 인해 지출되는 비용	• 수급비로는 어렵없는 자녀 양육비용 • 부부의 관계를 가로막는 경제적 문제 • 이혼 과정에 갖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
사회 참여	• 지역 참여 기회 부족 (지역 행사, 모임, 활동 등 소속감 부족 및 이용 참여 어려움 등)	• 장애 특성이 고립을 기증시킨	• 내 안에 가두고 갇히고	• 지역사회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음		

대범주	중범주	세부범주				기론	농산어촌 발전장애요인
		최중중 발전장애요인	학대 피해 및 범죄 연루 발전장애요인	1인 가구 발전장애요인	경도 발전장애요인		
미래 준비 (주거)	• 관계망 부재 및 제한	• 어울릴 기회 자체가 차단됨	• 친한 친구가 주변에 없음	• 관계 형성을 위한 연결고리 부재	• 친구 관계도 결국 양미의 노력	• 기다린 정액처럼 느껴지는 주변과의 관계	• 복지기관은 관계망 형성의 중요한 통로
	• 친화적이지 않은 지역 환경 (지역 편의, 민생, 교통수단 등 부족 및 이용 어려움 등)	• 남 선 지역주민들의 시선		• 불편한 사회환경과 시선	• 호의적이지 않은 주변의 정체 인식		
	• 자립역량 및 준비 필요 (자립역량 인식, 자립기술 등 지역 사회 생활 준비를 위한 지원 필요)	• 필요하지만 기대할 수 없음	• 자립이 더 위험할 수 있음	• 막대한 자립의 길 • 시뮬레이션 필요한 자립	• 길고 긴 자립의 길 • 완전히 혼자 살 수 있는 집		• 부모가 몰래 인고 같이 살아가기
	• 미래계획 부재 및 준비 어려움					• 장애인 부모의 분가, 풀기 어려운 숙제 • 준비 없이 시작한 결혼과 출산	
	• 금전(재산) 지출 및 관리 어려움		• 스스로 돈 관리가 어려움	• 경제교육의 부재에 따른 두려움 증가		• 욕구 중심적인 지출	
결혼 및 양육	• 주택 확보 및 유지 어려움 (지역사회 독립 주거를 위한 주택 확보 및 주거지원 등 필요)		• 월여하고 노후한 주거	• 두렵고 웅변한 거주공간 마련의 과정	• 깨달은 주택 상황과 자격조건 • 독립하고 싶으나 문제는 돈	• 주택 확보를 가로막는 강연된 행정체계	• 자립을 도와줄 사람이 많지 않은 나중
	• 이성 교제 어려움		• 교제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	• 막대한 관성만 있는 이성에 대한 감정	• 내 자서는 장애인이 아니길 • 장애 차별로 인해 더욱 힘든 이성 교제		• 장애인 양육의 어려움은 우리 세대이지만
	• 결혼 준비 어려움		• 교제까지만 가는 결혼은 불가능			• 가정과 부모의 의미에 대한 무지 • 원치 않은 양친과 출산으로 만들어진 가정	

대범주	중범주	세부범주					농산어촌 발달장애청년
		최중증 발달장애청년	학대 피해 및 범죄 여부 발달장애청년	1인 가구 발달장애청년	경도 발달장애청년	기혼 발달장애청년	
가족	• 가사 생활 및 관리 어려움					• 장애인 도움 없이는 어려운 일	
	• 자녀 양육 어려움					• 양육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양육력 • 만지지 않은 엄마, 아버지의 역할 • 활동지원사를 활용한 양육 지원 • 장애인 부양을 위한 1:1 맞춤 양육 교육 필요	
	• 결혼가정 내 갈등					• 서로 부부를 힘들게 하는 오해들 • 사부모양의 갈등 • 장애인 부양을 위한 맞춤형 부양 상담 필요	
	• 주 돌봄자의 어려움 (주 돌봄자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등의 어려움)	• 심각한 어머니의 건강 상태	• 심각한 어머니의 정신건강		• 영아와 밀착될 수밖에 없는 장애 자녀 • 가꿀 수 없는 부모의 노화	• 장애인 자식 부양에 대한 양려와 지원	• 인제나 자녀 손을 놓게 될지도, 기댈 곳은 활동지원사뿐 • 포기해 대한 길이라는 고민들 • 열악한 농촌을 떠나 도시로 • 자녀 돌봄을 위한 부모 대상 교육도 부재
	• 가족 내 갈등 (장애 당사자의 장애로 발생하는 다양한 가족 갈등)		• 장애 이해 부족과 양육 방식 차이	• 독립하고 싶은 나, 반대하는 가족	• 사소한 일이 길어지는 가족 • 같은 자녀하나 다른 장애 자녀	• 부모와 자식, 이해와 오해	
	• 가구 특성에 의한 이중적 어려움 (다 장애 가구, 다문화 가구 등 가구 특성으로 인한 이중적 어려움)			• 가족 아닌 담당자의 역할 한계 • 가족 내 돌봐야 하는 구형일 가족			
	• 가족 구성원의 경제적 어려움		• 가족 모두 사기 피해자				

대범주	중범주	세부범주				기능	농산촌 비밀정보영향
		최종중 비밀정보영향	학대 피해 및 범죄 여부 비밀정보영향	인 가 비밀정보영향	경도 비밀정보영향		
인권	• 학대 예방 및 피해	• 인권침해 당해도 알리지 못함	• 권리를 알지도 지지도 못함	• 장애인을 무시하는 주된 태도 • 중독장애인도 또 소외	• 또래 학교폭력을 당한 깊은 상처		• 성범죄와 노동 착취에 노출된 장애 청년들 • 공중체의 틀림을 통한 보호
	• 처벌과 배제			• 장애인에 무시하는 주된 태도 • 중독장애인도 또 소외	• 심 자리가 없는 비밀장애인 인권 장애	• 남의 눈에 띄기 꺼려지는 나리 장애	• 서어의 행동은 오해하는 사람들
	• 위법행위 및 범죄 연루		• 나쁜 사람에게 쉽게 이용당함 • 상충될 사법 자원해결 미비	• 사가에 연루된 주변 소서에 불만 증가	• 말을 할 수 없어 더욱 불리한 장애 자녀		
복지 서비스	• 필요함(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부재 (서비스 기관, 서비스 인력, 프로그램 등)이 이에 없거나 적어도 필요한 서비스 부재	• 항상 종료 이후를 고려함 • 지원인력 찾기가 힘들어 볼 땐기	• 사문화성이 확보되지 못한 제도	• 보여주기식의 위해 서비스	• 생기는 복지 사각, 시기 • 중독장애인 양자인 복지서비스 한계	• 고급 보건의료와의 연계 필요	• 턱없이 부족한 복지서비스 • 서비스 제공인력 확보가 복지의 시작
	• 서비스(정보) 접근성 문제 (서비스 정보, 서비스 신청, 이용 절차 및 방법 등의 어려움)	• 공무원의 제도 이해가 늦음	• 정보 접근과 활용의 결핍률	• 신제품 마를 조장을 막아야 하는 서비스	• 병태하고 어렵고 도움 인 되는 복지 정보 • 잘 알아보지 못한 처음 듣는 서비스	• 가정에 생애며 접근이 어려운 복지서비스	• 접근도 먼 복지관 가는 길 • 정보 접근성에서도 소외되는 농산촌 장애인들
	• 서비스 참여 배제 및 거부 (서비스 이용 시 배제 및 거부 경험)	• 선택권 없는 서비스 이용		• 까다로운 서비스 참여 자격 요건으로 결국엔 포기 • 장애 당사자의 욕구 파악은 뒷전	• 재학 조건이 더 많은 복지서비스		•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중증장애인 • 배제되는 또 하나의 기준, 접근성
	• 낮은 질의 서비스 환경 (종사자 역량, 서비스 질, 기관 내 편의 물품 등 서비스 환경에 대한 부정적 의견)	• 역량 있는 제공인력을 기대함		• 감성 쓰레기통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사 • 충족되지 않는 활동지원서비스	• 당사자 조점이 아닌 공급자 중심 서비스	•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	•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 부족 • 서비스 이용자의 낮은 요구 수준

의료서비스 접근성 문제는 특히 최중증과 농산어촌 및 1인 가구 그룹에서 심각한 어려움으로 조사되었다. 최중증 발달장애청년의 경우 장애 특성으로 인해 병원 이용이 제한되는 점, 농산어촌의 경우 턱없이 부족한 의료시스템으로, 1인 가구 청년의 경우에는 위급상황 발생 시 홀로 대응하기가 역부족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모든 6개 그룹의 발달장애청년이 독립적으로 건강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취약하고 병원 이용 문턱이 높으며 의료정보권 보장의 사각지대에 있음을 의미한다.

③ 평생교육

생애주기별 필요한 교육의 중요성도 6개 그룹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었다. 성인기에 필요한 대표적인 교육을 살펴보면 그룹별 상황과 특성에 부합한 교육이 요구되었다. 예를 들어 학대 피해 및 범죄 연루 발달장애청년의 경우에는 온라인 이해 및 활용 교육, 경도 발달장애청년의 경우에는 통합교육, 기혼 발달장애청년의 경우에는 맞춤형 재무교육 등이다.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은 그 중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도 청년기와 발달장애라는 특성상 발달장애청년에게 필요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

④ 경제생활

경제생활 영역에서는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개발 및 보급, 근로 유지를 위한 지원, 그리고 경제적 지원 등이 일상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필요한 지원으로 강조되었다. 최중증이나 범죄에 연루한 발달장애청년에게도 취업은 매우 필요하나 실질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지만 1인 가구와 경도 발달장애청년들에게는 가장 시급한 지원 영역으로 제시되었다. 특히 1인 가구 발달장애청년들은 경제활동은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취업에 대한 높은 욕구를 드러내었다.

고용과 근로 유지 등 경제생활은 청년기의 매우 중요한 과업이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청년을 위한 다양한 직무와 여러 형태의 일자리 마련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고 특히 거의 모든 그룹에서 근로활동과 함께 일정 정도의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이 요구되었다.

⑤ 사회참여

모든 그룹에서 사회적 관계망이 부재하고 관계를 형성하고 넓혀나갈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다. 지역사회 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은 청년기의 필수적이고 주요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관계망의 부재나 제한은 발달장애청년들의 지역사회 참여와 활동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청년의 경우 다른 사람과 어울릴 기회 자체가 제한되고, 1인 가구 청년의 경우에는 관계 형성을 위한 연결고리가 부재하였다. 기존 발달장애청년들에게 주변과의 관계는 또 다른 장벽으로 다가오며, 농산어촌 발달장애청년은 관계망 형성을 기대할 수 있는 통로가 제한되어 있는 등이 대표적인 어려움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발달장애청년의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 확대,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⑥ 미래 준비(주거)

미래 준비 중 특히 주거지원의 취약성은 모든 그룹에서 공통적인 어려움으로 인식되었다.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기의 핵심적인 과업은 결국 자립이다. 이 중에서 주택 마련은 자립을 위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청년의 경우 자립역량과 기술 준비의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지역사회 독립을 위한 주택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에 제공된 주택의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노후화되었거나 물리적으로 지역사회와 고립된 장소에 위치하는 등의 문제도 제기되었다. 그리고 물리적인 여건의 취약성 외에도 주택을 확보하기까지 제도나 행정상의 한계도 언급되었다. 주택을 신청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신청 자격요건도 까다로우며 행정체계의 경직성 등이 발달장애청년들이 직면하는 또 다른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발달장애청년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절차상의 간소화뿐만 아니라 정보 접근권도 보장되어야 하며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주거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⑦ 복지서비스

모든 그룹의 연구 참여자들이 인식한 발달장애청년의 어려움으로 현행 복지서비스의 한계나 부재 등을 제기하였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이용 가능한 인프라의 부재, 서비스 접근성 및 배제의 문제, 제공인력 등 서비스 질의 문제 등이 언급되었다. 특히 인프라 부재와 서비스 접근성 문제는 모든 그룹에서 가장 심각한 어려움으로 제기된 문제이기도 하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최중증 발달장애청년은 현재 서비스 종료 이후 이용할 곳이 없다는 점과 돌봄 및 지원의 강도가 높은 장애 수준으로 서비스 이용에서 배제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1인 가구 발달장애청년은 서비스 종류는 많으나 중증장애인 중심의

서비스가 대부분이라 자신에게 필요하거나 적합한 서비스가 부족하고 설령 제공되는 서비스가 있더라도 복잡한 자격요건으로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농산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청년은 지역 환경으로 인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복지 인프라를 해결과제로 언급하였다.

서비스 접근성은 서비스에 대해 알고 신청하며 이용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파악하는 것을 포함한다. 서비스 접근성과 관련하여 조사 참여자들은 정확한 정보 전달의 부재,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공무원, 마련되어 있지만 도움이 되지 않는 서비스, 물리적인 접근성에 대한 어려움 등을 언급하였다. 그 외에도 서비스 전문 인력의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역량 강화 등 서비스 환경의 질적 개선도 제기되었다.

3. 발달장애청년의 정책지원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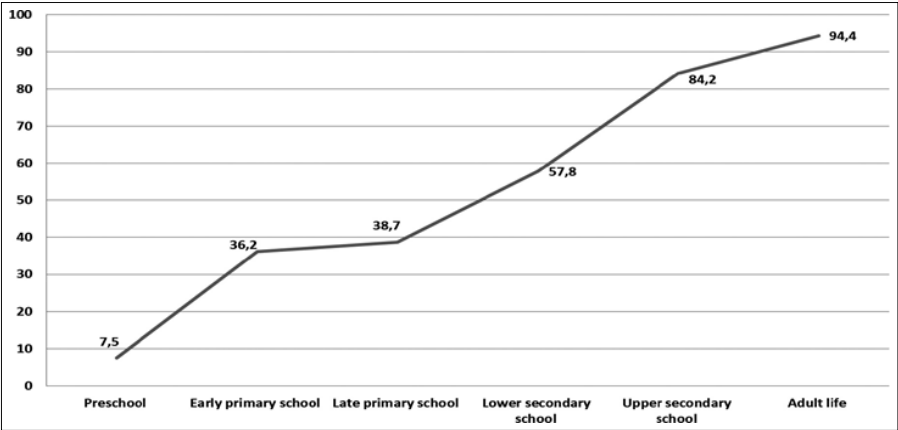
1) 발달장애청년의 일반적 소외 양상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은 분리와 보호 중심의 지원에서 인권 및 지역 기반의 시민성 강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즉 발달장애인의 전반적인 삶의 영역에 필요한 교육, 치료, 고용, 일상생활, 자기결정, 옹호 지원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지원이 강조되고 있다(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복지부 분과위원회, 2018). 과거에는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집단적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개인의 욕구에 맞는 사람 중심의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복지부 분과위원회, 2018). 발달장애인 지원은 복합적인 욕구에 대하여 종합적 지원과 개별적 접근이 강조된다. 또한 일부의 사람들은 자해, 타해 등의 도전적 행동으로 인하여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복지부 분과위원회, 2018). 이처럼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는 복합적인 욕구, 집중적인 서비스, 개별적 지원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복지부 분과위원회, 2018).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인 지원은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연금 등 대부분의 복지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교육부에서는 조기교육과 특수교육 등을, 고용노동부에서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지원고용과 의무고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복지부 분과위원회, 2018). 국가의 여러 지원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양적으로 부족하고, 종류도 제한적이다. 발달장애인의 어려움은 다양

한 분야에서 생애에 걸쳐서 발생한다.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심각한 사각지대가 나타나게 되고, 이런 사각지대로 인해 여러 파생적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가중될 수 있다.

발달장애 아동기에서 청년기에 이르는 전 과정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 과정이자 이 자체가 발달장애인이 사회로부터 배제되는 '소외화' 과정이기도 하다. 그림 V-1을 보면 유아기일 때는 주류에 통합되어 살지만(7.6%만 주류사회에서 배제됨), 아동기를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분리(gradual exclusion)되어 청년기에 이르면 대다수(94.4%)가 주류사회에서 배제되는 특성을 보인다(Gustavsson, Wendelborg, & Tøssebro, 2021). 이 그래프는 노르웨이의 상황을 나타내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부족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배제로 인한 어려움이 더 증대될 수 있다. 이처럼 발달장애청년의 소외는 모든 국가에서 도전적인 과제로 제시되는데, 이들의 소외 원인 또는 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본질적인 요소로서 사람들의 부정적 인식과 지역사회의 부적절한 환경으로 발생하는 소외이다. 둘째, 발달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리 제도로 인하여 주류사회에서 배제됨으로써 발생하는 소외이다. 여기에는 청년정책으로부터의 소외를 포함한다. 셋째, 발달장애인만의 분리된 서비스마저도 받지 못하고, 주류 청년 서비스에서도 배제되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는 이중소외이다.



* 출처: Gustavsson et al.,(2021).

그림 V-1.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배제 비율

표 V-13. 정책소외 유형 진단 기준

청년정책		(발달)장애정책		소외유형	
정책설계	정책이용	정책설계	정책이용		
X	X	X	X	이중소외 (중복 outside)	(발달장애정책과 청년정책) 정책은 설계되어 있으나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정책이 설계되어 있지 않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	X	X	X		
X	X	○	X		
○	X	○	X		
X	X	○	○	청년소외 (발달 inside)	(청년정책) 정책은 설계되어 있으나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정책이 설계되어 있지 않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	X	○	○		
○	○	X	X	발달소외 (청년 inside)	(발달장애정책) 정책은 설계되어 있으나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정책이 설계되어 있지 않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	○	○	X		
○	○	○	○	탈소외 (적극적 inside)	(발달장애정책과 청년정책) 정책은 설계되어 있고 이용하는 경우

2) 취약 발달장애청년의 정책소외 양상과 특성

본 연구에서는 조금 더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최중증, 학대 피해 및 범죄 연루 등 6개 그룹의 발달장애청년들에 대한 심층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발달장애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정책과 청년정책의 세부 내용을 검토하였다.

이 결과를 기초로 전술한 주요 어려움(일상생활, 건강·의료, 평생교육, 경제생활, 소득 지원, 사회참여, 미래 준비/주거)을 해결하기 위한 장애 및 청년정책의 설계와 이용 여부에 따라 ‘이중소외’, ‘청년소외’, ‘발달소외’, ‘탈소외’ 등 네 가지 소외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전반적인 소외 양상을 진단하였다(표 V-13).

또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원칙에 근거하여 소외의 원인을 진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진단에 있어 전달체계 구축 원칙과 정의를 표 V-14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V-14. 정책소외 원인 진단 기준

원칙	주요 내용	미충족 시 소외 양상
적절성	발달장애청년이 원하는 충분한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는가?	발달장애인 서비스 부재 또는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외
접근성	발달장애청년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용이)한가?	발달장애인 서비스(정보) 접근성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소외
전문성	(중증)발달장애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환경인가?	적절하지 않는 서비스 환경(적절하지 않은 공간 및 인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외한 소외
평등성	발달장애청년을 정책대상자로 고려하고 있는가?	특정 정책대상자 한정 또는 발달장애인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외
책임성	발달장애청년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되어 있는가?	(잘 연계되거나 조정되지 않아) 서비스 배제 또는 특정 정책대상자에게만 편중된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외

위 기준으로 정책소외유형과 원인을 진단한 결과는 표 V-15과 같다.

표 V-15. 정책소외 유형과 원인 진단

구분	정책 대상자	정책설계		정책이용		정책소외 진단	정책소외 주 이유
		청년	(발달) 장애	청년	(발달) 장애		
일상 생활	최중증장애	X	○	X	○	청년소외	• 청년정책: 적절성(서비스 부재)
	학대 피해 및 범죄 연루	X	○	X	○	청년소외	
	1인 가구	X	○	X	X	이중소외	• 청년정책: 적절성(서비스 부재) • 발달장애정책: 적절성(원하는 서비스 부재), 책임성(서비스 연계 미비)
	경도 장애	X	○	X	X	이중소외	
	기혼	X	○	X	X	이중소외	
	농산어촌	X	○	X	X	이중소외	
건강/ 의료	최중증장애	○	○	X	X	이중소외	• 청년정책: 접근성(서비스 정보 인지 부족), 전문성(발달장애 이해 부족) • 발달장애정책: 적절성(서비스 부족), 접근성(인프라 및 인력 부족), 전문성(발달장애 이해 부족), 평등성(소득기준 적용)
	학대 피해 및 범죄 연루	○	○	X	X	이중소외	
	1인 가구	○	○	X	X	이중소외	
	경도 장애	○	○	X	X	이중소외	
	기혼	○	○	X	X	이중소외	
	농산어촌	○	○	X	X	이중소외	
평생 교육	최중증장애	○	○	X	○	청년소외	• 청년정책: 접근성(서비스 정보 인지 부족), 전문성(발달장애 이해 부족), 평등성(소득기준 적용)
	학대 피해 및 범죄 연루	○	○	X	○	청년소외	
	1인 가구	○	○	X	X	이중소외	

구분	정책 대상자	정책설계		정책이용		정책소외 진단	정책소외 주 이유
		청년	(발달) 장애	청년	(발달) 장애		
	경도 장애	○	○	X	X	이중소외	부족), 전문성(발달장애 이해 부족), 평등성(소득기준 적용)
	기혼	○	○	X	X	이중소외	• 발달장애정책: 적절성(원하는 서비스 부족), 접근성(인프라 및 인력 부족), 책임성(중증발달장애에 집중된 지원)
	농산어촌	○	○	X	X	이중소외	• 청년정책: 접근성(서비스 정보 인지 부족), 전문성(발달장애 이해 부족), 평등성(소득기준 적용) • 발달장애정책: 적절성(원하는 서비스 부족), 접근성(인프라 및 인력 부족)
경제 생활	최중증장애	○	○	X	X	이중소외	• 청년정책: 접근성(서비스 정보 인지 부족), 전문성(발달장애 이해 부족)
	학대 피해 및 범죄 연루	○	○	X	X	이중소외	• 발달장애정책: 적절성(이용 가능한 서비스 부족), 접근성(전문 지원 부족), 책임성(경증장애에 집중된 지원)
	1인 가구	○	○	X	○	청년소외	• 청년정책: 접근성(서비스 정보 인지 부족), 전문성(발달장애 이해 부족)
	경도 장애	○	○	X	○	청년소외	• 청년정책: 접근성(서비스 정보 인지 부족), 전문성(발달장애 이해 부족)
	기혼	○	○	X	X	이중소외	• 발달장애정책: 적절성(이용 가능한 서비스 부족), 책임성(경증장애에 집중된 지원)
	농산어촌	○	○	X	○	청년소외	• 청년정책: 접근성(서비스 정보 인지 부족), 전문성(발달장애 이해 부족)
소득 지원	최중증장애	○	○	X	○	청년소외	• 청년정책: 접근성(서비스 정보 인지 부족), 평등성(소득기준 적용)
	학대 피해 및 범죄 연루	○	○	X	○	청년소외	
	1인 가구	○	○	X	○	청년소외	
	경도 장애	○	○	X	○	청년소외	
	기혼	○	○	X	○	청년소외	
	농산어촌	○	○	X	○	청년소외	
사회 참여	최중증장애	○	○	X	X	이중소외	• 청년정책: 접근성(서비스 정보 인지 부족), 전문성(발달장애 이해 부족)
	학대 피해 및 범죄 연루	○	○	X	X	이중소외	• 발달장애정책: 적절성(서비스 부족), 접근성(인프라 및 인력 부족)
	1인 가구	○	○	X	○	청년소외	• 청년정책: 접근성(서비스 정보 인지 부족), 전문성(발달장애 이해 부족)
	경도 장애	○	○	X	○	청년소외	• 청년정책: 접근성(서비스 정보 인지 부족), 전문성(발달장애 이해 부족)
	기혼	○	○	X	X	이중소외	• 청년정책: 접근성(서비스 정보 인지 부족), 전문성(발달장애 이해 부족)
	농산어촌	○	○	X	X	이중소외	• 발달장애정책: 적절성(서비스 부족), 접근성(인프라 및 인력 부족)

구분	정책 대상자	정책설계		정책이용		정책소외 진단	정책소외 주 이유
		청년	(발달) 장애	청년	(발달) 장애		
미래 준비 (주거)	최중증장애	○	○	X	X	이중소외	• 청년정책: 접근성(서비스 정보 인지 부족), 전문성(발달장애 이해 부족), 평등성(소득기준 적용)
	학대 피해 및 범죄 연루	○	○	X	X	이중소외	• 발달장애정책: 적절성(서비스 부족), 접근성(인프라 및 인력 부족), 평등성(소득기준 적용), 책임성(특정장애인에 집중된 지원)
	1인 가구	○	○	X	○	청년소외	• 청년정책: 접근성(서비스 정보 인지 부족), 전문성(발달장애 이해 부족), 평등성(소득기준 적용)
	경도 장애	○	○	X	X	이중소외	• 청년정책: 접근성(서비스 정보 인지 부족), 전문성(발달장애 이해 부족), 평등성(소득기준 적용)
	기혼	○	○	X	X	이중소외	• 발달장애정책: 적절성(서비스 부족), 접근성(인프라 및 인력 부족), 평등성(소득기준 적용), 책임성(특정장애인에 집중된 지원)
	농산어촌	○	○	X	X	이중소외	

본 연구에 참여한 발달장애청년의 정책소외 진단 결과, ‘이중소외’, ‘청년소외’ 등의 두 가지 소외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발달장애인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정책에 소외된 ‘이중소외’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발달장애인정책은 이용하지만 청년정책을 이용하지 않는 ‘청년소외’ 유형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결국 모든 발달장애청년은 청년정책을 이용하지 않고 있었으며, 다수의 발달장애청년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정책도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것은 관련 발달장애인정책 및 청년정책이 설계되어 있지만, 미이용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대상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 설계와 접근성 수준에 대한 검토가 시급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룹별로는 모든 그룹에서 ‘이중소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 중 기혼 발달장애청년과 농산어촌 발달장애청년의 ‘이중소외’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그림 V-2) 특히 이 상황에 있는 발달장애청년들이 장애인 및 청년 정책의 접근이 매우 열악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책소외 양상은 크게 발달장애 민감성이 낮은 청년정책, 청년 민감성이 낮은 발달장애인정책으로 인해 비롯된 것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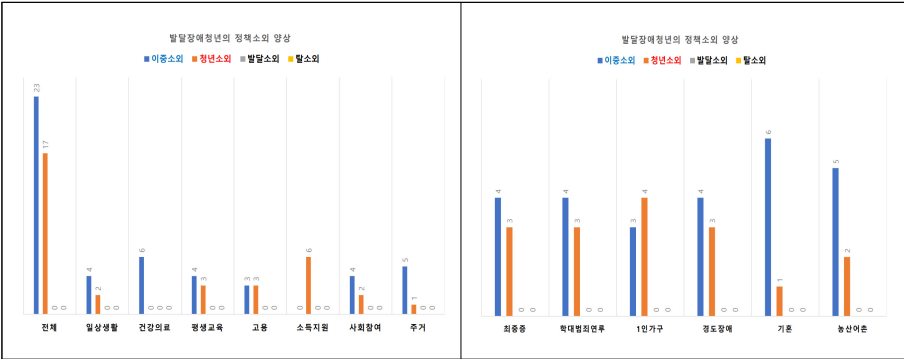


그림 V-2. 발달장애청년의 정책소외 양상 및 특성

(1) 발달장애 민감성이 낮은 청년정책으로 인한 소외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년정책은 2023년 기준 390여 개이며, 투입되는 예산 규모도 24.4조원 규모이다. 서비스 영역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삶의 거의 모든 영역을 포괄한다. 2023년 기준 청년정책 중 발달장애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 및 서비스는 표 V-16과 같다.

표 V-16. 청년정책 중 발달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제도 및 서비스

영역	주요 내용
일상생활	• 없음
의료·건강	• 청년층에 대한 정신건강 지원(마인드링크, 보건복지부)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보건복지부) •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보건복지부)
평생교육	•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교육부) • 국민내일배움카드(고용노동부)
경제생활	•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노동부) •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운영(농림축산식품부) • 청년키움식당(농림축산식품부) • 청년도약계좌(금융위원회) • 청년내일저축계좌(보건복지부) • 청년희망키움통장(보건복지부) • 청년귀농 장기교육(농림축산식품부)

영역	주요 내용
사회참여	•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행정안전부)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문화체육관광부)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촉직 위원(국무총리실) • 문화누리카드지원(문화체육관광부)
미래 준비(주거)	•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국토교통부) • 청년행복주택(국토교통부) • 청년 사회적 주택(국토교통부) • 청년 전세임대(국토교통부) • 청년매입임대주택(한국토지주택공사) • 청년월세 특별지원(국토교통부) •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국토교통부)
결혼 및 양육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여성가족부)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여성가족부)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보건복지부)
가족	• 없음
인권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여성가족부)

* 출처: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 <https://www.youthcenter.go.kr>에서 2023년 10월 5일 검색.

그러나 발달장애청년이 이 서비스들을 실제로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수준이다. 발달장애청년이 청년정책에 포함된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이유는 청년정책이 발달장애인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정책에서 발달장애에 대한 낮은 민감성은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드러난다. 첫째, 서비스의 내용 면에서 발달장애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로 예를 들어 장애인이 정신건강 지원을 받을 수 있으려면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발달장애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둘째, 서비스 자격 측면에서 다수의 발달장애인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로, 예를 들면 청년키움통장에 가입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고,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발달장애청년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관련 서비스를 포함하지 않아서 배제되는 경우로 예를 들어 공동체 활성화 지원이나 임대주택 입주 등을 위해서는 발달장애청년의 이용 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함께 제공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서비스는 부재하다. 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류시스템의 몰이해로 인한 태도 장벽, 교육이나 훈련에 과감한 도전을 방해하는 주류사회의 고정관념, 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발달장애인을 고려하는 능력 부족, 보편성 접근성을 구현하지 못하는 정책의 분절성 등의 문제를 의미한다(WALK, 2014).

(2) 청년 민감성이 낮은 발달장애인정책으로 인한 소외

발달장애인정책은 거주시설 보호, 주간 보호, 보호작업장 등과 같이 청년으로서의 정체성을 존중하기보다는 부모의 보호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추어 발전해 왔다. 그 결과 연구에 참여했던 발달장애청년들은 “발달장애인 서비스가 중증장애를 중심으로 하여 나에게 적합한 서비스가 없다”고 언급하였다.

발달장애청년에게 있어 중요한 과제는 지역사회에서 통합된 평범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준비를 얼마나 하는가이다. 이를 위해 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설계하고, 실제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부모의 정보력에 의지하여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서비스를 찾기에만 급급해 있고, 전문적인 조언이나 지원을 받아 개인과 환경의 특성에 맞는 통합적인 미래를 설계하지 못하고 있다. 당장 하루하루의 돌봄 부담을 메꾸느라 5년 후, 10년 후, 장년기 이후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미래 설계에까지는 엄두를 못 내는 것이다.

주거, 일자리, 일상생활 지원이 모두 갖춰져야 청년의 자립생활이 준비되겠지만, 지금의 분절된 서비스 체계로는 한 사람의 통합된 삶을 온전하게 지원하기 어렵다. 하루 24시간의 지원을 설계한다고 할 때, 주거할 곳, 일할 곳, 여가활동을 할 곳 등 일상생활에 관련된 지원이 다 갖춰져야 온전한 하루가 채워진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별 특성과 지역 상황에 맞는 일상의 지원 서비스가 설계되고, 그 설계대로 평범한 삶을 가능케 하는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설계와 연결의 과정에서 발달장애청년의 주도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발달장애청년이 자기 주도적 일상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청년기에 진입하면서부터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를 쉽게 알려주어야 하고, 동료들과 자조 집단이나 커뮤니티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정보역량을 더욱 높여주어야 한다. 자조 집단을 형성한다는 것은 일상에서 소외를 겪은 발달장애인이 그 소외감을 덜어내고, 사회적 삶을 만들어나가는 데 필요하다. 스스로 통제하는 건강관리, 문화활동, 취미생활은 일상을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드는 중요한 조건인데, 지금은 그 범위도 매우 한정적이며 운영 형태도 비자발적이다. 또한 발달장애청년의 일상에서 중요한 비중을 점하고 있는 미디어 향유 실태를 보면, 다수의 발달장애청년들이 매우 단조로운 미디어 접근 영역에 머물러 있다. 미디어 향유의 영역을 넓히는 일 또한 더 많은 정보를 얻어 세상을 읽고, 때로는 창작까지 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생활에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발달장애청년이 이용하는 장애인 정책은 이들의 자기 주도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지원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여 설계될 필요가 있다.

3) 정책지원 방향 및 과제

(1) 정책지원 방향

스웨덴 발달장애청년의 삶의 패턴을 연구한 결과를 보면, 그들의 삶은 크게 세 그룹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적절한 돌봄을 받으면서 지내는 대표적인 발달장애인 그룹(The cared for and represented)이다. 이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하면서, 어릴 때는 부모와 함께 살다가 성인이 되어 부모의 적절한 지원을 유지하면서 독립 주거(자가, 청년 사회주택 등)로 이주하여 생활한다. 둘째, 발달장애인 서비스 내부와 외부를 왔다 갔다 하는 그룹(The commuters)이다. 이들은 서비스를 받지만 첫 번째 그룹만큼 광범위한 서비스를 받지는 않으며, 지원주택에 살면서 직원의 간헐적인 도움을 받으며, 직장생활을 하지만 입·퇴사를 주기적으로 반복한다. 세 번째, 제도 바깥에 있는 그룹(The outsiders)이다. 이들은 정식적인 제도교육을 받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으면서 부모와 함께 살거나 이성 친구와 동거를 하기도 하며, 일정한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로 대부분 경도의 발달장애인이 이 그룹에 속한다. 세 그룹 모두 공통적으로 청년이 되어 가면서 불평등이 높아지고, 더 많은 위험상황에 직면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도전을 제기한다(Jansson & Olsson,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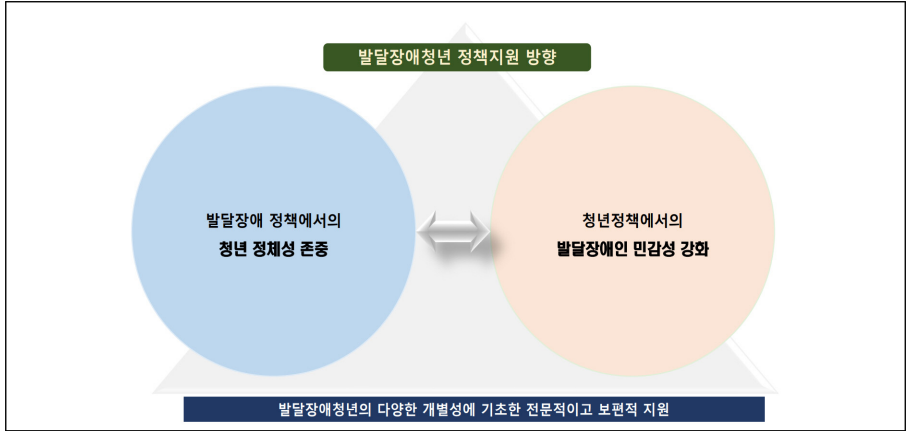


그림 V-3. 발달장애청년의 정책지원 방향

최근 새로운 상황의 취약청년(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이주배경 청년 등) 문제는 청년정책의 확대만으로는 정책에서 소외되는 청년 문제를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세분화하는 청년의 정책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지원이 필요한 청년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 사각지대 청년을 발굴·지원하는 전문적인 정책 전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변금선, 이영주, 김기현, 장익현, 2023). 발달장애청년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발달장애청년은 다양한 개별성에 기초하여 전문적이고 보편적인 지원을 동시에 고려해야 대상으로 적절한 지원의 선택과 접근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청년정책에서 발달장애인 민감성을 높이고, 발달장애인정책에서 청년의 정체성을 존중하는 두 가지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정책과제

이 장에서는 발달장애청년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청년정책에 그들을 무조건 포함하고, 유인하기보다는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청년정책의 발달장애인 민감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① 청년의 다양성이 고려된 정책 환경 조성

가. 청년정책 개발을 위한 거버넌스 활성화

우선으로 발달장애청년을 포함하여 여러 환경에 놓일 수 있는 청년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고려하는 정책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과제로 취약청년의 정책개발을 위해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거버넌스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는데, 취약청년의 개별성을 고려한 정책개발을 위해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발달장애청년의 상황을 고려한 청년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2023년 설치된 중앙청년지원센터, 광역 단위 청년지원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존 청년정책에서의 발달장애청년의 접근성을 제고하며, 신규 개발 시 이들의 개별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설계하고, 지원 환경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년정책의 핵심은 청년들이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책개발 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보장하는 데 있다. 정책 네트워크에 취약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초기에는 기존 청년들의 다양한 자조 기구들의 연대를 지원하여 자신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주장하고, 토론하며,

필요 정책을 건의하는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로 발달장애청년의 자기옹호기구(예: 에스타스, 피플퍼스트, 세바다 등)와 청년센터에서 지원하는 청년정책 네트워크가 정기적으로 연대하여 조금 더 취약청년들의 개별적 필요가 반영된 청년정책을 함께 논의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나. 중앙단위의 취약청년 이해 증진 및 사업 모델화

중앙단위에서 다양한 취약청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필요한 지원사업을 모델화하고 보급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최근 개정된 청년기본법 제24조의4 2항에 의해 국무조정실 산하에 청년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지역 청년센터의 역할을 조정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가 청년재단에 위탁, 운영되고 있다. 중앙청년지원센터는 청년의 다양성이 고려되는 정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취약청년을 이해하고, 이들의 개별성을 고려한 지원사업을 개발하며, 모델화와 보급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예로 2023년 현재 중앙청년지원센터에서 개발 중인 ‘청년센터 운영매뉴얼’(가칭) 등 관련 정책 및 사업 문서에 다양한 상황의 취약청년들을 이해하는 자료를 포함하여 종사자들이 자연스럽게 청년들을 이해하고, 지원 필요성과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청년센터 등의 관련 종사자, 지역주민 등 대국민 대상으로 청년의 다양한 상황과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캠페인 등의 이해 증진 사업을 기획할 수 있다. 특히 발달장애청년의 경우 매우 개별적인 상황과 욕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거나 세밀한 관심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지원 특성을 이해하고 원활한 지원을 위해 중앙청년지원센터에서는 적절한 지원 노하우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 우수 사업을 발굴, 보급하거나 신규 사업을 개발하고 모델화하는 등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② 발달장애청년의 청년정책 접근성 제고

가. 청년 공간에 대한 심리적 접근성 확보

발달장애청년의 청년정책에 대한 심리적 접근성을 확보하고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청년 공간, 청년센터 등)을 적극 홍보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다. 청년센터는 취약청년들이 청년 공간을 적극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되, 단순 물리적 공간만을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간에서 지역 내 청년들이 다양한 모임이나 행사를 통해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로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간담회에 참여했던 한 발달장애청년은 예술문화에 관심이 많은 발달장애인이 다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청년 공간을 활용하여 예술문화

콘텐츠를 소재로 한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다양한 청년들과 직접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청년정책의 다각적인 정보 접근성 확보

발달장애청년의 청년정책의 정보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 측면의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반드시 발달장애청년의 지원뿐만 아니라 정보 접근에 취약성을 나타내는 모든 청년에게 해당되는 부분이다. 온·오프라인 청년센터를 모두가 이용하기 편리한 유니버설한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로 발달장애청년 등 인지적, 언어적 어려움이 있는 청년을 위해 이해하기 쉬운 자료, 영상, 다국어 자료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편의 제공에도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청년을 위해 청년센터에 조력자를 배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조력자는 해당 청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상세하게 반복하여 설명해주며, 필요 시 개별 맞춤형 편의를 마련하여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역할을 발달장애청년 당사자가 직접 동료상담가로서 청년센터에 배치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장애인일자리사업 등의 예산을 활용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로 연계하는 것을 시도할 수 있다.

다. 취약청년의 밀착지원을 위한 서비스 접근성 확보

발달장애청년을 포함한 취약청년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단순 서비스 연계가 아닌 일정 기간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개별적인 지원을 필요로 할 수 있다. 청년정책을 설계할 때 취약청년의 이용을 고려하여 서비스 이용에 대한 지원 기능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예로 지속적인 상담, 이용 과정에서의 모니터링 및 문제 해결, 적응 지원, 욕구 변화에 따른 서비스 대응, 전문기관 연계 및 의사소통 등의 지원을 제공할 전담 인력이 배치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2024년 취약청년지원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취약청년(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의 사례관리를 위해 청년센터 등의 인프라에 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등 전담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이를 시작으로 향후 전담팀에서 다양한 취약청년의 밀착지원을 위한 역할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동시에 청년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발달장애청년을 포함한 다양한 취약청년을 이해하고 조금 더 밀착된 교류와 지원을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교육과정이 개설될 필요가 있다.

③ 발달장애청년의 청년정책 접근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청년센터는 광역과 기초단위로 설치되어 있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도 동일한 방식으로 설치되어 파트너십을 통한 지원이 가능한 구조이다. 발달장애청년과 관련된 정책은 모든 청년을 위한 청년정책, 모든 장애인을 위한 청년정책, 발달장애인을 위한 청년정책 등의 세 단위로 구성된다. 모든 청년을 위한 청년정책의 영역은 청년센터가 관여하는 영역이며, 모든 장애인을 위한 청년정책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청년정책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역할 영역이다. 이 두 영역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수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센터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의 협업을 통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민감성을 개발하고, 발달장애청년의 개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청년을 대상으로 장애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청년정책과 같은 보편적 서비스 및 지역자원 등의 연계를 확대하고, 청년센터와의 협업을 통하여 발달장애인의 청년으로서의 정체성과 주도성을 지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발달장애청년이 청년센터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중 어느 센터를 서비스 창구(gateway)로 하여 진입하더라도 필요한 경우 각 센터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 촘촘한 지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업에 기반한 지원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다음과 같은 지원체계를 기대해볼 수 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찾은 발달장애청년이 청년정책 중 마음건강지원사업에 대한 이용 욕구가 있을 경우 청년센터에 연계한다. 이때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청년센터 담당자와 정기적으로 소통하여 발달장애청년이 마음건강지원사업에 원활하게 참여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청년센터를 찾은 발달장애청년이 복합 욕구로 인해 청년정책 외 전문적인 장애인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청년센터 담당자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연계한다. 이때 청년센터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담당자와 정기적으로 소통하면서 발달장애청년이 이용하는 서비스 상황을 공유하고, 진행 과정에서 청년서비스 전환 및 욕구 변화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에 원활하게 참여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표 V-17. 청년정책에서의 발달장애인 민감성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 과제

영역	주요 내용
청년의 다양성이 고려된 정책환경 조성	- 청년정책 개발을 위한 거버넌스 활성화 -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과제 발굴과 이행 (중앙청년지원센터, 광역청년지원센터, 광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 기존 청년 당사자 네트워크 간 연대 및 정기적인 청년정책 토론의 장 마련 (청년센터 정책 네트워크, 발달장애인 자기옹호 네트워크 등) - 중앙단위의 취약청년 이해 증진 및 사업 모델화 - 취약청년을 이해하고, 이들의 개별성을 고려한 지원사업 개발 및 보급
발달장애청년의 청년정책 접근성 제고	- 청년 공간에 대한 심리적 접근성 확보 - 발달장애청년 대상 청년 공간 적극 홍보 및 개방 -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청년정책의 다각적인 정보 접근성 확보 - 유니버설한 온오프라인 환경 조성 필요(이해하기 쉬운 자료 등) - 청년센터 조력자 배치(발달장애청년이 동료상담가로서 배치, 장애인일자리사업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 - 개별적 맞춤형 편의 지원 - 취약청년의 밀착지원을 위한 서비스 접근성 확보 - 정책개발 시 취약청년 대상의 지원 기능 포함 - 개별적 지원을 위한 인력 배치 - 청년센터 등의 종사자 대상 취약청년과의 교류와 지원을 위한 역량 강화 및 교육과정 개설
발달장애청년의 청년정책 접근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광역단위 청년센터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간 유기적 협업(파트너십) 지원체계 마련 - 발달장애청년 입장에서 모든 센터를 서비스 창구(gateway)로 하고, 청년의 상황과 욕구에 따라 유기적으로 연계 및 지원(예: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필요 시 청년정책 연계. 청년정책 이용 과정에서 당사자 모니터링 및 지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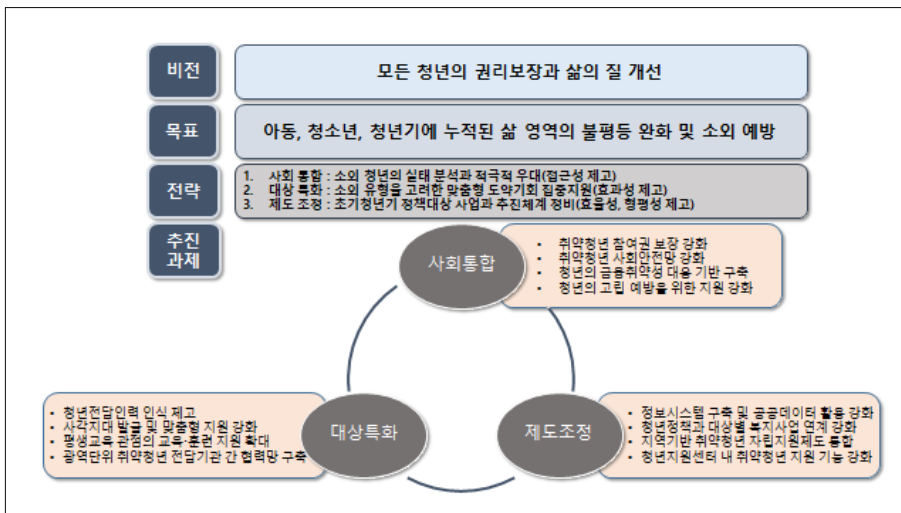
○ — 제6장 정책 제언

- 1. 제언 배경
- 2. 정책개발 및 세부추진과제:
취약청년 지원체계 정비 및 안전망 강화
- 3. 3차년도 연구 계획

1. 제언 배경

1) 정책 비전 및 전략 유지: 1차 년도 연구성과

이 연구는 '22년부터 '24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협동연구로 1차 년도 연구에서 정책소외계층 청년 지원정책 개발을 위한 비전, 목표, 전략을 도출하였고 각 년도 연구주제에 따른 추진과제를 제안하는 구조로 추진되었다(그림 VI-1). 이에 '모든 청년의 권리보장



* 출처: 김지연 외(2022b). p.288 수정

그림 VI-1. 취약계층 청년 지원방향과 추진과제

58) 이 장은 백해정 선임연구위원, 김지연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승경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이배 전문위원(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 집필하였다.

과 삶의 질 개선'이라는 비전하에 '아동, 청소년, 청년기에 누적된 삶 영역의 불평등 완화 및 소외 예방'을 목표로 추진전략(사회통합, 대상특화, 제도조정)을 유지하면서 2차 년도 연구결과를 토대로 추진과제를 추가 개발하였다.

한편 1차 년도 연구에서 본 연구의 주제라 할 수 있는 정책소외계층 청년을 “① 아동·청소년기를 지나 성인 이행기에 요구되는 다양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에 있어 ② 공공 정책(지원제도)을 통합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③ 당사자를 포함하여 미시환경 영역에서 자원, 정보, 기회가 제한(결핍)되어있거나 거시환경 영역에서 법·제도의 미비 등으로 ④ 비자발적 사유로 배제되거나 제도의 지원 대상에 효과적으로 편입되기 어려운 청년 또는 집단”으로 정의한 바 있다(김지연 외, 2022b:283). 이는 당시 「청년기본법」상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였고 본 연구가 “기존 정책에서 취약청년으로 식별되지 않는 청년, 동일 문제와 욕구가 있어도 해당 제도에서 규정한 지원 대상에 포섭되지 않는 청년, 일반적인 이행기 발달 과업의 표준에서 이탈하여 각종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의 문제를 ‘정책소외’로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이들의 유형별 취약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취약계층청년 지원 시 이들을 배제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지원해야 할 근거와 당위성을 제시하기 위함”이었다(김지연 외, 2022b:283).

이와 함께 1차 년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청년기본법」상 취약청년에 대한 정의 포함 등 법률 제·개정 분야 15개 추진과제,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분야 6개 추진과제, 청년 세대 내 격차 완화를 위한 청년정책 6개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다행히 올해 초에 「청년기본법」상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를 포함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된 바(23.3.21. 개정), 본 연구에서는 정책소외계층 청년이라는 용어를 법정 명칭인 취약계층 청년(취약청년)과 혼용하였다. 아울러 1차 년도에는 정책소외계층 청년 지원방향과 청년정책 내 영역별 추진과제를 도출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올해 2차 년도에는 추진전략(사회통합, 대상특화, 제도조정)에 따른 취약청년 지원 강화를 위한 공통 추진과제 발굴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본 연구의 실증적 조사 결과와 추진과제는 향후 취약계층 청년 지원정책 개발과 제도개선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결과 및 시사점: 2차 년도 연구성과

2차 년도 협동연구 주제는 크게 세 개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시설퇴소청년(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 금융취약청년(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달장애청년(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현행과 같이 분절적으로 구축·운영되고 있는 취약청년 유형별 지원체계를 취약청년 정책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결,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선제적인 구상이 필요한 상황임을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청년기본법」에 지역 청년센터의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으나(23.3.21) 취약청년을 위한 전담인력의 구성이나 지원 내용 등이 부재하여 지역별, 센터별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판단된다. 특히 아동·청소년기부터 다양한 취약성이 누적된 취약청년의 특성상 청년기에 이르러 일회성 지원으로는 문제 해결과 욕구 충족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사례관리(case management)와 사후관리(follow-up)를 기반으로 지원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즉 대상자 정보 및 서비스 이력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활용 방안이 반드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올해 개정된 법률에서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가 마련되었지만(동법 제24조의5) 본 조항을 취약청년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정보의 축적과 연계를 위한 근거로 보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

두 번째로 올해 연구주제 가운데 시설퇴소청년 대상 2차 년도 조사결과, 시설퇴소청년 집단 내 격차와 일반 청년 대비 격차를 다면적으로 확인하였다. 특히 실태조사 및 공공데이터 결합을 통해 자립지원 2~3년차에 이르러 고립·은둔과 같은 심리·정서 및 정신건강과 관련된 어려움이 반등하고 소년원을 출원한 20대 초반 청년의 경우 취약성과 관계없이 자립지원을 포함한 각종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심한 상태임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진로·고용, 경제·주거, 건강, 참여 영역 등 전반에서 공통적인 취약성이 확인되어 향후 청년정책 추진체계 구축 과정에서 이들 취약청년을 고려한 지역 기반(거주지) 통합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세 번째로 금융취약청년 대상 표본조사를 통해 제한적이거나 청년의 금융취약성의 다양한 유형과 양상을 확인하였다. 또한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의 청년 대상 금융정책이 대 출에 집중된 경향이 있고 청년층 자산형성지원사업도 사각지대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청년기의 부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공적지원이 미흡하여 청년 개인이 부채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불법적 경로와 수단에 연루되는 피해가 다수 발견되었다. 특히 금융취약청년은 부채 뿐 아니라 심리·정서 문제, 부실한 사회적 지지체계와 관계망 등의 문제가 있는

취약청년이 부채 문제를 동반한 경우 그 취약성의 정도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청년지원체계 내에서 청년의 금융취약성을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한 기능을 보강하고 금융정책 전반에서도 불법적 수단과 노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접근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청년 내 사각지대를 면밀하게 살펴본 결과, 우선 발달장애인 복지정책에서 청년기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대상으로서 이들에 대한 민감성 제고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현재 발달장애는 ‘심한 장애’로 분류되지만 장애 정도와 기능에 있어 개인 간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발달장애청년을 단일 집단으로 볼 것이 아니라 ‘개인별 지원계획’을 토대로 실질적인 맞춤형 사례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지원제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도 발달장애청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발달장애인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비장애청년과의 교류와 참여, 일자리 지원과 같은 청년기의 보편적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된 바 청년정책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정에서 이들을 배제하지 않는 장애청년 친화적 지원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주요 연구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도식화한 것이 그림 VI-2이다.

구분	2차 년도 연구결과	정책적 시사점
정책 및 서비스 전달 체계 ⇒	- 취약청년 지원정책은 ‘유형별’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체계 간의 분절성 완화에 대한 대책 부족 - 기존 지원체계나 동종유사 서비스 전담인력과의 연계·협력·조율을 위한 구상 부족 - 청년지원센터의 고유 기능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황임. 「청년기본법」상 청년정책통합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가포함되었으나 보다 상세한 규정 미흡 ⇒	- 취약계층 청년 유형별 지원체계 확대 과정에서 기존의 지원체계나 동종 유사 지원체계 간 연결성 강화 필요 - 청년지원센터의 정체성과 역할, 기능 정립 후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 구축 및 서비스 최소화 마련 필요 - 사례관리 및 민관협업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필요 - 공공-민간 간 정보의 양방향 전달이 가능한 정보시스템 필요 - 취약계층 청년의 발굴과 지원, 사후관리

구분	2차 년도 연구결과	정책적 시사점
		등의 연속적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활성화 및 정보의 정합성 제고 필요
시설 퇴소 자립 준비 청년 (2차 년도)	〈기본 방향〉 • 퇴소시설별 주무부처의 파편화로 인해 지원 내용의 격차 발생 • 정책수립과정에서 당사자 참여가 「청년기본법」상 보장되어 있음 • 현행 자립지원 대상 자격기준은 퇴소시설 유형 및 만기 퇴소 여부 • 무의탁 소년원 퇴소 청년에 대한 자립지원이 매우 부족 • 자립지원 기간 중기(2~3년) 이후에 정서적 어려움 가중 • 시설 종사자들이 모든 영역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기 어렵고 청년들은 지역 내에서 자립역량 제고 필요 ⇒ 〈진로·고용〉 • 대입 과정에서 기회균형선발 전형 대상 자격기준으로 양육시설 퇴소청년만 포함 • 시설퇴소청년들은 진로결정 시 어려움을 겪으며 취업 훈련 프로그램 수강 의향이 있고 수강한 경우는 만족도도 높은 편임 • 근로경험은 많으나 양질의 일자리 경험은 부족 ⇒ 〈경제·주거〉 • 경제적 여건 취약, 채무 비율 중 주거비와 생활비 마련이 높음 •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거취약 상황 경험, 임대 관련 어려움 경험 ⇒ 〈건강〉 • 낮은 건강검진 수검률, 빈약한 식생활 및 신체활동 등 건강 행태가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가 많음	〈기본 방향〉 • 청년복지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청년정책팀) • 시설퇴소청년 관련 정책 결정 시 당사자들의 의견 청취 및 반영 필요 • 자립지원 대상 자격기준에 자립지원 필요 여부(취약성) 포함 • 무의탁 소년원 퇴소 청년에 대한 자립지원 필요 및 이를 위한 제반 시설(복지시설 및 정보망, 지자체 역할 강화 등) 정비 필요 • 경제적 지원에서 탈피한 통합적 지원 필요 • 지역 기반 지원체계 마련 ⇒ 〈진로·고용〉 • 대입 과정에서 기회균형선발 전형 대상 자격기준 개선 필요 • 지역 기반 진로탐색 지원체계, 산학연계 직업훈련-고용 프로그램, 기초근로훈련 프로그램 등의 마련 필요 • 근로 권익 보호 강화 방안 필요 ⇒ 〈경제·주거〉 • 청년 금융생활 지원 근거 마련 및 경제 지원 방식(자립(지원)수당, 경제교육 방식 등)의 개선안 마련 필요 • 전세임대 및 지역 기반의 다양한 주거지원사업 대상 확대 필요 ⇒ 〈건강〉 • 건강 검진을 제고 및 올바른 건강행동 증진을 위한 방안 필요

구분	2차 년도 연구결과	정책적 시사점
	- 우울, 낮은 삶의 만족도 등 정신건강이 취약한 경우가 많으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참여〉 - 고립·은둔 문제 발생 - 정보 공유 및 관계 형성 등을 위해 당사자 네트워크 및 자조모임 필요, 지역사회 내 공동체 희망 - 관련 제도나 지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확대, 단계별 맞춤형 정신건강 지원체계 구축 필요 〈참여〉 - 고립·은둔 청년의 발굴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모임의 활성화 필요 - 시설외소 자립준비청년들의 당사자 활동 확대 필요 - 정보 접근성 강화 방안(공공포털 이용의 편의성 제고) 및 당사자들의 정보이해 능력 강화 방안 필요
금융 취약 청년	⇒ - 현행 다양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이 청년기 자산형성의 사각지대 유발 가능성 있음 - 금융취약청년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금융 관련 정보나 도움을 제공하는 지지체계가 없다는 공통점 있음 - 금융취약청년은 고립·저소득·취업 중단·정신건강 저해 등 다중적인 취약성에 노출될 가능성 높음 - 공적 금융 지원기관 접근에 대한 물리적·심리적 장벽 존재 - 금융취약성 해결 과정에서 불법적 수단(불법사금융, 내구제 대출 등)에 연루되어 금융 취약성 악화	⇒ -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기간 등에 대한 개선책 필요 - 금융취약 유형에 대응하여 활용할 수 있는 지원방안의 다각화 필요 - 금융취약청년들의 복합적 욕구에 대응하는 청년 친화적 종합지원체계 구축 필요 - 금융취약성 완화를 위한 기반 필요 - 지역 기반 청년 친화적 전달체계 운영 - 청년 인 지적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보수교육 제공 필요 - 금융 관련 정보의 질 관리와 규제 방안 마련 필요
발달 장애 청년	⇒ 〈기본 방향〉 - 발달장애인들의 성장·발달 과정은 곧 소외화 과정으로 청년기에 사회적 배제로 인한 불평등과 위험상황 증가 - 특히 장애 수준이나 개인 특성에 따라 사각지대 발생	⇒ 〈기본 방향〉 - 발달장애청년은 다양한 개별성에 기초하여 전문적이고 보편적인 지원이 동시에 필요 - 발달장애 정책에서 청년의 정체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청년정책에서 발달장애인 민감성 제고 필요

구분	2차 년도 연구결과	정책적 시사점
	〈정책 전달체계〉 -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책개발자들의 이해도 및 당사자 참여도 부족 등으로 개별성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의 개발·보급이 어려움 - 발달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리 제도로 일반 청년정책 뿐 아니라 특정 대상만을 위한 발달장애인 서비스나 서비스 자체의 부족으로 필요한 지원으로부터 배제 - 지역 내 기본 인프라 및 인력 부족으로 실제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 발생 - 정보 접근성 문제로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하거나 이해력 부족으로 이용에 어려움을 겪음 - 청년 대상 서비스에 대한 단순한 연계는 도움이 되지 않음 - 청년기관 종사자들의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지원이 어려움	〈정책 전달체계〉 - 정책개발 시 발달장애인에 대한 민감성 강화 필요 - 광역단위 청년센터-발달장애인지원 센터 간 유기적 협업 체계 마련 - 지역 기반 지원체계 구축 필요 - 청년정책의 정보 접근성 제고 - 쉬운 자료 개발·보급, 지원기관 내 청년센터 조력자 (당사자 상담가 등) 배치 등으로 개별적인 밀착 지원 필요 - 청년센터 등의 종사자 및 관련자 대상 역량 강화 및 교육과정 개설 필요
	〈교육·훈련〉 - 지역 및 특성별 청년기 기본적인 지원 및 활동 등에서 배제 발생 - 경도 발달장애청년들은 지원의 제한, 지원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 등으로 차별·실패·고립 등 경험 - 학령기 후 취업, 자립, 결혼과 양육 과정 등에서 다양한 상황에 대한 이해 및 해결방법에 대한 교육·훈련 부족	〈교육·훈련〉 - 경도 발달장애청년에 대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통합적 접근 및 지원 방식 마련 필요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개념과 지원방식 재정립, 청년기 이행에 필요한 과업 중심의 개별 학습 지원 확대 필요
	〈고용〉 취업 진입과 유지에 어려움 발생으로 당사자 및 가족의 어려움 가중	〈고용〉 - 청년기에 특화된 고용지원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장애 수준과 근로 욕구에 따른 취업 지원 목표 차등화 및 지원의 다각화
	〈정신건강〉 - 인권침해·고립생활 등에 의한 정신건강 악화 - 전문적인 심리·정서 지원 부족	〈정신건강〉 발달장애청년의 정신건강 진단 및 전문 심리상담 확대, 장애인 정책 내 정신보건서비스 연계 및 필요 지원 강화

구분	2차 년도 연구결과	정책적 시사점
	〈사회적 관계·참여〉 - 장애 수준과 지역 상황 등으로 타인과의 교류 및 소속감 있는 활동 기회 부족 -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책개발자들의 이해도 및 당사자 참여도 부족 등으로 개별성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의 개발·보급이 어려움	〈사회적 관계·참여〉 - 주관 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 활성화 방안 필요 - 특히 경도 발달장애청년을 위한 보편적 지원기관의 활용 필요 - 기존 청년 당사자 네트워크 간 연대 및 당사자 활동의 기회 강화, 정기적인 청년정책 토론의 장 마련

그림 VI-2. 취약청년 유형별 연구결과 및 시사점(2차 년도)

2. 정책개발 및 세부추진과제⁵⁹⁾: 취약청년 지원체계 정비 및 안전망 강화

2차 년도 연구주제에 따른 각 유형별 취약청년의 실태에 근거한 정책개발 및 추진과제는 본 연구의 세부보고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이 절에서는 이들 청년들의 공통적인 취약성을 토대로 취약청년 지원체계 정비 방안에 초점을 두고 세부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특히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올해 초에 「청년기본법」상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와 청년지원센터의 지정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청년정책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정에서 본 연구를 통해 취약성이 확인된 청년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취약청년 서비스 전달체계를 모색해야 한다. 현재 개별법을 근거로 분절적으로 구축·운영되고 있는 유형별 취약청년 지원체계와 「청년기본법」상 지역 청년지원센터 간의 유기적인 연계 및 협력 정도는 취약청년의 권리 보장과 삶의 질 개선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취약청년 지원체계 정비 및 안전망 강화’ 방안에 초점을 두고 1·2차 년도 연구결과를 근거로 3대 추진전략에 따른 총 12개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표 VI-6).

59) 취약청년의 실태에 근거한 각 유형별 정책개발 및 추진과제는 본 연구의 세부보고서에 상세히 기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해당 세부보고서를 참고하여야 한다.

1) 사회통합 추진전략에 따른 추진과제

(1) 취약청년 참여권 보장 강화(1-1)

최근 들어 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참여권 보장이 중요시되고 있으며 「청년기본법」 제15조에서도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이에 청년정책 및 취약계층청년 지원정책의 수립→집행→평가→피드백의 단계로 이어지는 전 과정에서 당사자인 취약청년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① 정보 접근성 및 정보이해능력(Information literacy) 강화

이를 위해 우선 취약청년들의 정보 접근성 및 정보이해능력(Information literacy)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조사 결과 취약청년들 중 상당수는 자신과 관련 있는 제도나 지원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고 지원 제도 자체를 알고 있더라도 신청 및 이용 절차가 복잡하여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였다. 이에 관련 정책에 대한 정보에 보다 손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재 청년들을 주요 대상으로 운영 중인 공공 포털사이트(예: 온라인 청년센터 ‘온통청년’ 등) 내에서 공공·민간 서비스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배치하며 서비스 내용 역시 이해하기 쉬운 말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취약청년들 중 자립정보 수집 및 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는 청년들이 자주, 그리고 쉽게 사용하는 유튜브 등의 온라인 채널을 활용하여 이해하기 쉬운 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는 방안을 고려해볼만 하다. 또한 오프라인에서도 당사자 활동가의 멘토링, 전담기관 내 전담 인력 배치 등을 통해 취약청년들의 정보 수집 및 이해를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② 다양한 참여제도 내 취약청년 참여 방안 마련

중앙부처나 지자체 등에서는 정책 제언 및 모니터링을 위해 청년정책참여단을 비롯하여 시민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하여 일정 비율 이상 청년 참여를 보장하던 기존 방침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서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확대⁶⁰⁾한 점은 고무적인 일이다. 다만 청년정책참여단의 경우는 대부분 참여단의 구성에 여성이나 장애인 등 특정 집단이 일정 비율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당제나 우선 참여제를 규정하지 않아 대표성을 담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6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9788>에서 2023년 10월 19일 검색.

일부에서는 대학생들의 “스펙 쌓기”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주장⁶¹⁾도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취약청년들은 정책참여단에 참가하기가 쉽지 않으며 그 결과 주요한 청년정책 중 일부는 취약청년들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정책으로의 진입을 막고 중도 탈락 가능성을 높이기도 한다. 일례로 연 최고 10%의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희망적금 중도 해지자가 23.7%에 이르렀는데 납부 금액대별로 보면 ‘10만 원 미만’ 납부자의 중도 해지율이 49.2%로 가장 높았고 납부 금액대가 증가할수록 해지율이 낮아졌다.⁶²⁾ 이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한 금융상품이 해당 정책의 도움이 절실한 청년들에게는 정작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청년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청년들의 참여가 형식적인 것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그 일환으로 청년정책참여단의 대표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참여단 내 성별, 연령, 학력, 경제적 수준 등에 따라 다양한 계층과 집단의 청년들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취약청년들의 경우는 ‘우선 참여제’ 내지는 ‘할당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는 특히 취약청년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 즉 주거, 취·창업, 자산형성 및 금융, 대학 관련 지원정책 등의 수립과 집행 시 더욱 필요로 하는데 이는 증거 기반 정책 수립을 바탕으로 제도 안에 본래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정책의 대상에서 취약청년들이 소외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그 외에도 취약청년 당사자 집단으로 구성된 자조모임이나 기구(예: 자립준비청년 자조모임 ‘바람개비 서포터즈’, 발달장애인 자조기구 ‘피플퍼스트’ 등)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정책 관련 의견을 수렴하거나 자조모임(기구)과 청년센터의 청년정책 네트워크 간 연대를 바탕으로 취약청년들의 개별적 필요가 반영된 청년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도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2) 취약청년 사회안전망 강화(1-2)

① 취약청년 지원제도의 사각지대 보완

기존의 취약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와 역기능 문제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우선 청년 니트, 미취업 청년 등 취업애로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일경험

61) 프레시안(2021.11.6). 경산시 '비대학생' 배제된 청년정책참여단...보여주기식 행정 논란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110516163775820>에서 2023년 10월 19일 검색.

62) 서울신문 (2023.6.21). 10% 금리 주는데... ‘청년적금’ 68만명 중도해지 왜.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621500019&wlog_tag3=naver에서 2023년 10월 19일 검색.

지원'의 경우 3개월 정도의 인턴십 등 한시적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근로소득이 발생함으로써 맞춤형 급여 수급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수급 신청을 위해 6개월 이상 대기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일경험 지원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은 까다로운 반면 일경험 참여자에 대한 후속지원, 즉 일경험사업 참여가 종결된 이후 취·창업 연계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말 그대로 '일경험' 이상의 취약청년 자립이나 고립 예방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일경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속적인 지원을 적극 개발하여 연계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청년층 대상 공적 금융지원 대부분이 주거비, 학자금, 창업자금 지원 등 대출 사업으로 일부 지자체는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출 지원사업 전반에서 청년들이 실직, 창업 실패, 건강문제 등의 위기로 인해 대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대비와 후속 조치에 대한 설계가 미흡하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대출 관련 사업은 반드시 이러한 부분을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취약청년에게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지원, 취업연계,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면서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6개월) 등을 지원한다. 구직촉진수당을 취업 예정자나 취업자가 수령할 경우 부정수급(부정행위)에 해당하여 반환명령, 추가징수, 수급권 소멸, 형사처벌, 재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데 구직활동 과정에서 취업 대신 진학을 선택할 경우 "취업활동계획에 따르지 않거나 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에 해당하여 부정수급으로 간주된다. 이에 '취약청년이 구직활동 중 상급학교에 진학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전담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부정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등 구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3개월 간 총 10회기에 걸쳐 전문 심리상담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보건복지부, 2023b). 「아동복지법」상 자립준비청년은 우선 지원 대상에 해당하여 본인부담금 없이 이용이 가능하며 심리검사 결과를 토대로 재판정을 받은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연장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원칙적으로 일생에 한 번 이용이 가능하므로 취약청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후관리 등의 과정에서 필요시 연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후속적인 지원과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② 취약청년 근로안전망 강화

본 연구에서 유형별 취약청년의 생활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들은 동년배 일반 청년에 비해 취업지원(취업생활 유지지원 포함)에 대한 욕구와 지원에 따른 만족도가 높고 일회성 혹은 초단기 노동이나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는 비율과 인권침해 등 피해 상황에 노출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에 이들에 대한 근로안전망 실태를 점검하고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청년근로권익센터’의 지원 대상(현재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34세 이하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취약청년의 채용을 장려하는 인센티브제도 유지 등 고용 환경을 개선하는 접근과 함께 취업취약청년의 고립 예방과 구직의욕 고취 및 취업 이후 직장 내 적응 유지까지 단계별 연속 지원하는 근로안전망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올해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칭을 ‘노무제공자’로 정의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 범위에 이들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청년 삶 실태조사(국가통계 승인번호 제170002호)에서도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청년의 근로 여건 실태를 매 2년 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공식 통계를 토대로 근로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취약청년 중 구직을 포기하고 사실상 장기간 고립·은둔 상황에 놓여 있어도 전담기관에서 해당 청년의 정보를 취업지원기관으로 연계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이에 취업애로청년을 조기에 발굴하여 적절한 취업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표 VI-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개정(안)

현행	개정(안)
신설	제8조의5(취약계층 청년 취업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기본법」 제3조 제5항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취업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취업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대학의 장에게 해당 청년의 정보를 요구하거나 관련 정보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 제공 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을 위해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보유, 활용 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와 정보 제공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일경험 수련생 교육·훈련) ① 법 제9조의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목적으로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사람을 일경험 수련생으로 하며 이들에 대한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을 수 있다.

록 정보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내 고졸 미진학자, 미취업 중퇴자 등 일경험에 참여하는 청년을 ‘일경험 수련생’으로 정의하고 수련 기간 중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산정하지 않도록 하여 맞춤형 급여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는 문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표 VI-1).

(3) 청년의 금융취약성 대응 기반 구축(1-3)

①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관련 법적 근거 강화

개정된 「청년기본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 청년의 채무여건 개선 및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이 마련되었으나(동법 제22조), 법률에서 규정한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취약청년에 대한 금융상담, 경제교육, 재무 및 채무상담, 소송구조비용에 대한 지원, 불법금융에 대한 피해실태 조사, 피해자 지원, 불법금융 규제 및 피해 예방 사업의 운영, 그리고 청년층 자산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취약청년 자산형성지원 등을 들 수 있다(표 VI-2).

이와 같이 법률과 하위법령에서 규정을 명확히 한다면 지자체 조례에서 관련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거나 반대로 일부 조항을 임의로 삭제하는 문제를 예방하여 지역 격차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24세 이하 초기 청년들의 ‘내구제대출’ 등 신·변종 대출사기 피해 실태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통신사(과기부)와 신용정보회사(금감원)에 대한

표 VI-2. 「청년기본법 시행령」개정(안)

현행	개정(안)
신설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 법 제22조의 취약계층 청년의 채무여건 개선 및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금융상담, 금융교육, 재무 및 채무상담 2. 채무조정, 소송구조비용, 긴급지원 ¹⁾ 3. 불법금융 ²⁾ 피해실태 조사, 피해자 지원, 불법금융행위 규제 및 피해예방사업 운영 4. 청년층 자산격차 완화를 위한 취약계층 청년 자산형성지원 5. 그 밖에 취약계층 청년의 채무여건 개선 및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주: 1) 채무 문제 등 생활경제위기 발생 시 통신요금 지원 포함
2) 24세 이하 초기청년의 불법금융 피해실태를 고려할 때 불법금융의 범위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장기간대출(카드론) 및 예금 편취, 수사·공공기관 사칭 등 보이스피싱, 메신저 피싱, 사이트피싱, 대출사기, 내구제대출 등을 포함하여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각 심의기관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로 포괄적 정의가 필요함.

소관부처가 상이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신·변종 대출에 대한 홍보 등을 「청소년 보호법」상 유해물로 지정하여 후기청소년의 피해 예방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② 청년의 부채 예방과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본 연구에서 청년들의 금융취약 실태 분석을 ‘금융취약계층’의 예방과 구제를 위한 사회안전망에서 청년층의 특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다만 현세대 청년층의 금융생활 특성과 여건을 감안할 때 부채의 발생 원인에 따른 피해자 구제 여부와 범위 등 공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과 경계를 마련하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우리나라 가계대출자 5명 중 1명은 3개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최대 대출이 이루어진 다중채무자이며 이들은 대출규모나 원금, 이자 상환 비율 등이 일반 가계대출자에 비해 취약한 상황이다. 또한 9% 금리 효과가 있는 청년희망적금도 출시 7개월 만에 약 30만 명이 해지⁶³⁾하였는데 이는 최근의 물가 상승 등 취약청년의 저축 여력이 줄어든 부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가계대출자 및 다중채무자 중 청년들의 연체율 등 동향을 정기적으로 살피고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대출 프로그램의 역기능을 점검함과 동시에 채무조정 등 구제의 조건과 제재 조건 등 상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내구제 대출, 보이스피싱, 사이트피싱 등 불법금융에 대한 청년들의 피해 규모가 결코 작지 않은 상황이므로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전반에서 불법사금융, 가상자산 등 유사수신·불법다단계, 불공정 거래행위, 불법 투자업체 운영 등 사각지대 불법금융에 대한 규제정책을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지자체도 민간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여 불법금융 모니터링 등을 수행할 책무가 있는데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불법금융이 난립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의 적극적인 역할과 처벌 및 제재 강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63) 매일경제(2023.10.25). ‘연 9% 금리·290만명 가입’ 청년희망적금, 4명중 1명 해지했는데 왜? <https://www.mk.co.kr/news/economy/10857834>에서 2023년 10월 27일 검색.

(4) 청년의 고립 예방을 위한 지원 강화(1-4)

① 새로운 취약청년 발굴 및 지역 아웃리치 강화

본 조사 표본에서 취약청년의 상당수가 초기 청년기 이전에 일과 교육·훈련 중 아무 것도 하지 않거나 일정 기간 이상 심리·사회적인 고립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중에는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공적 지원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정보가 있음에도 신청과정에서 포기한 경우 휴대전화 통신비를 연체하여 공공·민간의 지원 안내를 수신하지 못한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포함되어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와 각종 지원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제도를 인지하고 신청하지 않는다면 사각지대에 잔존할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이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을 근거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등 공공데이터 연계 기반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 가동 중인 바 동 법률을 근거로 현세대 청년이 직면한 사회환경을 고려할 때 이들을 새로운 취약계층으로 규정하여 위기가구 발굴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각종 위기상황에 직면한 경우 공공데이터 등 행정통계를 기반으로 지원 안내를 제공 받는 것에 동의하는 절차를 적극 마련하고 「청년기본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에 취약청년의 발굴을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활용, 연계의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김지연 외, 2022b).

이와 함께 중등교육을 마치지 않은 학교밖청소년, 아동·청소년안전망의 사례관리 대상 청소년, 취업애로 청년, 고졸 미진학 또는 미취업 청년, 소년보호기관 퇴소청소년 등에 대한 정보와 데이터가 제각각 관리되고 있는데 이러한 분절적인 정보와 데이터를 연계하여 새로운 취약청년의 조기 발굴 체계로 구조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이들을 발굴한 후 지원제도로 연계하고 ‘탈위기’ 시까지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후속 지원이 더욱 중요하다. 이에 지역 내 후기청소년 전문기관을 포함하여 지역 청년지원센터 내 전담인력, 청년 당사자 등을 활용한 관계기반 아웃리치 풀(relationship-based outreach pool)을 구축하여 청년의 고립을 예방하는 지역사회 안전망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취약청년의 범위와 아웃리치 강화를 위해 「청년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표 VI-3).

표 VI-3. 「청년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

현행	개정(안)
신설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5.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으로서 지원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1(취약계층 청년) ①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립을 위한 통합서비스 지원 2.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3.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4. 취약계층 청년의 발굴과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취약계층 청년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법 제3조에 따른 취약계층 청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34세 이하인 자로 한다. 1. 「아동복지법」 제3조 제5항의 보호대상아동 중 18세 이상이 된 자 2. 「청소년복지법」 제2조 제4항, 제5항, 제6항의 위기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청소년부모 중 19세 이상이 된 자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학교 밖 청소년 중 19세 이상이 된 자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4, 제9조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청년 미취업자 중 15세 이상인 자¹⁾ 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보호소년 중 19세 이상이 된 자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항의 수급자, 제9항의 차상위계층 중 19세 이상인 자 7.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19세 이상인 자 8.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제1항, 제2항의 가족, 가정의 생계와 돌봄을 담당하는 9세 이상인 자^{**} 9. 그 밖에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으로서 타 법률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

* 주: 1)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돌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소년기본법」상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고 돌봄의 대상이 돌봄 주체인 경우 사각지대가 될 수 있어 이를 포함하여 정의함.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최저 연령이 15세이므로 법령 간 정합성을 고려함.

② 심리·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강화

본 연구를 통해 취약청년은 성인 이행기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와 수준의 고립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원인과 양상, 지원 욕구 등에 대한 분석과 맞춤형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취약청년은 오랜 기간 동안 심리·정서적 고립감이 만성화되는 과정에서 학업, 취업, 사회관계 등 전반으로 문제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며 참여와 교류에 대한 욕구는 일반 청년 대비 더 높다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분은 17개 광역 시·도 단위의 청년마음건강센터를 기반으로 선별검사를 포함한 초기상담과 의료기관 연계 등을 포함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통해 정신질환의 예방과 만성화를 완화하는 접근을 강화하더라도 청년들의 심리·사회적 관계망을 촉진하는 온/오프라인의 활동, 지역사회 내 공간 제공을 통한 청년공동체 활성화 등의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2) 대상특화 추진전략에 따른 추진과제

(1) 청년전담인력 교육·양성을 통한 인식 제고(2-1)

① 취약청년 지원전담인력 교육운영체계 개발

청년센터가 지역 내 청년지원 전담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추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양성과 배치가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일반청년과 취약청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청년지원매니저를 대상으로 하는 공통 교육과정과 센터 내 취약청년 전담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표 VI-4). 다만 취약청년 지원전담인력에 대한 교육과정은 전담인력의 직무내용이 먼저 마련되어야 하고 법률에서 규정한 교육과정 내에서 운영할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교육내용과 적정 교육 시수 등 세부내용이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

② 청년정책 영향평가 제도 도입 : 취약청년에 대한 민감성 제고

본 연구를 통해 취약청년은 교육, 건강, 금융, 근로, 사회관계, 일상생활 전반에서 아동·청소년기부터 누적된 복합적인 문제와 욕구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당사자에게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홍보, 대상자 발굴, 취약청년에 대한 정책 및 사업 개발 전반에서 정책대상에 대한 이해와 민감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 일환으로

표 VI-4. 취약청년 지원전담인력 교육과정(안)

공통교육(안)		직무영역별 전문교육(안)	
공통Ⅰ	취약청년에 대한 이해	전문Ⅰ	취약청년 유형별 심층 욕구 사정
	청년정책과 사업에 대한 이해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과 평가
	취약청년의 욕구 사정	전문Ⅱ	통합사례관리와 슈퍼비전
공통Ⅱ	사례관리 절차와 방법	전문Ⅲ	신용상담 및 재무관리와 구제제도
	취약청년 종합상담의 실제		자활사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사례
공통Ⅲ	기록 및 정보시스템 활용 실제		자조집단 운영지원과 정책참여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조직화		

중앙 및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법령 제·개정(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및 조례·규칙 포함) 및 주요 정책과 계획이 취약청년의 복지 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고 그 결과를 청년정책의 수립, 시행 전반에 반영하도록 하는 ‘청년정책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유사 사례로 「아동복지법」 제11조의2에 근거한 아동정책 영향평가,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가 대표적이며 제도 도입을 위해 「청년기본법」에 근거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형 지원 강화(2-2)

① 취약청년 발굴·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강화

본 연구의 1차 년도 연구에서 새로운 취약계층으로서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 법률의 개정을 포함하여 (가칭)청년권익지원법(취약계층 청년 발굴 및 자립지원 등 포함) 등 별도 법률의 제정을 제안한 바 있다(김지연 외, 2022b). 현재 「청년기본법」에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가 포함되는 것으로 법률이 먼저 개정되었고 이어서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등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청년자립지원법안」⁶⁴⁾도 발의된 상태이다.

현재 법정 5년간의 사후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아동복지법」상 자립준비청년의 연락두절 비율이 매년 20%를 상회하지만⁶⁵⁾ 이들을 찾아내어 지원제도로 연계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 또한 고립·은둔 청년 등 소외청년을 발굴하더라도 당사자(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들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개별법에도 근거를 마련하되, 「사회보장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률과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에서 동법 제3장부터 제8장까지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해당 조항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64) 윤창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784, 발의일 : 2023.5.4). 대한민국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2V3TOP4O2M6N1M4U3V2U1T9A0Z8Y8에서 2023년 10월 23일 검색하였으며, 법률 제·개정의 필요성과 배경에 대한 내용은 김지연 외(2022b:295~305)를 참고할 수 있다.

65) 경향신문(2022.10.19). 보육원·그룹홈 나온 청년 4명 중 1명 ‘소재 불명’...1명이 135명 관리.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21019113100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에서 2023년 5월 11일 검색.

② 국가사업화 우선 고려 사업의 제도화

이와 같이 취약청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접근과 함께 지자체와 민간 영역에서 파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지원들에 대한 효과(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제도화하는 방식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예로 진로·고용 영역에서는 취약청년의 기초근로교육부터 진로탐색·직업체험, 사회적 협동조합을 활용한 취·창업과 유지(세어하우스 포함), 자기이해 및 자립을 위한 라이프코칭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들 수 있다. 소득·경제 영역에서는 현재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신탁서비스를 경계선지능청년으로 확대하고 금융취약청년에 대한 관계기반 금융생활 지원 서비스를 참고할 수 있다. 주거 영역에서는 소년보호시설 퇴소 예정 청년을 대상으로 조기 퇴소하여 지역사회에서 일정 기간 적응/정착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전환서비스, 자립지원전담기관과 공인중개사협회 간의 업무협약을 통해 청년들이 거주를 희망하는 지역에서 '부동산 중개 도우미'⁶⁶⁾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사례를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 건강 영역에서는 일부 대학과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아침밥 사업 및 청년식당은 바우처 형태로 운영이 가능하며 건강검진 결과 과체중/저체중, 만성질환,

표 VI-5. 취약청년 지원 제도화 검토 사업(안)

영역	사업 예시	운영기관	핵심 대상
진로·고용	• 청소년자활센터/작업장 사업	인천시 등	전체
	• 자립을 위한 라이프코칭 프로그램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소득·경제	• 공공신탁서비스	장애인개발원	경계선지능청년
	• 관계기반 금융생활 지원 서비스	부산·광주·안산시 등	금융취약청년
주거	• 시설퇴소 전 지역사회 전환서비스	미국, 영국 등	시설퇴소청년
	• 부동산 중개 도우미 사업	경기도	전체
건강	• 천원의 아침밥 사업 및 청년식당	대학, 익산시 등	전체
	•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참여	• 자립선배 양성 및 자조모임 활동	아동권리보장원	시설퇴소청년
	• 고립·은둔 청년 발굴 지역네트워크	서울시 등	전체

66) 지역별로 '주택물색 도우미' 사업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취약청년을 특화 지원하는 형태가 아니므로 청년층의 수혜율이 낮은 상황이며, 부동산 중개 도우미는 자립준비청년이 거주를 희망하는 지역 내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주택물색, 주택점검, 주택계약 등 일련의 과정에서 도움을 받는 서비스이다. 주택의 계약과 입주 과정에서 사기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구할 수 있어 청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본 연구의 자문회의 내용에서 발췌).

자세·체형 교정 등 건강관리가 필요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신체건강증진서비스 사업을 취약청년 전반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참여 영역에서는 지역 내 자립한 선배를 서비스 제공자로 적극 참여시키고 당사자 간의 자조집단(self-help group)을 운영하여 일자리 창출 효과를 동시에 도모하는 사례와 고립·은둔 청년을 포함하여 사각지대의 소외청년을 발굴하여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지역네트워크 사례를 제도화하는 적으로 운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표 VI-5).

(3) 평생교육 관점의 교육·훈련 지원 확대(2-3)

「평생교육법」 제2조에서는 평생교육을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⁶⁷⁾ 동법 제19조의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등에서는 장애인

〈조례에 명시된 각 시·도별 취약청년 관련 평생교육진흥원 업무〉

〈표 II-2-4〉 조례에 명시된 각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생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									
〈중략〉																	
학습동아리 육성/지원	●											●					
소외계층 평생교육 지원											●	●					●
평생교육 참여확산 사업	●											●					
〈중략〉																	
장애인 평생교육 과정 설치/운영/지원		●	●	●	●		●			●				●	●		●
지자체 평생교육 진흥 위탁사업	●				●	●	●	●	●	●	●	●					
문해교육 관리/운영		●						●					●	●			
민주시민교육				●					●			●					
청년 관련 사업		●															
영어마을 사업									●								
인재 육성 사업		●		●			●	●		●			●	●	●		●

*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23) p.228.

67)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32611&efYd=20211209#0000>에서 2023년 10월 19일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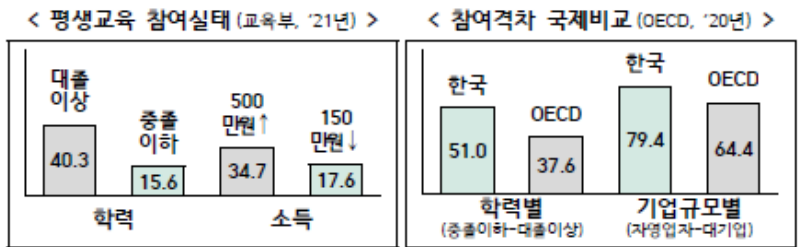
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및 지자체 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 관련 업무를 지원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평생교육시설은 조례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고 평생교육 사업 중 소외계층이나 청년 관련 사업을 조례에 명시한 시·도는 네 곳에 불과하다.

평생교육백서에서도 평생교육 주요 대상으로는 노인 및 중장년, 청소년, 농업인, 장애인, 학부모, 군,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평생교육은 아직까지 “성인의 직업교육 및 소외계층 중심의 문해교육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3:425), 최근 들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부 청소년 활동이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3:437). 청년을 대상으로는 일부 직업교육 관련한 서비스가 청년정책의 일부로 제공되고 있지만 조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상대적으로 평생교육 대상에서 등한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청년들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40%에 이르고 있어(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3:427) 평생교육에 대한 청년들의 필요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학력이나 소득이 낮을수록 평생학습에 대한 참여도가 낮은 경향을 보여(관계부처 합동, 2022) 취약계층청년들의 참여도가 저조할 가능성이 높다.

청년, 특히 취약청년들은 학력보완교육 외에도 문해, 진로·직업, 참여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훈련을 필요로 한다. 이에 평생교육 차원에서 취약청년들의

〈학력 및 소득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도〉

◇ 우리나라는 소득이 낮을수록 평생학습에 대한 참여가 낮고, 외국과 비교해도 소득에 따른 참여격차가 큰 편



◇ 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한 평생학습비 지원을 지속 확대할 필요

*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2). p.44

지속적인 역량강화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취약청년을 위한 평생교육은 청년기 이행 및 이후 생애주기 과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기초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또한 취·창업, 결혼·양육, 자립, 안전, 자산 관리, 권리보장 및 참여, 정보 수집 및 이해, 자기보호 및 관리, 건강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과업 중심의 학습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에 취약청년들의 평생교육 실태 및 요구도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여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3~'27년)(관계부처 합동, 2022)에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사각지대 발굴〉

4. 사각지대 없이 모두가 누리는 평생학습

■ 방향

-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 진흥을 위해, 평생 학습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

	지금까지	앞으로
고령층	평생학습 정책 부족	- 맞춤형 학습컨설팅 등 제공 - 대학 전담과정 개설·운영 - 독거노인 평생학습 지원
장애인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지원 등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확대 -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확대
저소득층	평생교육바우처, 저소득층 1% 지원	'27년까지 저소득층 5% 지원 - 바우처 사용기관 질 제고
비문해자	비문해자 대상 성인문해교육 지원	- 저문해자까지 성인문해교육 지원 확대 - 디지털 문해교육 지원
북한이탈 주민 · 재외동포 · 다문화 가족	관련 평생교육 정책 미흡	- 한국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 프로그램 전달체계 강화 - 온라인 콘텐츠에 외국어 자막·더빙 제공

■ 로드맵

'23~'24년 (2년 내)	'25~'27년 (5년 내)
- 장애인 평생교육 법적근거 강화 - 고령층 대학 전담과정 개설 - 장애인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확대	- 평생교육바우처 저소득층 5% 지원 -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확대 - 비문해자 디지털 문해교육 활성화

*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2). p.38

명시된 바와 같이 평생학습의 사각지대 안에 취약청년들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광역단위 취약청년 전담기관 간 협력망 구축(2-4)

현재 유형별 취약청년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의 경우 대부분 자치구가 아닌 광역시·도 단위에 설치되어 있고 업무 전산화 및 사례관리 등을 목적으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이하, 희망e음)을 활용하고 있다. 이에 향후 지역청년센터가 취약청년에 대한 발굴과 사후관리, 사례관리 업무를 추가로 수행할 경우 희망e음을 활용하도록 하되 지역청년센터가 지역사회 내 전문 기관과의 원활한 협업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희망e음의 고도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그림 VI-3). 다만 지역청년센터가 취약청년의 발굴 및 맞춤형 지원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희망e음 활용과 별개로 유형별 취약청년 혹은 청년정책 영역별 기관과의 광역단위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센터의 필수 핵심 업무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다기관 협력망 구축과 관련하여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굴과 보호 등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해야 하는 청소년안전망(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의 경우 ‘필수연계기관’의 범위를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에 규정한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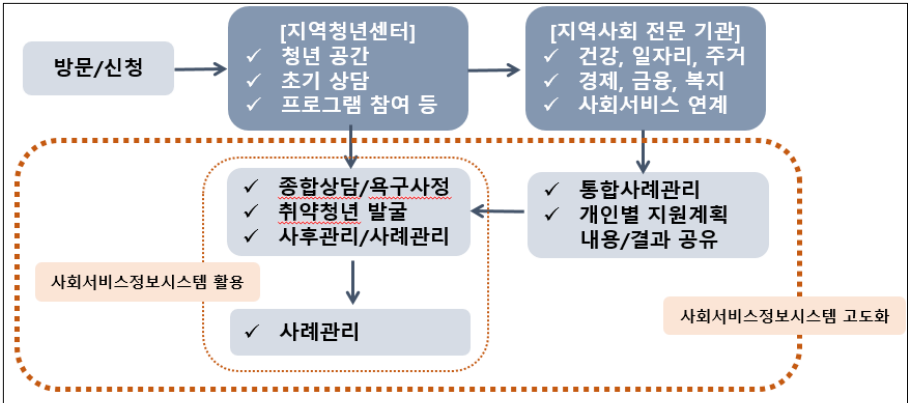


그림 VI-3. 지역청년지원센터의 지역사회 협력망(안)

3) 제도조정 추진전략에 따른 추진과제

(1) 정보시스템 구축 및 공공데이터 활용 강화(3-1)

① 취약청년 사례관리 정보시스템(희망e음) 활용 및 법적 근거 마련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취약청년에 대한 효율적인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는 사례관리 과정에서 공적지원 뿐 아니라 민간영역의 지원이 축적, 연동되는 정보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이에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을 전담할 (가칭)청년미래센터와 취약청년에 대한 사례관리를 담당할 지역 청년지원센터는 기존의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e음)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희망e음은 사회복지시설 통합업무시스템으로 행정업무 뿐 아니라 이용자 등록, 입·퇴소 등 대상자 및 서비스 이력 관리 등을 목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업무 표준화, 전산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역 청년지원센터의 취약청년 사례관리 업무가 기관의 공통 핵심업무에 포함될 필요가 있고 「청년기본법」 제24조의5(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를 근거로 하위법령에 ‘취약청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보주체(취약청년)의 명시적 동의를 전제로 당사자의 지원 내용에 관한 정보를 수집·보유·이용·제공·연계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조항 마련을 포함한다.

〈해외사례: 호주 YSCIS, CYRIC 정보시스템 운영〉

- 호주 퀸즐랜드주 Youth Support Client Information System
 - 주정부가 운영, 지원대상 취약청(소)년 정보와 서비스 이력을 관리
 - 생년월일, 가족관계 등 개인정보 포함
 - 접근권한이 부여된 민간기관만 접근, 지원시 파악한 추가 정보 입력 가능
 - 주정부는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보고서 작성
- 호주 수도준주(Australian Capital Territory) Child and Youth Record Information System
 - 디지털전략의 일환으로 아동보호, 청소년사법, 가족 및 아동발달 정보망 통합
 - 취약아동, 청(소)년이 경험하는 위험을 종합 평가하기 위한 데이터 구축 목적
 - 주 내 접근권한이 부여된 아동, 청(소)년, 가족 기관이 CYRIS 공유
 - 주정부는 시스템 개발비로 '21~'22년 예산에 640만 호주달러(약 55억) 반영

* 출처: Queensland Government 홈페이지. Youth. <https://www.dcssds.qld.gov.au/about-us/our-department/partners/youth> 에서 2023년 10월 18일 검색.
ACT Government 홈페이지. Child and youth record information system. <https://www.cmtedd.act.gov.au/digital-strategy/current-initiatives/data/child-and-youth-record-information-system> 에서 2023년 10월 18일 검색.

한편 현재 아동정보시스템, 청소년안전망시스템 등이 분절적으로 구축, 운영되고 있는데 향후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취약청년에 대한 지원 이력을 연속적으로 축적,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취약청년에 대한 선제적인 맞춤 지원과 정책성과 평가 전반에서 이를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포함하여 행복e음과 희망e음, 아동·청소년정보망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 및 정보 연계는 법적 근거 마련 이전에 중앙부처(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차원에서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② 법정조사의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 가명정보 결합

맞춤형 급여를 포함한 공적지원 대상 취약청년의 정보는 시·군·구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관리한다. 행복e음의 정보는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공무원에 한해 접근이 가능한데 취약청년에 대한 지원 여부 등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열람하는 것도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된다. 빈곤 문제를 동반한 취약청년의 경우 여러 부처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을 중복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지원의 편중과 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포함한 지원 여부와 이력에 대한 정보는 행복e음, 희망e음 등 여러 정보망(개인정보처리자가 상이)에서 분절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개인정보처리자도 상이하여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와 같이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결합할 경우 취약청년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이들의 공적 지원 이력과 사각지대의 양상 등 정책개발을 위한 양질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방안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가명정보 결합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결합전문기관을 활용해야 하고 결합된 정보에 대한 반출심사 등 일련의 절차를 거치는데 통계작성, 정책개발 등의 목적인 경우 이러한 과정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행복e음에서 관리하는 항목조차 비공개 정보로 관리되고 있는데 항목(변수)의 내용은 가명정보 결합을 신청한 연구진에 한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진이 행복e음 내 개별 사업별로 주무부처 담당자의 승인을 구하는 과정만 최소 수개월이 소요되며 가명정보의 결합이 완료되어도 반출을 위해서는 법률에서 규정한 여러 단계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심사 기한을 정하고 기한 내에 심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절차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현재 법정조사로 시행되고 있는 자립준비청년 대상 실태조사(보건복지부, 매 3년),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여성가족부, 매 2년)의 경우 취약·위기 아동·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표본조사 및 자기응답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해당 조사에 참여하는 응답자가 본인의 사회보장제도 이용 여부와 이력 등의 상세한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조사 방식에 따라서는 결과도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응답자 특성상 조사 문항 수나 질문의 내용 등 연구윤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응답 내용의 정확도와 신뢰도,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 등 조사 결과의 활용도를 고려할 때 이들 법정조사를 공공데이터에 대한 가명정보 결합을 병행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현행 조사기간과 예산 등 물리적 여건부터 개선하고 가명정보 결합키 생성을 위한 결합전문기관의 지원, 실태조사의 소관부처가 가명정보 결합을 위한 개인정보처리자(각 부처 사업담당자)의 협조를 받는 과정에 대한 지원, 통계 생산 및 정책개발 등 후속 절차에 대한 구조화 작업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본 조사에서 시도한 바와 같이 자립준비청년, 위기청소년 조사 코호트를 구축하여 자기기입식 인식조사와 가명정보를 활용한 공공데이터 기반 실태조사를 결합하는 시범사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청년정책과 대상별 복지사업 연계 강화(3-2)

① 청년층 복지멤버십 가입률 관리 및 개선

본 연구를 통해 시설퇴소청년, 금융취약청년, 발달장애청년과 같은 동일 취약청년 집단 내에서도 지원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유형별 취약청년 집단에 대한 지원 방식은 사각지대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음과 동시에 한계도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별 청년이 삶 전반에서 각종 위험과 위기상황에 놓일 때 적절한 사회보장제도와 서비스와 연계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일환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들의 '복지멤버십' 가입률을 관리하여 한 번의 신청과 가입으로 취약청년들이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시 맞춤형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복지멤버십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가입 시 연령, 가구 구성, 경제상황을 토대로 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 교육, 생계, 주거, 자산형성, 임신·출산, 보육·양육, 감면 혜택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신청주의' 한계를 보완하고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청년(빈곤)을 발굴하여 해당 청년의 거주지 내 지원 체계로

〈복지멤버십(맞춤형급여) 이용 절차〉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란?

복지 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 구성,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주는 제도입니다.

복지멤버십 가입을 희망하실 경우, **복지로 누리집** 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1단계
가입



2단계
확인



3단계
신청

1단계 간단한, 가입

복지로 누리집에서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간편하게 가입 신청해요!



복지로 누리집
접속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맞춤형급여
안내 서비스 신청

필요항목 입력

필수 인적사항, 연락처, 가구원 정보, 정보조회 동의

선택항목 입력

금융정보제공동의서

2단계 똑똑한, 확인

신청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지원대상, 서비스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메인우측상단
로그인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

수급 가능한
급여 안내 방법

온라인(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확인은 기본 제공
맞춤형급여안내 신청 시 선택한 방법
(휴대전화, 전자우편)으로 추가 안내해 드려요.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안내이며,

3단계 편리한, 온라인 신청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 중 온라인 신청 가능 서비스가 있을 경우,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해요!



복지로 누리집
접속



로그인
(간편인증, 공동
인증서, 금융인증서)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 출처: 복지로 홈페이지. <https://blog.bokjiro.go.kr/1340>에서 2023년 10월 20일 검색.

연계하는 게이트웨이(gateway)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청년층의 복지멤버십 가입률을 확
인하고 이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② 청년복지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현재 청년정책 총괄조정은 국무조정실(청년정책조정실)이 담당하고 있고, 「청년기본법」
에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 청년정책 영역 전반에서 이들 취약청년
이 배제되지 않고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인구아동정책관-인구정책총괄과-청년정책팀)가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지역사회 지원체계(청년미래센터) 마련을 준비하고 있으며 자
립준비청년(인구아동정책관-아동권리과), 발달장애청년(장애인정책국) 관련 사무도 담당

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 내 청년정책팀은 부처 소관 법률이나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국한하여 취약청년 복지정책을 담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타 부처에서 지원하는 취약청년의 발굴과 지원 전반에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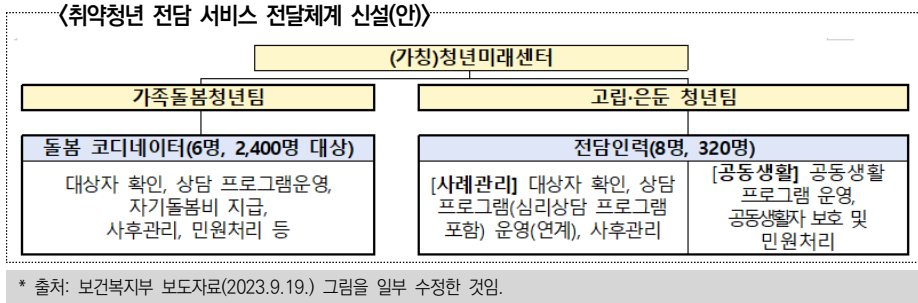
법률에서 규정한 취약계층 청년은 복지부가 운영하는 맞춤형 급여를 포함한 사회보장제도를 이용하고 있거나 유형별 지원체계를 통해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청년 뿐 아니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잠재적 취약청년을 포함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을 효과적으로 발굴하여 제도에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청년복지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행 보건복지부 내 청년정책팀의 인력, 기능, 위상을 보강하여 개별 법률에 따라 다부처가 분절적으로 추진하는 청년 대상 복지사업의 누락, 편중 문제를 해소하고 중앙-지역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포함하여 사각지대 소외청년의 발굴, 지원, 사후관리 절차 전반을 정비하도록 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된다.

(3) 지역 기반 취약청년 지원체계 구축(3-3)

① 취약아동·청소년·청년 전담기관 간 사례 연계 근거 마련

본 연구의 1차 년도 추진과제에서 취약청년 전담인력 확충 및 공공사례관리 연계 강화를 제안한 바 있다(김지연 외, 2022b:308). 다행히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청년 복지 5대 과제”에서 전국 4개 시·도 단위에 (가칭)청년미래센터를 신규 설치하고 고립·은둔 전담인력 8명(1인당 약 40사례 담당), 가족돌봄청년 전담인력 6명(1인당 약 400사례 담당)을 배치하여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상이 포함되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9.19).

다만 현재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자립준비청년 중 고립·은둔청년 지원을 위해 전담인력 1인이 추가 배치되었고(지역별 상이) 예비 가족돌봄청년이라 할 수 있는 18세 미만 조손가정 등 가정위탁 보호아동 지원을 위해 17개 시·도에 가정위탁지원센터도 설치, 운영 중이다. 특히 개정 「청년기본법」에서 취약청년의 정의와 지역 청년지원센터 지정 근거가 동시에 마련되어 취약청년에 대한 지역 기반의 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개별 법률이나 대책을 근거로 중앙부처 및 광역시·도 단위에서 조율 없이 인프라를 확장하면서 동종유사인력의 배치, 활용 방안이나 대상자 정보 이관을 위한 근거나 지침도 마련되지 않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광역 시·도 단위에서 취약아동·청소년·청년을 전담



하는 민간기관 내 전담인력의 배치, 활용 기준과 사례 및 정보 연계 절차부터 우선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② 취약청년 원스톱 지원체계 강화

향후 지역 청년지원센터 내 취약청년 전담인력 신규 배치 등 지역 기반 취약청년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특정 유형으로 명명되지 않은 대다수의 취약청년, 다중취약청년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즉 상당수의 취약청년들이 교육·진로, 부채, 정신건강, 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복합적인 문제와 지원 욕구를 가지고 있으므로 지원체계로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개인별 맞춤형 정보와 지원의 습득이 가능한 온·오프라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지역 청년지원센터는 취약청년을 포함하여 지역 내 청년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다양한 욕구와 문제에 대한 종합상담과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이트웨이 기능을 필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센터 내의 직접 서비스 이용 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 주거, 일자리, 복지, 보건·의료 등 영역별 유관기관과의 연계망 활용 및 취약아동·청소년에 대한 청년기의 연속적인 지원을 포함한다. 따라서 지역 청년지원센터가 이와 같은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생활권, 즉 최소한 시·군·구 단위에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고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한 사례는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연계하는 등 기초자치구 단위의 지원체계를 우선 구축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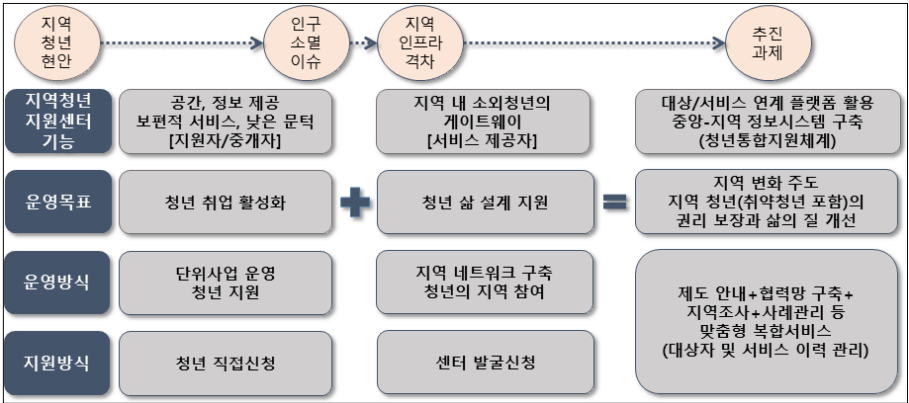
이와 함께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에 대한 취약청년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원스톱 지원도 강화하여야 한다. 현재 온라인 청년상담센터는 심층(전문)상담을 포함한 청년상담실 기능과 지역별 청년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안내, 거주 지역과 관심 분야에 따른 청년정책 정보 등을 알차게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청년, 다중재무청년 등 특수한 욕구가 있는 취약청년들이 보다 쉽게 해당 정보를 검색하거나 거주지 내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지원 신청까지 가능하도록 복지로(www.bokjiro.go.kr)와 연동하거나 취약청년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과 같은 고도화가 요구된다.

(4) 지역청년지원센터의 취약청년 지원 기능 신설(3-4)

① 취약청년 전담인력 배치 및 희망e음 활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정체성 확립

「청년기본법」의 개정으로 중앙 및 지역 청년지원센터 지정·운영에 따른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취약청년 친화적 서비스 전달체계’ 신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그림 VI-4). 우선 지역 청년지원센터(이하 지역청년센터)의 기능이 공간과 정보 제공 뿐 아니라 취약청년의 발굴과 자원 연계 등 서비스 제공자 역할까지 담당하는 것으로 기능 확대가 불가피해 보인다. 또한 지역 청년의 취업 활성화와 같은 특수 목적의 이행이 아닌 지역 청년의 고용, 교육, 복지 등 다면적인 영역을 지원하고 취약청년에 대한 사례관리 또는 사후관리 기능 수행을 위해 지역 자원과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이 공통 핵심 업무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즉 지역청년센터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정체성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이는 지역청년센터 내에 ‘취약청년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사례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e음) 활용’ 등을 의미한다. 이 경우 해당 지역청년센터가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의 성격과 위상을 가진다는 의미를 포함하므로 지역청년센터의 지정 과정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 출처: 김지연 외(2022b). p.312. 그림 IX-3 수정

그림 VI-4. 청년지원센터 기능 확대에 따른 추진과제

한편 지역청년센터 내에 취약청년 전담인력 배치와 관련하여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 또는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지역청년센터 지정을 위한 ‘최소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청년센터를 광역단위에 지정하고 시·군·구 단위의 청년센터를 지역청년센터가 아닌 청년시설로 운영할 경우 각 센터의 필수업무를 기준으로 법정 최소 인력규모를 마련 하여야 기능 중복과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시·도,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경우 기능이 동일하여 일 시보호소 운영 여부와 청소년상담사 배치 인력의 규모에 차이를 두는 방식으로 시·도, 시·군·구 센터의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운영기준〉

-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센터장(1인), 관리업무 수행직원, 청소년대상 실무업무 수행직원, 생활지도직원 포함 14명 이상 직원 배치
 -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 배치 가능(단, 청소년상담사 3명 이상 반드시 배치)
-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센터장(1인), 관리업무 수행직원, 청소년대상 실무업무 수행직원 포함 5명 이상 직원 배치
 -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 배치 가능(단, 청소년상담사 1명 이상 반드시 배치)

* 출처: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별표 2.

이에 국비 투입을 전제로 광역단위 지역청년센터를 지정하고 시·군·구 단위 센터(청년 시설)를 운영할 경우 필수 업무(예시: 센터장, 행정 업무, 사업관리, 자원 연계 및 네트워크, 지역사회조사, 취약청년 사례관리, 청년 공간 운영 담당자 포함) 및 센터별 자율 선택 업무(예시: 커뮤니티 지원 업무, 자율 선택 사업 업무 담당자 포함)를 토대로 최소 인력 규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가칭)청년미래센터와 같이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사례관리 업무를 지역청년센터(광역) 또는 청년시설(시·군·구)이 수행할 경우 법률에서 청소년상담사 필수 배치 인력을 명시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사례와 같이 사회복지사 등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최소 규모를 규정하고 인건비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② 지역청년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원칙 적용

오프라인 청년 통합지원체계(중앙-지역 청년지원센터 구축) 정비과정에서 취약청년 친화적 서비스 전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역청년센터의 지정·운영 시 최소한 다음의 네 가지 원칙은 준수할 필요가 있다(그림 VI-5). 먼저 취약청년은 고용, 교육, 주거,



그림 VI-5. 취약청년 친화적 지역청년지원센터 구축 원칙(안)

신체·정신건강, 사회적 관계 등 성인 이행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과 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으므로 지역청년센터는 특정한 욕구나 문제에 국한한 대응보다 지역사회 자원 연계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다면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가능한 구조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즉 포괄성은 민관 또는 민간 기관 간의 대상자 및 자원 연계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개념이라 볼 수 있다.

둘째, 취약청년을 포함하여 지원 대상인 청년층에 대한 이해와 진단 및 개입 기술에 있어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는 조직과 인력, 서비스 제공자의 역량을 의미하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질의 사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담인력에 대한 적정처우와 대상자 규모를 고려한 적정 수의 인력 배치 문제와도 관련된다.

셋째, 좋은 서비스가 존재하더라도 접근 가능성이 낮으면 무용지물이다. 따라서 정보 접근성이 낮은 취약청년이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와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고 청년의 특성상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넘나들며 본인의 편의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17개 광역단위에만 지역청년센터를 지정하더라도 시·군·구, 읍·면·동에 이르는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취약청년의 청년정책에 대한 리터러시를 제고하고 지역청년센터, 청년시설 내 종사자가 장애·경제선지능·부채 등 특수한 상황에 놓인 취약청년에 대한 지원과 연계 등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면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정교한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적인 방식 중 하나가 사례관리이다. 특히 생애주기 관점에서 지역 내 취약·위기청소년

중 취약청년을 조기에 발굴하여 성인기 전반에 걸쳐 지원, 연계하는 서비스 연속성을 고려할 경우 세대 내 격차 완화와 취약계층 안전망 구축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국정과제에 따른 취약청년 지원을 위한 추진과제의 내용(안)을 간략하게 도식화 한 것이 표 VI-6이다.

표 VI-6. 국정과제에 따른 취약청년 지원 추진과제(안)

[국정과제]		예산 사업	법률 제·개정	신규 개선	주무 부처 (지자체 포함)
추진전략					
43.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보건복지부)					
90. 청년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관계부처합동)					
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 기회 보장(관계부처합동)					
92. 청년 참여의 장 대폭 확대(국무조정실, 법제처)					
1. 사회통합	추진과제				
	1-1. 취약청년 참여권 보장 강화				
	1-1-1. 정보 접근성 및 정보이해능력 강화			개선	국조실
	1-1-2. 다양한 참여제도 내 취약청년 참여 방안 마련			개선	관계부처 합동
	1-2. 취약청년 사회안전망 강화				
	1-2-1. 취약청년 지원제도의 사각지대 보완		○	개선	관계부처 합동
	1-2-2. 취약청년 근로안전망 강화		○	개선	고용 노동부
	1-3. 청년의 금융취약성 대응 기반 구축				
	1-3-1.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관련 법적 근거 강화	○	○	신규	관계부처 합동
	1-3-2. 청년의 부채 예방과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신규	금융 감독원
	1-4. 청년의 고립 예방을 위한 지원 강화				
	1-4-1. 새로운 취약청년 발굴 및 지역 아웃리치 강화		○	개선	국조실
1-4-2. 심리·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강화	○		개선	관계부처 합동	
2. 대상특화	2-1. 청년전담인력 교육·양성을 통한 인식 제고				
	2-1-1. 취약청년 지원전담인력 교육운영체계 개발	○		신규	관계부처 합동
	2-1-2. 청년정책 영향평가 제도 도입	○	○	신규	국조실
	2-2. 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형 지원 강화(사례관리 포함)				
	2-2-1. 취약청년 발굴·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강화		○	개선	관계부처 합동

[국정과제]		예산 사업	법률 제·개정	신규 개선	주무 부처 (지자체 포함)
추진전략					
43.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보건복지부)					
90. 청년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관계부처합동)					
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 기회 보장(관계부처합동)					
92. 청년 참여의 장 대폭 확대(국무조정실, 법제처)					
추진전략	추진과제				
	2-2-2. 국가사업화 우선 고려 사업의 제도화	○		신규	관계부처 합동
	2-3. 평생교육 관점의 교육·훈련 지원 확대			개선	교육부
	2-4. 광역단위 취약청년 전담기관 간 협력망 구축	○		신규	관계부처 합동
3. 제도조정	3-1. 정보시스템 구축 및 공공데이터 활용 강화				
	3-1-1. 정보시스템 구축 및 공공데이터 활용 강화	○	○	신규	관계부처 합동
	3-1-2. 법정조사의 공공데이터 활용 강화	○		신규	관계부처 합동
	3-2. 청년정책과 대상별 복지사업 연계 강화				
	3-2-1. 청년층 복지멤버십 가입률 관리 및 개선			개선	복지부
	3-2-2. 청년복지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개선	국조실 복지부
	3-3. 지역 기반 취약청년 지원체계 구축				
	3-3-1. 취약아동·청(소)년 전담기관 간 사례 연계 근거 마련		○	신규	관계부처 합동
	3-3-2. 취약청년 원스톱 지원체계 강화	○		개선	국조실 복지부
	3-4. 지역청년지원센터의 취약청년 지원 기능 신설				
	3-4-1. 취약청년 전담인력 배치 및 희망e음 활용	○	○	신규	복지부 지자체
	3-4-2. 지역청년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원칙 적용			신규	국조실 지자체

3. 3차 년도 연구 계획

본 연구는 3개년에 걸친 협동연구로서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올해는 2차 년도 연구로서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실태 조사 중 2차 조사까지 마쳤으며 그에 따른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동시에 청소년부모, 경제선지능청년, 북한배경청년(이상 1차 년도), 금융취약청년, 발달장애청년(이상 2차 년도)에 대한 정책소외실태를 분석하고 정책과제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1차, 2차 년도 연구를 수행하면서 3차 년도 연구 주제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도출하였다,

첫째, 3개년에 걸쳐 축적한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실태 자료 및 행정데이터와의 가명정보 결합을 기반으로 이들의 자립과정과 지원효과를 다면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성과 제고를 위한 추진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3개년에 걸쳐 축적한 만 19세 이상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대상 자립생활 실태조사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 데이터 결합을 병행하여 사각지대 및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청년정책 추진과제를 제안할 계획이다.

둘째, 공공-민간기관 연계 기반 다중취약청년 맞춤형 지원모델 도출 및 정보시스템 기반 다중취약청년 지역사회 지원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다중취약청년과 관련해서는 1,2차 년도에 걸쳐 연구한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표본에서 고립은둔, 청소년부모, 고부채 부담, 장애, 경제선지능 복합적인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확인되었고 1차, 2차 년도 연구대상에서도 빈곤, 관계, 노동, 복지 등 다면적인 영역에서 취약성을 동반한 경우가 다수 확인되었다. 이에 다중취약청년을 위한 지원정책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현재 아동·청소년·청년기 취약계층의 정보 및 지원 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보건복지부), 위기청소년통합지원 시스템(여성가족부),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교육부)이 가동되고 있으나 지역사회 안에서 이들에 대한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이러한 시스템의 활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이에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하여 취약계층 청년, 특히 다중취약청년의 발굴 및 지원 과정에서 이러한 공공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한 지역사회 지원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계획을 바탕으로 3차 년도 연구대상 및 핵심주제를 도식화하면 그림 VI-6과 같으며 3개년 협동연구 연차별 연구주제 및 대상을 종합하면 표 VI-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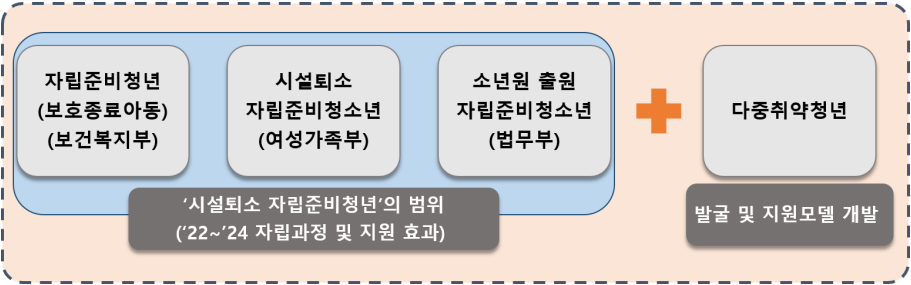


그림 VI-6. 3차 년도 연구대상 및 핵심 주제

표 VI-7. 3개년 협동연구 연차별 연구주제 및 대상(안)

주관기관(안)	주제 및 대상	'22년(1차년)	'23년(2차년)	'24년(3차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	◎	◎
	정책소외계층 청년 발굴	◎	◎	-
	다중취약청년(정책개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청소년부모	◎	-	-
	금융취약청년	-	◎	-
	다중취약청년(전달체계)	-	-	◎
사회보장정보원	다중취약청년(정보망)	-	-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경계선지능청년	◎	-	-
	발달장애청년	-	◎	-
통일연구원	북한배경청년	◎	-	-



참고문헌

참고문헌

- 감정기, 최복천, 송정문 (2012).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인식 및 지원 욕구에 관한 연구. **비판사회정책**, 37, 7-48.
- 강민석, 정종훈 (2022). 전세자금대출 증가에 따른 시장 변화 점검. KB경영포커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 강승원 (2015). 기혼 여성 지적장애인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한국웰니스학회지**, 10(2), 117-126.
- 강승원, 이해경 (2018). 장애인복지관 가족지원사업에 참여한 기혼 여성 지적장애인 가족의 변화. **한국사회서비스학회**, 8(1), 1-31.
- 강시온, 한창근 (2018). 청년 가구주의 자산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우울감의 매개효과 검증. **사회복지연구**, 49(4), 195-220.
- 강혜인 (2019). 장애인 1인 가구의 경제적 노후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가족복지 고유성에 대한 재해석과 새로운 길 찾기**, 113-120.
- 관계부처합동 (2020.6).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관계기관합동.
- 관계부처 합동 (2022).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3~'27년).
- 관계부처 합동 (2023a). 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 관계부처 합동 (2023b).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 관계부처 합동 (2023c).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2021.7.21). 브레이크 없는 '간편 금융'에 불법 고리대금 활개. 광주: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복지 분과위원회 (2018.11). 2018~2022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복지 분야 보고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3). **2022 평생교육백서**.
-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청년 삶 실태조사**.
- 김건희, 조정민, 김소현, 서석진 (2013). 발달장애학생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용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2(2), 321-339.
- 김교연 (2017). 명예낙인과 도전: 자폐성 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의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35, 53-83.
- 김기현, 장근영, 신인철, 임성근 (2023).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I**.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남훈, 하인혜 (2020). **농촌형 커뮤니티 케어 정책과제**.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도균 (2020). **한국 복지자본주의의 역사: 자산기반복지의 형성과 변화** [e-book 버전].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김동홍, 정종화 (2021). 발달장애인의 개인예산제 참여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경제성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51, 139-172.
- 김명진 (2015). 보건복지부 사회취약계층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의 성과와 과제. **성년후견**, 3, 233-245.
- 김문길, 김태완, 임완섭, 정은희, 김재호, 안주영, 김성아, 이주미, 정희선, 최준영 (2017). **청년빈곤의 다차원적 특성 분석과 정책대응 방안**.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옥, 김고은, 김지혜 (2020). 도전행동을 보이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자녀 부모의 돌봄 경험. **한국장애인복지학**, 49, 119-146.
- 김미옥, 박미숙, 박현정 (2015). 지적장애인 부부의 결혼생활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가족복지학**, 47, 167-191.
- 김민영 (2010). 전환교육 현장 전문가들의 전환교육에 대한 인식 및 실제 적용에 관한 질적연구. **장애와 고용**, 20(2), 31-54.
- 김민영, 홍성두 (2016). 발달장애 고교 졸업생의 성인생활에 관한 질적 연구. **평생학습사회**, 12(4), 79-100.
- 김민철, 김경미 (2017). 시설을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까지 장애인이 경험한 탈시설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36, 33-60.
- 김성숙, 이윤, 이재민, 홍연금 (2019). 한국 가계의 소득계층별 부채특성에 따른 연체행동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 37(1), 179-194. <http://dx.doi.org/10.7466/JKHMA.20>

19.37.1.179

- 김성아, 김지연, 김문길, 조성은, 정세정, 노혜진, 이정민, 강예은, 장성현 (2023). **청년정책 지원대상 연구: 취약 청년과 지역 청년을 중심으로**.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김성아, 노현주, 김문길, 박윤경, 임덕영, 신영규, 함선유, 송치호 (2021). **취약계층 청년 범위 및 지원에 관한 연구: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을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 김성희, 오옥찬, 이민경, 오다은, 오미애, 박영선, 박광옥, 이동석, 윤상용 (2021).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 김성희, 황주희, 이민경, 심석순, 김동주, 강민희, 정희경 (2013).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방안: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세종: 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 김승희, 손병돈 (2020). 탈시설 이후 지적장애여성의 지역사회 이주 경로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50, 5-29.
- 김예리, 박지연 (2017). 장애학생의 지적장애 어머니를 위한 가정기반 양육지원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35, 177-207.
- 김은정 (2022). 아네트의 성인모색기 개념을 중심으로 본 취약계층 청년들의 성인기 진입에 대한 연구. **문화와 사회**, 30(1), 7-58.
- 김지선, 주영선, 김솔 (2023). **자립준비청년의 복지제도 이용 유형화를 통한 효과적인 지원방안 마련**. 서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김지연, 박광옥, 오옥찬, 김미향, 조양진, 조운경 (2022). **발달장애 보호대상아동 맞춤형 자립지원 연구**. 서울: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지연, 백혜정, 김미향, 김성아, 정소연, 이우태, 이상정, 박광옥 (2022a). **청년종합연구 I: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지연, 백혜정, 김미향 (2022b). **2022년 시설퇴소청년 생활실태조사 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진숙 (2015). 발달장애자녀 어머니의 양육경험 질적 메타 종합연구. **한국심리학회지**, 27(2), 463-490.
- 김태건, 임경원 (2018).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발달장애인의 삶: 포토보이스와 마인드맵으로 들어본 이야기. **특수교육학연구**, 53(3), 67-96.

- 김현아, 나경은 (2022). 발달장애를 가진 부모의 발달장애 자녀 양육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발달장애연구**, 26(4), 79-113.
- 김형주, 김기현, 배정희, 신선미, 기현주 (2022). **청년정책의 패러다임과 전략과제 연구: 청년거버넌스와 참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효정, 김용득 (2019). 지적장애를 가진 어머니와의 가정기반 실천을 통한 협력적 실행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1(4), 49-74.
- 노혜진, 백아름, 권하늬, 박정민 (2022). 채무조정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과중채무자가 인식하는 사회적 배제의 의미. **사회복지연구**, 53(2), 5-36.
- 문다영, 유명미 (2021). 성인발달장애인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지역밀착형 주거지원서비스 개념화. **장애인복지학**, 51, 173-203.
- 문민정, 장연집 (2011). 성인 지적 장애 자녀 어머니들의 양육 체험. **질적연구**, 12(1), 25-35.
- 문영민, 김주옥, 김수영 (2022). 장애인 1인 가구의 삶의 선택과 전략: 시간, 공간, 관계적 측면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공동학술대회 자유 발표 자료집, 한국사회복지의 기본을 다시 생각하다: 지식의 성찰과 재구조화**, 112-113.
- 민기연, 주란 (2021). 고기능자폐성장장애인의 차별경험 및 지원요구: 교육과 고용영역을 중심으로. **자폐성장장애연구**, 21(3), 33-68.
- 박수민 (2022). 청년 부채 현황 진단과 과제. **보건복지포럼(2022.03)**, 21-32.
- 박애선 (2018). 어머니의 관점에서 본 발달장애자녀의 성인기 전환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7(4), 93-113.
- 박주홍, 손지현, 서두산 (2022).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부산: 부산복지개발원.
- 박현동 (2022). 가정밖 청소년의 주거환경을 위한 지원 방향성. **제22차 아동복지포럼 자료집: 자립준비 청년의 주거자립을 위한 현실적 대안 모색**, 46-49. 서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 배호중, 한창근 (2018). 학자금 대출과 혼인이행: 4년제 대학 졸업 여학생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8(1), 520-555.
- 백아름, 노혜진, 박정민 (2022). 청년 과중채무의 본질과 채무조정경험: 갈망, 불안정성, 그리고 희망. **사회복지연구**, 53(3), 139-181.
- 법무부 (2023). **내부자료**.

- 법무연수원 (2023). 2022 범죄백서.
- 변금선, 이영주, 김기현, 장익현 (2023). 청년정책 사각지대 해소 위한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방안. 서울: 서울연구원.
- 보건복지부 (2022a). 2022년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
- 보건복지부 (2022b). 2021 장애인통계.
- 보건복지부 (2023a). 2023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2023b). 2023년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 (2023c). 2023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
- 서경주, 박수경, 이정하 (2022). 혼자가 된 성인 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 생존 경험과 지원에 관한 사례연구: 남성 지적장애인을 중심으로. *지적장애연구*, 24(4), 95-127.
- 서선진 (2020). 가정 거주 발달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가 인식한 자녀의 성인 초기 생활 및 지원 요구. *교육연구논총*, 41(3), 55-82.
- 서종균 (2009).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정책의 과제. *국토연구*, 61, 81-102.
- 서홍란, 정소연 (2018).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와 인식한 성인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욕구와 복지관서비스 현황: 혼합연구방법을 활용한 기초연구. *발달장애연구*, 22(1), 87-116.
- 손성화, 강영심 (2021). 포토포이스를 통한 발달장애청년의 자립생활에 대한 의미와 경험 탐색. *특수교육학연구*, 55(4), 115-442.
- 신규수 (2019). 소득·자산 기준 빈곤 지위별 부채 보유특성. *사회복지정책*, 48(2), 287-309.
- 신현기 (2019). 지적장애인의 이중 진단과 정신건강 문제의 고찰. *지적장애연구*, 21(3), 103-125.
- 심은정, 박지연 (2017). 장애청소년이 지적장애 어머니를 위한 전환중심 양육지원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교육문화연구*, 23(1), 249-279.
- 안경숙, 이숙향 (2022). 발달장애 성인, 부모, 관리자, 특수교사가 경험한 발달장애 성인의 취업 현실과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 요구 고찰. *장애와 고용*, 32(3), 171-202.
- 양여경, 박승희 (2021). 지적장애를 가진 부모를 위한 자녀 양육지원 프로그램의 최선의 실제: 2000-2020년 선행연구 분석. *한국장애인복지학*, 51, 205-238.
- 어형남, 김영경 (2018). 발달장애 성인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의 경험 과정. *질적연구*,

19(2), 77-89.

여성가족부 (2023). **내부자료**.

오준택, 조가람 (2022). 성인 자폐성 장애 자녀의 신체활동에 관한 보호자의 현상학적 인식 탐색. **한국특수체육학회지**, 30(1), 67-83.

유연주, 김소연, 여정성 (2021). 소득계층별 가계의 부채상환 연체 가능성에 대한 의사결정나무 분석. **소비자학연구**, 32(5), 1-23.

유창민, 오혜인 (2016). 여성 지적장애인의 결혼과정과 결혼생활의 의미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34, 5-33.

윤선미, 정이윤, 양호정 (2022). 초기 성인기 발달장애인 자녀의 도전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과 경험. **정서·행동장애연구**, 38(3), 411-440.

윤혜영 (2013). 지적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방안 연구. **지역복지정책**, 24, 99-124.

이광호, 최선희, 오승환 (2019). 현장 실천가의 서비스 제공 경험을 통해서 본 지적장애인 부부와 결혼생활. **인문사회**21, 10(1), 449-164.

이동석 (2018). 2017년 재가장애인 학대실태조사 결과 및 함의. **장애인복지연구**, 9(1), 25-51.

이미정, 주경희, 남세현, 우승명 (2019). 당사자주의관점에서 본 성인발달장애인의 농촌지역 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식 연구. **인문사회**21, 10(3), 877-892.

이미현, 박성지 (2018).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참여현황과 욕구: 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7(3), 191-214.

이상정, 박세경, 류정희, 이성은, 김지연, 황정하, 김지민, 허은영 (2020).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송희 (2018). 지적장애인 부부의 자녀양육 일상생활에 관한 참여관찰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39, 127-156.

이숙향, 홍주희, 염지혜, 이정아 (2019). 가정에서의 자기결정 교수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장애학생 부모와 교사의 경험 및 지원요구 중심으로. **특수교육학연구**, 54(1), 25-60.

이용호 (2021). 청년층의 학자금 대출에 따른 노동시장 간 이행을 분석. **사회복지정책**, 44(4), 137-160.

- 이용호, 이원익 (2020). 청년의 부채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정책**, 47(3), 227-253.
- 이우진, 김태강 (2017). 장애 관련 예비종사자들의 발달장애인 선거권에 대한 인식. **인문사회**21, 8(1), 563-582.
- 이원남, 김경신 (2017). 발달장애 성인 자녀를 둔 부모의 돌봄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가족탄력성,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1(4), 27-50.
- 이원진 (2011). 개인화(individualization)인가 계층화(stratification)인가? 생애사건과 사회계층이 빈곤진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45(5), 25-60.
- 이은미, 백은령 (2010). 지적장애자녀의 생애주기에 따른 가족경험 및 지원 욕구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4(2), 63-90.
- 이은진, 한기명 (2022). 발달장애 청년에 대한 직장의 장애관련 지원과 직무만족의 관계에 관한 연구: 직업적 능력과 직무적응도의 이중매개 효과 검증. **한국직업재활학회**, 32, 97-123.
- 이정기, 안성우, 백유순 (2002). 발달장애 고등부 졸업생의 취업 및 사회 적응 실태 추적 조사 연구. **발달장애연구**, 6(2), 213-229.
- 이종희 (2020).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이용한 중년층의 가계부채 연체 가능성 분류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8(3), 1-16.
- 임대환, 오창식, 김규식, 국형진, 박지예, 박치경, 복진곤, 권영인, 송은혜, 양호경 (2023). **청년센터 종사자 직무역량 강화 연구조사**. 재단법인 청년재단, 전국청년센터협의회, 대구광역시 청년센터.
- 임보령, 박지연 (2020). 지적장애 자녀와 지적장애 어머니가 포함된 가정을 위한 양육지원 실행연구. **지적장애연구**, 22(1), 77-110.
- 임상옥, 전지혜 (2021). 장애인 1인 가구의 형성과 사회적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 장애인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22(4), 1-21.
- 임예직, 김주옥 (2022). 발달장애인의 장애정도 유형화와 맞춤형 서비스 설계 방안 연구: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57, 89-117.
- 임재현 (2020).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농업분야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8), 466-479.
- 전민경 (2020).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준비 지원 실태조사 연구**. 수원: 경기도여

성가족재단.

정상미, 김민아, 허일권 (2017). 포토보이스를 활용한 지적장애인의 성인초기 삶의 경험에 관한 연구, **장애인복지학**, 36, 5-31.

정세정, 임덕영, 김문길, 임완섭, 이상림, 류진아, 강예은, 김보미, 기현주, 박이대승, 신영규 (2020).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체계 개선방안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세정, 김문길, 김태완, 김동진, 김성아, 이원진, 이해정, 임덕영, 함선유, 류진아, 홍성운 (2021). **청년 삶 실태조사 추진방향 수립연구**.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세정, 류진아, 강예은, 김성아, 함선유, 김동진, 임덕영, 신영규, 김문길, 이해정, 김기태, 김태완, 이원진 (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재환, 이진혁 (2021).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능력과 임금의 관계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31(1), 217-243.

진재찬, 고관우 (2021). 제주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애당사자의 탈시설과 자립생활 경험에 관한 연구. **탐라 문화**, 68, 165-206.

최복천, 변용찬, 황주희, 김미옥, 박희찬, 심석순, 오다은 (2016). **발달장애인 통합적 복지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성일, 심석순, 이선화, 간기현 (2013).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방안 연구: 전환서비스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장애인개발원.

최연진, 임경원 (2019). 발달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 경험과 의미. **평생교육학회연구**, 25(4), 25-56.

최종혁, 김수완 (2017). 공공복지전달체계에서의 복지기술활용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대한 사회복지공무원 인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4(4), 181-213.

최해경 (2010). 성인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부모의 보호부담과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1(2), 243-263.

탁장한, 박정민 (2017). 과중채무자의 사회경제적 박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8(2), 173-201.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원격접근서비스).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각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조사관리국 표본과 (2021.8).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표본설계 결과. 대전: 통계청.

피एम아이 (2022).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서울: 피엠아이.

한국은행 (2021.9). 금융안정 상황. 한국은행.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22a). 2021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22b). 한 눈에 보는 2022 장애인 통계.

홍강의 (2014). 소아청소년정신의학. 서울: 학지사.

황여정, 임희진, 정은주, 유설희, 정윤미 (2022).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여성가족부.

Betti, G., Dourmashkin, N., Rossi, M., & Ping Yin, Y. (2007). Consumer over-indebtedness in the EU: measurement and characteristics. *Journal of economic studies*, 34(2), 136-156.

Blacher, J., Kraemer, B., & Howell, E. (2010). Family expectations and transition experiences for young adults with sever disabilities: Dose syndrome matter?. *Advances in Mental Health and Intellectual Disabilities*, 4(1), 3-16.

Cooper, S., & Holland, A. J. (2007). Dementia and mental ill-health in older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N. Bouras, & G. Holt (Eds.), *Psychiatric and Behavioural Disorders in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2nd ed., pp. 154-17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d'Alessio, G., & Iezzi, S. (2013). Household Over-Indebtedness: Definition and Measurement with Italian Data. *Bank of Italy Occasional Paper*(149).

Disney, R., Bridges, S., & Gathergood, J. (2008). *Drivers of Over-indebtedness*. Report to the UK Department for Business.

Dobbie, W., & Song, J. (2020). Targeted Debt Relief and the Origins of Financial Distress: Experimental Evidence from Distressed Credit Card Borrowers. *American Economic Review*, 110(4), 984-1018.

Eurofound. (2020). *Addressing Household Over-Indebtedness*.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Gill, J., & Liamputtong, P. (2011). Being the mother of a child with Asperger's Syndrome: Women's experiences of stigma.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32(8), 708-722.

Gittins, D., & Rose, N. (2007). An audit of adults with profound and multiple learning disabilities within a West Midlands Community Health Trust -implication for service development. *British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36, 38-4.

Gustavsson, A., Wendelborg, C., & Tøssebro, J. (2021). Educated for welfare services: the hidden curriculum of upper secondary school for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British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49, 424-432.

Heller, T. & Harris, S. P. (2011). *Disability through the Life Course*. London: Sage Publication.

Jansson, B. R. & Olsson, S. (2006). Outside the system: life patterns of young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Scandinavian Journal of Disability Research*, 8(1), 22-37.

Leonard, H., Foley, K. R., Pikora, T., Bourke, J., Wong, K., McPherson, Lennow. N., & Downs, J. (2016). Transition to adulthood for young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The experiences of families. *European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5, 1369-1381.

Lloyd, R. J., Wehmeyer, M., & Davis, S. (2004). Family Support. In D. E. Broli & Loyd R. J. Loyd (Eds), (4th ed, pp. 94-116). *Upper Saddle River*. NJ: Person Prentice Hall.

Mill, A., Mayes, R., & McConnell, D. (2010). Negotiating autonomy within the family: the experiences of young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British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38(3), 194-200.

Miyahara, M. (2008). Social support for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oretical framework, practice, and research agenda. *New Zealand Journal of Disability Studies*, 13, 14-23.

- Robinson, S., Hill, M., Fisher, K. R., & Graham, A. (2020). Belonging and exclusion in the lives of young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in small town communities.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ies*, 24(1), 50-68.
- Schriner K., & Ochs L. (2000). "No right is more precious": Voting rights and people with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Policy Research Brief (University of Minnesota)*, 11, 1-15.
- Sen, A. (1999). *Freedom as Development*. Oxford University Press.
- Sen, A. (2009). *The Idea of Justice*. Harvard University Press.
- Shakespeare, T. (2013). *장애학의 쟁점: 영국 사회모델의 의미와 한계*(이지수 역). 서울: 학지사.
- Strauss, J., & Corbin, A. (200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3rd)*. Sage.
- WALK (2014). *Accessing mainstream training: barriers for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Dublin: WALK.
- United Nations (2018). *Promoting Inclusion through Social Protection: Report on the World Social Situation 2018*. New York: United Nations.
- Van Regenmortel, S., De Donder, L., Dury, S., Smetcoren, A.-S., De Witte, N., & Verté, D. (2016). Social exclusion in later life: A systematic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Population Ageing*, 9(4), 315-344.
- Yin, R. K. (2011). *사례연구방법* 4판(신경식, 서아영(역)). 서울: 한경사.
- 경향신문 (2022.10.19). 보육원·그룹홈 나온 청년 4명 중 1명 '소재 불명'...1명이 135명 관리.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21019113100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에서 2023년 5월 11일 검색.
- 광주청년드림은행 홈페이지. <https://gidreambank.modoo.at/?link=aiugcjui>에서 2023년 9월 23일 검색.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32611&efYd=20211209#0000>에서 2023년 10월 19일 검색.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22.10.26).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국무조정실 홈페이지

지. <https://www.opm.go.kr/opm/news/press-release.do?mode=view&articleNo=151716&article.offset=10&articleLimit=10&srPeriodEnd=2022-10-28&srPeriodStart=2022-10-24>에서 2023년 2월 13일 검색.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9788>에서 2023년 10월 19일 검색.

마이홈포털. <https://www.myhome.go.kr/hws/portal/sch/selectRsdtRcritNtcDetailView.do?pblancId=12816>에서 2023년 4월 26일 검색.

매일경제 (2023.10.25). '연 9% 금리·290만명 가입' 청년희망적금, 4명중 1명 해지했는데 왜? <https://www.mk.co.kr/news/economy/10857834>에서 2023년 10월 27일 검색.

법무부 보도자료 (2022.10.26).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 <https://www.moj.go.kr/moj/221/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gyJTJGNTY0MTc1JTJGYXJ0Y2xWaWV3LmRvJTNGcGFzc3dvcmQlM0QlMjZyZ3NCZ25kZVN0ciUzRCUyNmJic0NsU2VxJTNEJTI2cmdzRW5kZGVtdHlM0QlMjZpc1ZpZXdNaW5lJTNEZmFsc2UIMjZwYWdlJTNEZmZlMjZiYnNPcGVuV3JkU2VxJTNEJTI2c3JjaENvbHVtbiUzRHNoJTl2c3JjaFdyZCUzRCUyNg%3D%3D>에서 2023년 5월 16일 검색.

법제처 홈페이지. <https://www.law.go.kr/LSW/lsSc.do?dt=20201211&subMenuId=15&menuId=1&query=%EC%9E%A5%EC%95%A0%EC%9D%B8%EB%B3%B5%EC%A7%80%EB%B2%95#undefined>에서 2023년 5월 29일 검색.

법제처 홈페이지. <https://www.law.go.kr/LSW/lsSc.do?dt=20201211&subMenuId=15&menuId=1&query=%EC%9E%A5%EC%95%A0%EC%9D%B8%EB%B3%B5%EC%A7%80%EB%B2%95#undefined>에서 2023년 5월 29일 검색.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12.18). 보호종료아동의 물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답하다!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99&CONT_SEQ=351938에서 2023년 5월 16일 검색.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2.9.1).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체계 개선 전담팀(TF)」발족.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32&CONT_SEQ=372795에서 2023년 2월 13일 검색.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2.11.29).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 발표.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56539377>에서 2023년 5월 30일 검색.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9.19). 젊은 한국, 청년 미래를 위한 전략 청년 복지 5대 과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8295&SEARCH_KEY=TITLE&SEARCHVALUE=%EC%B2%AD%EB%85%84에서 2023년 10월 25일 검색.

복지로 홈페이지. <https://blog.bokjiro.go.kr/1340>에서 2023년 10월 20일 검색.

빅카인즈 홈페이지. bigkinds.or.kr에서 2023년 9월 23일에서 검색.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https://sfwc.welfare.seoul.kr/sfwc/main.do>에서 2023년 10월 6일 검색.

서울신문 (2023.6.21). 10% 금리 주는데... ‘청년적금’ 68만명 증도해지 왜,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621500019&wlog_tag3=naver에서 2023년 10월 19일 검색.

서울파이낸스 (2023.7.8). ‘영끌에서 생계로’, 급증하는 ‘불황형 대출’... 보험사 약관대출 ‘불티’, <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489745>에서 2023년 9월 15일 검색.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 홈페이지. <https://www.educredit.or.kr/ccedu/cc/ccEduIntro.do>에서 2023년 9월 23일 검색.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https://ccrs.or.kr/main.do>에서 2023년 10월 6일 검색.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sp/yth/sp_yth_f014.do에서 2023년 4월 26일 검색.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3&bbtSn=709594에서 2023년 4월 26일 검색.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 <https://www.youthcenter.go.kr/main.do>에서 2023년 9월 23일 검색.

윤창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784, 발의일: 2023.5.4). 청년자립지원법안. 대한민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

C_W2V3T0P4O2M6N1M4U3V2U1T9A0Z8Y8에서 2023년 10월 23일 검색.
 프레시안 (2021.11.6). 경산시 '비대학생' 배제된 청년정책참여단...보여주기식 행정 논란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110516163775820>에서 2023
 년 10월 19일 검색.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 <http://www.ssis.or.kr/index.do>에서 2023년 5월 30
 일 검색.
 한국소년보호협회 홈페이지. <https://www.kjpa.or.kr/51>에서 2023년 5월 8일 검색.
 한국소년보호협회 홈페이지. <https://www.kjpa.or.kr/80>에서 2023년 5월 30일 검색.
 한국은행 보도자료 (2021.9.24). 금융안정 상황. [http://www.bok.or.kr/portal/bbs/P
 0000559/view.do?nttId=10066610&menuNo=200690&pageIndex=51](http://www.bok.or.kr/portal/bbs/P0000559/view.do?nttId=10066610&menuNo=200690&pageIndex=51)에서 20
 23년 2월 13일 검색.
 한국은행 보도자료 (2022.3.24). 금융안정 상황. [https://www.bok.or.kr/viewer/skin/
 doc.html?fn=202203240829060580.hwp&rs=/webview/result/P0000559/202
 03](https://www.bok.or.kr/viewer/skin/doc.html?fn=202203240829060580.hwp&rs=/webview/result/P0000559/20203)에서 2023년 5월 16일 검색.
 e-나라지표 홈페이지.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
 etail.do?idx_cd=1738](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38)에서 2023년 5월 16일 검색.
 ACT Government 홈페이지. Child and youth record information system. [https://
 www.cmtedd.act.gov.au/digital-strategy/current-initiatives/data/child-and
 -youth-record-information-system](https://www.cmtedd.act.gov.au/digital-strategy/current-initiatives/data/child-and-youth-record-information-system)에서 2023년 10월 18일 검색.
 Queensland Government 홈페이지. Youth. [https://www.dcssds.qld.gov.au/abo
 ut-us/our-department/partners/youth](https://www.dcssds.qld.gov.au/about-us/our-department/partners/youth)에서 2023년 10월 18일 검색.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년복지지원법」. [법률 제18101호, 2021. 4. 20., 일부개정]

「소년법」. [법률 제17505호, 2020. 10. 20., 타법개정]

「아동복지법」. [법률 제17784호, 2020. 12. 29., 일부개정]

「양성평등기본법」. [법률 제18099호, 2021. 4. 20., 일부개정]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9400호, 2023. 5. 2., 일부개정]

「청년기본법」. [법률 제19253호, 2023. 3. 21., 일부개정]

「평생교육법」. [법률 제19588호, 2023. 8. 8., 타법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별표 2

국문초록

본 연구는 사회정책의 사각지대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배제된 취약청년 중에서도 정책적으로 소외된 청년들을 관찰하고 통찰력을 얻기 위해 3년간의 협력 연구로 설계되어 이들의 실태와 이들과 일반 청년 간 격차가 발생하는 지점을 확인하여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 추진과제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올해 2차 년도 연구에서는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국가청소년정책연구원), 금융취약청년(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달장애청년(한국보건복지연구원)을 대상으로 입체적인 분석을 통하여 일반 청소년의 삶과 비교한 소외 및 격차 현황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격차 완화 및 소외 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의 기본 방향과 핵심과제들을 제안하였다.

정책소외계층 청년 지원정책 개발을 위한 비전, 목표, 전략은 지난 1차 년도 연구에서 도출한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되 2차 년도 연구결과를 토대로 12개의 추진과제를 추가 개발하였다. 추진과제는 크게 사회통합을 위한 추진과제, 대상 특화 추진과제, 제도 조정을 위한 추진과제로 나눌 수 있으며 1) 사회통합을 위한 추진과제로는 취약청년 참여권 보장 강화, 사회안전망 강화, 금융취약성 대응 기반 구축, 고립 예방을 위한 지원 강화, 2) 대상 특화 추진과제로는 청년전담인력 교육·양성을 통한 인식 제고, 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형 지원 강화, 평생 교육 관점의 교육·훈련 지원 확대, 광역단위 취약청년 전담기관 간 협력망 구축, 그리고 마지막으로 3) 제도 조정을 위한 추진과제로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공공 데이터 활용 강화, 청년정책과 대상별 복지사업 연계 강화, 지역 기반 취약청년 지원체계 구축, 지역청년지원센터의 취약청년 지원 기능 신설 등이 포함된다.

ABSTRACT

This study is designed as a three-year cooperative study to observe and gain insight into politically marginalized young adults among vulnerable young adults involuntarily excluded due to blind spots in social policy, and aims to improve systems and develop policy promotion tasks for social integration by identifying their actual conditions and the gap between them and ordinary young adults.

This year's second year study empirically confirmed the status of alienation and disparity compared to the lives of ordinary young adults through analysis of 1) young adults leaving welfare facilities and preparing for independent living, 2) financially vulnerable young adults, and 3) young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Based on these results, the basic directions and core tasks of policy promotion for easing gaps and preventing alienation in various areas were proposed.

The vision, goals, and strategies for developing policies to support young people in the underprivileged remained the same as they were derived from the previous year's study, however 12 additional tasks of policy promotion were develop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econd year's study. The tasks can be divided into three main areas: 1) The tasks for social integration include strengthening the right to participate in vulnerable young adults, strengthening social safety

nets, establishing a foundation to respond to financial vulnerabilities, and strengthening support to prevent isolation, 2) Target-specific tasks include raising awareness through education and training of youth personnel, finding blind spots and strengthening customized support, expanding education and training from a lifelong education perspective, establishing a cooperative network among vulnerable youth organizations at the metropolitan city and province units, and finally 3) as a task for system adjustment, strengthening the use of public data on the basis of establishment of information systems, strengthening the link between youth policies and welfare projects by target, establishing a regional-based support system for vulnerable young adults, and establishing a function to support vulnerable youth at the local youth support center were proposed.

202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간자료 목록

기관고유과제

연구보고23-기본01	청소년들은 '금융'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청소년 금융이해력 수준 및 금융생활 실태 / 김지경·서정아·송현주
연구보고23-기본02	청소년활동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 문호영·서고운·김진호
연구보고23-기본03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방안 연구 / 이윤주·최용환·길정아·황현정
연구보고23-기본04	2023 청소년 가치관 조사 연구 / 임희진·황여정
연구보고23-기본05	디지털 유해환경과 청소년 위험행동 실태 연구 / 배상률·김영한·황현정
연구보고23-기본06	청소년의 대안교육 참여 실태 및 지원방안 / 오해섭·최홍일·송원일
연구보고23-기본07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을 위한 정치참여 지원 방안 연구 / 최정원·이인영·박지숙·이호준
연구보고23-기본08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 / 최인재·임지연·김민·강영배
연구보고23-기본09	보호소년 범죄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소년보호재판 및 보호처분 제도를 중심으로 / 박지수·이지연·한윤선·김혁
연구보고23-기본10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분석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 / 김희진·조혜영·한지형
연구보고23-기본11	청소년 디지털인재를 어떻게 양성할까? / 이창호·모상현·최항섭
연구보고23-일반01	2023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 / 유민상·이경상·유성렬·이수정
연구보고23-일반01-01	2023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기초분석보고서 / 유민상·이경상
연구보고23-일반02	사회통합을 위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방안연구 I / 양계민·권오영·이영신·장윤선·장인숙
연구보고23-일반07	202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사업보고서 / 황진구·김윤희·정윤미
연구보고23-일반07-01	202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분석보고서 / 김윤희·정윤미
연구보고23-일반08	2023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총괄보고서 / 신동훈·이정민·홍명기·이용해·임선아·김지혜

- 연구보고23-일반08-01 2023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1기 패널)
/ 신동훈·이정민·홍명기·이용해
- 연구보고23-일반08-02 2023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2기 패널)
/ 신동훈·이정민·홍명기·이용해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6-01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Ⅲ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3) / 김형주·김정숙·김문길·변금선·배정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7-01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 시민권과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4) 참여-총괄보고서 / 김기현·장근영·신인철·임성근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7-02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 시민권과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4-01) 참여-심층분석 보고서 / 김기현·장근영·신인철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8-01 청년종합연구Ⅱ: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5) / 백혜정·김지연·김승경·김이배·노혜진·김성아·박광옥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8-02 2023년 시설퇴소청년의 생활 실태 및 정책개발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5-01) / 백혜정·김지연·김승경·노혜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8-03 청년의 금융취약 및 정책소외 실태와 정책과제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5-02) / 김성아·김문길·나원희·한영섭·강예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8-04 발달장애청년의 정책소외 실태와 정책과제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5-03) / 박광옥·김용득·이복실·이은영·이동림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9-01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보완 연구Ⅱ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6) / 김경준·김영지·윤철경·이은주·이은주·임성은

수 시 과 제

- 연구보고23-수시0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학교내 설치 활성화 방안 연구 / 황진구·김윤희
- 연구보고23-수시02 미디어 속 학교폭력 양상 분석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방안 도출
/ 배상률
- 연구보고23-수시03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
/ 유민상·서고운·신동훈·이지연
- 연구보고23-수시04 청소년복지시설 설치기준 개선방안 연구 / 김영한

연구보고23-수시05

니트 청년 지원 사업의 참여자 발굴 개선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의 구직단념청년 발굴 사례를 중심으로
/ 유민상·김기현·김나영

수탁과제

〈 일반 〉

- 연구보고23-수탁01 디지털시대, 디지털 문해력 개념의 확장 / 황용석·이현주·황현정
- 연구보고23-수탁02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콘텐츠 개발방안 연구
/ 강진숙·김지연·류숙
- 연구보고23-수탁03 유니세프 아동친화학교 사업 성과 연구 / 이윤주·최정원·최홍일·이수진
- 연구보고23-수탁04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연구 / 김영한
- 연구보고23-수탁05 자립준비청년 지원체계 강화방안 연구 - 사각지대 해소 및 형평성 제고를
중심으로 / 김승경·백혜정
- 연구보고23-수탁05-01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 특별위원회 정책자료집 / 김승경·백혜정
- 연구보고23-수탁06 디지털기반 인성교육 - 존중과배려 메타버스 체험학습 플랫폼 개발
/ 임지연·황여정·이미영
- 연구보고23-수탁07 디지털기반 인성교육 - 존중과배려 메타버스 체험학습 교실 - 교사용 수업활동
안내서 / 임지연·황여정·이미영
- 연구보고23-수탁08 학교-지역사회-민간연계를 통한 우수인성교육프로그램 발굴확산 사업
결과보고서 / 이창호·주예찬·이슬기
- 연구보고23-수탁09 인성교육 프로그램 비인증제 운영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김봉제·신현우·곽현석
- 연구보고23-수탁10 2023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사업보고서
/ 김영자·김지연·서고운·이정만·최홍일
- 연구보고23-수탁10-01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 이미숙·양소현·고혜정·최진혁·한송이·문미혜·윤애영·김주아·조성윤
- 연구보고23-수탁11 2023년 자치구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용역 / 최용환, 이동성, 장혜윤, 임채홍
- 연구보고23-수탁12-01 2023년 교과 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 초등 / 최용환·김동일·임지영
- 연구보고23-수탁12-02 2023년 교과 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 중고등 / 최용환·김동일·임지영
- 연구보고23-수탁13 2023년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원 전문인력 양성 및 정책연구 결과보고서
/ 최용환·김동일·박윤수·김보경·장혜윤·임지영
- 연구보고23-수탁14 2023년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관리 보고서
/ 최용환·임지영, 서기희, 김성혜

연구보고23-수탁15	2022년 중앙정부 및 시도교육청 인성교육 추진성과 및 인성교육정책 분석평가 / 최용환·박윤수·김보경·장혜윤·김수진, 오지혜
연구보고23-수탁16	2023년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결과보고서 / 최용환·서기희·오지혜
연구보고23-수탁17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김희진·임희진·김정숙·박소영
연구보고23-수탁18	2023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황진구·김영지·모상현
연구보고23-수탁19	2023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 / 서정아·조아미
연구보고23-수탁20	신 소외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 연구 / 서정아·조아미
연구보고23-수탁21	청소년활동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현황 연구 / 서정아·김정율·김지수
연구보고23-수탁22	글로벌 K-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성과측정체계 연구 / 양계민·권오영
연구보고23-수탁23	레인보우스쿨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 양계민·이영신
연구보고23-수탁24	지방소멸시대 지방정부의 청년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 장근영·김기현·이상준·황성수·이규용·윤석천·최성은·조양진
연구보고23-수탁25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김지경·송현주·김균희
연구보고23-수탁26	청소년동반자 사업운영 효율화 방안연구 / 김윤희·황진구·이상현·김태성·정윤미
연구보고23-수탁27	2023년 청년정책 성과자료 제작 / 김기현·김형주·김지민
연구보고23-수탁28	청년문제 대응 자원 조성방안 연구 / 김기현·이윤주·조양진

〈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

연구보고23-학폭01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초등학교 저학년) / 모상현·구찬동·조규복·송채원·신보람
연구보고23-학폭02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초등학교 고학년) / 모상현·구찬동·조규복·송채원·신보람
연구보고23-학폭03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중학교) / 모상현·구찬동·조규복·송채원·신보람
연구보고23-학폭04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고등학교) / 모상현·구찬동·조규복·송채원·신보람
연구보고23-학폭05	2022년 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지 발간 모음집 / 모상현·김예원·신보람
연구보고23-학폭06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운영 안내서 / 모상현·김창겸·김예원
연구보고23-학폭07	2022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모상현·이경상·남지영·송채원·장원빈

연구보고23-학폭08

2022 외국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활동 사례연구 보고서
/ 모상현·남지영·장원빈

〈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 〉

연구보고23-대안01

대안학교(각종학교) 운영실태조사 / 최홍일·김세광·오해섭

연구보고23-대안02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기초
연구 / 최인재·송원일

자 료 집

〈 세 미 나 〉

세미나23-01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세미나 (23.7.19.)

세미나23-02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MAPS) 데이터 설명회 및 방법론 특강 (23.8.24.)

세미나23-03

「한국 아동·청소년 데이터의 역사와 전망」 (23.9.12.)

〈 워크숍 〉

워크숍23-01

2022년 하반기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 (23.2.8.)

워크숍23-02

2022 하반기 학교민주시민교육 배움 공유회 (23.1.16.)

워크숍23-03

2023 꿈지락 운영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 워크숍 (23.5.2.)

워크숍23-04

2023년 학생 참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 및 중립성 원칙 기반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 (23.5.3.)

워크숍23-05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선도교원 양성_기본과정 (23.7.27.~7.28.)

워크숍23-06

2023년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 협의회
(23.7.19.)

워크숍23-07

2023년 어울림(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재구조화 집필진 워크숍 참고자료
(23.8.5.)

워크숍23-08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선도교원 양성_심화과정 (23.11.2.~23.11.3.)

〈 포 럼 〉

포럼23-01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방안: 생애주기 시각에서의 사회적 고립 대응(23.4.25.)
포럼23-02	챗GPT 알고리즘 이해와 청소년 시민성증진을 위한 활용방안 모색 (23.7.4.)
포럼23-03	2023년 다문화 청소년 포럼: 초-중 전환기 다문화 청소년의 성장과 지원방안 (23.8.24.)
포럼23-04	보호소년 특성에 대한 이해 및 보호처분제도 개선 방향 모색 (23.8.25.)
포럼23-05	대안교육의 현재와 나아갈 방향 (23.9.20.)
포럼23-06	학교 밖 청소년 진로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협력 방안 (23.9.21.)
포럼23-07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포럼 (23.10.25.)
포럼23-08	청년종합연구 포럼: 협동연구 연구성과 보고 (23.11.14.)
포럼23-09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방안: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의 통합적 대응 (23.11.21.)
포럼23-10	청소년정책포럼 '도시를 만드는 아이들' (23.12.7.)

〈 콜 로 키 움 〉

콜로키움23-01	행정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처리의 이해 (23.4.19.)
콜로키움23-02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1차 콜로키움 "SDGs 시대의 청소년정책" (23.6.19.)
콜로키움23-03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2차 콜로키움 "학습 회복(Learning Recovery)에서 교육 혁신(Education Transformation)으로: 코로나 이후 해외 교육 사업의 변화" (23.7.20.)
콜로키움23-04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3차 콜로키움 "청소년 사이버범죄 양상 파악을 위한 연구 방법: ATLAS.ti 23을 이용한 주제 분석(원제: Using Thematic Review with ATLAS.ti 23 to Identify Patterns of Cybercrime among Youths from Literature)" (23.8.18.)
콜로키움23-05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4차 콜로키움 "청소년과 국제개발협력: 월드비전의 전략과 사례를 중심으로" (23.8.28.)
콜로키움23-06	교육 혁신 도구로서의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방향과 현황 (23.9.18.)
콜로키움23-07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5차 콜로키움 "세계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공동체의 역할: 도전과 기회를 중심으로" (23.11.13.)
콜로키움23-08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6차 콜로키움 "공존과 상생을 위한 세계시민의식" (23.12.01.)

〈 기 타 자 료 집 〉

자료23-01	2022 공교육 안팎 대안교육 이해도 제고를 위한 정책설명회 및 연수 보고서
자료23-02	2022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집
자료23-03	인성교육 재정립 및 학교인성교육 추진방향
자료23-04	학교 시민교육과 시민성 개념의 재구조화
자료23-05	민주적 학교 운영 길잡이
자료23-06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자료23-07	2023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위촉식 및 연수
자료23-08	2023년 학생참여교육 실천 프로젝트 전문가 특강 자료집
자료23-09	2023년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자료집
자료23-10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 가이드북
자료23-11	제12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23-12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선도교원 양성 적응평가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34권 제1호(통권 제108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4권 제2호(통권 제109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4권 제3호(통권 제110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4권 제4호(통권 제111호)

기타 발간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

- 145호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Ⅳ: 질적패널조사를 중심으로
146호 전환기의 국가청소년정책 전략 연구
147호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 보완 연구 Ⅰ
148호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구축방안 연구 Ⅱ
149호 다양한 가족 메타버스 상담·활동·교육 플랫폼 설계구축 및 효과 연구
150호 메타버스의 활용경험이 청소년의 행동변화에 미치는 영향

〈 NYPI Bluenote 통계 〉

74호	후기청소년의 미디어 이용실태 조사결과
75호	코로나-19 시대 MZ세대의 사회성 발달 연구
76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5차 조사(2022년) 주요 조사결과 및 데이터 분석·활용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집필진 ◆

김 지 선 (사회보장정보연구소 연구센터·부연구위원)

◆ 자문·협력진 (가나다 순) ◆

강 이 석 (한국인터넷정보원·수석)

고 희 원 (한국소년보호협회·팀장)

김 민 정 (부산 사하구청 복지정책과·주무관)

김 성 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연구소
빅데이터개방결합부·대리)

김 영 수 (서울시복지재단 청년행동센터·팀장)

김 윤 중 (유플에스데이터·수석)

김 인 수 (법무부 소년보호과·사무관)

김 종 훈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연구소
빅데이터개방결합부·과장)

김 주 연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주무관)

김 형 근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관장)

나 금 주 (광주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남 상 희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과장)

문 언 진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주무관)

박 우 석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주무관)

박 슬 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연구소
빅데이터개방결합부·대리)

박 수 민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센터장)

박 수 진 (충남자립지원전담기관·부장)

박 정 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이사장)

◆ 자 문 · 협 력 진 (계속) ◆

송 원 섭 (인천시 청소년자립지원관·관장)
신 민 경 (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주무관)
신 재 연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사무관)
신 영 희 (부산 사하구청 복지정책과·주무관)
양 준 혁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사무관)
오 재 민 (법무부 소년보호과·계장)
옥 은 택 (포유시큐리티·대표)
유 도 경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사무관)
유 정 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주무관)
이 복 실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이 상 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가족정책연구센터·센터장)
이 원 재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주무관)
이 정 순 (부산 사하구청 복지사업과 아동보호팀·계장)
이 항 섭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사무관)
이 혁 (법무부 소년과·계장)
임 대 환 (청년재단 중앙청년지원센터·센터장)
장 미 임 (부산청년희망상담센터·센터장)
정 세 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연구위원)
제 호 영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연구소
빅데이터 개방결합부·부장)
조 윤 경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원장)
조 의 성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사무관)
채 지 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사무관)
최 신 혜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주무관)
홍 선 화 (부산 사하구청 복지사업과 청소년팀·계장)
홍 윤 정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연구소·주임)
황 해 경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사무관)

협동연구총서 23-88-01
연구보고23-일반05

청년종합연구II: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인 쇄 2023년 12월 22일
발 행 2023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김 현 철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경성문화사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409-8 94330
979-11-5654-408-1 (세트)

청년종합연구 II: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ISBN 979-11-5654-409-8

ISBN 979-11-5654-408-1(세트)